兒童福祉收容施設 運營評價 및 改善方案

1995. 12

金 應 錫　金 顯 玉
李 尙 憲　吳 正 受
李 廷 鎬　朴 光 駿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急激한 産業化와 都市化로 인하여 社會構造가 變化되고 있으며, 이는 家族構造 뿐만 아니라 家族의 役割과 價値觀에도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家族의 變化는 가족구성원간의 紐帶를 약화시켜 兒童의 保護 및 扶養에 대한 책임의식을 減少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 結果 부모가 생존하여 있으면서도 家族解體로 인해 家庭에서 保護·養育받지 못하는 兒童이 增加하고 있다. 家庭內에서 保護·養育받지 못하는 이들 兒童들을 收容·保護함에 따라 과거에는 주로 父母가 사망한 兒童들을 集團收容하던 兒童福祉收容施設의 特性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로 인하여 과거의 단순한 收容保護로서는 수용아동의 多樣한 福祉慾求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兒童福祉收容施設에 대한 政府의 支援은 收容兒童의 基礎生計를 維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改善되어 왔다. 그러나 수용아동의 적성이나 능력개발과 자활에 필요한 職業敎育 및 訓練 등 質的인 서비스가 不足하고, 退所兒童들의 自立基盤造成을 위한 支援施策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退所兒童들은 수용시설에서 生活하는 동안 家庭이나 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不足하여 退所後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社會適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豫算을 投入하여 보호하여 온 施設收容兒童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享有하지 못하고 問題 靑少年으로 전락할 危險要因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收容保護 爲主의 施設運營體系로서는 兒童의 바람직한 成長을 기대할 수 없다. 施設兒童을 건강하고 자립능력있는 人間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運營體系의 改善이 필요하다. 단순한 家庭代替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要保護兒童의 減少, 特殊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增加, 地方自治制 實施, 政府의 地域福祉·在家福祉 政策 增大 등 施設을 둘러싼 環境變化는 시설의 機能 및 役割의 변화를 要求한다. 따라서 과거의 전근대적이고 非專門的인 運營體制로는 새로운 時代가 要求하는 施設의 機能 및 役割을 다할 수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兒童福祉施設은 運營體系에 있어서 새로운 패라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 硏究가 兒童福祉收容施設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診斷·評價하여 그 운영 개선방안을 만련하고, 兒童福祉收容施設의 새로운 政策方案을 제시한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생각된다.

이 報告書에는 兒童收容施設의 規模나 住居形態, 收容施設兒童의 特性과 生活實態, 法人 및 施設의 資産規模, 施設의 收入 및 支出의 規模와 그 構成, 人力構成과 適切性, 施設의 開放性과 地域社會 參與水準 및 退所兒童의 特性 등 多樣한 分析內容들이 收錄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政策課題와 改善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實證資料를 통해 얻어진 分析結果는 앞으로 兒童福祉收容施設의 政策方案을 樹立하는데 귀중한 資料로 活用될 것으로 期待하며, 특히 관련 學界專門家, 政府 部處 擔當者 및 兒童福祉施設 管理者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本 報告書는 본원의 金應錫 硏究委員의 책임하에 金顯玉 責任硏究員, 李尙憲 主任硏究員, 忠南大 吳正受 敎授, 國立社會福祉硏修院 李廷鎬 敎授, 그리고 釜山女大 朴光駿 敎授 등 많은 硏究陣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擔當硏究分野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1章 序論 (金應錫, 李尙憲)
第2章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 (吳正受, 朴光駿)
第3章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現況 (金顯玉)
第4章 兒童福祉施設의 評價 (金應錫, 李尙憲, 金顯玉)
第5章 地方自治制에 따른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李廷鎬)
第6章 主要結果 要約 및 改善方案 (金應錫, 金顯玉, 李尙憲)

그리고 硏究陣들은 그 동안 報告書 作成過程에서 많은 助言과 行政的 協調를 해주신 保健福祉部 박병하 과장, 한상진 계장과 資料蒐集에 협조하여 주신 兒童福祉施設 關聯者들에게 感謝하고 있다. 또한 本 報告書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변용찬 박사, 한혜경 박사, 이성기 박사께 感謝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참여한 硏究陣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2月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 長 延 河 淸

目　次

要約 및 改善方案 ····· 25

第 1 章　序 論 ····· 33

　第 1 節　硏究背景 및 目的 ····· 33
　第 2 節　硏究方法 ····· 38

第 2 章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 ····· 45

　第 1 節　英國의 社會福祉施設 ····· 45
　　1. 發展過程 ····· 45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 51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 54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 60

　第 2 節　美國의 社會福祉施設 ····· 65
　　1. 發展過程 ····· 65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 70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 72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 74

　第 3 節　日本의 社會福祉施設 ····· 77
　　1. 發展過程 ····· 77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 83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 90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 96

第 4節 評價와 政策的 含意 ····· 101
1. 發展過程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 101
2. 傳達體系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 104
3. 運營體系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 105

第 3章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現況 ····· 112

第 1節 社會福祉收容施設 및 收容者 現況 ····· 112
1. 施設의 種類 및 分布 ····· 112
2. 年度別 施設 推移 및 需要 展望 ····· 120

第 2節 社會福祉收容施設의 財政體系 ····· 124
1. 運營 財源 ····· 124
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財政規模 ····· 129
3. 政府補助金 支給內譯 및 支給方式 ····· 134

第 3節 社會福祉收容施設 從事者 ····· 143
1. 從事者 現況 ····· 144
2. 從事者 配置基準 ····· 145
3. 從事者 勤勞條件 ····· 150
4.. 專門性 및 離職率 ····· 154

第 4節 施設 規模, 住居形態 및 設備 ····· 157
1. 施設의 規模 및 住居形態 ····· 157
2. 施設 設備 狀態 ····· 159

第 5節 施設 管理 · 運營 形態 ····· 161
1. 法人理事會 및 施設職員의 構成 ····· 162
2. 地域社會와의 關係 ····· 164
3. 프로그램 運營 ····· 166

第 6節 行政體系 ····· 170
1. 서비스 傳達體系 ····· 170
2. 指導·監督體系 ····· 171

第 4章 兒童福祉施設의 評價 ····· 174

第 1節 評價方法 ····· 174
1. 分析評價의 흐름 ····· 174
2. 主要 評價指標 ····· 177

第 2節 育兒施設의 運營 實態 및 評價 ····· 179
1. 施設의 種類 및 住居形態 ····· 179
2. 法人의 財政規模 및 施設의 收入 및 支出 ····· 183
3. 施設從事者의 主要特性 및 勤務環境과 滿足水準 ····· 189
4. 施設의 運營形態 및 開放程度 ····· 202
5. 施設收容兒童의 生活實態 및 滿足 ····· 215

第 3節 其他 兒童福祉施設의 實態 및 評價 ····· 235
1. 嬰兒施設 ····· 235
2. 兒童一時保護施設 ····· 254
3. 敎護施設 ····· 269
4. 職業輔導施設 ····· 284
5. 自立支援施設 ····· 297

第 5章 地方自治制에 따른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 309

第 1節 地方自治制가 社會福祉에 미치는 影響 ····· 309

第 2節 社會福祉施設의 設置運營 現況 ····· 313
1. 社會福祉施設의 地域別 配置 ····· 313

2. 運營財政 ····· 314
3. 社會福祉法人 및 施設의 指導監督 ····· 315
4. 社會福祉施設의 利用과 關係機關과의 連繫現況 ····· 316

第 3節 社會福祉施設 運營에 있어서 政府와 民間의 役割 ····· 318
1. 政府의 役割 ····· 318
2. 民間의 役割과 發展方案 ····· 327

第 6章 主要結果 要約 및 改善方案 ····· 331

第 1節 兒童福祉收容施設의 問題點 ····· 331
第 2節 改善方案 ····· 343

參考文獻 ····· 358

附 錄 ····· 365
1. 統計表 ····· 367
2. 調査票 ····· 423

表 目 次

〈表 1- 1〉 調査方法 및 對象 ····· 39
〈表 1- 2〉 地域別 面接 및 觀察調査 對象施設 ····· 40
〈表 1- 3〉 地域 및 規模別 面接 및 觀察調査 育兒施設 ····· 40
〈表 1- 4〉 調査票 蒐集現況 ····· 41
〈表 2- 1〉 英國의 各 地方政府의 機能 ····· 53
〈表 2- 2〉 家庭委託과 施設保護 兒童의 比率(잉글랜드와 웨일즈) ···· 55
〈表 2- 3〉 兒童施設 運營責任者의 專門資格證 保有 現況 ····· 62
〈表 2- 4〉 兒童施設 職員의 專門資格證 保有 現況 ····· 62
〈表 2- 5〉 兒童保護 形態別 人口 比率 ····· 72
〈表 2- 6〉 保護形態別 兒童 一人當 年間 所要費用 ····· 76
〈表 2- 7〉 社會福祉事業과 社會福祉施設 ····· 88
〈表 2- 8〉 社會福祉法人 數의 推移 ····· 90
〈表 2- 9〉 社會福祉施設 分類別 施設數 및 定員數 ····· 91
〈表 2-10〉 施設種類別 施設數와 定員의 推移(各年 10月 1日 基準) ·· 92
〈表 2-11〉 兒童福祉施設 運營을 위한 費用負擔 ····· 99
〈表 2-12〉 措置費의 內譯 ····· 100
〈表 2-13〉 社會福祉施設 整備 費用의 負擔 ····· 101
〈表 3- 1〉 社會福祉收容施設 種別 現況(1994) ····· 116
〈表 3- 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細部種別 地域別 分布 ····· 118
〈表 3- 3〉 市·道別 市·郡·區 社會福祉施設 設置 現況 ····· 119
〈表 3- 4〉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種別, 年度別 現況 ····· 121

〈表 3- 5〉 兒童福祉收容施設의 種別, 年度別 現況 ····· 122
〈表 3- 6〉 兒童福祉收容施設 種別 · 地域別 收容率(1994) ····· 123
〈表 3- 7〉 兒童福祉收容施設 運營財源 構成比 ····· 125
〈表 3- 8〉 國庫補助金事業遂行指針에 의한 社會福祉收容施設
財源負擔 比率 ····· 126
〈表 3- 9〉 社會福祉收容施設에 대한 國庫補助金 豫算 ····· 130
〈表 3-10〉 國庫補助金事業遂行指針에 의한 財源負擔別 社會福祉收容
施設 總豫算, 施設當 및 收容者 1人當 平均豫算(1995) ···· 132
〈表 3-11〉 支出項目別 社會福祉收容施設 豫算(1995) ····· 133
〈表 3-12〉 社會福祉收容施設 收容者의 直接費 支援 內容 ····· 135
〈表 3-13〉 育兒施設의 月平均 管理運營費 ····· 137
〈表 3-14〉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月 俸給 水準 ····· 138
〈表 3-15〉 社會福祉收容施設 從事者 現況(1994) ····· 144
〈表 3-16〉 兒童福祉收容施設 從事者 配置 基準 ····· 146
〈表 3-17〉 日本의 兒童福祉施設 從事者 配置基準 ····· 148
〈表 3-18〉 日本 兒童福祉施設從事者 勤務 形態 ····· 152
〈表 3-19〉 國公立 施設 對比 民間社會福祉施設 從事者
'95年 給與比較 ····· 153
〈表 3-20〉 社會福祉施設別 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保有 現況 ····· 156
〈表 3-21〉 兒童福祉收容施設長의 年齡 分布 ····· 164
〈表 3-22〉 社會福祉法人 · 施設 指導 · 監督 基準 ····· 173
〈表 4- 1〉 地域別 施設規模別 分布 ····· 180
〈表 4-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現員 對 定員 比率 ····· 180
〈表 4- 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住居形態 ····· 182
〈表 4- 4〉 地域 및 施設規模別 法人의 總資産程度 ····· 183

〈表 4- 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收入중 法人負擔金 比率 … 184
〈表 4- 6〉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平均 收入 및 支出 …… 187
〈表 4- 7〉 地域 및 施設規模別 兒童 1人當 總 支出額 …… 188
〈表 4- 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一般特性 …… 190
〈表 4- 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居住形態 …… 192
〈表 4-1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1日 平均 勤務時間 … 193
〈表 4-1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勤務條件에 대한 態度 …… 194
〈表 4-1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平均 總從事者 및 保育士數 … 195
〈表 4-13〉 地域 및 施設規模別 保育士 1人當 擔當兒童數 …… 196
〈表 4-14〉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從事者중 資格證所持率 … 197
〈表 4-1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保育士중 資格證所持率 … 198
〈表 4-16〉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保育士 離職率 …… 199
〈表 4-17〉 地域 및 規模別 施設從事者의 給與에 대한 滿足 …… 200
〈表 4-18〉 地域 및 規模別 施設從事者의 職務에 대한 滿足 …… 201
〈表 4-1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住居形態에 대한 態度 …… 202
〈表 4-2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兒童指導 및 管理與否 …… 204
〈表 4-21〉 地域 및 施設規模別 兒童의 入所後 生活記錄保有狀態 … 205
〈表 4-2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法定 運營基準 遵守與否 …… 206
〈表 4-2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採用方法 …… 207
〈表 4-2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自願奉仕者 總數 …… 209
〈表 4-2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兒童의 家族 및 親戚訪問 …… 210
〈表 4-26〉 地域 및 施設規模別 地域社會內 有關團體와의 協調 程度 …… 213

〈表 4-27〉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改善과 利益增進을 위한 從事者모임 結成에 대한 認定與否 ····· 214
〈表 4-28〉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收容兒童의 一般特性 ····· 216
〈表 4-2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年齡 및 家族關係 ····· 217
〈表 4-3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住居狀態 ····· 220
〈表 4-3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校生活에 대한 態度 ··· 222
〈表 4-3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習生活 實態 ····· 223
〈表 4-3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校特別活動 參與程度 ····· 225
〈表 4-34〉 地域 및 施設規模別 平常時 收容兒童의 自律活動 參加率 ····· 227
〈表 4-3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衣食住에 대한 收容兒童의 滿足度 ··· 229
〈表 4-36〉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 232
〈表 4-37〉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延長退所兒童) ····· 233
〈表 4-38〉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緣故者引繼兒童) ····· 233
〈表 4-39〉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住居類型 (收容期間中 退所兒童) ····· 234
〈表 4-40〉 地域 및 施設規模別 延長退所兒童의 退所後 住居形態 (年長退所兒童) ····· 234
〈表 4-41〉 嬰兒施設 兒童의 特性 ····· 236
〈表 4-42〉 入所 및 退所經路別 入所兒童 및 退所兒童數 ····· 237
〈表 4-43〉 嬰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當時 狀態 ····· 239
〈表 4-44〉 嬰兒施設의 資産規模 ····· 241

〈表 4-45〉 嬰兒施設 運營法人의 用度別 資産 比率 ····· 241
〈表 4-46〉 嬰兒施設의 收入規模 ····· 242
〈表 4-47〉 嬰兒施設의 平均 收入 및 財源 比率 ····· 243
〈表 4-48〉 嬰兒施設의 總支出 規模 및 用途別 比率 ····· 244
〈表 4-49〉 地域別 嬰兒施設 從事者 現況 ····· 245
〈表 4-50〉 地域別 嬰兒施設 保育士 現況 ····· 246
〈表 4-51〉 嬰兒施設 從事者의 勤務條件 ····· 248
〈表 4-52〉 嬰兒施設 從事者의 離職率 ····· 248
〈表 4-53〉 地域別 嬰兒施設 從事者의 法人代表와 施設長과의 親族數 ····· 249
〈表 4-54〉 嬰兒施設의 年間 自願奉仕者 數 ····· 250
〈表 4-55〉 嬰兒施設의 自願奉仕者 現況 ····· 251
〈表 4-56〉 嬰兒施設의 後援者 및 後援團體 數 分布 ····· 252
〈表 4-57〉 地域別 兒童一時保護施設의 現況(1994. 12. 現在) ····· 254
〈表 4-58〉 地域別 調査對象 施設數 및 現況 ····· 256
〈表 4-59〉 法人의 資産規模 및 施設의 收入現況 ····· 259
〈表 4-60〉 兒童一時保護施設別 豫算內譯別 支出現況 ····· 260
〈表 4-61〉 兒童一時保護施設 從事者의 特性과 勤務環境 ····· 262
〈表 4-62〉 兒童一時保護施設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 263
〈表 4-63〉 兒童一時保護施設 退所兒童의 主要 特性 ····· 266
〈表 4-64〉 收容兒童중에서 他市道 및 障碍兒童 有無 ····· 266
〈表 4-65〉 兒童一時保護施設 自願奉仕者의 數 및 種類 ····· 269
〈表 4-66〉 敎護施設의 一般事項 ····· 271
〈表 4-67〉 敎護施設의 收入 및 支出規模 ····· 274

〈表 4-68〉 敎護施設從事者의 人的 構成 ····· 276
〈表 4-69〉 敎護施設收容兒童의 特性別 分布 ····· 279
〈表 4-70〉 敎護施設兒童中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 兒童數 ····· 280
〈表 4-71〉 敎護施設兒童의 入所經路別 入所者數(1994) ····· 280
〈表 4-72〉 敎護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狀態別 分布 ····· 282
〈表 4-73〉 敎護施設의 自願奉仕者數 및 自願奉仕者의 職業別
分布 ····· 284
〈表 4-74〉 職業輔導施設의 一般事項 ····· 285
〈表 4-75〉 職業輔導施設의 收入 및 支出規模 ····· 288
〈表 4-76〉 職業輔導施設의 人的 構成 ····· 290
〈表 4-77〉 職業輔導施設 收容兒童의 特性別 分布 ····· 292
〈表 4-78〉 職業輔導施設兒童中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 兒童數 ····· 293
〈表 4-79〉 職業輔導施設兒童의 入所經路別 入所者數(1994) ····· 294
〈表 4-80〉 職業輔導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狀態別 分布 ····· 296
〈表 4-81〉 職業輔導施設의 自願奉仕者數 및 自願奉仕者의 職業別
分布 ····· 297
〈表 4-82〉 自立支援施設의 年度別 利用現況 ····· 299
〈表 4-83〉 自立支援施設 收容兒童의 特性 ····· 300
〈表 4-84〉 自立支援施設 退所兒童의 特性 ····· 302
〈表 4-85〉 自立支援施設 運營法人의 資産規模 ····· 303
〈表 4-86〉 自立支援施設의 收入規模 및 財源 比率 ····· 304
〈表 4-87〉 自立支援施設의 支出 規模 및 用途別 比率 ····· 305
〈表 4-88〉 自立支援施設 職員配置 現況 ····· 306

〈表 4-89〉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 所有 現況 ····· 306
〈表 4-90〉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學歷 ····· 307
〈表 4-91〉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勤務形態 ····· 307

그 림 目 次

[그림 1] 英國의 地方政府의 構造 ····· 52
[그림 2] 社會서비스局의 組織과 機能 ····· 54
[그림 3] 클라이언트 集團別 收容施設 單位費用의 增加趨勢 ····· 64
[그림 4] 契約購買에서 公共行政機關과 民間機關의 關係 ····· 71
[그림 5] 美國의 委託家庭保護 對象兒童의 增加趨勢(1972~1995) ····· 73
[그림 6] 民間 兒童保護施設의 運營構造 ····· 75
[그림 7]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의 傳達體系 ····· 84
[그림 8] 分析흐름圖 ····· 176

附 錄 表 目 次

〈附表 3- 1〉 社會福祉施設 種類 ····· 367
〈附表 3- 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地域別 分布 ····· 368
〈附表 3- 3〉 市·道別 市·郡·區 兒童福祉施設 設置 現況 ····· 369
〈附表 3- 4〉 兒童人口 推計 ····· 369
〈附表 3- 5〉 要保護兒童 發生 推移 및 保護 現況 ····· 370
〈附表 3- 6〉 少年·少女 家長世帶의 現況 ····· 370
〈附表 3- 7〉 入養 推移 ····· 370
〈附表 3- 8〉 社會福祉收容施設 管理運營費 支援水準 ····· 371
〈附表 3- 9〉 1995年 社會福祉施設 職員 俸給表 ····· 372
〈附表 3-10〉 社會福祉施設 職員 對象別 手當支給 基準 ····· 373
〈附表 3-11〉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直接費 追加支援 ····· 374
〈附表 3-12〉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運營費 追加支援 ····· 375
〈附表 3-13〉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職員 人件費 追加
支援 ····· 375
〈附表 4- 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들의 能力開發을
위한 特別 프로그램數 ····· 376
〈附表 4-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1990年 以後 增·改築한
建物棟數(育兒施設) ····· 376
〈附表 4- 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入所前 記錄保有 狀態 ····· 377

〈附表 4- 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施設長과 法人代表와의 關係 ····· 377
〈附表 4- 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自願奉仕者들의 職業 種類數 ····· 378
〈附表 4- 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地域的 特性 ····· 378
〈附表 4- 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들의 間食支給 頻度 ····· 379
〈附表 4- 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收入中 民間支援金 比率 ····· 379
〈附表 4- 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收入中 自體負擔金 比率 ····· 380
〈附表 4-1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支出中 直接費 比率 ····· 380
〈附表 4-1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 1人當 直接費 總額 ····· 381
〈附表 4-1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 從事者中 保育士 比率 ····· 381
〈附表 4-1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施設長의 勤勞條件 ····· 382
〈附表 4-1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總務의 勤勞條件 ····· 383
〈附表 4-1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生活指導員의 勤勞條件 ··· 384
〈附表 4-1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保育士의 勤勞條件 ····· 385
〈附表 4-1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看護師의 勤勞條件 ····· 386
〈附表 4-1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炊事員의 勤勞條件 ····· 387
〈附表 4-1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中 專門大學 以上 卒業者의 社會福祉專攻 與否 ····· 388
〈附表 4-2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子女 有無 ····· 388
〈附表 4-2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分布 ·· 389

〈附表 4-2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와 施設長과의 親姻戚 關係 ····· 389
〈附表 4-2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와 法人代表와의 親姻戚 關係 ····· 390
〈附表 4-2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出身 與否 ····· 390
〈附表 4-2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 從事 期間 ····· 391
〈附表 4-2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他 社會福祉 施設 從事期間 ····· 391
〈附表 4-2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居住地 ····· 392
〈附表 4-2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施設內 居住 從事者의 居住形態 ····· 392
〈附表 4-2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 子女의 居住 形態 ····· 393
〈附表 4-3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하루 平均 勤務時間 ····· 393
〈附表 4-3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勤務時間에 대한 態度 ····· 394
〈附表 4-3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한달 平均 休日數 ····· 394
〈附表 4-3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必要時 外出可能 程度 ····· 395
〈附表 4-3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 履修 經驗回數 ····· 395

〈附表 4-3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 經驗 없는 理由 ····· 396
〈附表 4-3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 課程名 ····· 396
〈附表 4-3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期間 ·· 397
〈附表 4-3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業務遂行上 도움 程度 ····· 397
〈附表 4-3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의 必要性 程度 ····· 398
〈附表 4-4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月 平均 給與 ··· 398
〈附表 4-4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月 給與에 대한 滿足度 ····· 399
〈附表 4-4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希望하는 制度 및 手當 ····· 399
〈附表 4-4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從事 主要 動機 ····· 400
〈附表 4-4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現 職務에 대한 滿足度 ····· 400
〈附表 4-4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現 職務에 不滿足한 理由 ····· 401
〈附表 4-4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繼續 勤務 與否 ····· 401
〈附表 4-4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從事를 그만두려는 理由 ····· 402
〈附表 4-4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他施設에 다시 勤務할 생각 與否 ····· 402

〈附表 4-4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結婚後 繼續 勤務 與否 ····· 403
〈附表 4-5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시급히 解決해야 할 問題 ····· 403
〈附表 4-5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專門性을 갖춘 從事者 確保를 沮害하는 가장 큰 問題 ····· 404
〈附表 4-5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職員會議 定期運營 與否 ····· 404
〈附表 4-5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職員會議 開催 頻度 ····· 405
〈附表 4-5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가 해결해야 할 가장 重要한 問題 ····· 405
〈附表 4-5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病'에 대한 態度 ····· 406
〈附表 4-5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가 생각하는 施設兒童의 '施設病' 理由 ····· 406
〈附表 4-5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保育士 交代勤務制에 대한 態度 ····· 407
〈附表 4-5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交代勤務制 贊成 理由 ····· 407
〈附表 4-5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交代勤務制 反對 理由 ····· 408
〈附表 4-6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兒童을 위한 住居形態에 대한 態度 ····· 408
〈附表 4-6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向後 그룹홈 設立意思 有無 ····· 409

〈附表 4-6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向後 그룹홈 設立에 따른 要求事項 ····· 409
〈附表 4-6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社會經濟的 特性 ····· 410
〈附表 4-6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施設入所時 年齡 및 家族關係 ····· 411
〈附表 4-6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家族 및 親姻戚과의 關係 ····· 412
〈附表 4-6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生活實態 및 滿足度 ····· 413
〈附表 4-6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住居環境 ····· 414
〈附表 4-6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月平均 용돈 額數 ····· 414
〈附表 4-6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學校特別活動 參與程度 및 擔任先生님과의 關係 ····· 415
〈附表 4-7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施設內 學習生活 實態 ····· 416
〈附表 4-7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平常時 餘暇活動 內容別 參加率 ····· 417
〈附表 4-7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週末 및 休日 餘暇活動 內容別 參與率 ····· 417
〈附表 4-7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放學中 餘暇活動 內容別 參與率 ····· 418
〈附表 4-7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性別 分布 ··· 418
〈附表 4-7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年齡 ····· 419

〈附表 4-7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 419
〈附表 4-7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年長退所者) ····· 420
〈附表 4-7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收容期間中 退所者) ····· 420
〈附表 4-7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 421
〈附表 4-8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 退所時 就業與否 ····· 421
〈附表 4-8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就業職種 ····· 422
〈附表 4-82〉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時 住居豫定地 ···· 422

要約 및 改善方案

본 硏究는 兒童福祉施設의 運營現況 및 實態를 진단하고,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을 비교분석하여 兒童福祉施設의 政策方向設定에 示唆點을 얻고, 地方自治制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의 運營方案을 도출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兒童福祉施設의 現況과 實態를 파악하기 위해 現地 訪問을 통한 觀察 및 面接調査와 郵便調査를 실시하였고, 國內·外 旣存資料를 수집하여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의 比較와 地方自治時代의 社會福祉施設運營體系의 分析을 실시하고, 그 主要 結果와 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問題의 提起

가. 産業社會가 진전됨에 따라 産業災害, 交通事故 및 疾病, 그리고 貧困 또는 離婚, 別居 및 家出 등으로 인한 缺陷家庭으로 要保護兒童이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缺損 및 解體家庭의 問題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들 家族, 이웃 및 地域社會의 問題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血統을 중시하는 풍조로 入養 및 家庭委託이 어려워 아직도 收容施設에 의존하는 傾向이 크다.

나. 旣存 施設은 救貧·慈善을 위한 단순한 收容保護를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地域的인 配置를 고려하지 않아 地域的으로 均衡配置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순한 收容保護施設은 收容兒童數가 감소하는데 비해 心身障碍兒, 非行兒 및 情緖障碍者 등을 위한 特殊施設은 부족하거나 없는 施設도 있어 地域 및 需要者의 要求에 적절한 施設의 整備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 施設收容兒童은 영유아에서 2세 이상의 兒童이 增加하고 있으며, 父母가 없는 兒童에서 父母가 있는 兒童으로, 그리고 단순한 收容保護의 一般兒童에서 情緖障碍兒, 心身障碍兒 및 非行兒 等 特殊兒童으로 차츰 變化하는 趨勢에 있다. 이와 같이 施設收容兒童의 特性變化에 따라 이들의 福祉要求가 다양해 이에 필요한 施設의 整備 및 調整이 필요하다.

라. 施設運營費의 支援은 法人의 資産規模나 收益用 資産所有의 정도에 따라 差異가 크다. 이는 施設의 設備나 人力의 差異를 초래하게 하여 施設別 收容兒童의 서비스 質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施設을 運營하는 法人의 資産은 대부분 貧弱하며, 育兒施設의 70% 이상이 運營費의 10%이하를 補助받고 있으며, 農村地域 및 小規模施設은 더욱 심해 운영비 중 法人補助金이 10% 이하인 시설이 전체의 81.1~85.0% 범위로 法人의 補助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 育兒施設의 財源은 74.4%가 政府補助金이었으며, 郡部나 收容兒童數가 적은 小規模施設은 81.7%와 77.8%로 政府補助金에 의존하고 있다. 施設의 支出內譯을 보면, 人件費, 施設管理 및 維持費 등 間接費에 總支出의 65.2%를 충당하고 있으며, 그 중 人件費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兒童의 生計費, 醫療費 및 敎育費 등 直接費중에서 主·副食費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收容兒童의 適性 및 能力開發 등 自立에 필요한 敎育, 訓練 및 餘暇活動 등의 支出이 미흡한 실정이다.

바. 施設從事者는 고등학교이하의 低學歷者가 많았고, 社會福祉專門人力이 法的 基準에 未達하고 있다. 그리고 兒童福祉施設의 中心役割을 담당하는 保育士는 法的 配置基準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業務過多 및 賃金水準의 低下로 인한 施設勤務의 忌避現狀과 離職率이 심해 專門人力의 確保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 周邊環境의 變化에 따라 施設의 運營 및 管理가 현실에 맞게 調整 및 改善이 불가피한 狀態이나 施設運營者의 意志가 부족하고 制度의 뒷받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대부분의 施設이 親·姻戚 및 親知 등 緣故의 紹介에 의해 從事者를 採用하고 있고, 勤務條件 및 處遇가 劣惡하여 유능한 專門人力의 確保가 어렵고 運營의 閉鎖 및 不實의 原因이 되고 있다.
- 收容兒童의 能力開發 및 自立을 위한 敎育 및 訓練프로그램의 開發과 서비스가 미흡하고, 退所兒童에 대한 事後管理制度가 미흡하여 退所兒童들의 職場 및 居處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收容兒童의 施設入所前·後의 家庭環境 및 個人에 대한 環境調査 및 相談記錄이 정확하지 못하고 未備되어 있어 이들 資料를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 育兒施設收容兒童의 41.6%가 年長退所兒童이었고, 37.0%가 施設收容中에 퇴소하고 있었다. 年長退所兒童의 69.3%가 10년 이상 施設에서 生活하고 있어 아직도 施設들은 兒童들을 長期收容樣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施設의 開放化 및 地域社會의 參與方案이 미흡한 실정이다. 地域社會에서 兒童福祉의 中心役割을 담당할 수 있는 各界 指導級人士들이 施設運營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아직도 施設運營者의 開放意志가 微弱한 실정이다.

- 施設運營의 意思決定機構인 施設運營理事會의 構成과 役割 및 機能 등을 地域社會實情에 맞게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이 미비하다.
- 施設의 自願奉仕者 活用이 산발적이고 週期的인 支援體系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施設에서는 施設人力을 補充하여 單純業務를 支援하는 自願奉仕者가 주류를 이루지만, 향후에는 從事者를

指導할 수 있는 專門人力 自願奉仕者의 支援이 필요하다.

- 自願奉仕者의 人力資源이 都市 및 郡部에 所在한 施設間에 差異가 많고, 農村地域일수록 自願奉仕者의 支援이 부족한 실정이다.
- 施設收容兒童中에는 父母 및 保護者 등 緣故者가 있는 경우가 많고, 收容施設에 따라 緣故者의 訪問을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施設運營者나 關聯機關이 이를 적극 勸奬하여 早期 家庭復歸할 수 있는 誘導策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基本方向

가. 兒童福祉收容施設의 機能 및 役割이 調整·轉換되어야 한다.
나. 施設의 家庭環境造成 및 家庭保護機能이 强化되어야 한다.
다. 政府의 施設支援水準을 向上시켜야 한다.
라. 收容兒童의 自活·自立支援體制를 確立해야 한다.
마. 合理的인 人力配置 및 人力의 專門性을 確保한다.
바. 施設의 小規模化·家庭化를 積極 誘導해야 한다.
사. 施設運營의 合理化·開放化를 誘導해야 한다.
아. 法·制度·行政 支援體系를 整備해야 한다.

3. 改善方案

가. 兒童福祉施設의 機能 및 役割을 擴大한다.

- 地域社會 一般兒童이 야간 또는 긴급시에 短期保護가 가능하도록 兒童福祉施設의 機能 및 役割을 擴大한다.
- 嬰兒·育兒施設을 운영하는 法人은 兒童相談所, 一時保護施設 및 保育施設 등을 복합운영할 수 있도록 機能을 擴大하여 地域社會 專門兒童福祉施設로 據點化한다.

- 旣存施設에 혼합수용되어 있는 障碍兒, 情緖障碍兒, 浮浪兒 및 非行兒 등을 分離收容할 수 있도록 施設의 機能을 專門化 및 細分化해야 한다.

나. 施設의 家庭保護機能을 强化해야 한다.

- 施設入所의 豫防과 施設兒童의 早期家庭復歸를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1) 入·退所 管理制度의 强化 (2) 入所兒童의 外出·外泊, 父母 또는 緣故者의 施設訪問, 定期的인 家族캠프, 家族相談 등 家族連繫 및 家族支援 프로그램을 制度化해야 한다.

다. 施設에 대한 財政支援水準을 파격적으로 引上하고, 支給基準을 改定해야 한다.

- 政府補助金을 國·公立施設의 支給基準으로 上向 調整토록 한다.
- 政府補助金은 施設規模當 標準生活費 및 運營費를 算出하여 支援하는 方式으로 改定토록 한다.
- 施設運營費 및 人件費에 대한 政府補助金을 100%로 上向 調整토록 한다.
- 各 法人別, 施設別, 目的事業別로 전개되고 있는 民間支援金 募金方案을 各 廣域自治團體別 '共同募金'의 形態로 體系化하도록 한다.

라. 自活·自立의 支援體制 確立

- 施設兒童을 위한 專門的인 個別 및 集團 社會事業 프로그램을 定期的으로 施行토록 한다.
- 施設兒童의 學習能力 및 特技의 向上을 위해 自願奉仕者를 적극 活用하도록 하거나 學院受講을 할 수 있도록 政府가 財政支援토록 한다.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의 경우 一定過程의 學

習能力 및 特技 開發 프로그램을 義務化하도록 한다.

- 育兒施設兒童의 資格取得을 위한 별도의 學院受講에 필요한 豫算을 政府가 支援토록 한다.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의 職業訓練 種目을 時代變化에 부합되게 就業이 용이한 種目을 選擇하고 施行토록 한다.
- 施設兒童의 施設退所前 社會適應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그 施行을 위한 政府의 豫算支援이 필요하다.
- 施設兒童의 退所後 管理制度 確立 및 退所兒童의 住居保障(自立支援費引上, 住宅融資金 支援)이 필요하다.

마. 合理的인 人力配置 및 人力의 專門性 確保

- 현재 從事者에 대한 收容兒童의 比率을 法的 基準에 맞게 措置하고, 段階的으로 先進國의 水準으로 낮추도록 한다. 특히 敎護施設과 職業輔導施設에서 保育士의 配置基準은 個別保護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施設從事者의 勤務時間은 1일 8시간을 原則으로 하되 業務의 特性을 고려하여 2인의 保育士가 法定配置基準의 兒童數를 交代로 擔當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이로 인한 超過勤務에 대해서는 時間外 手當, 休日勤務手當 등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
- 育兒施設, 一時保護施設, 職業輔導施設 및 敎護施設 등은 社會福祉士 1급의 相談要員 1명을 반드시 配置토록 해야 한다.
- 旣存從事者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정도 定期的으로 補修敎育을 받도록 制度化해야 한다.
- 每年 施設評價를 통해 優秀從事者를 선정하여 褒賞하고 國內·外 關聯機關 및 施設의 硏修 및 視察의 機會를 부여하도록 한다.
- 專門保育士를 양성하기 위한 保育專門大를 설립하고, 保育士資

格試驗制度를 導入·實施토록 한다.

바. 施設의 小規模化 및 家庭環境 造成

- 施設을 몇개의 小規模 生活單位로 再改編하여 각각 적절한 數의 保育士와 兒童으로 獨立世帶를 構成하여 생활하도록 한다.
- 施設의 增·改築時에는 小宿舍 및 그룹홈의 形態로 誘導토록 한다.
- 大規模施設을 前提로 하고 있는 兒童福祉施設 設置基準은 그룹홈, 小宿舍制度를 施行할 수 있도록 全面 再調整하여야 한다.

사. 施設運營의 合理化 및 開放化

- 施設이 內·外的인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地域社會 福祉센터의 役割을 하기 위하여는 施設의 私的 運營體系를 불식시키고, 透明하게 合理的·專門的인 運營을 도모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 施設運營의 開放을 위하여 法人理事會 構成에 地域社會 住民代表를 참여시키며, 法人 및 施設의 豫算·決算 內容을 매년 1회씩 地域新聞에 公告토록 한다.
- 施設에서는 晝間保護施設, 短期保護施設 등의 利用施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地域社會 家庭福祉센터의 役割을 하도록 한다.
- 施設이 가지고 있는 강당, 운동장, 독서실, 놀이터 등의 設備와 裝備를 地域社會에 實費 또는 無常으로 貸與할 수 있도록 한다.
- 兒童福祉施設에 대한 國民의 肯定的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大衆媒體를 적극적으로 活用하여 施設의 機能·役割 및 運營狀況 등을 弘報토록 한다. 또한 施設은 地域行事에 적극 參與하도록 하고, 施設行事에 地域 住民을 초청하도록 誘導한다.

- 合理的이고 能動的인 經營體制를 보장하기 위하여 施設長의 任期를 65세로 制限하고, 總務 以下 종사자의 停年은 60세 이하로 해야 한다. 단 그동안 寄與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 國家 또는 地方政府 財政으로 支給토록 한다.
- 施設의 效率的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全 施設이 共通的으로 運營의 準據로 삼을 수 있는 施設運營 및 評價指針을 開發해야 한다.

아. 法 · 制度 · 行政 支援體系의 整備

- 18세미만 兒童에 대한 福祉서비스는 모두 兒童福祉法 體系에서 다루어지도록 法體系를 調整토록 해야 한다. 현재 兒童福祉法이나 障碍人福祉法 體系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虛弱兒童, 自閉兒童, 情緖障碍兒童 뿐만아니라 障碍人福祉法 體系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障碍兒童, 生活保護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浮浪兒, 母子福祉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兒童들까지도 소위 '正常化 理念'과 더불어 '發達保障의 理念'에 根據하여 모두 兒童福祉法 體系에서 다루어지도록 法體系를 調整하여야 한다.
- 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上의 '社會福祉法人은 法人 및 施設의 年間 運營經費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을 所有'토록 하는 規定은 빠른 시일 내에 閉止하도록 해야 한다.

第 1章 序 論

第 1節 硏究背景 및 目的

社會福祉施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設置된 收容保護施設과 통원이용시설까지 總稱해서 말한다. 일반적으로 狹義의 槪念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를 收容해서 社會福祉서비스를 提供하는 삶의 터전을 意味한다. 施設의 種類는 生活保護法에 의한 浮浪人善導施設, 노인복지법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일시보호소와 직업보도시설, 兒童福祉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 등이다. 兒童福祉施設은 社會福祉施設중에서 그 種類가 가장 많고 細分化되어 있다. 兒童福祉施設중에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그리고 利用施設인 兒童相談所 및 託兒施設 등은 比較的 運營이 잘되고 있다. 그 외 조산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은 시설로서의 役割을 다하지 못하고 有名無實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施設서비스의 機能에 따른 分類에 의하면, 첫째 주거, 급식 및 기타 日常生活을 위한 서비스 기능, 둘째 정신의학적인 치료기능, 교육이나 훈련기능 등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기능, 셋째 地域社會內에서 住民을 중심으로 利用되는 시설로 綜合社會福祉館, 老人綜合福祉館, 障碍人綜合福祉館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施設의 規模에 따라 1) 소규모시설로 그룹홈(group home), 소숙사(small cottage system) 및 소규모의 시설(50명 미만), 2) 중간규모로 100명전후의 시

설, 3) 15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兒童은 가능한 한 自己의 家庭에서 父母에 의해서 成長하여야 한다는 것이 兒童福祉의 基本原理로 되어 있지만 父母밑에서 生活할 수 없는 不可避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은 施設保護라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兒童福祉施設은 부모를 잃었거나 父母 및 保護者의 缺格事由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孤兒, 棄兒, 障碍兒, 缺損·貧困家庭兒童 등과 같은 要保護兒童을 대상으로 이들의 生活, 治療 및 再活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生活의 場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Kadushin은 아동복지시설을 '兒童과 무관한 成人들의 보호하에 兒童集團의 共同生活을 위한 하루 24시간을 제공하는 住居施設'로 정의하였다. 美國兒童聯盟(Th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에서는 1981년에 兒童福祉施設을 集團家庭(Group Home), 危機 및 宿泊保護施設(Crisis and Shelter Care Facilities), 兒童精神病治療施設(Children's Psychiatric Facilities), 一時保護施設(Respite Facilities)로 분류하였다(Laird & Hartman:617).

한편 Kadushin은 일반아동을 위한 保育施設, 身體的 障碍兒를 위한 特殊施設, 精神肢體兒施設, 非行靑少年센터, 精神障碍兒 治療센터 등 收容兒童의 精神的·肉體的 障碍程度에 따라서 施設을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年齡이나 施設利用期間에 따라 長期保護施設과 一時保護施設로 分類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비용에 따라 有料施設과 無料施設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設立 및 運營의 主體에 따라 政府(GO) 및 民間(NGO)시설로 구분되고 있다(이배근, 1993:47). 이와 같이 對象兒童의 年齡, 障碍有無, 施設의 利用方法에 따라 社會福祉施設이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分類方法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施設이 단지 居住의 場所가 아니라 專門的인 治療서비스의 場所라는 점이

다. 종래의 시설기능은 家族機能을 대치하는 단순한 生活保護의 役割이었지만 점차 治療, 回復 및 再活 등 전문적인 서비스기능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김용택, 1990:103).

우리나라 施設保護의 變化를 時期別 特徵으로 구분하여 보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로 區分할 수 있다. 1950년도 전·후는 日本으로부터의 解放 및 6.25動亂으로 급격히 要保護兒童이 발생하기 시작한 時期였고, 이러한 兒童을 集團收容하기 위한 兒童收容施設이 증가한 시기였다. 1930년에 32개소, 1942년에 133개소이었으나 1950년도에는 153개소로 增加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兒童福祉施設은 증가하는 要保護兒童의 긴급구호가 중요한 役割이었고, 여기에 所要되는 財政運營의 상당한 부분을 外國援助機關의 지원에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1960년대는 施設數와 兒童數가 增加하는 時期였다. 1960년도에 542개시설에 60,504명의 兒童이 收容되었고,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要保護兒童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1961년에 兒童福利法을 制定하였고, 1981년도에 兒童福祉法으로 개정하여 要保護兒童의 복지를 위한 法的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海外入養兒童이 증가하면서 施設收容兒童數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兒童福祉施設(영·육아시설)의 調整政策을 실시하게 되면서 점차 施設이 감소하여 1977년도에는 전국에 406개소에 불과하였고, 收容兒童은 37,720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政府의 出産調節政策에 의한 출산력의 감소로 인해 14세 이하 兒童人口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施設收容兒童數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兒童收容施設 및 收容兒童數가 減少하고 또한 施設收容兒童의 性格도 변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養育할 能力이 없는 要保護兒童과 貧困家庭이나 缺陷家庭의 兒童에까지 施設保護對象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1976년에 不遇兒童 健全對策을 수립하고 不遇兒童의 保護水準의 向上을 위한 支援體系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시설재정은 外援의 減少로 인하여 國內財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政府의 支援이 점차 增加하게 되었다. 정부는 施設運營費의 일부를 民間資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民間資源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고, 한편 대규모의 兒童福祉施設을 小規模化하여 收容施設의 轉換과 함께 國內入養을 적극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서 現在에 이르는 期間은 産業化로 인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貧困家庭이 어느 정도 減少되었고, 이에 따라 貧困家庭에서 施設收容하는 兒童이 줄어드는 傾向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社會參與가 增大되고 全國民의 醫療保障과 所得保障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확대되면서 兒童福祉서비스의 대상을 一般家庭 兒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方向으로 政策의 變化가 일어났다. 1982년에 제정된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해서 탁아기능을 담당해온 약 600~700개소의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統合되어 擔當部署도 保社部에서 內務部로 이관되었다. 1989년 보건사회부는 兒童福祉法 施行令을 개정하므로써, 탁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 保社部가 마련한 탁아소 사업추진계획은 生活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者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施設兒童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從事者의 處遇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1992년부터 施設兒童(중·고생)의 교복비, 施設從事의 福祉手當, 長期勤續手當을 신설하여 專門人力의 確保를 위한 施設從事者의 處遇를 개선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施設兒童의 감소에 대한 對策으로 施設의 轉換을 위한 關聯制度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수용방법도 대규모 수용형태에서 小規模家庭單位의 保護方式으로 轉換하기 위하여 施設環境을 개선하고 兒童과 保育士를 가정단위로 구성 및 보호하는 형태

로 轉換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340). 그리고 18세에 퇴소하는 延長兒童을 定着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職業輔導施設과 自立支援을 위한 自立生活館을 운영하고, 退所兒童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93년도 下半期부터는 서울, 부산, 경기 등에 7개 自立支援센터를 設立하여 退所兒童들에 대한 就業指導, 職業敎育 및 社會生活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旣存 硏究는 收容兒童의 삶의 질을 向上시키고 健康하고 健全하게 成長시키기 위한 方案을 마련하는데 두기보다는 收容施設自體의 管理運營과 收容者의 收容保護에 치중한 감이 있어, 시설수용자의 福祉慾求를 糾明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質的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開發하는데 未洽한 點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硏究의 對象이 모든 社會福祉施設을 包含하고 있어 일반적인 施設運營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施設의 種類에 따른 深層的인 분석평가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현재 社會福祉(특히 아동복지)施設의 運營現況 및 그 實態를 診斷하여 地方化에 따른 施設의 機能과 役割의 再調整 및 福祉施設의 均衡配置方案을 模索하고 시설운영의 實績과 그 成果를 分析評價한다. 또한 先進國에서 經驗했던 시설의 發展過程을 比較分析하여 우리나라의 社會福祉, 특히 兒童福祉施設 運營의 바람직한 방향을 定立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硏究結果를 종합적으로 檢討하여 兒童福祉施設의 政策方向과 推進方案을 마련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 報告書에는 선진국의 社會福祉施設의 發展過程이 우리나라 社會福祉施設運營에 주는 示唆點, 우리나라 社會福祉事業의 現況과 問題提起를 兒童福祉施設 중심으로 記述되어 있고, 地域·施設規模別 施設의 運營成果를 비교분석한 결과,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

과 地方과의 施設의 機能과 役割 分擔 및 施設의 均衡配置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政策方向과 推進方案 등이 포함되어 있다.

第 2節 硏究方法

本 硏究의 硏究方法은 크게 세 가지형태로 첫째, 法典, 指針, 中央 및 地方部處의 行政資料, 施設別 保管文書 등의 旣存資料 및 文獻을 통한 分析, 둘째로는 構造化된 說問書(4種)에 의한 시설장, 시설종사자 및 입소아동에 대한 現地 觀察 및 面接調査, 郵便調査를 통한 資料分析, 셋째 事業關聯者(보사부, 시·도, 시·군·구 관련공무원, 시설협회 직원) 및 專門家 面談 및 懇談會를 통한 意見收斂 등이다. 이러한 硏究方法의 구체적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査方法

가. 調査方法 및 對象

본 연구는 兒童福祉施設의 運營評價를 위하여 아래 <表 1-1>과 같이 觀察調査, 面接調査, 郵便調査 등 세가지 調査方法을 竝行하여 조사를 하였다. 觀察 및 面接調査를 위하여 전체 兒童福祉收容施設 275개 중 地域 및 施設의 規模를 고려하여 50개 시설을 標本抽出하였으며, 이들 50개 施設에 대해서는 本 硏究陣 1인과 調査員 1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施設現況, 施設長, 從事者 및 收容兒童들에 대한 面接調査와 더불어 관련서류 및 시설상태를 통한 觀察調査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25개 施設에 대해서는 郵便調査를 실시하여 施設現況과 施設長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였다. 여기서 施設現況 및 시설

장에 대한 조사는 275개 施設 全數를 調査하고, 施設從事者 調査는 50개 面接 및 觀察調査 對象施設의 시설장을 제외한 從事者를 조사하였으며, 施設兒童調査는 30개 育兒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만 10세 이상 아동중에서 시설당 10명씩을 標本抽出하여 300명의 兒童들에 대한 面接調査를 實施하였다.

〈表 1-1〉 調査方法 및 對象

조사표 종류	조사방법	대상시설 및 대상자	비고
① 법인 및 시설운영에 관한 조사표	면접 및 관찰조사	시설종류, 지역,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추출한 50개 시설의 시설장	필요시 자기식
	우편조사	면접 및 관찰조사 대상시설을 제외한 225개 시설의 시설장	-
② 시설종사자의 인력 및 근무환경에 관한 조사표	면접 및 관찰조사	시설종류, 지역,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추출한 50개 시설의 종사자 전부	필요시 자기식
③ 시설수용자의 생활실태 및 태도에 관한 조사표	면접 및 관찰조사	시설종류, 지역,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추출한 30개 육아시설 수용아동 300명	필요시 자기식

나. 面接 및 觀察調査 對象施設

199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兒童福祉收容施設 總數는 275개로서 28개 嬰兒施設, 217개 育兒施設, 7개 職業輔導施設, 9개 一時保護施設, 7개 自立支援施設, 7개 敎護施設 등 6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총수를 母集團으로 하여 地域 및 規模를 고려한 層化有意標本(Stratified Purposive Sampling)으로 標本을 추출한 結果가 <表 1-2>와 같다. 여기서 地域은 大都市, 中小都市, 郡部로 나누었고, 施設規模는 1994년 말 현재 兒童福祉收容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收容兒童의 현원을 80명 이상, 60명에서 79명 이하, 59명 이하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育兒施設을 제외한 나머지 5種類의 兒童福祉收容施設들은 모두 母集團 자체가 적어 層化有意標本을 할 수 없어 育兒施設이 선정된 지역에 所在하는 嬰兒施設, 職業輔導施設, 一時保護施設, 自立支援施設, 敎護施設 등을 標本施設로 抽出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面接 및 觀察調査對象施設의 地域的 分散을 막아 調査의 效率性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表 1-2〉 地域別 面接 및 觀察調査 對象施設

구분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교호시설		계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대도시	5	12	10	92	2	7	3	7	2	4	2	5	24	127
중·소도시	5	15	10	69	-	-	-	2	-	2	-	1	15	89
군부	-	1	10	56	-	-	-	-	1	1	-	1	11	59
계	10	28	30	217	2	7	3	9	3	7	2	7	50	275

育兒施設을 地域과 規模를 고려하여 層化有意標本 추출방법으로 추출한 바는 <表 1-3>과 같다. 最終的으로 選定된 地域은 서울, 부산, 경기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등 5개 市·道이며, 각 시·도별 調査對象施設은 <附錄 Ⅲ>과 같다.

〈表 1-3〉 地域 및 規模別 面接 및 觀察調査 育兒施設

시설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전국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표본	전체
80명 이상	3	26	4	25	3	8	10	59
60~79명	4	35	3	22	3	19	10	76
60명 미만	3	31	3	22	4	29	10	82
계	10	92	10	69	10	56	30	217

다. 調査者 및 調査期間

본 연구의 面接 및 觀察調査 調査者는 당원 연구진 및 직원과 社會福祉를 전공하는 大學生으로 본 조사를 위해 임용된 調査員 각각 1인씩으로 1개팀을 構成한 총 4개팀이었다. 面接 및 觀察調査의 調査期間은 1995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22일간이었고, 郵便調査期間은 1995년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28일간이었다.

라. 調査票 蒐集現況

調査票 蒐集現況은 <表 1-4>와 같다. 面接 및 觀察調査 對象施設 50개 시설중 1995년 5월경에 폐쇄된 서울의 에스더 職業輔導施設을 제외한 49개 施設의 施設現況 및 施設管理·運營現況調査를 完了하였다. 施設從事者는 시설장 및 단순임용직(경비, 운전기사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收容兒童들에게 영향을 주는 從事者들을 對象으로 조사하였는 바, 30개 育兒施設의 調査對象從事者 270명중 255명을 完了하여 完了率이 94.4%이었다. 施設兒童調査는 30개 育兒施設의 收容兒童 300명중 299명을 調査完了하였다.

〈表 1-4〉 調査票 蒐集現況

구분	관찰조사			우편조사			합 계		
	대상수	완료수	완료율(%)	대상수	완료수	완료율(%)	대상수	완료수	완료율(%)
시설현황	50	49	98.0	225	187	83.1	275	236	85.8
시설관리 운영현황	50	49	98.0	225	187	83.1	275	236	85.8
시설종사자	270	255	94.4	-	-	-	270	255	94.4
수용아동	300	299	99.7	-	-	-	300	299	99.7

郵便調査의 경우는 調査對象 225개 시설중 187개 시설이 蒐集되어 약 83.1%의 蒐集率을 나타냈다. 觀察 및 郵便調査를 합한 調査完了率은 施設現況 및 施設管理·運營現況調査의 경우 총 대상 275개 시설중 236개 施設이 蒐集되어 약 85.8%를 나타냈다(表 1-4 참조).

마. 調査內容

본 조사의 調査票는 4가지 즉, 施設現況調査票, 施設管理·運營現況調査票, 從事者調査票 및 兒童調査票 등으로 되어 있다(附錄 調査票參照). 이들 調査票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施設現況 調査票

- 法人에 관한 事項 - 資産實態, 負債有無/規模, 任員現況
- 施設·設備에 관한 事項 - 施設規模, 施設·設備種類別 有無 및規模, 狀態 및 他施設과의 공동사용 여부
- 財政에 관한 事項 - 收入 및 支出 內譯別 金額
- 收容兒童現況에 관한 事項 - 定員, 現員, 資格證所持 兒童數, 입소경로별 入所者數, 지난 1년간 退所者數 및 주요 특성
- 職員 및 福祉制度에 관한 事項 - 從事人力 現況, 福祉/手當制度 現況

2) 施設管理·運營現況 調査票

- 法人에 관한 事項 - 法人의 種類 및 設立目的, 所有施設數 및 種類, 收益用 事業有無, 收益用 基本財産 소유에 대한 意見, 理事會運營方法
- 施設·設備에 관한 事項 - 設立年度, 시설의 立地條件, 시설의 住居形態, 1개 방당 寄居兒童數 및 적정아동수, 住居形態의 轉換 與否 및 그 理由

- 財政에 관한 事項 - 政府補助金 지급단가 세목별 適切性 정도
- 管理·運營에 관한 事項 - 시설종사자의 勤務條件, 保育士 資格에 대한 意見, 시설종사자들의 採用方法, 아동 개개인에 대한記錄管理狀態, 法定 運營基準 遵守 與否
- 프로그램에 관한 事項 - 衣食住 프로그램, 指定病·醫院/보건소이용유무, 健康診斷 實施與否, 실시장소, 미실시이유, 學習指導및 生活指導, 취업지도, 職業斡旋 여부 및 그 방법
- 收容 및 入·退所에 관한 事項 - 入所基準에 부합되지 않는 아동유무, 種類, 入所理由, 만 18세 경과 兒童數 및 種類, 퇴소절차, 退所時 自立支援金의 支援額數 및 支援處, 支給節次, 자립을 위해 필요한 最小限의 自立支援金 規模 및 그 根據, 退所兒童에 대한 事後管理與否 및 方法
- 地域社會와의 關係에 관한 事項 - 自願奉仕者 現況, 後援者 現況, 地域社會와의 關係
- 其他事項 - 시설이전 할 意思與否 및 이전시 要求事項, 施設運營中斷에 관한 意思與否 및 이에 따른 要求事項, 개정해야 할 關係法令에 대한 意見, 建議 및 要求事項

3) 從事者 調査票

- 一般事項 - 從事者의 個人特性, 資格證所持 與否, 시설장과의 親·姻戚關係 與否
- 業務 및 勤務環境에 관한 事項 - 總從事期間, 擔當業務 內容, 1일 勤務時間, 1인당 擔當人員數 및 業務量, 擔當業務의 專門性 발휘여부, 職務滿足度, 전직희망여부, 職員間의 關係
- 敎育·訓練에 관한 事項 - 敎育·訓練履修經驗 및 業務에의 도움여부, 敎育·訓練의 필요성에 대한 態度
- 職務滿足度에 관한 事項 - 월급여에 대한 滿足度, 施設從事의

주요 동기, 現 職務에 대한 滿足度, 향후 계속 근무여부

- 其他 事項 - 시급히 해결해야 할 從事者의 問題, 전문성을 갖춘從事者 確保 問題, 시설의 運營改善方案에 대한 意見

4) 兒童 調査票

- 一般事項 - 一般特性, 入所時 年齡
- 家族事項 - 입소전 同居家族, 父母의 生存與否, 家族과의 接觸程度, 시설내 兄弟同居 與否
- 衣食住問題에 관한 事項 - 衣食住 生活水準, 衣食住滿足度
- 學校生活에 관한 事項 - 交友關係의 圓滿性, 學校內 特別活動參與 與否, 선생과의 관계
- 施設內 生活에 관한 事項 - 시설아동의 自治會構成 與否, 자치회활동의 有用性 與否, 시설직원의 도움여부 및 도움을 주는 사람, 施設內·外 特別活動 參與程度, 施設生活에 대한 滿足度, 施設職員에 대한 滿足度
- 將來問題에 관한 事項 - 進學慾求程度, 就業關聯態度, 퇴소후 거처, 退所後 施設과의 接觸意向, 兵役에 관한 態度

2. 分析方法

本 硏究를 위한 調査資料의 分析은 전산입력된 資料를 社會科學統計프로그램인 SPSS-X를 이용하여 單純交叉集計表(Crosstable)와 平均을 산출하여 주로 地域(大都市, 中小都市, 郡部) 및 施設規模(收容兒童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別로 比較分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單純交叉集計表 및 平均을 만들기에 앞서 評價指標를 위한 變數들에 대해서는 關聯變數들간의 比率(Ratio)을 새로운 變數로 만들어서 分析하였다.

第 2章 先進國의 社會福祉施設

第 1節 英國의 社會福祉施設

1. 發展過程

가. 貧民法의 傳統

英國에서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와 運營의 기원은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국가책임이 처음으로 確立된 17세기초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中世 封建秩序의 崩壞로 발생한 棄兒, 浮浪人, 失業의 問題는 심각한 社會秩序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舊秩序의 地域社會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對處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튜더왕조의 對應도 초기에는 부분적인 조치에 머물렀고 地方行政機關인 敎區에 병자, 노인,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居處를 제공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당시 튜더왕조의 가장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措置는 1601년의 엘리자베드 貧民法(the Elizabethan Poor Law)이었다. 이 법은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최초의 國家責任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市民的 權利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家父長主義的 對應方式이라는 점에서 社會福祉制度로서 근본적인 限界가 있었지만 1948년 전후 福祉國家體制의 새로운 公共扶助法이 도입될 때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법의 주된 관심은 貧民, 浮浪人, 失業者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社會秩序 維持의 문제이었으며, 요보호아동의 문제도 이러한 危險한 社會階層 문제의 일부로서 인식되었고 兒童, 障碍人, 老人 등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닌 要保護對象者들이 함께 混合收容되었다. 최초의 收

容施設로서 빈민원과 작업장은 바로 이러한 貧民法의 법적 체계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수용시설의 歷史的 起源은 빈민법이며 社會福祉施設은 貧民法 時代의 産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 貧民法이 제정된 이후 18세기에 도래한 産業資本主義의 發興은 사회질서 문제에 대한 國家의 사회통제적 대응양식을 더욱 强化하는 계기가 되었다. 産業革命은 人口의 大量移動, 經濟社會的 關係의 變化, 貧困과 失業의 發生, 無住宅者, 孤兒, 私生兒, 非行靑少年의 발생을 수반하였다. 새로운 産業社會의 질서는 구질서의 특징이었던 要保護對象人口에 대한 家父長主義的 대응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産業革命의 基礎가 되었던 아담 스미스와 맬더스의 자유방임주의 經濟思想에 기초하여 새롭게 마련된 1834년의 新貧民法 체계는 社會福祉收容施設에서의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더욱 저하시켰다. 救貧 受惠者에 대한 보호수준은 獨立 勞動者의 최저생활수준 보다 열등한 處遇를 받아야 한다는 劣等處遇의 原則(principle of less eligibility)과 肉體的인 勞動力이 있는 모든 빈민에 대하여 원외구호를 폐지한다는 作業場 制度의 原則(principle of workhouse)은 신빈민법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資本主義體制를 비판한 맑스와 엥겔스의 文獻에는 이전까지 宗敎的, 政治的 幻影에 가리워 있었던 搾取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며 野蠻的인 搾取로 대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K. Mark and F. Engels, 1968:38). 이외에도 要保護對象 貧民과 빈곤한 勞動階級 出身 兒童의 열악한 생활상을 기록한 다수의 문헌들은 作業場, 矯正施設, 공장, 광산에서 貧民과 兒童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兒童을 위한 社會福祉施設을 중심으로 시설의 歷史的 發展過程을 살펴보면, 아동들이 위험한 社會階層으로 분류된 貧民, 浮浪人 등 성인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며, 이때부터

兒童은 混合收容施設에서 分離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이전에는 法律을 위반한 아동은 성인과 같이 取扱되어 심지어 8~9세에 死刑을 당하거나 拘禁에 처하여졌으며, 신대륙인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追放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작업장의 要保護兒童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小規模의 集團홈, 住居홈 등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小規模 住居施設의 도입에 선구적인 役割을 한 Barnardo는 젊은 여성을 위한 주거홈을 설립하였고, 성장한 兒童이나 靑少年을 위한 주거홈이 설치되었으며, 아동홈을 설립한 Stephenson은 代理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職業과 家事訓練을 하는 混合型의 住居홈을 도입하였다(Nick Frost and Mike Stein, 1989:25~26). 障碍兒童을 위한 전문적 개입은 慈善學校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1834년의 改正 貧民法(the Poor Law Amendment Act)은 빈곤가정의 障碍兒童을 위한 자선학교에 公共財政의 支出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社會福祉施設의 발전과 함께 民間部門의 활동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19세기 후반의 慈善組織協會(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활동은 專門社會事業的 方法을 도입하는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가정방문에 의한 개별적 접근을 도입한 慈善組織協會와 집단적 수용시설인 作業場의 활동의 관계에는 엄격한 경계가 존재하였다. 慈善組織協會는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貧民(the deserving poor)을 대상으로 援助를 제공해야 하며, 기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貧民(the deserving poor)은 작업장 등 公共施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自由黨 政府(1906~1914)의 改革조치에 의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08년의 兒童法은 아동의 社會的 權利를 강조한 부분적인 法令들을 統合하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兒童의 保護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貧

民法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貧民法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 委員會는 貧民法의 改革에 있어 온건한 改革과 급진적인 改革이란 意見對立으로 다수파와 소수파의 意見을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빈민원에서 兒童을 收容하는 方法에 대하여는 批判的이었다. 이에 따라 1913년의 貧民法 시설령은 작업장에서 3세~16세 兒童의 6개월 이상 수용을 금지함으로써 아동들이 다른 施設로 옮겨지게 되었다.

나. 戰後 福祉國家에서의 發展

現代的 의미의 社會福祉施設은 1948년의 國民扶助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베버리지 社會保障計劃에 의한 福祉國家體系의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國民扶助法은 국민의 社會的 權利에 기초하여 老人, 障碍人 등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위한 施設保護의 책임을 地方政府에 부과하였다. 또한 1948년의 兒童法도 아동의 보호를 위한 독립된 行政組織으로서 地方政府에 아동국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어온 貧民行政의 유산이 종식되고 貧民과 兒童保護에 있어 개정빈민법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劣等處遇의 原則을 철폐하였으며, 兒童의 福利를 증진하고 兒童에게 적절한 발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地方政府의 책임으로 規定하였다. 그리고 1959년의 精神保健法도 精神障碍者와 精神疾患者를 위한 收容施設保護 제공의 책임을 地方政府에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市民的 權利에 기초한 施設保護 서비스의 책임이 地方政府에 부과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地域社會에 기초한 社會福祉서비스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施設保護로부터 地域社會로 나아가야 한다는 認識의 轉換은 二次大戰 이후에 확산되었다. 兒童福祉分野에서는 家庭委託서비스 등이 정상적인 家庭에로의 복귀에 명백한 신

념을 갖고 있었으며, 老人福祉分野에서도 收容施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추구되었다. 특히 老人과 精神疾患者의 보호를 위한 政策이 확대되었으며, 精神疾患의 治療方法에 있어 새로운 발전과 치료제의 도입이 患者의 早期退院과 精神病院의 폐쇄를 촉진하였다(오정수, 1994:203).

한편, 1948년 兒童法 制定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the 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는 貧民法下에서 발전된 兒童을 위한 施設保護는 극히 兒童發達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家庭委託保護에 의한 정상적인 家庭生活의 條件을 선호하였다(Curtis Report, 1946).

社會民主主義가 새로운 兒童福祉 서비스 창출의 政治的 基礎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는 1950년대 이후 福祉國家에 대한 國民的 컨센서스와 連繫되어 있었다. 전후의 經濟的 繁榮과 노동계급의 中産層化는 새로운 형태의 케이스워크(Casework) 접근이 발전하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제공하였다. 특히 John Bowlby의 母性缺乏理論은 兒童保護의 管理와 訓練에 중심적인 役割과 影響力을 행사하였다. 그는 아동의 문제, 非行行動은 유년시절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母性養育의 缺乏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케이스워크의 영향은 兒童福祉政策과 실천에서 상당한 것이었으며 專門家主義와 조직의 통일성을 향한 역동으로 作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兒童들은 대규모 收容施設에서 퇴소하여 委託家庭에 배치되었다. 1946년에 要保護兒童 중 委託家庭保護의 비중은 29%이었으나, 1950년에 37%, 1950년대말에는 50%수준 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收容施設에 남아있는 兒童들도 보다 小規模의 兒童住居施設에로 배치되었다. 소규모 兒童施設은 핵가족의 모델을 모방한 家族그룹홈으로 고안되었으며, 특수한 욕구를 지닌 兒童을 위한 收容施設이 발전하였다.

行政體系에 있어 전후 地方政府 아동국의 초기 업무는 위와 같은 정책변화의 과정에서 주로 代替家庭의 提供과 監督에 있었다. 1956년

에는 兒童保護에 관한 잉글비 위원회(Ingleby Committee)가 구성되어 4년후인 1960년 報告書를 발간하였다(Ingleby Report, 1960). 이 보고서는 豫防的 社會事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1963년의 兒童靑少年法에 반영되었다. 이 報告書는 복지모델의 새로운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非行과 家族의 遺棄를 연계하였으며, 둘째, 가족서비스의 논리를 인식하여 보다 統合된 公共서비스 組織의 씨앗을 파종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곧이어 構成된 시봄위원회(Seebohm Committee)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地方政府 사회적 서비스의 行政組織을 전면 改編하여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兒童局과 福祉局을 통합하여 사회서비스국이란 하나의 部署를 조직함으로써 서비스의 統合과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60년대 후반까지 兒童保護서비스는 상당히 발전하였고 강력한 專門家集團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代替家庭 서비스와 豫防 社會事業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다. 福祉國家의 改編과 社會福祉施設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福祉國家에 대한 컨센서스가 붕괴되고 對人社會서비스 분야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의하여 家庭과 地域社會中心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社會福祉서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수반되었다. 커뮤니티케어법의 기초가 된 그리피스위원회(Griffiths Committe)의 보고서는 地方政府 社會서비스국이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닌 調整과 購買者의 役割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施設의 傳達主體로서 民間 非營利, 營利部門의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Griffiths Report, 1988). 또한 시설의 감소와 함께 증가한 家庭委託保護와 특별한 욕구를 지닌 兒童에 대한 住居保護는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대안이 아니라 家族에로의 復歸와 再活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되는 傾向이 있다. 보수당의 대처(Thatcher)행정부 등장 이후에는 福祉國家의 社會民主主義的 接近方法에 도전이 가해졌으며, 福祉財政의 축소에 의한 복지의 殘餘的 模型化(residualization)와 법질서 유지와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權威主義化(authorization)로 나타나고 있다(Nick Frost and Mike Stein, 1989:40). 1990년에 제정된 커뮤니티케어법은 社會福祉서비스의 전달주체로서 地方政府의 사회서비스국과 公共社會福祉施設, 民間社會福祉施設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가. 中央政府

영국의 中央政府 次元에서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에 관련된 부처는 保健部(Department of Health)와 財務部(Department of Treasury)이다. 保健部는 保健서비스와 社會福祉서비스 분야의 정책수립과 행정을 수행한다. 財務部는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의 財政을 支援하며 豫算을 統制하는 機能을 수행한다.

나. 地方政府

地方政府 次元에서는 사회서비스국이 社會福祉서비스에 관한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갖고 있다. 社會福祉서비스의 傳達體系와 관련된 地方政府는 county와 district이 있으며, 地域에 따라 다음과 같이 構造化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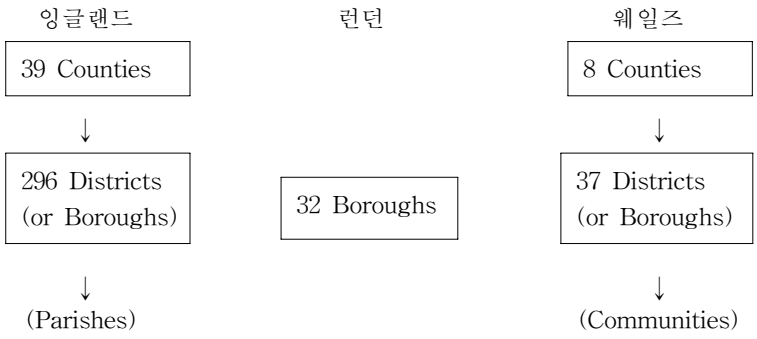

[그림 1] 英國의 地方政府의 構造

地方政府의 機能은 지난 25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74년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最下位 單位의 District정부로부터 County 정부로, 일부는 中央政府로 權限의 移動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District정부로, 일부 권한은 中央政府로 移動되었다. 中央政府의 權限이 강화된 현재 中央政府가 地方政府를 통제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① 勸告: 中央政府가 地方政府가 해야할 업무를 勸告하는 回覽公文을 통하여 統制하는 방식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財政: 中央政府로부터 지원받는 地方政府 財政의 약 60%가 지출항목이 지정된 교부금 형태(bloc grant)이다. 따라서 財政은 중앙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統制手段이다.

③ 立法: 中央政府는 입법을 통하여 地方政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統制한다.

이와 같은 中央政府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地方政府를 장악하고 있는 政黨의 理念이 중앙정부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거부

하고 獨自的인 活動을 함으로써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의 葛藤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各 地方政府가 수행하는 社會福祉 部門의 機能은 다음 <表 2-1>과 같다.

〈表 2-1〉 英國의 各 地方政府의 機能

County 정부	District 정부	Metropolitan District 정부
교육	주택	District정부 기능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보건	교육
도서관	지역계획	도서관
계획	지역공원	사회복지서비스
고속도로, 교통		
경찰, 소방		

資料: Stephen Moore, *Social Welfare Alive*, STP, 1993, p.7.

다. 社會서비스局

地方政府 사회서비스국의 組織과 機能은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施設保護과의 外部 組織으로서 各種 社會福祉施設은 지방정부가 직접운영하는 公共組織이다. 이외에도 民間 營利, 非營利 社會福祉施設이 독자적으로 또는 地方政府와의 契約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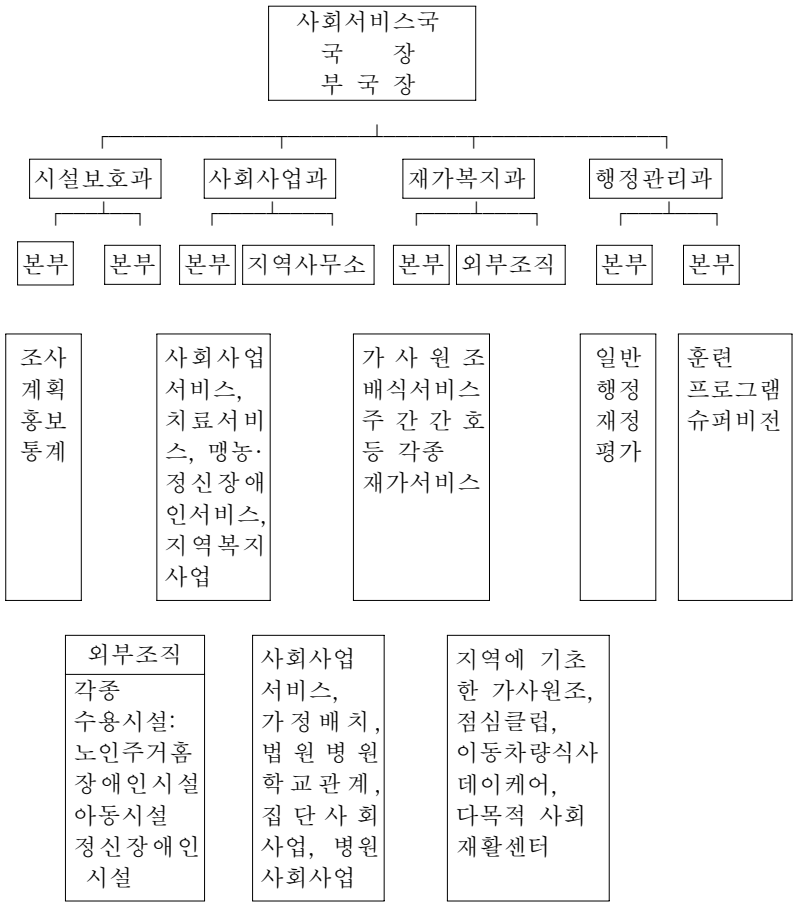

[그림 2] 社會서비스局의 組織과 機能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가. 社會福祉施設과 其他 서비스 現況

社會福祉施設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兒童福祉施設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兒童保護에 있어서는 1946년 커티스 위원회의 報告書가 출간된 이후 要保護兒童을 위한 대체서비스는 家庭委託保護가 시설보호 보다 우월하다는 家庭이 일반적으로 收容되고 있었다. 地方政府와 民間機關에 의하여 제공되는 아동을 위한 代替서비스의 發展趨勢를 살펴보면 다음 <表 2-2>와 같다. 전반적으로 施設保護兒童의 比率은 1946년 70%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減少되어 왔으며, 이러한 傾向은 1980년대에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表 2-2〉 家庭委託과 施設保護 兒童의 比率(잉글랜드와 웨일즈)

(단위: %)

연도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1946	29	70
1949	35	65
1956	37	50
1966	38	44
1971	33	43
1976	33	41
1979	36	35
1984	48	24
1985	50	21

資料: Frost & Stein, *The Politics of Child Welfare,* 1989 p.109.

이러한 收容保護施設의 減少현상은 이른바 수용보호의 周邊化(marginalization of residential care)로 일컬어진다(Nick Frost and Mike Stein, 1989:110～113). 그 원인으로는 첫째, 永久配置計劃, 둘째, 公共支出削減政策, 세째, 시설에 대한 전통적인 批判意識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커뮤니티케어 政策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兒童福祉施設의 類型과 現況

保健省의 統計에 의하면, 1990년도 현재 13,199명의 兒童이 다양한 형태의 시설에서 收容保護를 받고 있다. 兒童收容施設의 類型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兒童홈: 地方政府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홈, 民間施設, 營利施設
② 特殊學校: 특수한 敎育的 欲求를 지닌 兒童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갖춘 學校
③ 醫療施設: NHS病院, 精神療養홈
④ 敎護施設: 靑少年善導施設

이중 10,490명(80%)이 地方政府 運營의 公共施設인 커뮤니티홈에 收容되고, 1,188명이 特殊學校, 933명이 民間施設, 204명이 醫療施設, 47명이 靑少年善導施設에 수용되고 있다. 시설보호 아동인구의 분포에서 주목할 현상은 연령별 분포에서의 차이이다. 16세 이상 兒童의 比率은 1980년의 22%에서 1990년에는 3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도를 기준으로 13세 이상 施設保護兒童은 전체 시설보호아동의 70%이다. 이것은 전체 要保護兒童중 13세 이상이 4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통계는 保護對象兒童의 年齡이 높을수록 施設保護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설보호 대상인구의 감소는 地方政府들이 가능한 한 兒童을 가정에 배치하는 政策을 시행함으로써 收容施設이 周邊化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收容施設은 행동상의 문제나 가정에의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지닌 兒童을 수용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Rowe의 연구에 의하면, 委託家庭에 배치된 施設收容兒童들은 정상적인 아동들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는 비율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Berridge에 의하면, 施設收容兒童들은 오랜 기간의 放置, 虐待,

關係의 破壞 經驗을 갖고 있다(D. Berridge, 1985). 이와 같이 시설보호는 年齡 상으로는 성장한 兒童이나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으며, 機能的으로는 정신장애의 문제나 비행, 問題行動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지닌 兒童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 兒童福祉施設의 機能과 目的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의 機能과 目的에 관하여, Wagner 보고서에서는 施設保護가 요청되는 분야로서, 兒童保護의 경우,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를 들고 있다(Wagner Report, 1988:96~97).

① 臨時保護(respite care): 원가정이나 委託家庭에게 단기간의 계획된 보호 제공
② 永久的 配置를 위한 준비: 새롭고 長期的인 配置를 위하여 계획된 조직적인 轉換 過程
③ 家族關係의 유지: 형제를 함께 收容하거나 父母 또는 家族과의 연계를 유지
④ 保護와 統制: 안전한 收容保護가 요구되는 상황
⑤ 治療의 제공: 社會的으로 情緖的으로 損傷을 입은 兒童

兒童保護施設의 문제는 자연인 父母와 함께 살아가는 兒童에 비교하여 施設保護가 아동에 대하여 家庭이 제공하는 것을 얼마나 제공해줄 수 있는가의 과제가 남는다. Berridge는 家族集團홈(family group home)에 대한 언급에서 "施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施設은 家庭이 아니며,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家族集團이란 시설의 직원구조를 기술한 것이지 兒童의 施設에서의 經驗을 기술하는 것이 아님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D. Berridge, 1985).

SSI에 제출된 地方政府의 보고서에는 "시설보호는 家庭의 代替가

아니라 施設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安定, 保護, 一貫性, 關心, 그리고 社會生活의 準備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Parker는 兒童施設에서 제공되는 養育의 준거틀로서 세가지 養育의 機能을 제시하였다(R. Parker, 1988). 즉 支持(보호, 안락함, 통제), 保育(사회적, 신체적, 지적 기술의 개발), 激勵와 身體的 統合의 維持(전인적 인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養育이란 정적이거나 고립된 개념이 아니며, 보다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家庭形態의 施設의 발전은 광범위한 형태의 家庭配置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收容施設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로부터 回復機會를 제공하며, 家族連繫를 지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獨立의 발판이 된다. Berridge는 아동홈이 실제로 충족시켜주는 機能을 중심으로 네가지 집단의 兒童을 분류하였다. 즉 긴급한 收容이 요구되는 兒童, 새로운 委託家庭配置를 기다리는 兒童 또는 委託家庭 배치에서 실패한 兒童, 강한 家族的 連帶를 지닌 兒童(D. Berridge, 1985)등의 집단으로 兒童을 분류하였다.

런던 地域兒童計劃委員會는 미래의 住居施設 機能을 위한 새로운 提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London Boroughs Children's Regional Committee, 1989).

① 障碍兒童을 위한 臨時保護
② 영구적 家庭配置를 위한 준비
③ 危機介入, 사정과 케어 계획
④ 가정배치가 부적절한 靑少年을 위한 施設
⑤ 도전적이고 피괴적인 行動問題를 지닌 兒童을 위한 保護와 統制
⑥ 犯罪豫防戰略의 지원
⑦ 家族再活施設
⑧ 준 독립적 施設(보호를 떠날 준비를 하는 靑少年 對象)
⑨ 보호를 떠나는 靑少年을 위한 支援施設

라. 施設保護의 傳達主體

社會福祉施設의 전달주체는 다음과 같이 地方政府, 民間非營利組織, 營利組織, 국민보건서비스에 의한 施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地方政府

施設保護는 빈민법 체계에 의하여 빈민원 또는 작업장이 地方의 敎區單位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적 施設保護는 1948년 제정된 公共扶助法에 의하여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시설보호의 의무를 地方政府에 부과하였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산하에 兒童을 위한 커뮤니티홈, 老人을 위한 施設(노인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

2) 民間 非營利組織

民間施設중 다수는 身體障碍兒童을 위한 施設이며, 1987년에 7,500명이 수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民間施設은 노인을 위한 收容施設이다. 최근에는 精神障碍人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3) 營利組織

營利性을 지닌 組織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에 의하여 營利部門에 대한 政府의 장려정책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장차 收容施設 공급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3년도에 營利施設에 소요된 豫算은 20억 파운드에 달하였다.

4) 國民保健서비스

國家 책임의 國民保健서비스에 의한 시설은 精神疾患者를 위한 장

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집단에 대한 保護의 책임을 地方政府 또는 보건서비스 부문 직원의 감독 하에 地域社會內에서의 보호의 형태로 轉換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 社會서비스국과 收容施設의 關係

앞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社會서비스局의 下部組織으로는 施設保護課, 社會事業課, 在家福祉課, 行政管理課가 있고, 시설보호과의 본부 조직에서 施設運營, 財政支出의 統制, 시설에의 등록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外部組織으로 노인홈, 장애인홈,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홈, 精神障碍人施設 등이 운영된다. 이러한 시설은 公共部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民間 部門이나 영리부문의 施設은 地方政府 사회서비스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이후에는 購買者/提供者 分離政策으로 民間과 營利部門의 役割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가. 運營構造

英國의 公共收容施設의 運營體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兒童保護 政策과 計劃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兒童保護를 위한 計劃을 수립하여 시설보호를 포함한 서비스의 計劃과 運營의 기초를 제공한다. 中央政府는 각 地方政府가 아동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여 施行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保健省은 이들 계획의 내용에 관한 指針을 提供한다.

2) 運營組織

收容施設은 운영과 감독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施設運營責任者는 시설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영책임자는 施設의 모든 資源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적절한 訓練, 經驗, 슈퍼비젼 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社會事業 分野를 비롯한 전문분야의 적정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며, 經營 分野의 訓練도 요청된다.

3) 統制와 安全

施設에서 공식적인 統制의 過程은 부분적인 효과 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集團生活 規則과 통제방법에 대한 收容者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靑少年 非行問題를 다루는 직원에게는 일반적인 指針은 제한적인 유용성 밖에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保健省은 사회사업가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諮問委員會와 함께 시설에서의 통제방법에 관한 적극적인 接近方法의 指針과 訓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專門人力

人力은 수용시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施設運營 財政의 70%가 시설종사자의 人件費로 지출되고 있다. 커뮤니티홈에서의 수용자 1인에 대한 職員數의 比率은 1980년대 10년간 급속하게 상승하여 1979~80년도에 1:1.8에서 1989~90년에는 1:1이 되었다.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施設運營責任者중 30.8%는 社會事業資格證(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Social Work), 42.6%는 사회서비스자격증(Certificate in Social Service)을 갖고 있다.

〈表 2-3〉 兒童施設 運營責任者의 專門資格證 保有 現況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	전 체
CQSW	3.85	10.79	16.18	30.82
CSS	3.51	8.84	30.25	42.59
기타	1.63	4.36	7.00	-
무자격	1.15	2.88	15.56	19.59
전 체	9.52	24.14	66.35	100.00

資料: Department of Health, *Children in the Public Care*, HMSO, 1991, p.77.

그러나 <表 2-4>에서 전체직원의 경우는 70%가 無資格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統計는 10년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훈련된 직원의 다수는 施設이 아닌 地域社會 중심 서비스 분야로 전출한 것을 의미한다. 社會事業 資格證을 보유한 직원은 시설에서의 근무를 地域社會의 타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施設職員의 地位와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資格證과 人事管理 政策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表 2-4〉 兒童施設 職員의 專門資格證 保有 現況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CQSW	0.4	1.3	2.4	4.2
CSS	1.0	1.8	7.6	10.4
기타	0.9	3.1	11.7	15.7
무자격	8.0	26.3	35.3	69.6
전 체	10.4	32.6	57.0	100.0

資料: Department of Health, *Children in the Public Care,* HMSO, 1991, p.77.

다. 施設

英國에는 약 1,000개의 地方政府 運營의 커뮤니티홈과 81개의 民間施設, 100개의 등록 아동홈이 있다. 施設의 물리적인 환경은 收容兒童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收容兒童의 대다수인 靑少年 年齡의 兒童의 欲求와 特性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1991:18). 그리고 켄트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施設의 規模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14명 정도의 收容人員이 적당하다고 하며, 다른 硏究에서는 專門性을 고려하면 8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보고가 있다(Department of Health, 1991:57).

라. 財政構造

社會福祉서비스 전반 또는 兒童保護의 財政에 있어 시설보호에 얼마나 많은 財政을 지출하느냐의 문제는 地方政府의 責任에 달려있다. 이것은 또한 地方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中央政府의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980년대중 地方政府(잉글랜드 지역)가 대인사회서비스에 지출한 財政은 1979~'80년도 34억 파운드에서 1989~'90년도 42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1989~'90년도 不變價格 基準으로 25%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兒童保護와 관련된 財政支出은 7.4억 파운드에서 7.5억 파운드로 2% 증가에 그쳤다. 兒童保護財政支出 중 施設保護 財政은 오히려 36% 감소한 반면, 地域社會에 기초한 타 서비스는 10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79~'80년도에는 兒童 施設保護의 財政이 비시설보호 재정의 2.5배였으나, 1989~'90년도에는 非施設保護 財政이 시설보호의 재정을 능가하였다. 이러한 施設保護 財政의 감소 추세는 10년간의 人口學的 變化를 반영하고 있다. 1980~'90년 10년간 0~17세 아동인구

는 10% 감소하였으며, 地方政府의 보호를 받는 要保護兒童人口는 95,300명에서 60,500명으로 65%나 감소하였다. 그리고 施設保護 兒童人口의 감소는 더욱 두드러져서 동기간중 37,400명에서 13,200명으로 65% 감소하였다. 이에따라 要保護兒童중 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비율은 1980년의 38%에서 1990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施設保護 兒童人口와 실질적 財政支出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커뮤니티홈(전체 아동시설보호 재정의 80% 차지)의 兒童 1人當 單位費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9~'80년에는 아동 1인당 주당 326 파운드가 소요되었으나, 1989~'90년에는 537 파운드가 소요되어 65% 증가하였다. 이러한 單位費用의 增加趨勢는 다른 클라이언트 集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資料: Department of Health, *Children in the Public Care*, HMSO, 1991, p.58.

[그림 3] 클라이언트 集團別 收容施設 單位費用의 增加趨勢

이러한 單位費用의 增加趨勢는 다음과 같은 要因에 의하여 설명된다. 즉, 施設兒童人口의 감소로 직원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직원수의 감소비율은 收容兒童數의 減少 比率 보다 훨신 낮았다. 따라서 1979～'80년도 兒童 1人當 職員數는 0.86명이었으나 1989～'90년도에는 1.4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변화에 의한 職員人件費의 상승이 시설 단위비용의 증가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第 2節 美國의 社會福祉施設

1. 發展過程

가. 大陸의 遺産과 社會福祉施設

17세기 이후 英國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서 貧民院이 대표적인 收容施設이었던 것과 같이 영국통치 하의 植民時代와 獨立(1776년) 이후의 초기 美國社會에서도 유럽형의 수용시설이 도입되어 要保護對象人口가 混合收容되었다. 특히 19세기까지 産業化 過程에서 발생한 빈민, 부랑인, 의학수준의 미발달로 父母의 死亡으로 인한 의존아동이 다수 발생하여 貧民院에서 이들을 混合收容하였다. 貧民院은 1657년에 뉴욕에서 Rensselaerswyck 빈민원이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200년 동안 美國 各地에서 설치 운영되었다. 兒童福祉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의 집단환경이 아동의 健康과 福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收容施設은 가장 비용을 절감하는 社會的 介入方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收容施設에서의 영아사망율이 높아 유아의 시설입소는 합법적인 死亡宣告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빈민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社會調査와 暴露가 제기되

면서 아동을 보다 人道的인 환경에서 보호하려는 운동이 民間團體, 社會有力人士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동안 아동수용시설은 일부 주단위의 公共社會福祉施設이 설립되었지만, 대부분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혼합수용에서 兒童中心施設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人口의 增加와 서부로의 영토 확장과 함께 民間 兒童施設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04년 당시의 통계청의 보고에는 약 1,000개의 施設이 운영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Dorothy Zietz, 1969:53). 社會福祉施設은 민간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의 財政的 後援下에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며, 公共의 성격을 띤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州政府로부터 약간의 公共財政支援을 받았다. 따라서 社會福祉施設의 財政은 공공과 민간재정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었다(Beulah R. Compton, 1980:240).

한편, 民間 次元의 兒童收容施設의 증가와 함께 19세기 후반에는 빈민원으로부터 아동을 구출하려는 운동으로서 委託家庭(foster home) 運動이 전개되었다. 1853년 뉴욕에서 Charles Loring Brace에 의하여 설립된 兒童救護協會(Children's Aid Society)는 대규모 收容施設의 대안으로서 委託家庭保護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는 뉴욕의 거리에서 발견된 要保護兒童을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 등 중서부의 農村地域의 家庭으로 보내어[1] 兒童에게는 가정이라는 환경과 全人的 勞動機會를 제공하고, 農家에는 필요한 勞動力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要保護兒童에게 가정의 환경을 제공하는 委託保護는 시설보호 보다 덜 구속적이고 費用節約的인 方案이며 진보적인 개혁방안으로 간주되었다. Brace의 활동이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이전의 介入方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再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노동, 규율, 훈련이 아닌 건전한 家庭生活과 家族의 相互作用을 강조한 점이었다. 그러

1) 1853년부터 1890년까지 뉴욕 아동구호협회는 92,000명의 아동을 빈민원, 고아원, 뉴욕의 슬럼으로부터 중서부의 농촌가정으로 보내었다.

나 最初의 委託家庭保護는 '兒童의 欲求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라는 문제 보다는 兒童의 親父母 대신에 養父母로 대체하는 家庭을 찾아 배치하는 것에 그쳤다는 限界가 있었다. 1864년에 설립된 Birtwell이 중심이 된 보스톤 兒童救護協會는 아동의 욕구 분석, 養育家庭의 環境 調査, 事後管理 등을 강조하여 兒童의 欲求에 기초한 專門的 接近方法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家庭委託을 도입하였다. 이후 가정위탁보호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1950년대에 이르면 兒童福祉 分野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잡게 된다.

나. 脫施設化와 社會福祉施設

한편, 1950년대 이후 社會問題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서 施設保護와 統制의 대안을 추구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脫施設化(deinstitutionalization)로 알려진 이 政策(Steven Segal, 1995:704)은 첫째, 시설에의 불필요한 入所와 在所를 방지하며, 둘째, 地域社會 내에서 주거, 치료, 훈련, 교육, 재활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며, 세째, 施設保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건, 보호, 치료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시람들이 가능한 한 非規制的이고,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政策의 結果는 公共 精神病院과 兒童施設의 減少, 그리고 다른 형태의 주거환경에로의 배치로 나타났다. 代案의 새로운 住居環境은 소규모형태의 住居施設로서 精神病院이나 兒童施設과 같은 시설의 특징과는 달랐다.

收容施設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45년 후반 收容施設에 관한 다수 저서의 출판으로 大衆의 관심을 끌게 되어 政府 次元에서 시설의 문제에 대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초에 革新的인 病院 프로그램으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導入되었다.

美國의 脫施設化 政策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施行되었다(Steven Segal, 1995:705).

① 施設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社會科學의 문헌과 언론의 비판
② 다른 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施設保護의 費用
③ 心理學, 醫學의 진보로 施設의 격리와 감금이 불필요하게 됨
④ 市民權運動의 발전, 수용과 치료에 있어 個人的 權利의 保護와 적절한 절차의 강조
⑤ 社會保障法 제정 이후 AFDC를 비롯한 광범위한 公的扶助 制度의 발전으로 收容施設의 機能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수의 현금 급여에 의하여 대체됨.

이러한 脫施設化 政策은 정치권의 독특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즉, 保守主義者들은 수용시설의 감소를 비용절감의 手段으로 간주하였으며, 自由主義者들은 脫施設化를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保護라고 주장하는 專門家 集團의 입장을 擁護하였다. 이처럼 정치적 반대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脫施設化 政策은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施設의 狀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료의 형태와 직원-클라이언트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을 施行하기 위해서는 費用의 增加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施設運營者들은 직원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施設을 設置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地域에 따라 無住宅者의 20~60%가 시설에서 退所한 사람들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施設收容人口는 1960년 1,887천명에서 1970년에는 2,127천명, 1980년에는 2,492천명, 그리고 1990년에는 3,33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18세 이하 靑少年의 경우, 兒童施設의 活用比率은 1933~1973년간 48% 감소하였다. 그러나 1966년 171,222명, 1980년 167,306명, 1988년 178,000명으로 推計되고 있어 지난 20~30년간 兒童

施設의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아동홈과 같은 一般的 收容의 기능 보다는 特殊한 欲求를 지닌 아동의 治療에 초점을 둔 것으로,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情緖障碍兒童을 위한 주거치료센터, 靑少年非行을 위한 교정시설의 증가이다. 情緖障碍兒童을 위한 시설의 수와 收容者는 1970년 261개 시설 5,270명에서 1990년 501개 시설, 27,781명으로 증가하였다. 靑少年敎護施設은 1965년 212개에서 1979년 2,576개, 1989년 3,267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1979~1989년간 이들 施設의 收容人員은 74,113명에서 93,94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收容施設과 수용아동의 지속성, 이른바 '轉換施設化' 現狀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즉 이러한 施設收容人口의 증가로 脫施設化는 '轉換施設化'(transinstitutionalization)라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Steven Segal, 1995:705).

脫施設化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大規模 收容施設에서 제공되는 보호 보다는 인도적이고 效果的인 커뮤니티 케어를 촉진하는데 성공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收容施設의 수용자를 無住宅者로 만들거나 地域社會의 다른 시설에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脫施設化의 문제는 개념 그 자체 보다는 시행상의 문제로, 커뮤니티 케어를 지지하는데 필요한 地域社會 基礎의 서비스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經濟狀況의 惡化와 정부의 財政緊縮 政策은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地域社會의 다수 住居施設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수의 요양원, 그룹홈들이 '規模의 經濟'를 지향하여 과거에 그들이 지양하고자 하였던 大規模 收容施設을 닮아가게 되었다. 脫施設化는 훌륭한 政策方案이었지만, 대규모시설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保護의 提供 모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980년대 레이건행정부 이래 대두한 緊縮財政 시대의 값비싼 政策代案이었다.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가. 傳達主體

美國의 社會福祉서비스는 대부분 民間機關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財政的으로 支援하는 體系로 구성되어 있다.

1) 聯邦政府와 州政府

聯邦政府의 아동복지 담당부서는 전국적 차원의 政策決定을 하며 연방의회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갖는다. 聯邦政府의 財政支出 기준을 작성하여 州政府와 民間機關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한다. 주정부는 연방입법과 州立法에 따라 州政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民間機關에 대한 재정지원을 행한다. 州政府의 社會福祉 담당부서는 주정부 차원의 지침, 監督과 評價業務를 행한다.

2) 民間 非營利, 營利機關

民間部門의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은 社會福祉서비스 제공의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傳達主體이다. 대부분의 민간기관의 재정은 公共財政으로부터 지원되며, 일부 재정은 地域社會의 기부금, 서비스요금 등으로 충당된다. 또한 民間機關들은 公共機關과의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 民間機關의 行政責任者는 연방과 州政府의 재정지원 지침을 충족시켜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傳達體系와 契約購買의 構造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契約購買(POS: Purchase of Service)

는 국방 등 他 政府서비스에 대한 계약 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社會福祉서비스 전달에서 가장 支配的인 手段이 되었다. POS의 목적은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政府의 서비스제공 責任을 달성하는 것이다. 社會서비스 구매는 州政府나 地域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및 수용시설을 포함하여 精神健康, 託兒, 委託保護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Margaret Gibelman, 1995:1998~9). 1960년대에 도입된 POS의 원래 의도는 公共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傳達方法의 代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1962년의 社會保障法 개정에서 타 공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이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1967년의 社會保障法 개정에서는 民間機關과의 서비스 계약이 허용되었다. 이후 公共機關의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면서 1969년에는 서비스 계약에 관한 제약이 철폐되고 POS가 奬勵되었다. 나아가 POS의 槪念과 實踐은 더욱 변화하여 '最小의 政府가 最善의 政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民間 營利部門이 선택의 제공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POS에 대한 制限을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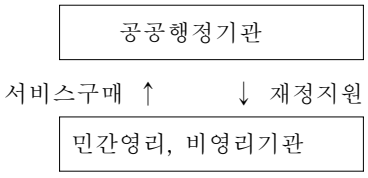

[그림 4] 契約購買에서 公共行政機關과 民間機關의 關係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가. 社會福祉施設과 其他 서비스 現況

社會福祉施設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兒童을 위한 施設의 現況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兒童을 위한 보호의 형태에 있어서는, 美國公共福祉協會의 자료에 의하면, 24시간 보호를 받는 要保護兒童의 71.4%는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18.6%는 그룹홈, 住居治療施設, 臨時保護所, 그리고 10%는 기타 施設에 수용되어 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地域社會에 기초한 委託家庭保護에로의 轉換은 시설보호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었다. 1908년 이후 위탁가정보호에로의 전환은 永久委託家庭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수반하였다. 특히 1983년 이후의 증가현상은 家族再結合(reunification)이 永久配置計劃에서의 중요한 목표(permanency goal)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家族再結合을 목표로 하는 兒童의 比率은 1983년 46.6%, 1988년 57.6%로 증가한 반면, 委託家庭保護兒童중 입양이 가능한 兒童의 비율은 1977년 102천명에서 1982년 50천명, 1988년 3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家族再結合은 1982년 49.7%에서 1988년에는 61.9%로 증가하였다.

다음의 <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委託家庭保護는 아동보호의 형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支配的인 形態이다.

〈表 2-5〉 兒童保護 形態別 人口 比率

보호의 형태	1982	1988	1990
위탁가정	72.0	71.4	74.5
임시입양	-	2.3	2.7
그룹홈(시설)	21.5	18.6	16.4
독립적 생활	0.6	0.7	0.5
기타	5.2	5.7	5.6
미확인	0.7	1.3	0.3

資料: Joyce Everett, "Child Foster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NASW Press, 1995, p.383.

資料: Duncan Lindsey, *The Welfare of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67.

[그림 5] 美國의 委託家庭保護 對象兒童의 增加趨勢(1972～1995)

그리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委託家庭 保護兒童은 1977년에 500천명에 달하였으며, 1980년 入養援助 및 兒童福祉法의 제정으로 一時的으로 262천명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500천명 수준을 다시 능가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를 통하여 2/3 이상의 兒童이 委託家庭에 배치되었다. 반면, 그룹홈과 施設保護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兒童人口의 절대수에서는 1986년 57천명에서 1990년 66천명(1989년 39개주, 1990년 28개주 통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나. 兒童福祉施設의 機能과 類型

Fredericksen에 의하면, 兒童福祉施設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장인협 · 오정수, 1993:348～9).

① 父母의 疾病이나 事故로 아동이 일시적으로 家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두터워서 委託保護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여 施設에서의 一時的인 保護가 필요할 수 있다.
② 행동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兒童의 경우, 施設은 객관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로 兒童의 氣質, 欲求, 慣習을 관찰하여 치료와 장기적인 保護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회복기의 보호를 요하는 兒童으로서 集團生活에서 보다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施設保護가 적합하다.
④ 身體障碍, 맹,농, 간질 등의 장애를 가진 兒童을 위한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施設保護가 유익하다.
⑤ 저능아, 精神薄弱兒를 위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다.
⑥ 非行兒童이나 사회에 위험이 되는 행동상의 問題를 지닌 兒童을 보호하기 위하여 施設保護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에 기초하여 美國의 兒童福祉施設은 兒童을 위한 그룹홈, 위기 및 일시보호시설, 신체장애아동시설, 정신장애아동시설, 청소년교호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施設保護를 규정하는 一貫性 있는 基準이나 指針이 없어서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施設保護의 개념이나 목적, 對象人口, 行政責任 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James K. Whittaker, 1995:451).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가. 運營構造

社會福祉施設에서의 傳達體系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民間兒童保護施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사회-행정책임자-사회사업가-

아동보호직원으로 구성되는 運營構造를 가지고 있다(Charles Schaefer and Arthur Swanson, 1988:15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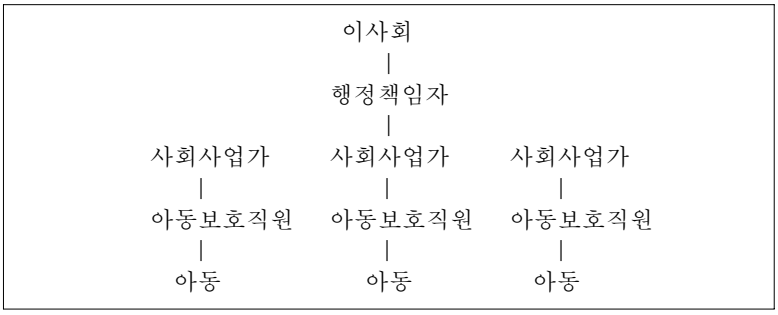

[그림 6] 民間 兒童保護施設의 運營構造

나. 專門人力

施設保護를 포함한 각종 社會福祉 서비스 분야에는 BSW, MSW의 학위를 가진 專門人力이 종사한다. 1994년도 NASW회원중 BSW회원이 3.1%, MSW 회원이 93.2%, DSW-PhD회원이 3.7%로서 MSW회원이 NASW회원의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Ginsberg, Leon, 1995:367). 그러나 社會事業家의 수에 관한 NASW회원은 134천명이지만, 統計廳의 자료는 603천명으로 추계되고 있어 전체 社會事業家의 통계에 있어서는 BSW회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社會福祉서비스 分野의 施設保護에 고용된 人力은 1992년 현재 31,988명으로 전체 사회사업인력의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3,539명으로 7.84%를 차지할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Ginsberg, Leon, 1995:355).

다. 財政構造

州政府는 각 연도별로 포괄적인 서비스 計劃을 作成하며, 그 계획

에는 서비스분야, 對象人口, 욕구사정, 기획과정, 평가와 보고계획이 포함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財政은 社會保障法 TitleⅩⅩ에 따라 수용보호, 치료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社會福祉서비스의 費用이 지출된다. 項目別 財政의 구성은 州政府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1967년의 社會保障法 改革은 공공기관이 민간 비영리기관과 營利機關과의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서비스 契約購買(POS)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에 이미 州政府 財政에서 TitleⅩⅩ에 의한 財政支援의 50%를 초과하였다.

〈表 2-6〉 保護形態別 兒童 一人當 年間 所要費用

보호형태	비 용($)
예방서비스:	
홈메이커	2,000
가정탁아	2,000
탁아센터	4,000
위탁가정보호	5,200
집단홈	15,400
집단주거시설	18,600
일반수용시설	34,000
교호시설	42,100

資料: Winifred Bell, *Contemporary Social Welfare*, New York: Macmillan, 1983, p.224.

收容施設의 費用은 아동 일인당 연간 25,000~50,000$에 달하고 있다. 그룹홈은 集團收容施設 보다 비용이 적게 소용되며, 非行靑少年을 위한 敎護施設과 아동심리 치료시설이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表 2-6>는 1980년대초 뉴욕시에서 조사한 保護形態別 兒童 一人當 年間所要費用으로서 지난 10년간 비용이 다소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보호가 예방서비스나 家庭委託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費用이 많이 소요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第 3節 日本의 社會福祉施設

1. 發展過程

가. 救護法의 成立까지

日本에서 국가에 의한 公的 救濟의 예는 이미 후기 封建社會에 있어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養生所(1722)와 부랑자수용 등을 위한 授産所(1682)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幕府 말기 유신기로 일컬어지는 19세기 중순 이후에는 救育所, 養育院 등의 구빈시설이 다수 창설되었다. 日本 近代國家 創立期라고 일컬어지는 1870년대말 이후는 兒童施設의 발흥기라고 불리울 만큼 育兒施設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 비하여 공동체 해체의 미숙이나 철저하지 못한 農業革命으로 말미암아 빈곤이 封建主義的인 성격을 가졌으나, 이미 자본주의적인 貧困의 性格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貧困人口는 급격히 팽창하였다(吉田久一, 1985).

1879년 설립된 佛敎의 福田會育兒院과 1887년에 石井十次에 의해 설립된 岡山孤兒院이 이 시기에 설립된 兒童施設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맹인아동을 위한 施設과 犯罪非行에 대한 징벌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 感化敎育을 위한 시설도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시설들은 國家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社會福祉에 뜻을 둔 民間 篤志家들에 의해 設立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帝國主義 形成期를 거치고 1910년대 소위 大正데모크라시의 시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돌출되고 社會不安과 混亂이 가중된 시기였다. 즉, 1918년의 쌀 소동, 1920년의 불황과 상품시장의 와해, 관동대지진, 勞動爭議와 소작쟁의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社會福祉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도록 하므로서, 救護法이 1929년에 성

립하여 193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938년에는 厚生省이 설치되었고, 또한 民間社會事業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社會事業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民間施設은 누구라도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그 설립과 폐지시에는 地方長官을 통하여 행하는 委託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社會福祉施設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였다. 이 救護法에 의하여 民間의 社會福祉施設은 공적인 規制시스템 속으로 재편되었다.

나. 戰後의 制度確立期 - 福祉3法의 成立과 社會福祉法人制度의 誕生

1945년 이후 약 10년 내외의 시기가 日本의 社會福祉의 成立期라는 것에는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다. 패전후 일본은 戰勝國, 구체적으로는 聯合國總司令部(이하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GHQ는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施策의 실시를 서둘렀고, 이러한 GHQ의 占領政策은 社會福祉의 기초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위 GHQ 3원칙으로 알려진 일련의 原則提示 등을 통하여 GHQ는 社會福祉의 施行과 충실화를 일본사회에 요구하였다. 憲法에 기초한 生存權保障의 규정도 社會福祉立法을 요구하였고 1946년 (구)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후, 1947년에는 兒童福祉法, 그리고 1949년에는 身體障碍者福祉法이 제정되어 소위 「福祉3法」체제가 성립함으로써 전후 사회복지입법의 기본 골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社會福祉施設의 體系도 이 3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확립되었다. 즉,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施設, 兒童福祉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근거한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高齡者에 대한 생활원조서비스는 生活保護法에 근거하여 제공되었다.

한편, 1951년 제정된 社會福祉事業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措置委託을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GHQ의 방침과 모순되는 면을 가지고 있어 갈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社會福祉法人制度이다. 無差別平等의 原則, 公的 責任의 原則, 救濟費制限禁止의 原則 등 GHQ의 3원칙은 일본의 社會福祉制度의 기본틀에 지침이 되었다. 즉, 公的 責任의 原則은 구제제도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사적기관이나 준공적기관에 위양 또는 위임되어서는 안되며 國家가 책임져야 한다는 原則이었고, 이에 의하여 民間施設은 어디까지나 민간부문으로서 公的 制度의 틀 밖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救護法에 의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國家補助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GHQ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公共財産의 支出利用의 制限」항목인 헌법 제89조는 「공금이나 기타 공공재산은 宗教組織이나 團體의 사용이나 편익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나 공적인 지배에 속하지 않는 慈善, 教育 혹은 博愛事業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GHQ는 이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民間福祉施設은 공적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GHQ의 방침은 公立施設만으로는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따라서 民間施設을 공적서비스 供給體系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方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간시설이 公的인 監督을 받는다면,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民間施設에 대한 公的인 監督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것이 곧 「社會福祉法人」制度였다(福田垂穂 外, 1987:27). 이렇게 하여 민간의 社會福祉施設은 공적 책임 하에서 공립시설을 보완하는 「準公的施設」로서 공적서비스 供給主體로 편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다. 社會福祉施設 擴充期 - 福祉六法體制의 成立

1960년에 精神薄弱者福祉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

법」이 성립하여 福祉6法體制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한 社會福祉施設體系가 현행 사회복지시설체계의 기본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福祉事業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福祉3法 下의 사업을 새로이 독립시켜 立法化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의 시설체계는 세분화가 가속되었지만, 社會福祉서비스의 供給體系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체계화되기 전에 社會福祉施設體系가 전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곧 社會福祉의 질적인 발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즉 施設體系의 細分化過程은 사회복지 욕구(need)와 복지서비스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민생활의 장을 보장한다는 관점보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人口層(예, 低所得層)에 대한 특수한 서비스의 형태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1950년대말부터는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流動化政策이 추진되고 1960년 「所得培增計劃」이라는 정부의 계획 등과 결부되어 이것은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그만큼의 非福祉現狀을 또한 노출시켰다. 즉, 人口의 都市集中現狀, 核家族化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저하, 부인노동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적인 부양에 크게 의지하고 있던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는 그 한계를 명백히 나타내었고, 政府는 서둘러 이 사적부양의 몫을 公的인 扶養體系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1년의 「社會福祉施設 긴급정비 5개년계획」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었고, 그것은 부인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保育所의 增設, 重度 身體障碍者와 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收容施設의 증설을 도모한 것이었다. 동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5년과 그 후인 1975년의 社會福祉施設數를 비교해 보면, 생활보호법상의 보호시설은 줄어들었던 반면, 保育所와 老人施設, 障碍人施設의 급격한 증가를 알 수 있다. 즉, 特別養護老人홈은 동기간중 27개시설에서 539개로, 身體障碍者 更生援護施設은 169개에서 384개로, 精神

薄弱者 援護施設은 70개에서 430개소로 그리고 보육소는 11,999개소에서 18,238개소로 급증하였다(福田垂穗 外, 1987:34~35).

1973년은 日本에서 「福祉元年」으로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확충이 있었던 해이다. 그러나 고도경제 성장기와 일치되는 이 시기는 社會福祉施設 擴充은 거의 양적인 면에 치중되었다. 즉, 이 시기에도 역시 국민의 社會福祉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없었고, 국민생활에 있어서 社會福祉 慾求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社會福祉서비스의 供給體系를 체계화하고 통합화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다만 시설의 양적 확대가 社會福祉서비스의 權利를 보장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社會福祉施設의 수를 늘리는데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財政的인 支援이 뒷바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經濟의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시기에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라. 社會福祉再編期의 社會福祉施設

복지원년 바로 그 해에 오일쇼크가 있었고 1974~1975년의 不況은 일본에 있어서는 戰後 最大의 不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社會福祉의 철학적인 바탕이 없이 經濟成長을 배경으로 양적인 확대를 시도한 일본의 社會福祉는 재검토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그 再檢討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社會福祉를 축소하고 個人과 家族, 그리고 基礎自治團體의 책임을 강조하는 노선으로의 개혁이었고, 이것은 1970년대말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2)]

日本의 社會福祉再編의 기본방침은 基礎自治團體인 시정촌을 중심

2) 이 시기 일본의 사회복지행재정개혁의 내용에 관해서는, 박광준(1992), 일본 사회복지행재정개혁과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사회정책논총』 제4호를 참고.

으로 사회복지체제를 확립하고, 基礎自治團體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분은 廣域自治團體의 책임으로 하며, 국가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社會福祉部門에 쓰여지는 中央政府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그 財政責任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社會福祉施設에 관련지어 볼 때, 크게 두가지의 경향으로 이어졌다. 첫째는 國庫負擔의 감소로 인하여 각종의 社會福祉施設의 運營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그 입소자나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게 된 것이다. 地方政府에 대한 國家의 補助金 削減措置는 1986년 5월의 '國家의 補助金 등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986년 豫算編成 때에는 1988년까지의 3년간의 잠정조치로서 生活保護의 補助率을 8/10에서 7/10로, 노인홈 등의 조치비보조율을 8/10에서 1/2로, 短期收容 및 晝間 서비스를 1/10에서 1/2로 하고, 1989년의 예산편성에는 生活保護補助率을 7.5/10로 일부 부활한 것 외에는 보조율 2분의 1로 하는 조치는 잠정조치에서 恒久的措置로 전환되었다. 1986년 12월에 성립된 '地方公共團體의 執行機關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사무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機關委任事務의 團體委任事務化措置가 취해졌다. 이러한 國家地方間의 사무분담,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화, 國家權限의 地方移讓 등은 지방의 財政責任强化를 위한 조치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 地方의 財政負擔은 결국 서비스 이용자 負擔增加의 形態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小室豊允, 1987).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福祉關係施設의 民間委託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자치부가 1989년 7월에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시정촌의 복지・의료관계에서 보양소(保養所) 38개소, 양호노인홈 14개소, 病院 1개소, 진료소 44개소, 건강 보건센타 34개소가 民間法人

에 委託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박광준, 1994:289).

이 시기에 社會福祉施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경향은 社會福祉施設 일변도의 서비스공급체계를 지양하고 소위 在家福祉를 강조하면서, 社會福祉施設과 地域의 連繫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1990년 6월에는 제18차 국회에서, 「老人福祉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社會福祉關係 8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3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老人福祉法을 시작으로 身體障碍者福祉法, 精神薄弱者福祉法, 兒童福祉法, 母子 및 寡婦福祉法, 社會福祉事業法, 老人保健法, 社會福祉·醫療事業團法 등 福祉 8法의 가정봉사원(home helper)의 파견 등 소위 在家福祉事業을 거택생활지원사업으로 칭하며 이를 基礎自治團體의 사무로 할 것과 老人福祉施策 내지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 입소조치사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基礎自治團體로 移讓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在家福祉事業은 사회복지시설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兒童이나 老人, 그리고 障碍人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은 모두 社會福祉施設의 확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흔히 골드플랜이라고 불리는 「高齡者保健福祉推進 10個年戰略」이나 엔젤플랜이라고 불리우는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용은 社會福祉施設을 확충하여 在家福祉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社會福祉施設의 改善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

가.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의 槪觀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는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즉, 厚生省-廣域自治團體-基礎自治團體로 이어지며, 광역자치단체에

는 아동, 노인, 장애인, 요보호부인을 위한 각각 兒童相談所,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 부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福祉事務所는 基礎自治團體에도 설치되어 주민의 窓口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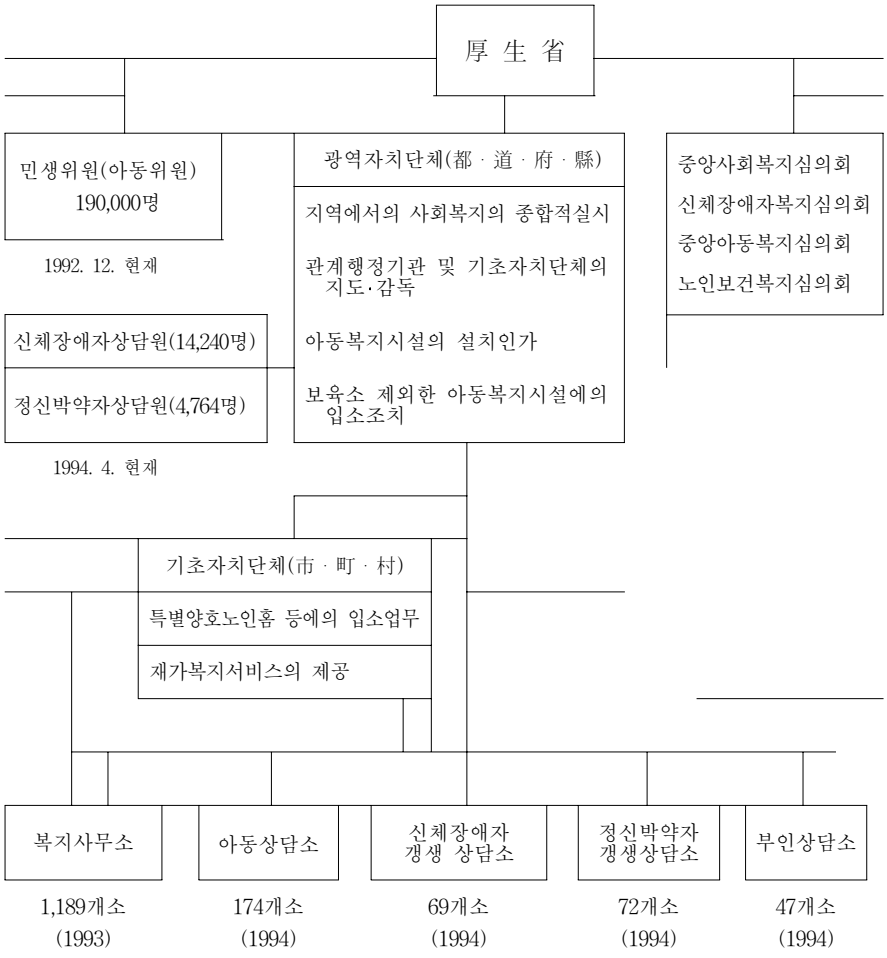

資料:『厚生白書』등을 참조하여 작성

[그림 7]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의 傳達體系

심의기관으로서는 中央社會福祉審議會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심의회는 관할 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구체적인 社會福祉行政에 의견을 제시하는 役割을 맡고 있다. 地域住民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福祉事務所나 各 相談所를 통하여 조언과 지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施設入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役割分擔

社會福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요한 政府機關은 厚生省이다. 하지만 후생성만이 일원적으로 社會福祉行政을 통괄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건전육성문제, 소년·여성·장애인의 취업대책, 장애아취학원조, 고령자대책 등의 영역에서는 總務廳, 勞動省, 文富省, 自治省, 法務省 등 복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社會福祉에 관한 國家의 責務는 전국적 수준의 社會福祉施策의 책정, 各自治團體間의 이해의 조정과 격차의 시정시책이나 제도운용에 관한 준칙의 책정과 조정, 自治團體에 대한 조언과 지도 및 원조, 필요한 費用의 調達과 負擔 등이다.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에서 社會福祉行政을 관할하는 부국은 民生局, 福祉局 등인데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는 社會福祉에 관한 廣域自治團體水準의 종합적 계획책정, 시책이나 제도운용에 관한 조례의 책정과 조정,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入所措置 등의 실시, 基礎自治團體間의 이해의 조정과 격차의 시정, 基礎自治團體에 대한 지도와 원조 등이다.

기초자치단체(市區町村)의 社會福祉의 役割은 1980년대 이후의 社會福祉改革을 통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老人福祉關係에서는 在家福祉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入所決定, 노인복지계획의 책정이, 身體障碍者福祉關係에서는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의 입소결정, 재가복지서비스 등에서 중요한 權限과 努力義務를 지고 있다. 兒童福祉, 母子

및 寡婦福祉, 精神薄弱者福祉關係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 중에 가정봉사원서비스와 주간서비스는 基礎自治團體의 責務가 되어 있다. 각 社會福祉서비스에 충당되는 재정의 부담은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와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의 부담몫은 각기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社會福祉行政機關[3)]

1) 福祉事務所

社會福祉行政의 제1선기관인 福祉事務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1993년 10월 현재 전국에 1,189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총 52,6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問題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相談하는 窓口의 구실을 하고 있다. 복지사무소의 업무는 生活保護法, 兒童福祉法, 母子 및 寡婦福祉法, 老人福祉法, 身體障碍者福祉法, 精神薄弱者福祉法에 규정된 「원호, 육성 혹은 갱생조치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福祉事務所는 신청자나 이용자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와 판정을 행할 뿐만 아니라 保護의 開始나 閉止, 각종 社會福祉施設에의 入所決定, 일부의 在家福祉서비스의 이용결정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廣域自治團體의 行政機關

廣域自治團體에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중요한 機關들은 兒童相談所,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 부인상담소가 있고, 그것은 각각 兒童福祉法, 身體障碍者福祉法, 精神薄弱者福祉法, 賣春防止法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다수

3) 이하의 내용은 厚生總計協會, 『國民の福祉の動向』, 1994, pp.74~76; 『厚生白書』, 1995 등을 참고하였음.

의 상담소가 설치된 곳도 있다. 1994년 4월 현재 전국에 17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214명의 직원(1993. 5. 현재)이 일하고 있다. 兒童福祉의 제1선기관이며, 兒童福祉施設에의 入所事務, 아동상담과 지도, 兒童의 一時保護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身體障碍者更生相談所는 전국에 69개 설치되어 있으며(1994, 4. 현재),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입소조사와 身體障碍者에의 相談, 判定, 指導業務를 행하고 있다.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는 전국에 72개소(1994. 10. 현재)가 설치되어 있으며 精神薄弱者援護施設 入所調査와 精神薄弱者에 대한 상담과 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인상담소는 전국에 47개소(1993. 10.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要保護女性의 相談, 判定, 調査, 指導 그리고 一時保護를 행하고 있다. 社會福祉施設의 입소는 복지사무소와 상기의 相談機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 行政機關과 民間社會福祉法人과의 關係 - 措置制度 및 措置費制度[4)]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 行政 體系는 매우 복잡 다기하다. 그 이유는 우선 일본의 社會福祉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社會福祉施設이기 때문이고, 社會福祉施設의 과반수 이상이 民間 社會福祉施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에 대해서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의해서 補助金이 지급되는 構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개인이 設立運營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운영할 자격을 갖춘 것이 社會福祉法人이다.

社會福祉事業法에서는 <表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福祉事業을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하고, 公共性이 높은 제1종 사업에 대해서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혹은 社會福祉法人에 그 운영주체를 한정

4)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社會福祉事業法,『厚生白書』, p.318 등을 참고하였음.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社會福祉事業法에 규정된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제1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는 社會福祉法人만이 民間委託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그 운영의 준칙으로서 ① 公共責任 전가의 금지, ② 民間社會福祉事業의 자주성의 존중, ③ 民間社會福祉事業의 독립성의 유지 등 소위 「公私分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개별법, 예를 들어 兒童福祉法에서는 日本의 兒童福祉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체적인 行政指針이 명시되어 있고, 兒童福祉施設의 種類와 最低基準, 아동복지행정기관, 福祉措置의 責任과 基準, 조치비용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表 2-7〉 社會福祉事業과 社會福祉施設

관계법률	제1종 사회복지사업	제2종 사회복지사업
생활보호법	구호시설, 갱생시설	
아동복지법	유아원, 모자료, 양호시설, 정신박약아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맹농아시설, 허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자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조산시설,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신체장애자복지법	신체장애자갱생시설, 신체장애자요호시설, 신체장애자복지홈, 신체장애자수산시설	신체장애자복지센터, 보장구제작시설, 시청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박약자갱생시설, 정신박약자수산시설, 정신박약자통근료, 정신박약자복지홈	정신박약자지역생활원조사업
노인복지법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노인복지센터, 노인개호지원터
모자 및 과부복지법		모자복지시설

資料: 厚生白書, 1995, p.318에서 재구성함.

<表 2-8>에서 보듯이 民間社會福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社會福祉法人의 數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社會福祉協議會이다. 이들 社會福祉法人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보호에 따르는 경비를 국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措置費制度이다. 措置制度란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때에 措置機關이 실시하는 이용자의 욕구의 인지(신청수리, 직권에 의한 인지)로부터 그 評價(調査나 判定, 審査), 그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선정과 供給의 決定, 나아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통지 혹은 송치에 이르기까지의 手續을 의미한다(古川孝順, 1991:136). 즉, 措置制度는 措置의 實施機關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 이용자를 선별하고 福祉서비스공급의 範圍를 제한하는 동시에 이용신청자에 대해서 公的福祉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고 福祉서비스 수급권의 확보를 보장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制度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國家의 公的 責任을 구체화하는 制度이다.

措置委託(費)制度는 민간시설의 운영에 補助金을 교부하면서 民間施設을 활용하기 위한 制度이다. 즉, 이 제도에 의해 自治權者인 地方自治團體는 요보호자를 民間施設에 委託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탁보호하는 民間施設에 대해서는 위탁후 보호에 필요한 費用(措置委託費)이 지급된다. 그와 동시에 공금의 지원을 받는 民間施設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지도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措置費制度의 效用은 첫째, 日本 社會福祉施設의 과반수를 넘는 민간시설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그와 같은 민간시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日本의 社會福祉基盤을 안정시키며, 둘째, 民間施設에 대한 經濟的 基盤을 담보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있어서의 福祉慾求의 폭발에 대응하는 社會福祉施設의 긴급정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셋째 이것은 社會福祉施設 최저기준과 함

께 사실상 日本 社會福祉서비스의 最低基準(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왔다(古川孝順, 1991:140).

〈表 2-8〉 社會福祉法人 數의 推移

년 도	1970	1980	1990	1994
총 수	6,110	11,672	13,180	14,502
사회복지협의회	1,399	2,496	2,973	3,307
전국 〃	1	1	1	1
광역자치단체 〃	47	47	47	47
기초자치단체 〃	1,351	2,448	2,925	3,259
공동모금회	48	48	48	48
중앙 〃	1	1	1	1
광역 〃	47	47	47	47
사회복지사업단	53	88	105	123
기 타	4,610	9,040	10,054	11,024

資料: 『厚生白書』, 1995, p.319에서 재구성함.

措置費는 1994년도의 경우 國庫負擔分 약 9,557억엔과 地方負擔分 9,458억엔, 총1조 9,015억엔이며, 여기에 利用者負擔分 등을 합쳐 社會福祉施設運營에 所要되는 費用總額은 약 2조 6천억여엔이다(國民の福祉の動向, 1994:248).

3.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環境變化

가. 社會福祉施設의 現況

1993년 10월 1일 현재 日本의 社會福祉施設은 <表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4,281개소이며, 그 利用者는 거의 2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運營主體를 기준으로 보면, 公營施設은 30,291개소에 131만여명, 私營施設은 23,990개소에 약 130만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施設에서 보호하고 있는 要保護者의 年齡을 기준으로 볼 때, 성인시설이 19,581개소에 50여만명, 兒童施設은 34,700개소에 약 210만명이 보호하고 있다.

〈表 2-9〉 社會福祉施設 分類別 施設數 및 定員數

분	류	시설 수	이용자 정원
총	수	54,281	2,594,208
운영 주체 분류	공 영	30,291	1,315,152
	사 영	23,990	1,297,056
연령별 분류	성인시설	19,581	501,232
	아동시설	34,700	2,092,976

資料 : 厚生省 編, 『厚生白書』, 1995, p.330에서 재구성함.

社會福祉施設의 種類別로 그 시설의 수와 이용자정원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1980년과 1993년간 비교한 것이 <表 2-10>이다. 社會福祉施設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兒童福祉法에 근거한 兒童福祉施設이며, 3만 3천개소 이상이며 그 이용자정원도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社會福祉施設의 數와 定員을 1980년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하여 老人福祉施設의 數와 利用者數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고, 障碍人施設의 數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生活保護法에 근거한 보호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수에 있어서나 이용자정원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도 큰 變化가 없으나 주목할만한 변화는 보육소의 경우 그 이용자수의 감소이다. 즉, 保育所의 定員은 1980년의 2,136,728명에서 1993년에는 1,946,138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人口構造의 變化와 관련하여 高齡化와 더불어 日本이 직면하고 있는 「소자화(少子化)」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表 2-10〉 施設種類別 施設數와 定員의 推移(各年 10月 1日 基準)

시설의 종류	시설 수		정 원		종사자수
	1980	1993	1980	1993	1993
총 수	41,931	54,281	2,522,791	2,594,208	710,011
보호시설	347	347	22,141	22,368	6,549
노인복지시설	3,354	8,903	163,379	282,976	167,898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	574	1,207	25,231	42,996	27,551
부인보호시설	58	53	2,156	1,742	595
아동복지시설	31,980	33,242	2,239,643	2,039,638	423,693
정신박약자 원호시설	786	2,078	48,683	111,020	51,876
모자복지시설	75	92	1,696	-	590
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	-	159	-	2,824	1,026
기타	4,757	8,200	19,862	90,644	30,253

資料: 厚生省 編, 『厚生白書』, 1995, pp.330～301에서 재구성함.

나. 兒童福祉施設의 種類[5)]

兒童福祉法에 근거하여 볼 때, 兒童福祉施設은 14개 종류로 분류된다. 즉, 조산시설, 유아원, 모자료, 保育所, 兒童厚生施設, 養護施設, 정신박약아시설, 精神薄弱兒 통원시설, 맹·농아시설, 허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精神障碍兒短期治療施設, 교호원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兒童福祉施設중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해당하는 施設의 성격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乳兒院

乳兒를 입원시켜 養育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로서, 양친의

5) 이하의 내용은 兒童福祉法, 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厚生省令), 『厚生白書』, 1995, 白石大介 外, 1994, 전게서; 『國民の福祉の動向』 등을 참고하였음.

死亡, 離婚, 양친 어느 한쪽의 行方不明, 疾病, 혹은 그로 인한 학대 등에 의해 家庭에서의 養育이 곤란한 경우에 유아가 생활하는 施設이다. 원칙으로는 1세미만으로 필요한 경우는 2세까지 延長할 수 있다.

2) 養護施設

유아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없는 兒童, 虐待받는 兒童, 기타 환경상 養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입소시켜 養護함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이며, 양친의 行方不明, 離別, 長期入院, 혹은 양친에 의한 학대 등으로 保護者에 의한 양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兒童이 생활하는 施設이다. 과거에는 育兒施設, 孤兒園 등으로 불리면서, 保護者가 없는 兒童이 주로 입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적으며, 따라서 施設과 家庭의 連繫가 중요시되고 있다.

3) 敎護院

不良行爲를 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兒童을 입원시켜 敎護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이며, 소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이 敎育과 保護를 받는 施設이다.

한편 兒童福祉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施設로서는 母子福祉센터, 모자휴양홈, 母子保健센터 등이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아동복지관계시설은 사업소내 保育施設, 季節保育所, 僻地保育所, 夜間保育所 등이 있다.

다. 社會福祉施設의 環境變化

전후 현재까지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施設福祉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설복지 이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供給體系를 완비하지 못한 日本의 입장에서는 社會福祉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중심으로 하는 福祉서비스 供給體系를 재편하는 것이 日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어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압박하는 社會福祉施設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는 크게 나누어 볼 때, 社會福祉費의 增加,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福祉施設觀의 變化이다.

일본 社會福祉財政의 특징 중의 하나는 社會保險財政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국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社會福祉施設에 관계된 豫算인 社會福祉費가 전체 사회보장관계비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매년 증가되어 왔다. 1990년에서 1994년까지의 比率을 연차적으로 보면, 각각 20.7%, 21.2%, 22.1%, 22.7%, 그리고 23.6%로 매년 增加해 왔으며, 1994년의 경우 그 총액은 3조엔을 넘어서고 있다(國民の福祉の動向, 1994:79). 社會福祉施設數의 增加가 그 중요한 증가요인이다. 즉, 社會福祉施設의 증가추세를 1975년과 1989년으로 비교해 보면, 197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 指數는 149로 증가하였는데, 各施設別로 보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이 精神薄弱者援護施設로서 346, 身體障碍者更生施設 253, 老人福祉施設 248, 그리고 兒童福祉施設 125 등이다(白石大介 外, 1992:70).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社會福祉改革의 출발점은 바로 이 福祉費의 增加였다. 이것은 제도개혁의 계기, 사회복지시설이 직면한 변화의 계기가 財政的인 問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社會福祉改革은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근거한 改革이어야 하는데, 社會福祉의 費用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社會福祉施設을 개혁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社會福祉施設의 變化를 압박하는 두번째의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구체적으로는 高齡化와 少子化이다. 특히 인구의 高

齡化는 다른 先進諸國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93년도에 日本의 65세 이상 老人人口는 1,690만명인데, 이중 약12%인 200만명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政府는 推計하고 있다(厚生白書, 1995:193.). 그러나 같은 해에 老人福祉施設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28만여명이므로 실제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人口高齡化에 수반되어 소위 초고령자가 일반고령자의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比率로 增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케어(care)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한편 出産人口의 低下로 인하여 현재 社會福祉施設의 약 70%인 兒童福祉施設에 있어서 정원이 줄고 있다. 즉 低出産의 原因이 육아의 부담, 職業生活과 育兒의 兩立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兒童福祉施設 특히 保育所의 質的 向上을 위한 투자를 要求하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엔젤플랜」은 다름 아니라 兒童의 育兒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出生率低下를 막아보자는 노력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社會福祉施設의 役割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社會福祉施設의 役割 및 機能 變化를 압박하고 있는 要因으로는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주민의 관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입소형 社會福祉施設의 경우에는 入所者에 대한 保護가 충분하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社會福祉思想의 理念이 국민들간에 폭넓게 定着되어 가는 가운데, 시설입소자는 지역중에 수용된 마이노리티, 특수인이 아니라 地域住民의 한사람이라는 인식이 收容되어 가고 있다. 地域住民들로부터도 社會福祉施設의 設備나 機能을 開放하여 전문적, 일상적 케어를 공유하고 시설과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자고 하는 要求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福田垂穗 外, 1987:104). 즉, 施設의 開放化, 社會化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地域에 社會福祉施設이 존재하고 그 시설은 收容者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면 된다는 식의 施設中心의 사고에서, 전체 지역주민의 福祉시스템에 그 地域의 社會福祉施設을 참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의 轉換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요인에 의해 전후 施設福祉 중심의 서비스공급체계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在家福祉 중심의 供給體系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傾向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가. 運營組織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다. 국가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설은 敎護院, 精神薄弱兒施設이다. 廣域自治團體에 그 설치의무가 있는 것은 교호원 뿐이며, 다른 시설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다. 또한 自治團體 외의 자가 施設을 설치할 때에는 廣域團體長의 認可를 필요로 하고, 제1종의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시설은 社會福祉法人이 운영할 수 있다. 社會福祉施設은 그 設備와 運營에 관하여 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厚生省令)을 엄수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시설 설치후에도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厚生省 및 廣域團體長은 施設을 감독할 수 있고, 이 基準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改善勸告, 命令, 事業停止, 許可取消, 閉鎖命令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나. 專門人力

社會福祉施設에서 종사하는 職員은 시설장, 의사, 조산부, 간호사, 요모(寮母), 교모, 兒童指導員, 母子指導員, 兒童厚生員, 이학료법사, 작

업료법사, 營養士, 조리원, 事務職員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직원들 중 아동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專門的 人間關係를 통하여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을 행하는 專門職員은 아동복지법시행령이나 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 등에서 그 배치와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최저기준에서는 兒童福祉施設의 專門職員의 일반적인 要件을 「건전한 심신을 가지고 兒童福祉事業에 열의를 가진 자로서 가능한 한 兒童福祉事業의 理論 및 實際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제7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最低基準에서는 保姆, 母子指導員, 兒童厚生員, 兒童指導員, 敎護, 敎母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1987년에 「社會福祉士 및 개호복지사법」이 공표되어 새로운 資格制度가 시행되었는데, 이들 자격과 兒童福祉施設의 전문직원의 자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 資格制度가 서비스제공에 종사하는 專門職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兒童福祉施設에 종사하는 從事者의 數는 1993년 10월 1일 현재, 총 423,693명이며, 이 중 保育所에 종사하는 인력이 342,853명이며 그것을 제외한 施設從事者가 80,840명이다. 保育所의 경우는 總從事者數의 60% 이상인 215,481명이 保姆이다. 한편 기타 종사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을 순서별로 보면, 保姆가 15,532명, 兒童厚生員 12,612명, 施設長 10,070명, 兒童指導員 9,735명, 看護師 및 保健士 7,076명 등의 순이다.

다. 財政構造

民間의 社會福祉事業의 財政構造를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成懶龍夫 外, 1989:98-99).

① 國家에 의한 財源: 국가로부터 自治團體를 통해서 교부되는 措置委託費, 시설정비 보조금

②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單獨補助: 인건비보조금, 시설정비진흥 보조금, 건설차입금 이자보급
③ 민간조성단체에 의한 補助: 施設整備補助金, 직원연수보조금
④ 法人의 自體財源 : 기부금, 후원회, 수익사업수익, 診療收入, 부대적 公益事業收益

민간사회복지법인의 경영은 이들 公的資金과 民間資金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財政充當된다. 그러나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國家로부터의 措置委託費이다.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補助는 직원급여의 공사차액시정을 위한 조성금이나 시설건물 건설비의 차입금변제에 관련된 利子支給 등에의 援助가 중심이 된다. 민간조성단체에 의한 보조는 民間福祉施設의 施設整備領域에서 財政的으로 상당한 役割을 하고 있다. 민간조성단체에는 경륜이나 소형자동차, 모터보트 경기 등의 團體(日本自動車振興會, 日本船舶振興會, 中央 競馬社會福祉財團 등)로 부터의 공영경기관계법에 의한 이익금보조, 대기업 출자재단이나 基金에 의한 造成, NHK나 신문사 등의 조성이 있다.

法人의 自體 財源은 기부금수입으로서 공동모금, 各種 團體나 個人에 의한 기부, 바자회 수입 등이 있다. 收益事業에 관해서는, 수익용으로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法人은 적고, 또한 行政指導에 의해 收益事業이 억제된 면도 있어서 그 실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자체 재원으로서 施設財政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근의사를 가지고 있는 法人組織에서의 진료수입 정도이다.

兒童福祉施設의 운영을 위한 國家와 廣域自治團體, 地方自治團體間의 費用負擔의 비율은 <表 2-1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表 2-11〉 兒童福祉施設 運營을 위한 費用負擔

	조치권자	설립주체	비 용 부 담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 육 소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설립시설	1/2	1/2	-
		기타 시설	1/2	1/4	1/4
모자료·조산시설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설립시설	1/2	1/2	-
		기타 시설	1/2	1/4	1/4
	광역단체장	-	1/2	1/2	-
기타 아동복지시설	광역단체장	-	1/2	1/2	-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면, 措置費의 支出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基礎自治團體의 長이 措置權者임과 동시에 民間社會福祉法人에 대한 조치비의 지급자, 나아가 조치비의 징수권자가 된다. 措置委託費의 금액은 施設의 種類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도 施設의 所在地나 급지구분, 상근의사의 유무에 의해 算定基準이 다르다. 措置費는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給與 등 人件費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요하는 管理費로 구성되는 事業費와, 시설입소자의 一般生活費를 주로 하는 사업비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역은 <表 2-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職員의 給與에 관해서는 國家公務員의 處遇에 준하는 處遇水準의 確保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생활비의 경우도 매년 國民의 生活水準에 연동하여 改善이 이루어지고 있다.

社會福祉施設에의 入所保護는 모든 대상에게 無料인 것은 아니다. 入所者 자신이나 扶養義務者는 입소에 따른 費用을 所得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兒童保育料의 경우 보호자 1인당 平均保育料 負擔額(年間)은 1981년 160,210엔, 1984년 196,500엔, 1985

년 208,400엔, 1986년 215,400엔, 1987년 221,000엔으로 상승하였다(박광준, 1994:288～289).

〈表 2-12〉 措置費의 內譯

사무비	인건비	상근직원급여비	급여, 제수당, 급여특별개선비
		비상근직원설치비	촉탁의사 등
	관리비	일반관리비	관리비, 여비, 직원건강관리비 등
		특별관리비	동기 난방비, 제설비, 특수업무대책비 등
사업비		일반생활비	경상적 생활비
		특별생활비	성인시설 : 동기가산, 장제비 등 아동시설 : 교육비, 견학여행비 등

資料: 成懶龍夫 外, 『福祉改革と福祉補助金』, 1989, p.8에서 재구성함.

地方自治團體는 국가의 기준에 근거하여 社會福祉施設에 措置費 혹은 措置委託費를 지불하고, 다른 한편 入所者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일부 혹은 전액의 費用을 징수하는 構造로 되어 있다. 國家는 이 費用徵收基準에 관해서도 國庫負擔의 淸算基準의 일환으로서 국가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地方自治團體에 제시해 왔다. 이러한 관계에서 各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措置費의 國庫負擔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國庫負擔額 = (措置費支拂總額 - 措置費徵收額) × 國庫負擔率

社會福祉施設의 運營費 뿐만 아니라 社會福祉施設의 정비 역시 一部施設을 제외하고는 공비부담 내지 보조로 이루어진다. 社會福祉施設整備에 있어서 國家와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 그리고 社會福祉法人의 費用負擔比率은 <表 2-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2-13〉 社會福祉施設 整備 費用의 負擔

비용부담자 / 설치주체	국 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	100/100	-	-	-
광역자치단체	50/100	50/100	-	-
기초자치단체	50/100	25/100	25/100	-
사회복지법인 등	50/100	25/100	-	25/100

資料: 厚生省 編, 『厚生白書』, 1995, p.332에서 재구성함.

第 4節 評價와 政策的 含意

1. 發展過程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英國의 施設保護에 관한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施設保護의 發展趨勢는 빈민법과 산업혁명, 福祉國家의 形成과 發展, 그리고 최근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典型的 模型으로서 社會福祉施設과 다양한 社會福祉서비스의 발전의 경험은 韓國의 兒童保護施設의 發展方向을 모색함에 政策的 含意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施設 數와 收容對象 兒童人口의 減少와 委託家庭에의 配置比重이 增加하였다. 이러한 變化 趨勢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兒童의 발달에 있어 施設의 부정적인 影響에 대한 認識이 증가하였다. 또한 兒童의 逸脫行動에 대하여 사회가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社會事業 分野에서 豫防的 保護가 강화되었다는 점, 兒童을 家庭에서 養育함에 대한 선호가 작용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주의의 강화, 施設保護費用의 增加 등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Hellinckx and Colton, 1993:234).

둘째, 收容對象 人口 特性이 變化되었다. 父母의 離婚, 편부모, 부모의 失業과 貧困, 약물중독, 소수인종의 아동 등 兒童의 家族狀況에 問題가 있는 兒童이 증가하였다. 또한 年齡分布上 유아 보다는 성장한 靑少年期 兒童의 比率이 증가하였다.

셋째, 小規模 施設을 향한 發展이 있었다. 大規模施設들은 小規模住居施設로 나누어져서 일정한 한 장소에 같이 위치하거나 여러 지역에 分散되기도 하였다.

넷째, 다양한 保護 서비스의 分化가 있었다. 收容施設은 다목적 시설, 소규모 호스텔, 家庭形態의 그룹홈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收容施設을 대체하여 발전한 家庭委託의 경우에도 長期의 家庭委託, 短期의 家庭委託, 치료 목적 또는 專門的 特殊 家庭委託이 분화되어 발달하였다.

다섯째, 專門家主義가 發展하였다. 收容對象人口의 특성의 變化와 함께 兒童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專門的 接近方法이 적용되면서 收容人口 대비 전문가의 比率과 資格水準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兒童施設은 아직도 이직율이 높아 타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美國의 社會福祉施設의 發展過程도 위와 같은 점에서 英國과 유사한 점이 많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大規模 混合收容施設로부터, 對象人口別 分離施設과 小規模 住居施設로 발전하였다. 또한 一般 收容施設은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는 特殊 目的의 施設로 전환되었다.

施設保護에서 이른바 「轉換施設化」의 경향과 함께 주목되는 최근의 발전 경향으로는 生態學的 觀點과 家族參與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James K. Whittaker, 1995:455~6). 生態學的 觀點이란 施設保護의 성공은 현재의 문제나 제공되는 치료형태와 관련되기 보다는 治療後 地域社會環境에서 可用한 지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施設環境을 서비스 제공의 場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의 複合的인

相互作用으로 본다. 특히 배치 전후의 家族과 施設 프로그램과의 連繫를 강조한다. 그리고 施設保護를 실패한 家庭의 대안이 아니라 危機를 당한 家庭을 위한 일시적인 支援으로 강조한다. 이 觀點은 가정 중심적 프로그램과의 일련의 연속선 상에 施設保護를 두고 있으며, 父母訓練, 家族治療 등 家族의 參與를 격려한다.

한편, 日本의 경우에도 人口構造와 社會環境의 變化로 施設收容兒童의 人口가 감소하고 있으며, 靑少年期 兒童의 입소 증가, 단순한 養護兒童 보다는 非行이나 情緖障碍兒童, 가벼운 정신 및 身體障碍兒童의 入所 增加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家族에 대한 접근과 事後保護, 施設의 입소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供給體系로부터 地域社會에 기반을 둔 새로운 供給體系의 確立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은 英·美의 發展趨勢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후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 供給은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社會福祉서비스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이 차지하는 비중은 韓國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施設中心體制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단편적으로는 실현되어 왔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短篇的인 改善에만 의지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地域中心의 새로운 社會福祉 供給體系의 構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社會福祉 供給體系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이 어떠한 役割과 機能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社會福祉施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중심의 새로운 社會福祉서비스 供給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地域에 위치한 社會福祉施設을 그 계획에 참가시킨다고 하는 방침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역시 社會福祉施設이 중요한 役割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社會福祉施設體

系의 비중이 큰 것이다. 日本에서 社會福祉施設을 대체하는 家族과 地域社會 중심의 서비스 발전이 늦은 것은 폐쇄적인 家庭 中心의 儒敎的 文化와 傳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文化的 特性은 社會福祉施設 중심의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를 가지고 있는 韓國의 현실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兒童人口의 特性과 社會環境의 變化, 이에 따른 收容施設의 變化와 새로운 社會福祉서비스 발전의 이러한 趨勢는 현재 韓國의 單純收容施設 중심의 社會福祉서비스의 發展方向을 장기적으로 전망함에 있어 다양한 政策的 含意를 제공하고 있다.

韓國에서 과거 兒童福祉의 主流를 형성하였던 收容保護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家庭委託保護와 入養, 各種 在家서비스 등 家庭과 地域社會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장인협, 오정수, 1993:90), 새로운 형태의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의 發展을 위한 政策方案이 요청된다. 그러나 西歐의 文化的 傳統과 상이한 韓國의 社會文化的 特性을 고려할 때, 서구의 社會福祉서비스 體系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 韓國의 社會文化的 狀況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供給體系의 開發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旣存의 社會福祉施設과 地域社會를 連繫시켜 새로운 福祉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전략이 선진 각국의 經驗을 통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傳達體系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英國의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는 전통적으로 公共部門 중심의 中央執權的 體系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財政도 中央政府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傳達의 직접적인 책임은 다수의 公共社會事業家를 고용하고 있는 地方政府의 사회서비스국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福祉國家의 改革이 추진되면서 福祉多元主義

또는 福祉의 混合經濟라는 다원화된 社會福祉서비스 供給體系를 지향하고 있다. 收容施設의 경우에도 민간의 비영리, 영리조직들이 地方政府 사회서비스국과의 契約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어서 民間部門의 役割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地域社會 中心 서비스의 강조와 함께 收容施設의 機能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나, 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家庭과 地域社會 중심의 福祉서비스와 補完的 關係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機能을 가진 施設로 分化되어 발전하여 왔으며, 이러한 점은 韓國의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의 구축에 政策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傳統的으로 民間中心, 地方分權 體制가 그 특징이다. 1935년 社會保障法 제정 이후 聯邦政府의 개입이 확대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레이건-부시 行政部의 新聯邦主義(New Federalism) 政策으로 聯邦政府의 役割은 다시 약화되고 民間中心, 地方政府 中心의 役割이 강화되었다. 收容施設에서 民間中心의 傳達體系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는 민간중심인 동시에 準公共의 성격을 지닌 社會福祉法人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韓國의 현실과 특히 유사하다. 또한 福祉事務所가 각종 地域福祉서비스의 제공, 조언과 지도, 施設入所의 안내 등 중심적인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은 英美와 日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公共福祉서비스 傳達體系의 수립 과제를 안고 있는 韓國의 현실에 교훈이 되고 있다.

3. 運營體系의 評價와 政策的 含意

가. 目標와 機能

英國의 경우, 施設收容 對象人口의 減少로 兒童施設 전반에 운영상

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施設의 目的과 方向의 喪失, 정책과 운영의 缺陷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목적과 운영전반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韓國의 兒童收容施設에서도 對象人口의 減少로 이와 유사한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政策的 含意를 제공한다.

施設의 目標에 있어 父母를 잃은 一般兒童을 대상으로 한 長期收容의 目標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英國의 경우에는 이미 1950년대 이후 施設의 목표가 長期收容이 아닌 特殊한 欲求를 지닌 兒童과 治療 目的의 施設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長期收容으로부터 특수한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의 社會福祉施設의 目標 變化는 美國과 日本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경우에도 一般收容施設의 機能을 특수한 慾求에 대한 대응으로 목표를 전환하고 旣存의 施設의 機能을 전환하는 조치가 長期的인 전략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家庭委託과 入養 등 대체가정 서비스를 개발함에 兒童福祉서비스의 정책적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代替家庭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社會的 條件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收容施設은 당분간 社會的 與件이 성숙할 때 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機能의 變化와 대체 서비스의 開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專門人力

專門人力에 있어 英國의 경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非專門家의 고용 비중이 높고 施設職員의 사기저하 등의 현상은 韓國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것은 社會福祉人力의 供給體系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는 것으로 판단된다. 日本의 社會福祉 專門人力은 社會福祉士와 개호복지사로 구분되어 있고 職務와 役割이 상대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社會福祉士의 1-3급간 役割과 업무 분장이 없는 韓國의 경우에 社會福祉士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사회복지 專門人力 管理政

策의 조정이 요청된다. 美國의 社會福祉서비스 運營構造는 民間施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專門人力 면에서 施設職員은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專門性이 낮은 傾向을 보인다.

다. 財政構造

財政構造에 있어서 英·美의 經驗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施設運營을 위한 비용이 타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單位費用이 증가하는 현상은 緊縮財政 時代에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 韓國에서도 收容施設의 代替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財政 形態에서 契約購買는 美國의 경우 民間社會福祉施設이나 機關 運營의 지배적인 財政形態로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社會福祉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온 英國의 경우에도 公共部門에 의한 民間 서비스의 契約購買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경우는 公共 福祉서비스의 공급을 대행하는 民間 社會福祉法人에 대한 財政支援(措置委託費 등)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分擔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韓國의 경우에도 시설운영에서 公共財政의 效率性과 責任性에 대한 社會的 要求가 커지게 되면 일부 公共部門의 비영리 부문에의 委託이나 民間 營利部門을 활용한 서비스 契約購買의 導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純粹民間 部門 보다는 準公共部門의 성격을 갖는 社會福祉法人이 대부분의 供給主體인 韓國의 현실은 英·美 보다는 日本과 유사함으로 계약구매 방식 보다는 民間社會福祉法人에 대한 公共財政의 支援 形態를 계속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전달체계가 부재하고 民間 營利部門이 부재한 民間 非營利法人 중심의 兒童施設保護 分野에서는 현재의 「民間 社會福祉法人 運營-公共財政 支援」형태가 당분간 持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施設의 整備와 擴充

1980년대를 통틸어 英國, 美國과 더불어 日本은 소위 「新保守主義的 社會福祉改革」을 단행한 전형적인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시행된 政策과 노선은, 社會福祉支出의 삭감을 일차적인 目標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이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施設保護가 가지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理念으로서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施設保護에 소요되는 막대한 財政支出을 막아보자는 정부의도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일본 역시 이러한 政策의 일환으로 「在家福祉」(日本에서는 在宅福祉라는 용어를 사용함)를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그 在家福祉를 충실화할 수 있게 한 기반은 바로 충실한 社會福祉施設이었다는 것이 韓國의 狀況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최근 韓國에서도 政策的으로 在家福祉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社會福祉서비스 발전경향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韓國의 福祉現實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데에서 나온 발상이거나, 혹은 外國의 在家福祉의 本質에 대한 잘못된 理解의 發露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施設福祉와 在家福祉는 양자택일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在家福祉는 원래 施設福祉 일변도의 政策에서 脫皮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출현경위가 또한 在家福祉의 限界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즉, 그 限界란 在家福祉는 施設福祉를 기반으로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在家福祉 없는 施設福祉는 있을 수 있지만, 施設福祉 없는 在家福祉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양자의 관계이다. 그러나 최근의 韓國 社會福祉發展計劃에는 이 施設福祉의 충실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在家福祉의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社會福祉서비스에 있어서 砂上樓閣을 지으려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日本政府가 발표한 高齡者에 대한 대표적인 在家福祉對策이라고 할 수 있는 「高齡者保健福祉推進10個年計劃」(소위 골드플랜)의 내용을 보면 在家福祉의 기반이 충실한 社會福祉施設體系임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 計劃은 크게 나누어 在家福祉推進10個年計劃과 施設對策推進10個年計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6], 施設福祉對策은 고사하더라도 在家福祉推進對策의 내용도 ① 홈헬퍼 10만명, ② 短期收容 5만베드, ③ 晝間서비스센터 1만개소, ④ 재가개호지원센터 1만개소, ⑤ 살기 좋은 福祉共同體만들기사업의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內容은 「입소형 시설」이 아닐 뿐 거의 모든 내용이 「이용형 시설」의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在家福祉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社會福祉施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치와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이것은 兒童養育을 위한 在家福祉對策인 「엔젤플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韓國 社會福祉의 發展課題와 관련지어 본다면, 社會福祉施設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예를 들어, 日本에서 1979년에 실시한 養護學校教育義務化 措置와 같은 것을 장차 도입하게 된다면, 한꺼번에 많은 施設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對備가 절실한 것이다. 재론하지만, 日本의 社會福祉施設의 사정에서 얻을 수 있는 韓國의 政策的 含意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 바로 韓國 社會福祉施設의 긴급정비와 확충으로 판단된다.

마. 社會福祉施設과 地域葛藤問題의 解決

韓國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問

6) 시설대책은 ① 특별양호노인홈 24만 베드, ② 노인보건시설 28만 베드, ③ 케어하우스 10만 수용, ④ 과소(過疎)고령자생활복지센타 400개소를 10년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題중의 하나가 소위 地域葛藤問題로서, 그 내용은 해당 地域住民이 施設設立을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問題의 豫防이나 解決에 있어서 日本의 사정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住民이 자신들의 지역에 社會福祉施設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理由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그 施設의 設立에 의해 地域이미지 損傷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경우로, 住民의 福祉意識의 未成熟에 기인하며, 현재 韓國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特定 地域에 社會福祉施設이 집중되어 그에 대한 自治團體의 補助가 행해져서 주민의 부담이 무거워지게 됨을 우려하는 데에 기인한 葛藤이다.

이러한 葛藤들에 대해서는 社會福祉施設이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施設의 設備를 자유로이 利用하게 됨으로서 利益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그 弘報의 매개가 施設 자신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解決이 가능하다고 본다. 日本의 경우, 社會福祉施設이 地域과의 交流事業을 통하여 地域과의 連繫를 强化하게 된 데에는 물론 시설의 노력도 있었지만, 地域交流事業에 대한 政府의 補助金支援을 통해서였다. 政府는 현실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意識鼓吹라는 장기적인 事業의 目的意識을 가지고 社會福祉施設이 그 地域實情에 맞는 독자적인 地域交流事業을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財政支援을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에 社會福祉施設이 집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問題는 현재 日本에서도 중요한 잇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日本에서 1970년과 1985년간에 社會福祉施設의 增加指數는 전국평균 200이었는데, 東京 근처의 琦玉縣의 경우는 257으로 급증한 것, 그 중에서 老人福祉施設은 608, 身體障碍者更生援護施設은 650으로 급증하

면서 파생된 問題이다(古川孝順 外, 1993:23～24). 施設의 收容이나 반대가 自治團體長選擧의 爭點으로 된 경우조차 있다. 특히 正常化의 理念에 입각하여 施設의 規模가 작아지고 따라서 주택가에 입지하게 되면서 그만큼 住民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들은 施設의 適定配置와 住民에의 弘報를 통해서 解決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社會福祉施設이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사정을 생각할 때, 이 葛藤問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日本이나 各國의 事例들을 면밀히 分析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第 3章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現況

第 1節 社會福祉收容施設 및 收容者 現況

1. 施設의 種類 및 分布

가. 施設의 種類

社會福祉事業과 관련된 8개법[7]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총 52개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附表 3-1 참조). 이 중 16개 이용시설과 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1995년 10월 현재까지 아직 존재하지 않는 5개 시설을 제외하고, 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結核療養施設을 포함하면[8], 현재 운영되고 있는 社會福祉收容施設은 크게 나누어 8개 類型, 세분하여 26개 種類로 구분할 수 있다. 兒童福祉施設, 老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施設이 각각 6개 종류, 婦女福祉施設이 4개 종류로 세분화되고, 浮浪人(兒)善導施設은 成人施設과 兒童施設로 구분되며, 기타 精神疾患者療養施設, 結核療養施設 및 癩不具施設이 각각 1개 종류씩이다.

兒童福祉法상 兒童福祉施設의 종류는 11개이나, 이 중 兒童相談所,

---

7)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을 의미한다.

8) 부랑인(아)선도시설과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및 癩不具시설의 경우 별도의 대상별 근거법은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으며, 더구나 부랑인선도시설과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目的事業用 基本財産의 施設種類別 規模」기준에 열거된 시설종류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결핵요양시설은 그나마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채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兒童入養委託施設, 早産施設 및 兒童專用施設은 利用施設이고, 情緖障碍兒施設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5년 10월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는 施設로서, 이들을 제외하면 收容施設은 嬰兒施設, 育兒施設, 兒童一時保護施設, 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 自立支援施設의 6개 종류이다. 그러나 이들 6개 收容施設중 嬰兒施設과 育兒施設은 保護·養育이 施設의 목적으로 다만 3세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기능적으로 본다면 兒童福祉收容施設은 5개 종류에 불과하다. 嬰兒·育兒施設외의 施設은 保護·養育외에 각각 특수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진 施設이다. 一時保護施設은 家出兒, 浮浪兒 및 기타 要保護兒童을 일시 입소시켜 아동을 調査·鑑別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대책 및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職業輔導施設은 要保護兒童의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敎護施設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에 있는 아동의 善導가 목적인 施設이며, 自立支援施設은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 및 음식을 實費로 제공하여 自立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施設이다(兒童福祉法 施行令 第2條).

더욱 세분하자면 保護·養育이 목적인 施設로서 嬰兒施設 및 育兒施設외에 영·육아 綜合施設과 示範育兒院이 있으나, 이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분류이지 기능이 다른 것은 아니다. 즉, 영·육아 綜合施設은 嬰兒施設에서 양육되던 아동이 만 3세 이후에 다른 育兒施設로 轉院되지 않고 同一 施設내에서 住居 변동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施設이며, 示範育兒院은 농촌지역 育兒施設이 營農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施設兒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施設이다.

한편 兒童福祉法에 근거한 施設은 아니나 要保護兒童이 收容되어 있는 施設로서, 浮浪兒施設, 婦女善導保護施設, 母子保護施設, 母子自

立施設, 未婚母施設, 婦女一時保護施設, 障碍兒施設 및 精神疾患者療養施設이 있다[9]. 社會福祉事業法(第2條) 및 浮浪人善導施設運營規程에 설치근거를 둔 浮浪兒施設은 緣故者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입소대상으로서, 보호·선도가 목적인 시설이다. 入所對象이 育兒施設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용되는 이유는 육아시설 아동이 대부분 정규학교에 취학하여 施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반하여, 浮浪兒施設 아동의 경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性向이 있어 이들을 混合收容할 경우 다른 아동에게 미칠 수 있을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浮浪兒施設은 그 목적면에서 보면 敎護施設과 유사하다. 淪落行爲等防止法에 설치근거를 둔 婦女善導保護施設에는 少年法(第32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처분을 받은 자, 또는 要保護者중 여성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선도보호조치된 20세 미만의 자로서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받은 여성이 입소되고 있다. 따라서 동 시설 입소자의 연령기준이 兒童福祉法에 의한 법정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대신 '20세'이나, 이들 역시 少年法 상의 要保護兒童이다[10]. 사실상 兒童敎護施設이 남자시설인 반면 婦女善導保護施設은 여자 敎護施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母子福祉法에 설치근거를 둔 母子保護施設, 母子自立施設, 未婚母施設 및 婦女一時保護施設에는 어머니가 생활이 어렵거나, 자립이 어렵거나, 미혼여성으로서 임신·출산을 하였거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하여 가정에서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18세미만 아동들이 어머니와 더불

---

9) 일본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제2장 일본의 아동복지시설 참조).

10) 1995년 8월에 발생한 경기여자직업기술학원 방화사건 당시 동 시설수용자의 88%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음(박인화, 1995:2).

11) 전국 7개 교호시설 중 6개시설이 남자만 수용하며, 1개소는 94명 중 16명만이 여자임.

어 수용·보호되고 있다. 障碍兒施設은 障碍人福祉法에 근거한 施設로서 대부분 成人施設과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나 아동과 성인이 함께 혼합 수용되어 있는 곳도 있다. 또한 精神疾患者療養施設에도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

나. 施設의 種別 分布

1994년말 현재 社會福祉收容施設의 총수는 759개소이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76,723명이다. 총 759개 시설중 兒童福祉施設이 가장 많은 275개소로 36.2%를 차지하고, 다음은 障碍人福祉施設 160개소(21.1%), 老人福祉施設 140개소(18.4%), 精神疾患者療養施設 75개소(9.9%), 婦女福祉施設 62개소(8.2%), 浮浪人善導施設 42개소(5.5%)이며, 그리고 結核療養施設과 癩不具施設이 각각 2개소와 3개소이다. 수용인원을 보면 兒童福祉施設이 역시 가장 많은 19,214명이나 전체의 25.0% 밖에 되지 않으며, 다음은 精神疾患者療養施設 17,944명(23.4%), 障碍人福祉施設 13,936명(18.2%), 浮浪人善導施設 13,370명(17.4%), 老人福祉施設 7,962명(10.4%), 婦女福祉施設 3,410명(4.4%)의 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에서 浮浪人善導施設과 精神疾患者療養施設이 기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障碍人, 兒童, 老人 및 婦女施設의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은 각각 87명, 70명, 57명 및 55명이나, 浮浪人 및 精神疾患者療養施設의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은 각각 318명과 239명이다(表 3-1 참조). 大邱에 유일하게 소재한 浮浪人善導施設의 수용인원은 1,471명으로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兒童福祉施設 총 275개소 중에는 育兒施設이 217개소(78.9%), 嬰兒施設이 28개소(10.2%)로서 결국 保護·養育施設이 89.1%를 차지하고, 特殊目的을 가진 시설은 전국적으로 一時保護施設이 9개소, 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 및 自立支援施設이 각각 7개소씩 있을 뿐이다.

〈表 3-1〉 社會福祉收容施設 種別 現況('94. 12. 31. 現在)

(단위: 개소, 명, %)

시설종류	시설수(%)	수용자수(%)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계	759 (100.0)	76,723 (100.0)	101
아동복지시설	275 (36.2)	19,214 (25.0)	70
영아시설	28[10.2]	1,760[9.2]	63
육아시설	217[78.9]	16,079[83.7]	74
일시보호시설	9[3.3]	360[1.9]	40
아동직업보도시설	7[2.5]	321[1.7]	46
교호시설	7[2.5]	565[2.9]	81
자립지원시설	7[2.5]	129[0.6]	18
노인복지시설	140 (18.4)	7,962 (10.4)	57
무료양로시설	82	4,859	59
무료요양시설	35	2,345	67
실비양로시설	3	37	12
실비요양시설	14	437	31
유료양로시설	5	248	50
유료요양시설	1	36	36
장애인복지시설	160 (21.1)	13,936[1] (18.2)	87
지체장애인재활시설	33	3,122	95
시각장애인재활시설	11	642	58
청각·언어장애인재활시설	13	1,068	82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49	5,459	111
장애인요양시설	46	3,261	71
근로시설	8	384	48
부녀복지시설	62 (8.2)	3,410 (4.4)	55
모자보호시설	37	2,523[3]	68
부녀직업보도시설[2]	22	799	36
모자자립시설	3	88[4]	29
부랑인(아)선도시설	42 (5.5)	13,370 (17.4)	318
부랑인시설	33	11,105	336
부랑아시설	9	2,265	252
정신질환자요양시설	75 (9.9)	17,944[5] (23.4)	239
결핵요양시설	2 (0.3)	74 (1.0)	37
나환자시설	3 (0.4)	813 (1.1)	271

註: 1) 18세 미만 장애아 6,473명
2) 저소득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및 일시보호여성을 포함함.
3) 1,048세대(모: 845명, 아동: 1,648명, 노령부양자: 30명)
4) 66세대(모: 28명, 아동: 56명, 노령부양자: 4명)
5) 20세 미만 아동수는 0.2%로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임.

資料: 보건복지부, 각『시설 일람표』, 1995 및 내부 자료

수용아동수를 보면 총 19,214명중 育兒施設 아동이 16,079명(83.7%), 嬰兒施設 아동이 1,760명(9.1%)으로 보호·양육 목적의 시설아동이 92.8%를 차지하며, 나머지 시설아동은 7.2%밖에 되지 않는다.

이외에 浮浪兒善導施設에는 9개소에 2,265명의 아동이 생활하며, 婦女福祉施設에는 40개소에 1,704명의 아동이 생활하며, 障碍人(兒)福祉施設에는 전국적으로 117개소[12]에 6,473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精神疾患者療養施設에는 36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13].

다. 施設의 地域別 分布

社會福祉收容施設의 지역별 분포는 <附表 3-2>와 같다. 총 759개 시설중 13.6%인 103개 施設이 서울에 설치되어 있고, 11.7%인 89개 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10.1%), 경남(8.0%). 전북(7.1%). 전남(7.1%)등에 15개 市·道의 平均値인 50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兒童, 老人, 婦女, 障碍人福祉施設 등 대부분의 시설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 치중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精神疾患者療養施設은 서울에는 1개밖에 없는 대신 충남,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施設의 地域別 不均衡 現狀의 기준은 시설의 절대수만은 아니다. 地域別 人口比例가 또 다른 基準이 될 수 있다. 各 市·道의 人口比例로 볼 때 시설은 균형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에는 가장 많은 施設이 配置되어 있으나 전국 인구중 서울 인구비율인 24.0%에 비교하면 시설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京畿道의 경우도 역시

---

12) 총 160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43개소는 성인시설, 94개소는 아동시설, 23개소는 성인·아동 혼합시설이다.

13) 199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0세 미만 아동의 수는 0.2%에 불과하였다(남정자 외, 1994:89)

두번째로 많이 배치되어 있으나 京畿道 인구비율인 16.3%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외에도 人口比率보다 시설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仁川과 慶南地域이 있다.

地域別 不均衡 現狀은 시설의 세부종별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兒童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 兒童一時保護施設, 自立支援施設, 浮浪兒施設, 障碍人勤勞施設, 實費養老施設 및 母子自立施設은 시설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地域이 허다하며, 절대수가 많은 시설조차 일부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地域別 不均衡 現狀을 보인다(表 3-2 참조).

〈表 3-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細部種別 地域別 分布

(단위: 개소)

구분	아동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부녀시설			정신요양시설
	영아	육아	직보	교호	일시보호	자립	성인	아동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요양	근로	무료양로	무료요양	실비양로	실비요양	모자보호	모자자립	부녀직보	
계	28	217	7	7	9	7	33	9	33	11	13	49	46	8	82	35	3	14	37	3	22	75
서울	3	33	3	2	5	1	3	2	4	3	1	8	8	2	7	4	-	1	7	-	5	1
부산	3	19	1	1	1	1	1	2	6	1	2	5	2	1	6	2	1	1	6	1	4	10
대구	1	17	1	1	1	-	1	-	4	-	-	2	3	1	4	3	-	1	4	-	2	3
인천	1	7	1	-	-	-	1	-	2	1	1	2	1	-	2	1	-	1	1	-	1	1
광주	3	6	-	-	-	1	1	-	1	1	1	1	2	1	4	2	1	-	1	1	2	3
대전	1	10	1	1	-	1	1	1	1	1	1	1	1	1	2	1	-	1	1	-	1	4
경기	2	25	-	-	2	-	3	-	3	-	2	10	7	-	14	6	-	1	-	-	2	8
강원	2	8	-	-	-	-	4	-	1	-	-	2	2	-	3	1	-	-	1	-	2	1
충북	2	5	-	-	-	1	3	1	1	2	1	4	4	-	4	3	-	1	1	-	1	7
충남	-	15	-	-	-	-	1	-	2	-	-	2	3	-	5	2	-	1	1	-	1	12
전북	4	13	-	1	-	2	4	-	1	1	1	2	2	1	10	1	-	2	4	1	-	5
전남	2	18	-	1	-	-	3	2	2	1	1	2	3	-	5	4	-	2	2	-	1	4
경북	-	15	-	-	-	-	2	1	3	-	-	2	5	-	7	2	1	1	5	-	-	7
경남	3	22	-	-	-	1	4	-	2	-	2	5	3	-	5	1	-	1	2	-	-	8
제주	1	4	-	-	-	-	1	-	-	-	-	1	-	1	4	2	-	-	1	-	-	1

資料: 보건복지부, 각 시설 일람표, 1995 및 내부 자료

시설의 地域別 불균형 현상은 基礎自治團體 간 설치현황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총 230개 市·郡·區 중 21.7%인 50개 市·郡·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20.4%인 47개 市·郡·區에는 시설이 6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230개 市·郡·區 중 42.2%인 97개 市·郡·區에 시설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반면, 大邱 東區의 경우에는 育兒施設만도 5개가 설치되어 있고, 南區의 경우 育兒施設 4개와 영兒施設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育兒施設 4개와 職業輔導施設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1개구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附表 3-3 참조).

〈表 3-3〉 市·道別 市·郡·區 社會福祉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구분	시·군·구수	시 설 수							
		없음	1	2	3	4	5	6~10	11~15
서울	25구	1	7	3	3	3	4	4	-
부산	15구 1군	2	3	2	1	2	-	4	2
대구	7구 1군	-	-	2	-	2	-	3	1
인천	8구 2군	2	2	2	2	-	1	1	-
광주	5구	-	1	-	-	1	-	2	1
대전	5구	-	1	-	-	1	-	2	1
경기	18시13군	5	5	9	1	3	3	5	-
강원	7시11군	11	3	1	-	1	-	1	1
충북	3시 8군	3	2	-	-	2	2	1	1
충남	5시10군	3	2	1	4	1	1	3	-
전북	6시 8군	3	5	1	1	-	1	-	3
전남	6시18군	9	4	-	4	4	-	3	-
경북	10시13군	6	6	3	2	3	1	2	-
경남	10시11군	5	2	3	4	2	-	5	-
제주	2시 2군	-	-	2	1	-	-	1	-
계	230시·군	50	43	29	23	25	13	37	10
(%)	(100.0)	(21.7)	(18.7)	(12.6)	(10.0)	(10.9)	(5.7)	(16.1)	(4.3)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1994. 12. 31. 현재), 『노인복지시설현황』(1995. 6. 30. 현재), 『부녀복지시설현황』(1994. 12. 31.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1994. 12. 31. 현재), 『부랑인선도시설일람표』(1995. 5. 3. 현재). 한국정신요양협회,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일람표』(1995. 6. 30.현재).

이와 같은 시설 종별·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즉, 시설이 다수 분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과중한 地方費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타 지역 수혜자의 기피현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시설이 부재한 지역의 주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종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로 균형적인 시설 배치가 곤란할 경우 地域間 共助體制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年度別 施設 推移 및 需要 展望

앞으로의 시설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설수 추이를 보면, 兒童福祉施設은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老人 및 障碍人福祉施設은 시설수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현저히 증가하여 왔다. 精神疾患者 療養施設도 꾸준히 증가하여 오긴 했으나 최근들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浮浪人善導施設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婦女福祉施設은 연도별로 起伏이 있으나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表 3-4 참조).

人口構造의 變化로 인해 老人人口의 絶對數는 증가하고 있고, 産業災害나 交通事故 增加로 인해 障碍人도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의 약화로 인해 精神疾患者 또한 증가할 것이다. 반면 核家族化 등 家庭의 構造的 變化로 인해 이들 要保護者들의 가정내 부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在家福祉 및 地域社會福祉事業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등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아동인구수의 절대수 감소(附表 3-4 참조) 및 이에 따른 棄·迷兒의 발생률의 감소추세(附表 3-5 참조)로 인해

嬰兒 및 육아시설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政府의 脫施設化 및 地域福祉政策으로 인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증가추세(附表 3-6 참조)에 있고, 또한 政府의 海外入養政策의 지속으로 인해 입양아동수가 증가추세에 있어(附表 3-7 참조), 보호·양육 목적의 시설수요는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非行, 家出, 藥物濫用등 소위 문제를 가진 要保護靑少年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兒童相談所 및 社會福祉館 등의 利用施設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敎護施設 및 浮浪兒施設 등 특수기능의 兒童福祉施設의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렇게 要保護兒童의 성격이 변하고 있으므로 가령 家出센타, 藥物治療센타등 이에 대응하는 시설형태가 적극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

〈表 3-4〉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種別, 年度別 現況

(단위: 개소, 명)

시설종류	1965[1)]		1975[1)]		1985		1990		1992		1994	
	시설	수용자	시설	수용자	시설	수용자	시설	수용자	시설	수용자	시설	수용자
아동복지시설	532	62,736	374	34,862	282	25,424	278	23,450	278	21,293	275	19,214
노인복지시설	42	2,567	45	2,441	67	5,059	89	6,409	123	7,239	141	8,089
장애인복지시설	98	6,205	66	8,491	90	9,326	118	12,759	150	13,382	160	13,936
부녀복지시설	59	5,780	65	6,454	57	4,308	59	3,981	60	3,651	62	3,410
부랑인(아)시설	11	4,358	11	3,590	35	14,796	38	13,284	39	13,202	41	13,370
정신요양시설					47	10,719	74	17,432	74	17,665	75	17,944
결핵요양시설							2	160	2	80	2	74
나불구시설							2	970	3	900	3	813

註: 1) 1965년 및 1975년도에는 부랑아선도시설 및 신체장애아시설이 아동복리시설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표에서는 신체장애아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아시설은 부랑인(아)시설에 각각 분리 집계하였음.

2) ▨ 음영부분은 시설 및 수용자수 미상.

資料: 보건복지부, 각『시설 일람표』, 각 연도.
보건복지부,『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어떻든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兒童福祉施設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최근 시설아동수는 계속해서 감소함에도 시설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즉, 1990년도 이후 1994년까지 아동복지시설 및 수용아동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용아동수는 매해 1,000여명씩 감소하여 23,450명에서 19,214명으로 감소한데 비하여 시설수는 278개소에서 275개소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兒童福祉施設의 收容率이 그만큼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表 3-5 참조).

〈表 3-5〉 兒童福祉收容施設[1]의 種別, 年度別 現況

(단위: 개소, 명)

연도	영아시설[2]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합 계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당 아동수
1945					-	-	-	-	-	-	38		
1950					-	-	-	-	-	-	215		
1955					-	-	-	-	-	-	419	45,260	108
1960	42		430		-	-	-	-	-	-	472	53,304	113
1965	77	10,744	442	50,679	13	1,363	-	-	-	-	532	62,786	118
1970	74	7,636	430	42,155	19	1,710	-	-	-	-	523	51,501	98
1975	37	3,673	313	29,323	24	1,866	-	-	-	-	374	34,862	93
1980	34	2,477	253	20,908	16	1,246	-	-	-	-	303	24,631	81
1985	35	2,736	233	21,697	11	994	2	146	-	-	282[3]	25,624[3]	91
1990	38	2,388	223	20,147	7	444	7	415	3	56	278	23,450	84
1991	38	2,326	221	19,007	7	429	9	489	4	76	279	22,327	80
1992	38	2,240	219	18,046	8	430	8	483	5	94	278	21,293	77
1993	38	2,260	218	16,914	8	346	7	545	7	129	278	20,194	73
1994	37	2,120	217	16,079	7	321	7	565	7	129	275	19,214	70

註: 1) 과거 아동복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浮浪兒시설, 신체장애아시설 및 탁아시설 등 제외.
2) 일시보호시설 포함.
3) 신체허약아시설 1개소 51명 포함.
4) ▭ 음영부분은 시설 및 아동수 미상

資料: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 각 연도

실제로 현재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現員은 定員의 7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仁川지역의 收容率이 76.6%로 가장 높은 편이고, 釜山과 慶南지역은 收容率이 각각 67.0%로서 가장 낮다. 시설 종별로 보면 敎護施設의 收容率이 88.3%로서 가장 높으며, 一時保護施設의 수용율은 51.0%로서 가장 낮다. 시설 종별·지역별로 보면, 嬰兒施設의 경우 서울은 收容率이 100%가 넘으나 대전은 36.4%로서 큰 차이가 있으며, 育兒施設은 인천이 82.8%이나 부산은 65.0%이다. 一時保護施設의 경우 京畿지역은 98.0%에 이르나 서울은 37.4%이다. 職業輔導施設의 경우 부산의 동부산공업고등기술학교는 정원은 240명에 현원이 560명으로서 233.3%의 收容率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타 시설의 收容率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정도도 되지 않는다. 敎護施設은 부산과

〈表 3-6〉 兒童福祉收容施設의 別·地域別 收容率(1994年末 現在)

(단위: 명, %)

구 분		영 아	육 아	일시보호	직업보도	교호시설	자립지원	계
수용정원		2,499	22,527	706	607	640	214	27,193
수용현원		1,849	15,990	360	321	565	129	19,214
수용율(%)	계	74.0	71.0	51.0	52.9	88.3	60.3	70.7
	서 울	104.5	69.1	37.4	76.1	81.4	81.8	69.5
	부 산	67.0	65.0	74.7	(233.3)	117.5	45.2	67.0
	대 구	66.1	73.6	-	36.2	52.9	-	71.2
	인 천	86.7	82.8	-	32.5	-	-	76.6
	광 주	80.8	70.1	-	-	-	63.3	72.1
	대 전	36.4	71.6	-	42.9	121.3	66.7	70.6
	경 기	56.0	72.6	98.0	-	-	-	72.8
	강 원	50.0	79.2	-	-	-	-	72.1
	충 북	71.4	65.6	-	-	-	76.7	67.7
	충 남	-	70.7	-	-	-	-	70.7
	전 북	65.3	68.8	-	-	94.0	66.7	69.5
	전 남	72.0	77.8	-	-	44.0	-	76.1
	경 북	-	71.4	-	-	-	-	71.4
	경 남	87.5	65.8	-	-	-	20.0	67.0
	제 주	46.7	75.8	-	-	-	-	73.7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일람표』, 1995에서 재구성함.

대구는 100%가 넘으나 大邱와 全南지역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自立支援施設은 서울, 大田, 全北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부산과 경남지역은 施設 활용율이 매우 낮으며, 특히 경남지역은 20%도 안되는 실정이다(表 3-6 참조).

收容率의 저하 현상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종별로 수용률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떻든 수용률의 저하는 시설의 설비 및 자원의 낭비를 의미하므로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保健福祉部는 嬰兒 및 育兒施設의 경우 과거 3년간 수용아동이 계속 30인 미만의 시설이나 수용현원이 정원의 1/3에 미달되는 시설로서 ① 同一 管內에 要保護兒童 發生趨勢에 비하여 2개 이상의 시설이 있어 정원확보가 어려운 시설(1개 市·郡 1개소 原則) ② 法人의 지원이 미약하여 재정적 운영기반이 부실한 시설 ③ 從事者의 시설아동에 대한 犯法行爲 또는 불법적, 비합리적 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정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시설을 폐쇄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복지수요가 많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兒童專用施設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保健福祉部, 1995:91)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政府 방침에 대해 많은 시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미 시설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第 2節 社會福祉收容施設의 財政體系

1. 運營 財源

社會福祉收容施設의 運營財源은 政府補助金, 自體收入, 民間支援金 및 外援으로 이루어지나, 주된 재원은 政府補助金이고, 그 이외의 재

원은 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외원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주된 재원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지금은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表 3-7 참조).

〈表 3-7〉 兒童福祉收容施設 運營財源 構成比

(단위: %)

구분	정부보조	자체수입	민간지원	외원	기타	합계
1965[1)]	15.5	13.2	-	64.0	17.3	100.0
1967[1)]	26.2	15.8	-	51.0	7.0	100.0
1974[2)]	45.0	15.0	-	29.0	8.0	100.0
1977[3)]	43.2	14.5	9.6	27.6	5.1	100.0
1981[4)]	62.6	12.9	15.4	5.7	3.4	100.0
1990[5)]	65.0	15.8	12.0	-	7.2	100.0
1993[6)]	70.0	18.0	9.2	-	2.8	100.0
1994[7)]	74.4	13.7	0.5	1.4	-	100.0

註: 1) 보건사회부 자료. 2) 기획조정실 자료. 3) '78 표본조사 자료
4) '81 서울시 조사자료

資料: 1) 2) 3) 4) 장인협 · 김정기, 「아동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 『사회정책연구』 제1집, 1982, p.178
5)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사회개발원,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 1991, p.27
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인건비 제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993, p.6
7)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육아시설에 한함)

가. 政府補助金

社會福祉事業法, 生活保護法, 복지대상별 4개법 및 淪落行爲等防止法에는 각각 '補助金', '補助費用' 및 '補助費用의 負擔區分', '費用補助', 또는 '費用負擔'의 조항을 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政府補助內容과 方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의하면 시설의 운영과 수용자의 양육 · 보호 · 관리에 요하는 비용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 비용에 대해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들 법에 의거하여 政府는 우선, 시설수용자의 生計費, 醫療保護費, 그리고 中學生과 實業界 高校生의 授業料 및 入學金을 生活保護費로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 종사하는 人力의 人件費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管理運營費는 시설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90%를 지원하고 있다. 즉, 浮浪人善導施設, 婦女職業輔導施設, 障碍人福祉施設의 경우는 政府에서 100%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政府에서 90%를 지원하고 10%는 法人이 자체부담하고 있다. 이외에 시설의 增築·改築·新築費와 시설의 裝備補强費를 政府가 전액 보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政府補助金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生活保護費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의 경우 서울은 50:50으로 분담하고, 他 市·道는 財政自立度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80:20(結核療養施設은 70:30)으로 분담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他 道의 地方費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道에서 10% 이상, 당해 市·郡이 10% 이하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表 3-8〉 國庫補助金事業遂行指針에 의한 社會福祉收容施設 財源負擔 比率

(단위: %)

구 분	국고	지방비	법인자부담
생활보호비: 생계비, 의료보호비, 교육보호비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80(50)	20(50)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 부랑인, 부녀직업보도, 장애인시설	80(50)	20(50)	-
- 아동, 부랑아, 노인, 모자보호, 정신요양, 나불구시설	72(45)	18(45)	10
- 결핵요양시설	63	27	10
시설 증·개·신축비	50(50)	50(50)	-

註: ( )는 서울

한편 시설의 增築·改築·新築費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50:50으로 분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國庫補助金事業指針에 의한 社會福祉收容施設의 소요경비 재원 부담 내역은 <表 3-8>과 같다. 이와 같이 國庫와 地方費 부담비율이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어떻든 政府는 사회복지시설 소요비용의 90%이상을 보조하려는 原則을 가지고 있다.

나. 社會福祉法人 自體收入

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 第12條에 의하면, 社會福祉法人은 연간 운영경비(法人 및 法人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資産形成的 經費와 生活保護法의 규정에 의한 生計保護費를 제외한 경비)의 20/10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條項은 社會福祉事業法 제정당시 시설 운영경비의 20/100 이상을 法人이 자체부담토록 하고 이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法人設立 許可基準에 收益事業用 基本財産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社會福祉事業法 制定 이전의 시설들은 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外國援助를 주된 財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기존 재단법인들이 社會福祉法人으로 바뀌어졌으나 이들은 당초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이외에는 收益事業用 基本財産이나 기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형편으로서, 法人이 自體負擔分을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1988년부터는 管理運營費의 자부담율은 20%로 유지한 채 인건비의 自負擔率을 10%로 하향 조정하였고, 1994년부터는 浮浪人善導施設, 婦女職業輔導施設, 障碍人福祉施設의 경우 인건비, 시설 관리운영비 자체부담분이 일체 폐지되었으며, 兒童施設 및 老人施設의 경우 관리운영비 자부담율을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10% 부담조차도 法人의 자체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것이 시설협회 측의 주장이다[14].

이처럼 施設運營費 自負擔比率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20% 자부담 규정은 死文化되었으며, 이에 따라 收益事業用 基本財産 소유규정도 현실과 괴리된 채 法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많은 法人을 法律違反者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 民間支援金

民間支援金은 민간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한다. 民間機關이나 團體의 寄附金은 기업, 공공기관,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새마을부녀회, 동호회, 친목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個人後援金은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後援團體나 個人은 시설을 전체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으나, 시설의 特定兒童과 결연하여 후원하기도 한다. 後援團體나 個人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韓國福祉財團[15]의 結緣事業에 의해 연결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後援金은 機關·團體이건 個人이건 施設을 전체적으로 支援하며, 그 비용을 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 반면 韓國福祉財團의 結緣事業에 의한 後援金은 특정아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結緣兒童別로 預金口座를 개설, 적립하여 퇴소시 自立支援金으로 주거나, 부득이 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結緣

---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예산대책위원회, 1996년 사회복지시설 법인 자부담문제 예산요구 건의서

15) 한국복지재단은 정부위탁으로 시설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아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결함 및 빈곤가정아동, 모자세대, 거택보호자 등을 위한 후원·결연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1995년도에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한국복지재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兒童의 養育에 필요한 直接費로만 사용한다. 또한 後援金의 일부를 특별영양급식, 소풍경비 등 시설 전체아동을 위한 공동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事前措置後 가능하다. 社會福祉法人·施設 寄附金 管理運營指針에 의하면 後援金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施設運營者의 意志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施設에서 자체적으로 성금을 접수할 경우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16].

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財政規模

가. 國庫補助金 豫算

社會福祉收容施設 운영을 위해 中央政府에서 투입하고 있는 國庫補助金 규모를 보면, 1995년도 총 예산규모가 1,633億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8.2%, 국가예산의 0.33%에 해당된다. 1995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1% 증액되긴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오히려 그 구성비율은 감소하였다.

---

16)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중 연구자들은 후원금 관리운영상태가 시설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시설에서 현물기부(옷, 간식, 위생대, 油類 등)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실하였으며, 일부시설에서는 현금조차도 기록에서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들어온 후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었다. 일부시설은 결연아동별 구좌를 개설하여 입금시킨 후 가능하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P시 S원), 일부시설은 관리의 효율상 아동별로 은행구좌를 개설하지는 않았으나 시설내에 아동별 장부를 비치하고 아동이 원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용돈, 친구생일선물비, 고급운동화 구입비)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반면(K도 A원), 일부시설은 아동별 은행구좌는 물론 아동별 장부도 없이 시설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S시 K원, K도 A원).

〈表 3-9〉 社會福祉收容施設에 대한 國庫補助金 豫算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GNP[1]	152,630,000	198,472,000	235,880,000	266,540,000	297,635,100	339,529,000
국가예산[2]	27,455,733	31,382,261	33,501,729	38,050,000	43,250,000	49,987,900
(GNP대비)	(21.01)	(15.81)	(14.20)	(14.27)	(14.5)	(14.7)
보건복지부	1,151,823	1,462,885	1,546,233	1,665,932	1,771,859	1,983,896
(국가예산대비)	(4.20)	(4.67)	(4.65)	(4.27)	(4.10)	(3.97)
생활보호	235,104	256,523	261,020	268,671	264,377	301,383
(보건복지부대비)	(20.41)	(17.54)	(16.88)	(16.13)	(14.92)	(15.19)
의료보호	151,285	172,980	193,366	221,021	263,678	292,416
(보건복지부대비)	(13.13)	(11.82)	(12.51)	(13.27)	(14.88)	(14.74)
보건교육·질병관리	57,368	48,223	56,032	49,892	67,528	83,462
(보건복지부대비)	(4.98)	(3.30)	(3.65)	(2.99)	(3.81)	(4.21)
사회복지서비스	119,639	144,619	191,686	227,486	212,753	267,229
(보건복지부대비)	(10.39)	(9.89)	(12.40)	(13.66)	(12.01)	(13.47)
사회복지시설[3]	89,770	96,901	105,418	115,718	149,706	163,335
(보건복지부대비)	(7,79)	(6.62)	(6.82)	(6.94)	(8.44)	(8.23)
아동복지시설	27,535	29,883	31,871	33,305	40,237	41,083
(사회복지시설대비)	[30.7]	[30.8]	[30.2]	[28.8]	[26.9]	[25.1]
노인복지시설	7,775	8,533	9,742	13,489	18,730	17,603
(사회복지시설대비)	[8.7]	[8.8]	[9.2]	[11.6]	[2.5]	[10.8]
부녀복지시설	4,399	4,284	4,778	4,945	11,075	7,456
(사회복지시설대비)	[4.9]	[4.4]	[4.5]	[4.2]	[7.4]	[4.5]
장애인복지시설	23,707	24,702	28,441	31,218	44,145	48,136
(사회복지시설대비)	[26.4]	[25.5]	[27.0]	[27.0]	[29.5]	[29.5]
부랑인복지시설	10,736	12,055	13,516	14,442	13,943	20,190
(사회복지시설대비)	[12.0]	[12.5]	[12.8]	[12.5]	[9.3]	[12.4]
정신요양시설	14,818	16,346	15,873	17,327	20,414	27,618
(사회복지시설대비)	[16.5]	[16.9]	[15.1]	[15.0]	[13.6]	[16.9]
결핵요양시설	112	124	134	89	103	135
(사회복지시설대비)	[0.1]	[0.1]	[0.1]	[0.1]	[0.1]	[0.1]
나불구시설	688	974	1,063	903	1,059	1,114
(사회복지시설대비)	[0.7]	[1.0]	[1.1]	[0.8]	[0.7]	[0.7]

註: 1) GNP는 경상가격에 기준함.
2) 국가예산은 일반회계예산만을 의미함.
3)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중 生活保護,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질병관리 예산에 분산되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모아 합산하였음.

資料: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각 연도

시설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예산중 障碍人福祉施設예산이 481億원(29.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兒童福祉施設 411億원(25.1%), 精神疾患者療養施設 276億원(16.9%), 浮浪人善導施設 202億원(12.4%), 老人福祉施設 176億원(10.8%), 婦女福祉施設 75億원(4.5%), 癩不具施設 11億원(0.7%), 結核療養施設 1億원(0.1%) 등의 순이다(表 3-9 참조).

나.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社會福祉收容施設 總豫算

1) 總豫算

국고보조금사업 수행지침에 의거 國庫補助金 豫算에 대응한 地方政府 예산규모는 1995년도에 年間 680億원이며, 法人 自體負擔 예산규모는 67億원으로서, 國庫補助金, 地方費 및 法人 自體負擔分을 모두 합산한 '95년도 社會福祉收容施設의 총 예산 규모는 2,381億원에 달한다[17]. 결과적으로 國庫, 地方費 및 法人 自體負擔費 분담비율은 68.6%, 28.6%, 2.8%으로 나타났다. 이 중 兒童福祉施設의 총 예산 규모는 591億원으로서, 國庫 411億원(69.5%), 地方費 146億원(24.7%), 法人自負擔 34億원(5.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社會福祉收容施設 총 예산규모의 1/4을 차지한다. 國庫補助金과 자부담 비율은 시설 전체 평균에 비해 높으나 地方費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表 3-10 참조).

사회복지시설의 총 예산규모를 가지고 1個 施設當 豫算 및 收容者 1人當 豫算을 추산해 볼 수 있다. 1995년도 예산상 총 743개소의 시설에 77,631명의 수용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18], 사회복지시설 전체

17) 이 금액은 시설종별 및 지출항목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자체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18) 1995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시설 및 수용자수임.

로 볼 때 1개 시설당 예산규모는 평균 3.2億원이며, 兒童福祉施設은 이보다 적은 2.2億원이 된다. 또한 수용자 1인당 규모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볼 때, 평균 약 307萬원이 되며, 兒童福祉施設은 299萬원이다(表 3-10 참조). 그러나 이 규모는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예산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각 市·道別로 시설에 추가지원되는 地方費(附表 3-11, 3-12, 3-13 참조)와 시설별 민간지원금을 합산하면 시설당 및 수용자 1인당 비용은 약간은 상승할 것이다.

〈表 3-10〉 國庫補助金事業遂行指針에 의한 財源負擔別 社會福祉收容施設 總豫算, 施設當 및 收容者 1人當 平均豫算(1995)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량[1]		총예산				시설당 평균 예산	수용자 1인당 평균예산
	시설수	수용자수	계	국고	지방비	법인 자부담		
사회복지시설	743	77,631	238,079 (100.0)	163,335 (68.6)	67,999 (28.6)	6,745 (2.8)	320	3.07
결핵요양시설	2	74	201 [0.1]	135 (67.2)	52 (25.9)	14 (6.9)	101	2.72
나불구시설	3	837	1,502 [0.6]	1,114 (74.2)	307 (20.4)	81 (5.4)	501	1.79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76	18,168	40,674 [17.1]	27,618 (67.9)	11,600 (28.5)	1,456 (3.6)	535	2.24
부랑인(아)시설	42	13,269	28,156 [11.8]	20,190 (71.7)	7,807 (27.7)	159 (0.6)	670	2.12
장애인복지시설	161	13,981	69,487 [29.2]	48,136 (69.3)	21,351 (30.7)	-	432	4.97
노인복지시설	122	7,473	26,722 [11.2]	17,603 (65.9)	7,768 (29.1)	1,351 (5.0)	219	3.58
아동복지시설	269	19,752	59,141 [24.8]	41,083 (69.5)	14,627 (24.7)	3,431 (5.8)	220	2.99
부녀복지시설	68	4,077	12,196 [5.1]	7,456 (61.1)	4,487 (36.8)	253 (2.1)	179	2.99

註: 1) 사업량은 1995년 정부에서 예산지원 예정인 수

資料: 보건복지부, 『1995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 支出項目別 豫算

총 2,381億원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중 從事者人件費에 소요되는 예산이 940億원(39.5%)으로 가장 많고, 生活保護費 693億원(29.1%), 建物 增·改·新築 및 裝備補强費 454億원(19.0%), 一般保護費 149億원(6.3%), 施設管理運營費 145億원(6.1%) 등의 순이다.

〈表 3-11〉 支出項目別 社會福祉收容施設 豫算(1995)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량		계	생활보호비			일반[4] 보호비	시설[5] 관리 운영비	종사자[6] 인건비	건물[7] 증·개·신축 및 장비 보강비
	시설수	수용자수		생계비[1]	의료[2] 보호비	교육[3] 보호비				
사회복지시설	743	77,631	238,079 (100.0)	50,964 (21.4)	12,846 (5.4)	5,525 (2.3)	14,899 (6.3)	14,486 (6.1)	94,006 (39.5)	45,353 (19.0)
결핵요양시설	12	74	201	49	13	-	-	32	107	-
나불구시설	3	837	1,502	550	141	-	157	229	425	-
정신요양시설	76	18,168	40,674	11,927	3,764	-	-	3,921	10,639	10,423
부랑인(아)시설	42	13,269	28,156	8,711	5,434	572	1,173	1,431	7,046	3,789
장애인복지시설	161	13,981	69,487	9,178	1,246	1,002	5,246	3,198	33,893	15,724
노인복지시설	122	7,473	26,722	4,906	1,400	-	1,355	1,911	10,246	6,904
아동복지시설	269	19,752	59,141 (100.0)	12,966 (21.9)	655 (1.1)	3,386 (5.7)	6,559 (11.1)	3,130 (5.3)	27,538 (46.6)	4,907 (8.3)
부녀복지시설	68	4,077	12,196	2,677	193	565	409	634	4,112	3,606

註: 1) 시설보호비 총 예산을 수용자수 비례로 배분함.
2) 의료보호비 총 예산을 '94년도 의료보호 수진실적율을 적용하여 배분함.
3) 교육보호비 총 예산을 인원수 비례로 배분함.
4) 특별·영양급식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직업·교육재활사업비(장애인), 직업·영농훈련비(아동, 부녀직보), 자활비(부랑인), 학용품비·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아동·부랑아, 모자, 장애아), 교통비·교복비(아동·부랑아), 미혼모 특수치료비(부녀직보), 수술비(나불구) 등 생활보호비 외에 수용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직접비를 포함한다. 의약품비와 위생대·위생재료비 또한 직접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설관리운영비에 포함시켰음.
5)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위생대·위생재료비를 포함함.
6) 기본급 및 제수당, 의료보험·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함.
資料: 보건복지부, 『1995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일반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총 591億원중 從事者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275億원(46.6%)으로 역시 가장 많고, 生活保護費 170億원(28.8%), 일반보호비 66億원(11.1%), 건물 증·개·신축 및 장비보강비 49億원(8.3%)등의 순이다. 따라서 生活保護費와 一般保護費를 합산한 直接費는 39.9%가 되며, 나머지 60.1%가 間接費이다.

3. 政府補助金 支給內譯 및 支給方式

가. 政府補助金

1) 直接費 內譯

政府가 施設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내역중 우선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직접비)을 보면 <表 3-12>와 같다. 우선 生活保護費로서 主食費, 副食費, 燃料費, 被服費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月額으로 환산하면 55,839원 정도이다. 또한 葬儀費로서 유사시에 구당 300,000원이 지급된다. 敎育保護費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해당 學齡兒童을 위해 180,000~550,000원의 범위에서 전액 지급되며, 醫療保護가 유사시 현물로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비용을 월액으로 합산하면 1인당 72,000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社會福祉收容施設 收容者의 生活保護費로서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月 72,000원의 生活保護費가 모든 수용자에게 꼭같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며, 앞의 <表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計費는 수용자수에 거의 비례하지만, 醫療保護費는 浮浪人(兒)施設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며, 敎育保護費는 兒童福祉施設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2〉 社會福祉收容施設 收容者의 直接費 支援 內容

항목		'95	'94	'93	비 고
생계보호	쌀(인/일)	456g	456g	456g	전 사회복지수용시설 공통
	보리쌀(인/일)	114g	114g	114g	
	부식비(인/일)	1,020원	820원	700원	
	연료비(인/일)	55원	50원	50원	
	피복비(인/년)	49,790원	49,790원	49,790원	
	장의비(구당)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교육보호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전 사회복지수용시설 공통[1]
	- 중학생	330~370천원	318~325천원	160~284천원	
	- 고교생	180~550천원	199~596천원	208~521천원	
의료보호		1종보호	1종보호	1종보호	전 사회복지수용시설 공통[2]
월환가액		72,000원	64,714원	56,881원	
일반보호 『추가』	영양급식비(인/년) (365일/년)				아동·부랑아, 노인, 장애인시설 공통
	- 영·육아(6세이하)	182,500원	146,000원	127,750원	
	- 육아(7-14세)	182,500원	104,390원	91,250원	
	학용품비(인/년)				아동·부랑아, 장애아, 모자보호시설 공통
	- 국교생	15,972원	14,090원	13,650원	
	- 중학생	26,917원	23,740원	23,000원	
	- 고교생	28,138원	23,840원	23,100원	
	중·고생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인/년)	60,000원			
	중·고생교통비(인/년) (240일/년)	96,000원	86,400원	72,000원	아동·부랑아시설
	교복비(인/년)				
	- 중학생	90,000원	90,000원	90,000원	
	- 고교생	110,000원	110,000원	11,000원	
환가액(인/월)		21,000원	20,122원	17,067원	아동·부랑아시설
총 환가액(인/월)		93,000원	84,836원	73,948원	아동·부랑아시설

註: 1) 교육보호비가 전 사회복지수용시설 공통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지출되는 시설은 아동, 부랑아, 장애아 및 모자보호시설에 국한된다.

2) 의료보호비 또한 시설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다. '94년도 의료보호비 사용실적에 따르면 부랑인(아)선도시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이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資料: 보건복지부, 각년도 각시설 지침

이 외의 一般保護費는 시설 종별에 따라 상이한데, 우선 兒童·浮浪兒 施設(14세 이하만), 老人施設 및 障碍人施設의 경우 수용자의 영양급식비가 지급된다. 兒童·浮浪兒, 障碍兒 및 母子保護施設의 경우, 해당 학령아동이 있을 경우 初·中·高校生 학용품비와 中·高校生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가 지급되며, 兒童·浮浪兒施設의 경우 中·高校生에게 교통비와 교복비가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兒童福祉施設 및 浮浪兒保護施設의 경우 일반보호비를 월액으로 환산하면 21,000원이 된다.

따라서 생계비, 교육보호비, 의료보호비 및 일반보호비 등 시설아동에게 직접 사용되는 直接費用은 총 월 93,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兒童職業輔導施設 및 營農育兒施設의 경우에는 職業訓鍊을 위한 실습재료비와 실습운영비 및 영농훈련비를 각각 지급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또한 뒤에 언급될 市·道別로 아동에게 추가지원되는 직접비(附表 3-11 참조)를 고려한다면 아동에게 소요되는 직접비는 市·道別로 그 액수는 상이하겠으나 약간 상승될 것이다.

2) 間接費 內譯

가) 管理運營費

政府의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따른 관리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건물유지비가 시설규모 및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m^{2}당 연간 503원~1,847원이 전 시설에 공통으로 지급되고, 公共料金, 收容經費가 수용인당 각각 년간 16,210원, 24,850원씩 전 시설 공통으로 지급된다. 煖房燃料費는 4인당 1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4인당 1일 1,744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난방일수가 嬰兒施設 및 老人·障碍人·精神疾患者療養施設은 년간 180일, 兒童·浮浪兒 및 結核療養·癩不具施設은 150일간, 그리고 기타 浮浪人·婦女施設은 110일간 지급되어, 결국 施設 종류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醫藥品費 또한 施

設 종별로 달라, 兒童施設의 경우 년간 1,920원에서 結核療養施設의 경우 219,870원 까지 다양하게 지급된다. 車輛維持費 및 圖書購入費가 전 시설 공통으로 시설당 연간 1,672,000원 및 220,000원이 지급되며, 위생대의 경우 시설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되어, 嬰兒施設의 경우 아동당 월간 2,057원이 지급되고 老人療養施設의 경우 월간 4,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社會福祉收容施設에 지급되는 관리운영비 내역은 <附表 3-8>과 같다.

예를 들어 20년된 시설로서 兒童施設의 평균아동수인 70명을 수용하고 있는 育兒施設의 월평균 관리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896,998원이 되며, 이를 아동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12,814원이 된다(表 3-13 참조).

〈表 3-13〉 育兒施設의 月平均 管理運營費[1)]

예산항목	내 역(원)	
건물유지비	1,464원 × 877.8m2)÷ 12월	= 107,092
공공요금	16,210원 × 70명 ÷ 12월	= 94,570
수용경비	24,850원 × 70명 ÷ 12월	= 144,970
난방연료비	1,744원 × 70명/4 × 150일 ÷ 12월	= 381,500
의약품비	1,920원 × 70명 ÷ 12월	= 11,200
차량유지비	1,672,000원 ÷ 12월	= 139,333
도서구입비	220,000원 ÷ 12월	= 18,333
계		896,998

註: 1) 수용아동 70명, 신축후 20년 건물 기준
2) 시설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소유규정에 의하면, 아동 7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77.8m^2(12.54m^2×70명)의 시설을 소유해야 함.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현원은 정원의 70%인 점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 보다는 관리운영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됨.

나) 人件費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 및 사회복지시설 職員報酬規程에 의한 1995년도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 우선 基本給이 근무연수에 근거한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附表 3-9 참조), 期末手當이 기본급의 100%씩 연간 4회 지급되며, 정근수당이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급의 50~100%씩 년간 2회 지급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우선 福祉手當이 기본급의 20% 지급되는 외에, 長期勤續手當이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호봉에 따라 40,000~80,000원, 家計補助手當이 시설장, 총무, 의사를 제외한 전 종사자에게 20,000원, 特殊職 勤務手當이 일부 해당 종사자에게 20,000원~30,000원, 家族手當이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 1인당 10,000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종사자 給食費가 보육사, 세탁부, 취사부, 경비원 등에게 1인당 1일 2,500원씩 240일간 지급되고 있다(附表 3-10 참조).

〈表 3-14〉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月 俸給 水準

구분 (기준호봉)	시설장 (9)	총무 (7)	생활지도 교사(4)	보육사 (3)	간호사·영양사 (2)	취사부·세탁부 (4)
합계	1,053,000	890,000	711,000	634,000	645,000	593,000
기본급	587,000	496,000	409,000	345,000	385,000	294,000
수당	466,000	394,000	302,000	289,000	260,000	299,000
상여금(기말수당)	196,000	165,000	136,000	115,000	128,000	98,000
정근수당	93,000	70,000	44,000	35,000	35,000	52,000
복지수당	117,000	99,000	82,000	69,000	77,000	59,000
장기근속수당	40,000	40,000		-	-	-
가계보조수당	-	-	20,000	20,000	20,000	20,000
특수직근무수당	-	-	-	-	-	-
가족수당*	20,000	20,000	20,000	-	-	20,000
종사자급식비	-	-	-	50,000	-	50,000

註: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교사, 취사·세탁부는 2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이러한 基本給과 手當을 고려하여 육아시설 종사자 봉급을 직책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19], 施設長은 月平均 1,053,000원, 總務 890,000원, 생활지도교사 711,000원, 간호사 · 영양사 634,000원, 보육사

645,000원, 취사부 · 세탁부 593,000원이 된다(表 3-14 참조)[20]. 이와 같은 報酬水準의 劣惡性은 시설의 여러가지 문제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專門性 및 자질있는 인력을 유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나. 市·道別 追加支援金

1) 直接費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政府支援金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각 市 · 道는 자체적으로 직접비 및 간접비를 부가적으로[21]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각 市 · 道別로 그 내용과 액수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직접비중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지원하는 학비를 경기, 충남, 광주, 제주에서는 액수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人文系 學費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을 서울, 전북 및 전남에서는 초 · 중 · 고생에게, 인천과 광주에서는 중 · 고생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市·道에서는 도시락반찬비, 참고서구입비, 수학여행비, 夏季修鍊會費, 大學入學金, 成長兒童 結婚祝賀金, 成長兒童 技能委託敎育費, 아동간식비, 특별부식비, 명절특별부식비, 특별피복비, 학습재료비, 전통예절교육비, 기술교육비, 교복비, 신발구입비, 중고생장학금, 입학축하기념품, 학생회비 등의 명목으로 施設에 追加

19) 보건사회부의 1991년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설종사자의 직책별 평균 호봉은 시설장 9.3, 총무 6.7, 생활지도교사 4.3, 보육사 3.4, 간호사 2.4, 취사·세탁부 3.9이다(보건사회부, 1991).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반올림한 호봉을 기준으로 하였다.

20) 여기에는 시도별로 21,000~15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고려한다면 약간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1) 이는 중앙정부와의 분담에 의한 것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임.

支援하고 있다. 또한 施設兒童의 就業指導를 위한 비용을 兒童福祉施設聯合會 支會에 지원하고 있는데, 市·道의 재정형편에 따라 그 금액과 항목이 다르다. 그 밖에도 퇴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65~200萬원의 退所兒童定着金을 모든 市·道에서 지급하고 있다(附表 3-11 참조).

이와 같은 직접비는 주로 政府에서 보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성장아동 기능위탁교육비라든가, 인문계 학비, 중·고생 장학금 등 특정아동에게 지급되는 항목과, 퇴소아동 정착금, 성장아동 결혼축하금, 대학입학금 등 1回性 支援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間接費

이와 같은 직접비 이외에 일부 市·道에서는 시설아동 心性管理費, 공공요금, 월동대책비, 연료비, 후원자 만남의 광장 소요비용, 시설장비 보강비, 시설보수비, 의료비품 구입비, 환경개선 사업비, 예능발표회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附表 3-12 참조).

한편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외에 市·道에서는 자체적으로 人件費를 추가 보조하고 있다. 즉 從事者 전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서 從事者 特別手當, 從事者手當, 從事者奬勵手當, 從事者福祉手當, 從事者家計補助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市·道에서 21,000원~1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月定 追加 手當대신 체력단련비 항목으로 년간 급여액의 150% 지원하고 있다. 경북과 경남에서는 資格保有 從事者에게 資格手當을 각각 20,000원,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산, 대구, 전북에서는 취사부 및 세탁부의 구인난을 고려하여 70,000~477,000원 지원하고 있다(附表 3-13 참조).

다. 政府補助金 支給體系의 問題點

1) 政府補助金의 支援水準

政府補助金의 지원수준은 그동안 증액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시설아동의 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名分上 시설 所要費用의 90%를 政府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政府支援金은 시설 실제 수입의 74.9%에 불과하다. 이는 政府補助金의 단가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예산상의 지원항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施設兒童 1人當 保護費用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直接費 93,000원과 管理運營費 12,814원을 합산한 105,814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1994년도에 韓國保健社會硏究院이 산출한 最低生計費를 근거로 산출한 1995년도 15세 아동의 最低生計費와 비교하여 보면 57.0% 수준에 불과하다[22]. 물론 상기 105,814원에는 직원인건비와 자본보조에 속하는 건물 증·개·신축비 및 시설장비 보강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산출내역에도 포함되지 않

22) 1995년도 시설아동의 최저생계비 대비 보호충족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 1994년 중소도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665,107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v쪽)
- 표준가구의 성인균등화지수값 = 3.6334(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101쪽)
- 1994년도 6월말 대비 1995년도 6월말 물가상승률: 4.9%(통계청)
- 육아시설아동의 평균연령: 15세(시설아동의 연령분포를 보면 12~17세 아동이 51.8%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평균연령을 15세로 간주함)
- 15세아동의 성인균등화지수값 = 0.9664
- 시설아동의 최저생계비 = 185,571원
  665,107 × (1+0.049) ÷ 3.6334 × 0.9664 = 185,571
- 시설아동의 최저생계비 대비 보호충족율 = 57.0%
  105,814 ÷ 185,571 × 100 = 57.0

은 것이므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한 지방별로 추가로 지원되는 아동지원비와 시설운영비 및 수시로 현물, 현금으로 지원되는 민간지원금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상한다면 시설아동의 최저생계비 대비 보호수준은 약간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별 추가지원금은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해 책정된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여 전혀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으므로 확실한 재정은 되지 못한다. 民間支援金 또한 시설에 따라 상이하여 안정적 재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동양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生活費는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

2) 政府補助金 支給項目의 制限性

國庫補助金事業遂行指針에 의한 政府補助金의 지급항목은 수용자의 최저생계, 기본적 교육 및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수용자의 自活이나 社會適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은 職業輔導施設에 책정되어 있는 직업훈련비(36,798원/월)와 示範營農育兒施設에 책정되어 있는 영농훈련비(11,000원/월) 이외에는 전혀 없다. 일부 市·道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수학여행비, 하계수련회비,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국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政府補助金 支給方式의 非效率性

政府補助金은 차량유지비와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 대해 入所者數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입소자수에 비례한 政府補助金 지원방식하에서는 수용자가 많을수록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에서는 운영의 곤란을 겪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입소자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施設保護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를 입소시키거나, 施設保護者의 長期收容을 유도하기도 하며, 소위 '收容者 爭奪'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23].

4) 市·道別 追加支援金의 非衡平性

市·道別 追加支援金은 각 市·道의 재정형편과 의지에 따라 그 내용과 액수가 상이한 바,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에게 직접비로서 지원되는 비용을 보면, 많은 곳은 1,405,000원(제주)으로 부터 적은 곳은 15,000원(대전)에 이르기 까지 차이가 있다. 한편 인건비에 있어서도 종사자당 추가수당이 많은 곳은 150,000원(인천)에서 전혀 없는 곳(충북, 전북)까지 차이가 있다. 이와같은 격차는 앞으로 地方自治制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어서 지역간 비형평성이 우려된다.

第 3節 社會福祉收容施設 從事者

社會福祉收容施設 수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從事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시설아동의 경

23) 관찰조사중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K도의 K시설에서는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선시설보호 후행정조치'에 근거하여 입소된 아동을 아동배정을 담당하는 일시보호소에서 데려간 사례와 더불어 아동들이 균형되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또한 K도의 H시설에서는 혹시 '수용자의 억지 수용'의 오해가 부담스러워 귀가시키지 않아야 할 아이를 귀가시킴으로써 결국 재수용을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지적하였다.

우 이들이 얼마나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느냐의 성패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있는 從事者의 資質과 正體性에 달려있다. 그러나 從事者 配置基準, 勤務條件, 賃金등이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전문적인 자질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從事者확보는 거의 불가능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 從事者 現況

1994년말 현재 전국의 총 759개소의 社會福祉收容施設, 76,723명의 수용자 수에 종사자수는 10,081명이다. 종사자 중에는 보육사·보조원이 4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취사·세탁부 및 경비 등 비전문인력은 18.7%를 차지하고 있고, 社會福祉 專門人力이라 할 수 있는 생활지도교사 및 상담요원은 6.2%를 차지하고 있다(表 3-15 참조).

〈表 3-15〉 社會福祉收容施設 從事者 現況(1994. 12. 31 現在)

(단위: 명)

구분	계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	부랑인	정신요양	결핵요양	나불구
시설수(개소)	759	275	140	160	62	41	76	2	3
수용자수	76,723	19,214	7,962	13,936	3,410	13,370	17,944	74	813
종사자수	10,081	3,230[3]	1,240[3]	3,396[3]	346[3]	715	1,101	10	43
시설장	703	264	124	138	56	41	75	2	3
총무	719	264	128	153	55	41	74	2	2
상담요원	95	30	13	-	11	41	-	-	-
생활지도원	534	78	65	128	49	195	14	2	3
직업보도요원	296	90	-	134	72	-	-	-	-
보육사·보조원	4,570	1,723	326	1,783	24	306	406	2	-
의사[1]	227	2	37	109	1	-	75	-	3
간호사	817	174	255	165	17	50	185	2	29
영양사	172	10	13	126	1	-	22	-	-
기타[2]	1,888	595	279	660	60	41	250	-	3

註: 1) 촉탁의사 포함. 2) 취사부, 세탁부, 경비원 등이 포함.
3)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시설 종사자는 '94년 7월 현재 현황
資料: 보건사회부, 『'95주요업무자료』, 1995. 4. 및 내부자료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275개 시설, 19,214명의 아동에 종사자수는 3,230명이다. 이 중 아동양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보육사가 전체 從事者의 53.3%를 차지하여, 1개 시설당 평균 6.3명의 보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상담요원 및 생활지도교사는 전체 종사자중 3.3% 밖에 되지 않아 2.5개 시설당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의사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275개 시설 중 각각 2개, 10개 시설에 불과하다. 간호사 또한 1.6개 시설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 취사부, 세탁부 및 경비를 포함한 기타 인력이 전체 종사자중 18.4%를 차지하는데, 이는 시설당 2명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2. 從事者 配置基準

가. 法的 配置基準과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配置基準

兒童·老人·障碍人·母子福祉法 및 浮浪人善導施設 運營規程에는 각각 대상시설별 從事者 配置基準이 있으나, 政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國庫補助金 지급을 위한 從事者 配置基準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배치기준은 법적 기준에 의한 從事者 1명당 담당 수용자를 늘이거나 수용인원 규모에 따른 배치제한을 두어 법적 기준에 의한 종사자의 배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보육사 배치기준의 法的基準과 政府補助基準을 비교해 보면, 종사자의 담당 보호대상자수를 늘린 예는 다음과 같다. 嬰兒施設 아동 5인당 1인의 법적 배치 기준을 아동 7인당 1인으로, 育兒施設과 一時保護施設 아동 10인당 1인의 법적 기준을 아동 14인당 1인으로,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 아동 30인당 1인의 법적 기준을 아동 40인당 1인으로 늘여 놓았다. 한편 수용규모에 따른 배치제한의 예는 다음과 같다.

〈表 3-16〉 兒童福祉收容施設 從事者 配置 基準

구 분	법적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정부보조 기준
시설장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총무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보육사		
영아시설	아동 5인까지 1인, 5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아동 7인당 1인
육아시설	아동 10인까지 1인, 10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아동 14인당 1인
일시보호시설	아동 10인까지 1인, 10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직업보도시설	아동 30인까지 1인, 30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아동 40인당 1인
교호시설	아동 30인까지 1인, 30인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아동 40인당 1인
자립지원시설	-	관리인 시설당 2인
간호사	시설당 1인(자립생활관 제외)	영아시설당 1인, 기타 시설은 수용인원 8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사 (생활지도원)	육아, 직업보도, 교호시설당 1인	직업보도, 교호시설 및 시범육아원당 1인, 육아시설 수용인원 100인이상 시설당 1인
의사 (겸임의사)	시설당 1인(자립생활관 제외)	
영양사	아동 50인이상 시설당 1인 (자립생활관 제외)	
영농지도교사		시범육아원 당 1인
영농보조원		시범육아원 당 1인
직업훈련교사	직업보도, 교호시설에 필요 인원	직업보도, 교호시설의 훈련생 35인당 1인
취사부	-	시설당 1인
세탁부	-	영아시설중 수용인원 40인이상 시설당 1인
경비원		교호시설당 2인

註: 인원수는 최소한의 수임.

법적 기준에 의하면 시설당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간호사와 생활지도사의 배치를 정부보조 배치기준은 시설아동수 각각 80인 이상 및 100인 이상이라는 규모의 조건을 두어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시설에의 배치를 가로 막고 있다. 그 밖에도 政府補助金이 지급되지 않아 배치가 제한되기도 한다. 가령 법적으로 시설당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와 아동 50인 이상 시설당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양사에 대해서는 政府補助 基準에는 일체 지원이 없다(表 3-16 참조)[24].

法的 配置基準도 日本과 비교하여 1/2이 안되는 상황인데 政府補助基準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育兒施設, 嬰兒施設 및 敎護施設의 從事者 配置基準[25]을 참고하면 <表 3-17>과 같다. 日本의 경우를 보게 되면 3세 미만의 嬰兒를 양육하는 嬰兒施設에서 보육사 1인이 7인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경우 3세 미만의 연령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육사를 모두 간호부로 충원하고 있으며 그것도 아동 1.7명당 1인의 간호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 育兒施設의 경우 중학교이상의 학령아동도 있으나 3세 이상 7세 미만의 학령전 아동과 初等學校 학령의 年少兒童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육사 1인이 아동 14인을 양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많은 아동을 방임상태에 놓아두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24) 이와같은 상황에서 시설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시설자체 예산의 열악함으로 정부보조외의 인력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5) 일본의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은 국가기준과 지방자치단체기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기준이 국가기준보다 더 여유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기준을 참고하였다(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施設運營ハンドブック: 民間社會福祉施設運營의 ために』, 1994年 3月).

〈表 3-17〉 日本의 兒童福祉施設 從事者 配置基準

구 분	乳兒院[1)]	養護施設[1)]	敎護院[1)]
施設長	1명	1명. 단, 정원 30명 미만 시설에는 아동지도원이 겸무	1명.
事務員	정원 100명 미만 1명 정원 100명 이상 2명	정원 150명 미만 1명 정원 150명 이상 2명	정원 150명 미만 1명 정원 150명 이상 2명
看護婦	정원 1.7명당 1명 (단 20명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 외에 1명 추가)		
兒童指導員 保母		(1) 통상 정원 6명당 1명 (2) 정원 45명이하 시설에는 그 이외에 1명 가산 (3) 3세 미만아동 2명당 1명, 3세아동 4명당 1명, 年少兒 4명당 1명	
敎護敎母			정원 5명당 1명
營養士	1명	정원 41명이상 1명	정원 41명 이상 1명
調理員等	정원 30명 미만 4명 정원 30명 이상 10명마다 1명 가산.	정원 90명 미만 상근 3명, 비상근 1명, 정원 90명이상 30명마다 1명 가산	정원 90명 미만 4명, 정원 90명이상 30명마다 1명 가산
醫師	1명, 당 정원 100명 미만 시설에는 촉탁의사	촉탁의 1명	촉탁의 2명
藥劑師	1명, 단 정원 50명이상인 시설에 한함.		
囑託 X線技師	1명, 단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에 한함.		
職業指導員		직업보도설비를 갖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인원 가산	직업보도설비를 갖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인원 가산

註: 1) 각각 우리나라의 영아시설, 육아시설, 교호시설에 해당함.
資料: 東京도社會福祉協議會,『施設運營ハンドブツク: 民間社會福祉施設運營のために』, 平成6年(1994年) 3月. pp.91～93, 99.

從事者 配置基準상 가장 불합리한 것 중의 한가지는 敎護施設과 職業輔導施設의 배치기준이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위탁된 아동"이 모여 살고 있는 敎護施設과, 여러가지 이유로 정규학업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모여살고 있는 職業輔導施設의 從事者配置基準이 育兒施設의 그것보다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敎護施設과 職業輔導施設에서 1명의 생활지도원과 아동 40인당 1인의 보육사로서는 전혀 敎護·善導 및 自活訓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배치기준으로는 아동들의 욕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집단프로그램도 불가능하다. 日本의 경우 育兒施設에는 통상 아동 6명당 保母 1명이 배치되지만, 敎護施設의 敎母는 아동 5명당 1명인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시설당 1인의 취사부 배치와, 嬰兒施設 수용인원 40인 이상 시설 이외에는 배치되지 않는 세탁부 배치기준은 보육사들로 하여금 아동양육이라는 고유의 일보다는 취사 및 세탁업무에 매달리도록 유도한다. 부산, 대구, 전북에서는 이와같은 취사·세탁업무로 인한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市·道 자체적으로 취사·세탁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附表 3-13 참조).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의 취사·세탁부에 해당하는 조리원 등이 90명 미만의 養護施設과 敎護院에 각각 4명씩 배치되며 90명 이상이면 30명마다 1명씩 가산되고 있으며, 乳兒院의 경우는 30명 미만 시설에 4명 배치되며 그 이상이면 10명마다 1명씩 가산되고 있다.

나. 實際 人力 配置現況

政府의 從事者 配置基準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法人은 政府補助 從事者이외에 자체부담으로 종사자를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조사결과 政府補助 이외의 종사자 비율은 영兒施設의 경우 10.8%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政府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從事者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종사자배치의 실제 관행은 이러한 政府 보조기준보다 더욱 열악하였다. 특히 보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보육사의 역할을 하는 從事者의 數는 政府補助 基準보다도 훨씬 적다. 우선, 政府補助金의 증가와 함께 行政 및 會計業務가 증가함으로 인해 많은 시설에서 보육사의 자격으로 경리 또는 사무원을 고용하여 이를 전담케 하고 있다. 또한, 施設管理 및 車輛維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를 전담할 인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시설(특히 시설장 및 총무가 여성인 시설)에서 男子 運轉技士 또는 管理人을 보육사의 자격으로 고용함으로써 보육사의 역할을 하는 종사자수는 더욱 적은 형편이다. 특히 시설장이 노령인 경우 시설장의 존재는 명분에 불과하고 총무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무가 해야 할 사무를 누군가가 대행해야 하므로 결국은 보육사의 업무가 그만큼 희생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뒤에서 언급될 從事者 근무조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보육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보육사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3. 從事者 勤勞條件

가. 勤務時間 및 勤勞環境

이와같이 從事者 1인이 담당해야 할 아동수가 많음에도 交代制는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1987년도 韓國人口保健硏究院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종사자들의 58.6%가 施設內에 거주하며, 특히 嬰兒施設과 育兒施設 종사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82.0, 81.8%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韓國人口保健硏究院, 1987:400~401). 시설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때때로 휴식을 취한다 해도 수용자들과 함께 기거하며 이들을 밤낮 구분없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조사결과는 전체 시설종사자의 45.5%가 교대근무없이 24시간 근무한다고 보고하였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는 시설전체 평균 조건보다 더 열악하여 56.9%가 교대근무 없이 24시간 근무하며, 17.1%가 2교대 근무하며, 22.5%만이 3교대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育兒施設의 경우는 74.1%가 無交代 근무이다. 8시간 근무자 속에는 주로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특수직 종사자와 경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시설장, 총무 등 관리자가 포함되므로, 보육사의 경우는 거의가 交代勤務制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는 兒童福祉施設 종사자의 勤勞條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嬰兒施設의 경우 시설내 거주율이 총무, 간호사, 취사원은 각각 38.1%, 30.0%, 42.9%로 비교적 낮으나, 시설장, 보육사는 각각 81.0%, 90.5%이다. 육아시설의 경우 총무, 생활지도원, 간호사는 각각 48.4%, 66.3%, 52.4%이나 시설장, 보육사, 취사원은 각각 81.1%, 92.0%, 88.6%이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시설내 거주 여부에 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90%이상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보육사의 경우 嬰兒施設, 育兒施設에서 각각 평균 21.0, 20.3시간으로 나타났다[26].

한편 이들의 月 平均 休日數는 嬰兒施設의 경우 3일 내외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2회 1박2일의 휴일을 의미한다. 또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면접조사 결과 이 정도의 휴일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종사자들이 "귀가후 할 일이 밀리는 바람에 월 2회의 외박조차도 회피한다"는 것이다. 시설종사자들은 공식적인 휴일 이외에 외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윗사람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

26) 시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거하므로 이들의 근무시간은 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출퇴근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에 근거하여 산출해 보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勤勞基準法 第42條(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勤勞時間), 第945條(週休日), 第47條(月次休暇), 第48條(年次休暇), 第59條(生理休暇) 조항들은 施設 從事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日本의 사회복지시설從事者의 勤勞條件과 비교하면 큰 격차가 있다(表 3-18 참조).

〈表 3-18〉 日本 兒童福祉施設從事者 勤務 形態

養護施設	담당제	10명 전후의 아동을 2명의 보육사가 담당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반까지 근무.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휴식시간
	교대제	8시간씩 교대근무, 예를 들면 20명의 아동을 8명의 보육사가 교대로 보육
乳兒院	3교대	주간(08시~16시), 준야간(16시~자정), 심야근(자정~08시)
	2교대	주간근무, 야근(16시 - 다음날 09시) 보통 야근은 이틀을 계속한다.

資料:『시설직원복지신문』 9호(1992.12), 10호(1993.3)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從事者의 施設內 居住, 交代勤務制 不在, 적은 休暇日數, 外出의 어려움 등의 근무조건은 從事者로 하여금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강요하며, 더구나 시설이 外地에 떨어져 있을 경우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從事者들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여 아이들을 양육·보호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賃金水準 및 號俸制

勤勞條件에 못지 않게 시설종사자의 賃金水準 또한 매우 열악하다. 1989년 12월 施設職員 報酬規程이 제정되고, 1991년 1월부터 임금체계에 호봉제가 도입·적용됨으로써 施設從事者의 임금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당초 호봉제 도입시 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아직도 休日勤務手當, 延長勤務手當 등 각종 法定 手當制度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民間 施設 從事者의 임금수준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國·公立 社會福祉施設 從事者에 비해 7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장이다[27](表 3-19 참조).

〈表 3-19〉 國公立 施設 對比 民間社會福祉施設 從事者 給與 比較(1995)

(단위: 천원)

구분		차액 비율(%)	계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급량비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효도수당	특별상여수당
시설장 (8호봉)	국공립	611	1,623	800	387	-	150	80	50	100	15	8	33
	민간	62.35	1,012	572	276	114	-	-	40	-	10	-	-
총무 (8호봉)	국공립	443	1,352	672	325	-	90	80	50	84	15	8	28
	민간	67.23	909	510	247	102	-	-	40	-	10	-	-
생활지도원 (4호봉)	국공립	300	1,004	502	225	-	90	80	-	63	15	8	21
	민간	70.12	704	409	183	82	20	-	-	-	10	-	-
보육사·보조원 (4호봉)	국공립	233	899	449	202	-	70	80	-	56	15	8	19
	민간	74.08	666	355	202	71	20	50	-	-	10	-	-
취사·세탁부 (4호봉)	국공립	189	754	359	162	-	70	80	-	45	15	8	15
	민간	74.93	565	294	132	59	20	50	-	-	10	-	-

註: 국공립시설종사자 대비 민간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의 급여비율은 69.74%임.
資料: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豫算對策委員會, 1995.

27)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시설장과 총무는 각각 8호봉, 생활지도교사, 보육사, 취사·세탁부는 각각 4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근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가족수당은 1인의 부양가족만 상정하는등 산출방식에 있어 본 연구자와 약간 다르다. 그러나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건에서 계산하였으므로 비교치로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現行 號俸制度는 근무경력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經歷과 軍服務經歷만을 인정하며(社會福祉施設職員 報酬規程 第5條), 타시설근무경력과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고호봉은 17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군복무경력의 합산으로 인해 최고호봉이 17호봉을 초과할 경우는 최고호봉을 20호봉까지만 책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社會福祉施設職員 報酬規程 第7條). 따라서 이로 인해 많은 施設從事者들이 타시설 근무경력과 유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17호봉을 초과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4. 專門性 및 離職率

앞에서 살펴 본 從事者 配置基準과 勤勞條件으로 인해 시설근무를 생애직으로 받아들이고 종사할 전문인력을 유치·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非專門人力, 自願奉仕者에 의존하는 單純收容保護事業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더 이상 구호적인 차원의 收容施設로서의 존재와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保護對象者의 欲求와 價値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適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能力을 향상시키는 役割을 해야 한다. 이러한 責任과 機能을 수행하는 役割의 核心은 收容者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몫이며, 따라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從事者들의 專門的 資質과 能力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施設들은 열악한 勤勞條件으로 인해 專門性 있는 人力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 資格 및 學歷

社會福祉事業法 施行令 第13條에 의하면, 社會福祉法人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당해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社會福祉士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의사, 약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타자·경리 등 事務補助員과 單純勞務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1993년말 현재 社會福祉施設 從事者 10,073명중 상기 타 직종 자격자와 단순기타 직종을 제외한 6,898명중 22.7%인 1,565명만이 社會福祉士 자격보유자이다(남세진·조홍식, 1995: 149, 158)[28]. 그러나 시설의 社會福祉士 자격보유자는 대개 시설장 · 총무나 高年齡의 보육사로서, 이들은 대학에서 社會福祉學을 전공한 경우보다 오랜 근무경력과 짧은 양성과정을 통해 社會福祉士 資格을 획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兒童福祉施設의 경우는 종사자 총수 3,257명중 타직종 자격자와 단순 직종을 제외한 2,515명중 27.0%에 해당하는 680명만이 社會福祉士 자격보유자이다. 680명의 社會福祉士를 시설별로 본다면 시설당 평균 2.5명이 근무하는 셈이며, 1급 社會福祉士는 평균 1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정은 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여 社會福祉士가 다수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表 3-20 참조).

1991년도 保健社會部의 施設調査에 의한 施設從事者의 학력분포는 고졸이 42.8%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이 36.6%, 중졸 이하가 20.6%를 차지하고 있다. 單純 機能職을 제외한 主要職責 從事者의 學歷은 전체 종사자의 학력보다 약간 높아, 고졸이 48.4%, 대졸 이상이 37.4%, 중졸 이하가 14.3%로 分布되어 있다. 職責別로 보면 總務의 경우 대졸 이

28) 참고로 1993년말 현재 사회복지사수는 총 14,009명으로서 이 중 11.2%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셈이다(남세진·조홍식, 1995:158).

상자가 51.4%, 고졸자가 43.5%, 중졸 이하자가 5.1%이고, 生活指導敎師의 경우 대졸 이상자가 69.5%, 고졸자가 24.9%, 중졸 이하자가 5.6%로서 平均보다 學歷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保育士의 경우는 대졸이상자가 37.5%, 고졸자가 50.3%, 중졸이하자가 12.2%로 나타났다.[29]

〈表 3-20〉 社會福祉施設別 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保有 現況
('93年末 現在) (단위: 명, %)

구 분	종사자 총수	타직종 자격자 및 단순직종자를 제외한 종사자수 (A)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 총수 (B)	1급 (C)	2급 (D)	3급	B/A (%)	(C+D)/B(%)
전체	10,073	6,898	1,565	656	539	370	22.7	76.4
아동복지시설	3,257	2,515	680	277	235	168	27.0	74.2
노인복지시설	1,164	600	201	53	95	53	33.5	73.6
장애인복지시설	3,243	2,174	293	142	89	62	13.5	78.8
부녀복지시설	481	202	118	58	30	30	58.4	74.6
부랑인선도시설	792	580	150	80	37	33	25.9	78.0
정신요양시설	1,083	577	123	46	53	24	21.3	80.5
결핵요양시설	8	6	-	-	-	-	-	-
나불구시설	45	9	-	-	-	-	-	-

資料: 남세진 · 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p.149, 158에서 재구성함.

나. 離職率

從事者의 열악한 勤勞條件은 전문성있는 종사자를 구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종사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施設保護對象者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韓國社會福祉

29) 이 결과는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協議會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施設從事者의 離職率은 1989년도에 32.6%, 1990년도에 34.3%, 1991년도에 36.0%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경우 離職率은 1989년도에 30.0%, 1990년도에 32.9%, 1991년도에 32.5%로 증가하였으며, 직종별로 보면 시설장 3.7%, 총무 17.1%, 간호사 28.4%, 영양사 57.1%, 생활지도원 25.0%, 직업훈련교사 42.9%, 보육사 41.5%, 경비원 36.4%, 취사·세탁부 12.6%로 나타나서 특히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의 離職率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第 4節 施設 規模, 住居形態 및 設備

사회복지시설은 施設保護對象者에게 있어서 가정을 대신하는 곳으로, 우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自主性, 適應能力, 知性 등의 인격을 배양시키며, 또한 社會의 一員으로서 사회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施設은 財政, 人力 등 가능한 모든 條件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施設의 物理的 條件도 이에 맞도록 整備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施設은 規模, 住居形態, 施設設備 등 시설의 물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施設의 規模 및 住居形態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大規模 收容施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설의 설립배경상 6.25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孤兒, 未亡人, 傷痍軍警 등 要保護對象者를 수용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收容施設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兒童福利法, 社會福祉事業法上의 施設기준으로 구체화되었고, 사회가 변화하고 大型施

設의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형태가 존속되고 있다.

社會福祉事業法을 포함한 각 대상별 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立地條件, 施設의 規模, 構造 및 設備基準이 규정되어 있다. 가령 시설은 "시설의 적당한 분포…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상시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施設利用者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건조장, 수세식 화장실, 給·排水施設, 非常災害對備施設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 第20條)함으로써 시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사회를 이루고, 외부와의 교류가 없어도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施設基準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 第12條). 이러한 규정에 맞게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려면 시설은 큰 규모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의 최소 규모인 3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育兒施設의 경우 적어도 376.2m^2(114평)의 건물면적과 적어도 420m^2(127평)의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1994년말 현재 育兒施設의 현원은 적은 곳은 19명에서 많은 곳은 1,247명으로 평균 70명이다. 이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나 代理家庭이라 해도 하나의 家族으로서는 매우 큰 규모이다. 더구나 시설의 평균 정원은 99명이어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물과 대지를 각각 1,254m^2(380평)와 2,928m^2(887평)을 확보해야 하므로 1개 시설을 설립·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과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大規模 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또 다른 특징은

集團收容 居住形態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설이 여러 棟의 小宿舍보다는, 1개동 혹은 남녀별로 1개동씩 2개동의 大型宿舍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거실의 구조도 家庭的 環境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가령 '거실당 정원은 8인 이하(嬰兒施設 15인 이하)로 한다'는 규정(社會福祉事業法·兒童福祉法 設備基準)으로 인하여 많은 育兒施設에서 8명의 아동이 1개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兒童福祉施設의 규모나 주거형태는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 大規模 集團收容施設에서는 개인의 私生活이란 있을 수 없으며, 보육사의 개별적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共同生活에서 오는 여러가지 弊害 즉 수용자 선·후배간 위계질서, 집단폭행 및 학대 등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正常化란 개념에서 볼 때, 시설아동의 생활환경은 일반아동의 그것과 유사할수록 바람직하다. 政府는 育兒施設의 경우 50명미만의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작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地域社會 중심의 그룹홈(group home) 또는 소숙사(cottage system)제도로 전환시켜 운영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30].

2. 施設 設備 狀態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85.5%는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兒童福祉施設의 경우는 95.0%가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시설의 증·개축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施設의 老朽化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30) 현재 가톨릭단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들은 시설설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인가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규모시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姨母(일반시설의 보모) 2명을 포함하여 11~12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1991년 보건사회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1년 현재 兒童福祉收容施設 總面積 341,720m^2(103,370평) 중 補强完了面積은 280,697m^2 (84,941평)로 82.2%이고, 老朽面積은 60,923m^2(18,429평)으로서 17.8%로 나타났다[31]. 이는 시설의 現代化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現代化할 때는 지역의 욕구에 맞는 형태를 고려하여 구조를 개편하여야 하며, 아동의 情緖的 安定, 人格形成 및 社會化를 위해 바람직한 거주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개편하여야 한다. 政府는 시설의 요구에 근거하여 老朽施設의 增·改·新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앞의 第2節에서 본 바와 같이 年間 49億원을 兒童福祉施設의 增·改·新築費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施設 증·개·신축비는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國庫와 地方費 부담비율이 반반이며, 지방에서는 다시 市·道와 市·郡·區가 반씩 부담하므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에서는 施設 증·개·신축비를 충당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해결과제이다.

시설의 現代化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施設의 設備 및 裝備이다. 시설설비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리실, 식당 및 화장실의 위생상태, 상수도 공급여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수질상태, 非常災害時 對備施設 등이다. 관찰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화장실 변기는 수세식이었으나 물이 내려가지 않는 변기가 많았으며 사용하기에 불편하였다.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시설이 많은데, 이들 시설은 주로 지역적으로 외따로 설립되어 있는 시설로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31) 시설의 건축구조별로 콘크리트·벽돌조와 목조·블럭조로 나누고, 다시 콘크리트·벽돌조 20년미만, 목조·블럭조 10년미만인 건물을 시설보강 완료면적으로, 콘크리트·벽돌조 20년이상, 목조·블럭조는 10년이상된 건물을 노후면적(시설보강 필요면적)으로 보았다(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시설현황, 1991).

최근 後援·結緣事業의 활성화로 많은 시설에 아동들의 학습에 필요한 컴퓨터, 비디오 및 오디오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는 시설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관찰조사 결과 컴퓨터가 없는 곳은 거의 없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컴퓨터는 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일뿐 정작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웠다. 이외에 아동들의 情緖涵養 및 體力鍛鍊을 위한 오락 및 운동기구의 설치·활용 또한 시설운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2].

가까운 곳에 障碍兒施設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嬰兒施設에서 障碍兒를 수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장비가 부족함을 호소한 경우도 많았다.

第5節 施設 管理·運營 形態

사회복지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運營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人力, 財政, 施設設備의 條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모든 조건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설의 software를 구성하는 管理運營方式이 질적인 면에서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① 法人理事會 構成 ② 地域社會와의 關係 ③ 프로그램의 內容을 통해 시설의 관리운영 형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 K도 D원에서는 연구자가 방문할 당시 농구공도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法人理事會 및 施設職員의 構成

사회복지시설의 運營主體는 施設長 個人이 아니라 法人이다. 法人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통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집행해 나간다. 시설장은 法人이 정한 운영목표와 정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法人理事會 구성과 활동은 시설운영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6.25 戰爭後 篤志家들에 의해 外國 民間團體의 원조로 설립·운영되다가, 이들 개인 재산을 바탕으로 財團法人의 形態를 갖추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후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戰後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시설은 設立者가 운영을 계속하거나 또는 그 子女가 운영을 넘겨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이 公的 성격을 띠는 社會福祉法人에 귀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설과 법인에 대해 私有財産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政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公的 機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私的 運營體制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社會福祉事業法에는 "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인 이상과 監事 2인 이상을 두고"(第14條의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33]는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第14條의 ②), 감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第14條의 ⑥)는 규정을 둠으로써 法人과 施設運營이 親

33)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6조. 신설 93.6.9)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① 친족관계 ② 그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 등을 말한다. 이때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777조에 의하면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

族에 의해 전횡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34].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法人任員의 다수는 家族 또는 親族인 경우가 많고, 家族 또는 親族이 아니더라도 시설운영자의 운영방침을 잘 지지해 주는 親知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施設長은 法人의 代表理事를 겸하고 있거나 아니면 理事를 兼職하고, 대표이사는 시설장이 겸직하지 않은 경우 施設長의 親族(주로 配偶者)이 맡고 있다. 결국 法人 理事會는 형식적인 구성에 지나지 않으며 施設運營은 施設長의 私的運營體制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5].

이러한 시설의 私的 運營體制는 公益性보다는 시설운영자의 私的 利益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36]. 사적 운영체제에서는 시설운영자의 가치관이 시설 운영을 좌우한다. 운영자

---

34) 이 규정은 1992년 12월 전문개정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친족은 임원(이사+감사)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었다. 개정을 통하여 '친족'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그것도 감사는 반드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아니도록 하고, 1/3 기준은 이사에게만 한정함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친족운영체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이사 총수가 5인일 경우 5인 모두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35) 한편 시설의 친족운영체제는 시설종사자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경우 총무나 생활지도교사 등 시설의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이나 법인대표이사와 친족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중에는 친족이나 다름없는 시설출신자들이 상당수 있다. S시의 C원의 법인이사회 및 시설직원 구성의 예를 들어보면 실감이 날 것 같다. 대표이사는 물론 시설장을 겸하고 있었고, 이사회는 그의 부인, 그의 친구인 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그의 시설을 신축해 준 건축업자 2인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무는 그의 자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36) 주기적으로 매스컴에 고발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미스러운 비리는 극히 일부 시설의 일이긴 하나, 이는 시설을 개인 소유로 생각한 나머지 시설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다. 시설문제연구회는 1987년부터 1994년 기간중 공론화되었던 시설내 성폭행 및 기타 비리사건 15회에 대해 정리·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시설문제연구회, 「시설내 성폭력에 대하여 - 장애인시설과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장애 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 1995).

의 가치관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일 경우 시설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나,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비합리적일 경우 시설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40년대, 50년대에 설립된 兒童福祉施設의 경우, 施設長이 설립 당사자로서 이미 70, 80세를 넘긴 고령자가 많다(表 3-21 참조). 어려웠던 시기에 이들이 보인 공로와 별도로,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시설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기존의 운영방식을 고수하고자 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소극적·폐쇄적인 운영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社會福祉事業을 '救貧'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家族·親族위주의 형식적인 理事會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가진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表 3-21〉 兒童福祉收容施設長의 年齡 分布

(단위: %)

구분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세이상
1991년[1]	0.4	5.2	20.8	29.7	43.9		
1994년[2]	-	3.6	13.1	31.3	28.7	16.8	6.5

資料: 1)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1991.
2) 보건복지부, 『1995년 아동복지시설일람표』 자료에 의거 집계함.

2. 地域社會와의 關係

施設保護의 基本原理로서의 正常化理念은 사회복지시설의 社會化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시설은 지역사회의 한 단위이며 施設保護對象者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안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施設의 社會化가 필수적이다. 施設의 社會化는 시설의 개방을 통한 '施設과 地域社會와의 相互作用의 過程'이다. 시설은 施設保護對象者의 질적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의 物資·人力·情報 등의 資源을 동원·활용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제공하고,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주민의 상호학습과 체험을 돕는 것이다. 시설의 사회화를 통하여 施設保護對象者의 人權이 保障되고 生活圈이 확대될 수 있으며 自立助長에 근거한 보호내용이 향상되고 施設保護對象者의 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의 모습이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神奈川縣社會福祉協議會, 1980:3; 박태영, 1991:90~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社會福祉施設은 그동안 地域社會와 고립되어 閉鎖的으로 運營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 否定的이다. 그러나 최근 兒童福祉施設을 중심으로 開放化·社會化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회화 정도는 한편으로는 施設이 地域社會의 資源을 동원·활용하는 정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施設이 시설의 자원을 地域社會에 제공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地域社會의 資源을 동원·활용하는 정도는 自願奉仕 活動 및 後援·結緣事業의 동원·활용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社會福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施設에 대한 自願奉仕 活動 및 後援·結緣 事業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自願奉仕 活動 및 後援·結緣事業은 運營者의 意識 및 力量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한편 政府는 후원·결연자의 균형적 배분을 위하여 韓國福祉財團으로 하여금 後援·結緣事業을 총괄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지금은 시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후원·결연자 조차 韓國福祉財團을 통해 管理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7] 施設이 자체 개발한 경우든 韓國福祉財團을 통한 경우든 후원·

결연사업은 시설과 地域社會가 開放的인 關係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兒童福祉施設이 자원봉사자, 후원·결연자 및 단체의 동원 · 확보를 통해 개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地域社會에 施設의 資源을 개방 · 제공하는 일에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이다. 사실상 施設이 地域社會에 施設의 資源을 개방 · 제공하려면 제공할만한 施設設備나 人力 및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하나, 아직까지 兒童福祉施設의 施設·設備의 전반적인 落後性 및 내세울만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시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地域社會와의 關係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人力, 設備,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施設運營者의 開放 意志이다. 시설운영자가 施設을 開放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설의 넓은 공간도 地域社會에 제공할 수 있는 큰 資源이 되는 것이다.[38]

3. 프로그램 運營

사회복지시설의 目的은 施設保護對象者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물론 이들의 自活 · 再活을 위한 전문적인 治療 · 敎育 · 訓練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兒童福祉施設의 목적은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퇴소후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경제적 · 사회적으로 독립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37) 시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어도 시설의 특정아동을 후원하는 경우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관리하고, 시설을 후원하는 경우는 시설이 자체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38) K도의 S원의 경우 건물은 오래되어 매우 낡았음에도 시설장이 관계된 그 지역의 모든 공·사 모임을 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兒童福祉施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衣食住의 보장 이외에 이들의 情緖的인 安定 및 成長을 도와주고 올바른 성품을 조성하며,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 自活能力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兒童福祉施設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는 社會福祉事業法 運營基準(施行規則 第20條)에 '事業'에 관한 내용이 유일한 것이다[39]. 兒童福祉法의 運營基準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프로그램은 종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종사자 수 확보와 종사자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에는 부족하나마 '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자들 개개의 定義·固有業務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兒童福祉施設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生活指導 프로그램

시설아동은 家庭不和, 家族解體, 非行, 家出 등 사회·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이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유와 적극적인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아동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으름, 거짓말하기, 의존성, 창의성 부족, 무책임성, 낭비, 발표력 부족 등 소위 '施設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

---

39) 社會福祉事業法 運營基準에 의하면, 시설에서는 (1) 입소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生活指導를 하여야 하며 (2) 자립 또는 再活이 가능한 자에게는 職業訓鍊 또는 職業輔導를 실시하여야 하며…(4)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을 하거나 觀察·指導를 하고 특이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歸家措置 또는 다른 社會福祉施設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그 밖에 각 시설의 特性에 맞는 事業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절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된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운영진의 시설의 전문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실천의지 부족으로 시설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많은 시설에서 캠프, 수련회, 자연농원 방문, 서울랜드 방문 등과 같은 일시적인 오락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支持集團 프로그램, 人性敎育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드물다.

나. 學習指導 프로그램

육아시설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학습활동은 일상과업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설아동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학습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40].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이들의 治療敎育과 個人指導를 포함하여 개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1명의 보육사가 적어도 14명의 아동을 맡아 양육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보육사에 의한 학습지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學習指導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시설이 많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로서 앞으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다. 職業訓鍊 및 職業輔導

職業訓鍊 및 職業輔導 프로그램은 시설아동이 퇴소후 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현재 시설아동을 위한 職業訓鍊 및 職業輔導 시책으로는 ① 全 育兒施設 아동을 實業系高校

40) 또한 시설에는 대체로 한두명씩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에 취학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을 육성하는 것 ② 15개소 示範育兒院을 지정하여 영농지도사를 배치, 영농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통해 營農訓練을 실시함으로써 營農後繼者를 육성하는 것 ③ 職業輔導施設을 운영함으로써 학령기를 놓친 아동에게 職業訓鍊을 시키는 것 ④ 敎護施設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 ⑤ 職業訓鍊이 필요한 施設 退所兒童 및 施設 延長兒童에게 직업훈련원에서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 ⑥ 兒童福祉施設聯合會에 부설된 兒童自立支援센타를 통하여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育兒施設, 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 퇴소아동들의 취업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이들의 就業職種은 주로 서비스, 판매, 제조업 등 기능직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취업을 쉽게 하기는 하나 쉽게 이직한다고 한다. 육아시설 아동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들 학교내의 훈련종목 및 수준으로는 취업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따라서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政府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이들의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시설에서 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營農示範育兒施設 퇴소후 영농에 종사하는 아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營農의 강요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第 6節　行政體系

1. 서비스 傳達體系

社會福祉關聯 法에 규정된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行政體系는 福祉對象別, 福祉業務別, 福祉財源別, 行政單位 組織體系別로 多元化되어 있다.

우선, 중앙행정단위인 保健福祉部內 組織은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아), 부랑인(아),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및 癩不具者 등 복지대상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복지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각각 兒童福祉課, 老人福祉課, 婦女福祉課, 障碍人福祉課, 生活保護課, 疾病管理課, 防疫課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行政體系가 福祉對象別로 구분되어 있는 한편 업무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 같은 年齡集團이라도 여러 소관과에 의해 분리·관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兒童福祉施設 및 保育(託兒)施設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兒童福祉課에서 관장하나, 기타 시설보호가 필요한 要保護兒童중 障碍兒의 경우는 障碍人福祉課, 浮浪兒의 경우는 生活保護課, 母子家庭 또는 未婚母의 아이의 경우는 婦女福祉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일 兒童福祉施設이라도 지원되는 補助金의 財源別로 소관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시설아동의 生活保護費는 生活保護課에서 지원되며, 교육 및 일반보호비와 시설관리운영비는 兒童福祉課에서 지원된다.

이러한 行政體系는 地方 행정단위로 내려가면 中央部處와 행정조직이 상이해짐으로 해서 더욱 다양해진다. 즉 市·道로 내려가면 중앙의 兒童福祉課와 老人福祉課 소관사항이 합쳐져서 家庭福祉課 소관이 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兒童福祉施設과 浮浪兒善導施設을 靑少年課에서 담당한다. 中央의 障碍人福祉課와 浮浪人福祉課 소관사항은 합쳐져서 흔히 社會課 소관이 되나, 一部 市는 社會課, 家庭福祉課, 靑少

年課 등으로 나뉘게 된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부랑아업무는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장애인(아) 및 부랑아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한다. 또한 市·郡·區로 내려가면 더 합쳐져서 아동 · 보육 · 노인 · 부녀 업무는 家庭福祉課, 障碍人 · 浮浪人·精神疾患者療養업무는 社會福祉課로 크게 대별된다.

이와 같이 복지대상별, 복지업무별, 복지재원별, 행정단위체계별로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최일선에서 社會福祉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指導 · 監督을 받는다든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41]

2. 指導 · 監督體系

사회복지시설은 政府의 補助金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公金이 지출되는 곳에는 公共의 統制가 있어야 한다"는 原則에 따라 政府의 복지행정체계의 指導·監督을 받아야 한다(Friedland & Apte, 1980:77, 박석돈, 1995:58에서 재인용). 그러나 指導·監督의 當爲性은 또한 要保護對象者의 삶에 대한 일차적 보장의 책임이 國家에 있고 국가가 要保護對象者의 보호를 民間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한 사실로 부터 나온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公的' 성격과 더불어 指導 · 監督의 중요한 이유는 施設保護對象者들의 人權擁護 측면에서도 나온다.

---

41) 상위 행정체계와 하위 행정체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K구의 M원에서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 병설 허가를 신청하여 구청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나 시에서는 소관과가 다르므로 육아시설의 예산을 보육시설 사업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서울시의 하위 행정체계인 구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모두 가정복지과에서 통합 관장하나, 서울시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청소년과, 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분리·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福祉事業法에는 社會福祉法人·施設에 대한 政府의 指導·監督의 義務, 權限, 內容이 곳곳에 규정되어 있다. 가령,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法人의 資産運用 및 法人 또는 施設의 업무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法人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法人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社會福祉事業法 第37條, 指導監督).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社會福祉事業法 第29條, 許可取消등). 지도감독의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社會福祉事業法 第38條, 權限의 委任·委託).

그리하여 社會福祉事業法 運營指針에 따르면 市·道知事가 자체지도, 감사계획에 의거 法人 및 施設에 대해 실시하는 指導·監督의 내용은 <表 3-22>와 같다. 실제로 조사결과 시설에 따라서는 년 4회이상 市·道, 및 市·郡·區의 담당자의 공식적인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식적인 방문 외에도 시설과 市·郡·區의 담당 공무원들은 아동의뢰, 補助金支給 등의 관련문제로 수시로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指導監督의 횟수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다양하게 관련된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통일성 없는 잦은 訪問은 施設運營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指導監督은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 '95년 8월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京畿道는 매년 한차례씩 定期 點檢을 하였으나 形式的이었다. 또한 본질적

인 指導監督을 시행하기에는 行政擔當者들의 專門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表 3-22〉 社會福祉法人施設 指導·監督 基準

종 류	대 상	주 기	실시기관
정기감사	법인	매 2년마다 1회	시·도지사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감사	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수시 지도·점검 입·퇴소등 운영실태	시설	연 2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특별감사	법인 및 시설	진정·투서·언론보도·정보내용 등에 대해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第 4章 兒童福祉施設의 評價

第 1節 評價方法

1. 分析評價의 흐름

社會福祉事業의 評價를 위하여 Suchman은 努力(effort), 遂行(performance), 充分性(adequacy), 效率性(efficiency) 및 過程(process) 등 5가지의 基準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基準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첫째 努力은 社會福祉事業을 위하여 投入한 量과 質을 의미하는 것으로 社會事業의 種類 및 從事者의 種類, 所要資金 및 其他資源, 그리고 이러한 努力을 하기위한 力量이나 能力이 기준될 수 있다. 두번째 遂行은 산출(output)을 뜻하는 것으로, 投入의 結果를 나타내는 受惠者와 評價對象體系 變化의 種類와 그 數에 관한 變數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充分性은 사업의 목표에 맞게 受惠者의 慾求, 組織 또는 機關의 人力 및 그들의 技術이 適正하고 充分한 지 등에 관한 變數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效率性은 투입된 努力, 充分性 및 産出 등 事業遂行過程에서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財政 및 人力 등 資源을 最少化하면서 最大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지 投入된 資源에 대한 産出의 比率로 주로 費用分析에 관한 項目들이 이에 包含되고 있다. 다섯번째 過程評價는 투입이 산출로 나타나는 과정, 즉 事業計劃 樹立이나 遂行節次에 대한 행정적인 指導·監督에 重要시되고 있으나 評價基準의 優先順位에서는 낮은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성 규탁, 1987:155). 그러나 評價方法은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基準이나

指標의 選定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社會福祉法이나 事業指針에 따라 예산,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을 정부에 依存하고 있어 實際 運營의 주체가 되는 法人이나 施設長들이 運營의 限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施設運營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는 水準에 지나지 않았다(김국도 외, 1987). 그리고 일부 事業管理者나 전문가들은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劣惡하고 貧弱한 施設財政이나 人力構成으로 보아 施設運營의 評價는 時機尙早라며 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施設運營豫算 및 支出額의 構造的 特性과 從事人力의 確保와 構成, 그리고 이들 資源을 어떻게 活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가 適切한지,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收容者의 慾求를 어느정도 充足시켜 주고 있는지를 評價하지 않고서는 施設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周邊 與件의 變化에 적절하게 對處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에 필요한 資料나 情報蒐集이 비교적 용이한 兒童福祉施設을 評價對象으로 하였다. 특히 전체 社會福祉施設중에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수용시설중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育兒施設을 評價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을 努力性, 充分性 및 效果性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測定하기 위하여 豫算의 規模 및 構成, 從事人力의 確保와 構成, 施設管理의 形態, 地域社會와의 關聯性, 退所兒童의 自立程度, 收容兒童의 滿足水準 등을 主要 變數로 選定하였다. 이러한 變數를 指標化하여 投入量과 努力에 의한 産出의 結果를 地域, 施設規模에 따라 施設間의 相對的 評價를 試圖하였다. 즉 收容兒童을 보호 및 양육하기 위해서 投入한 財政, 人力, 서비스 프로그램, 管理運營 體系 및 地域社會와의 關係 등 多樣한 施設活動이나 努力이 시설아동의 특성에 어느 정도 適切하고 그 結果가 아동의 自立에 어느 정도 成果가 있는지를

分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分析評價의 흐름을 먼저 수용아동이나 家庭環境이 시설운영과 밀접하게 聯關될 것으로 생각하고 收容兒童의 特性이나 家庭環境을 주요 變數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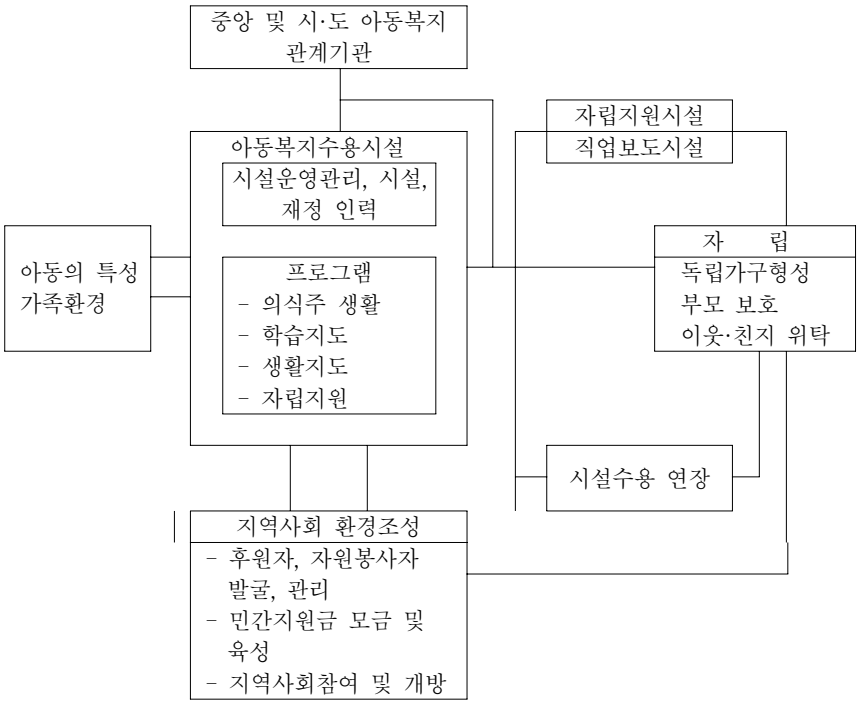

[그림 8] 分析흐름圖

그리고 法人 및 施設의 財政, 設備 및 從事人力의 確保와 그 適切性,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適切한지 그리고 시설과 地域社會와의 關係를 分析하기 위하여 後援者 結緣者의 確保, 民間支援金의 活用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施設의 運營이 收容兒童에게 어느

정도 滿足을 주고, 시설에서의 생활이 家庭이나 社會에 復歸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한 變數를 效果變數로 하였다. 주요 生活實態 및 評價指標는 아래와 같다.

2. 主要 評價指標

가. 法人의 財政規模, 施設의 收入 및 支出

1) 地域 및 施設規模別 平均 法人의 財産規模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法人當 平均 財産(법인 총재산/시설수)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法人의 收益財産(수익재산/법인 총재산)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平均 施設의 總收入 및 支出
   - 地域 및 施設規模別 豫算構成比率(국고 및 지방보조금, 민간지원금, 자체수입, 외원 등의 구성비)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當 平均收入(시설의 총수입/시설수)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當 平均支出(시설의 총지출/시설수)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支出內譯(직접비/총지출, 간접비/총지출, 주·부식비/총지출, 인건비/총지출, 시설운영 · 유지비/총지출)

나. 施設從事者의 確保 및 勤務環境

1) 地域 및 施設規模別 平均 從事者 및 保育士 數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總從事者數 대 資格證所持者 比率

3) 地域 및 施設規模別 總收容兒童數 대 保育士 比率

4) 主要從事者의 勤務條件
   -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의 勤務期間
   -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의 離職率

-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의 施設內 居住 및 勤務形態 (시간 및 교대제)
-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의 資格證所持率(직종별 자격증소지자수/ 직종자수)

다. 施設의 運營形態 및 開放程度

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管理·運營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法的 基準의 遵守程度(주거형태, 관계자료정리, 식단작성, 신체검사 등)
   -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 採用方法
   - 地域 및 施設規模別 關聯機關 및 團體와의 協調程度(읍·면·동사무소, 학교, 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開放程度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運營者의 認識 및 態度(시설종사자 자치활동구성에 대한 태도, 주거형태의 소규모화에 대한 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태도 등)
   - 地域 및 施設規模別 資源奉仕者의 活用(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의 직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
   -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家族 및 保護者와의 接觸頻度(아동의 부모 및 친척의 시설방문회수, 아동이 부모 및 친척을 찾아간 회수)

라. 施設從事者 및 收容兒童의 施設生活에 대한 滿足

1)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의 滿足度

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주·부식 및 피복에 대한 滿足

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校生活에 대한 滿足

4)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시설내 餘暇活動에 대한 滿足

5)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形態

-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理由
-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後 住居形態

第 2節 育兒施設의 運營 實態 및 評價

1. 施設의 種類 및 住居形態

가. 施設의 種類와 配置

育兒施設의 地域 및 規模別 시설배치현황을 보면 대부분 都市, 특히 大都市에 집중되어 있었다. 地域別 構成比率을 보면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가 45.0%, 中小都市가 34.1%로 79.1%의 育兒施設이 도시에 集中되어 있다. 한편 수용인원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하 소규모시설)이 38.7%,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이하 중간규모시설)가 35.6%,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하 대규모시설)이 25.7%로 全體施設中에서 小規模施設의 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施設의 配置는 지역에 따라 달라 大都市와 郡部에 위치한 施設은 收容兒童이 60명~79명인 中間規模施設이 많이 分布되고 있는 반면 中小都市에서는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 30.8%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大都市의 26.7%보다 높게 나타났다(表 4-1 참조). 따라서 育兒施設은 지역의 福祉慾求需要를 고려하여 地域 또는 施設의 規模에 따라 적정한 施設配置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1〉 地域別 施設規模別 分布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계
60명 미만	36.0	41.5	40.0	38.7
60~79명	37.2	27.7	45.0	35.6
80명 이상	26.8	30.8	15.0	25.7
계	100.0	100.0	100.0	100.0
(N)	(86)	(68)	(40)	(191)

〈表 4-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現員 對 定員 比率

(단위: %)

	50% 이하	51~60%	61~70%	71~80%	81~90%	91% 이상	계	(N)
전체	4.2	13.6	30.9	27.2	17.3	6.8	100.0	(191)
지역								
대도시	7.0	10.5	34.9	25.6	18.6	3.4	100.0	(86)
중소도시	1.5	13.8	32.3	26.2	15.4	10.8	100.0	(65)
군부	2.5	20.0	20.0	32.5	17.5	7.5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10.8	18.9	25.7	27.0	10.8	6.8	100.0	(74)
60~79명	-	12.1	37.9	21.2	21.2	7.6	100.0	(66)
80명 이상	-	7.8	29.4	35.3	21.6	5.9	100.0	(51)

또한 施設의 定員과 현재 收容人員의 比率을 보면, 育兒施設은 法的 定員의 74%가 수용되어 있어 兒童福祉施設의 일부가 遊休施設化되고 있다. 施設定員의 60%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施設은 郡部의 施設이나 收容兒童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더욱 심해 그 比率이 각각 22.5%와 29.7%였다. 地域 및 施設規模別 시설당 평균아동수는 大都市의 施設은 83명이었고, 郡部의 施設은 63명으로 시설당 平均 兒童數가 지역에 따라 差異가 크며, 施設規模에서도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은 시설당 평균 120명인데 비해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은 시설당 49명으로 施設規模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表 4-2 참조). 이러한 結果에 의하면 法的 定員이 시설운영의 기준으로서는 現實性이 없고, 地域的으로 또는 같은 地域에서도 施設間 收容兒童의 差異가 커 수용아동의 管理나 質的인 서비스의 次元에서 施設의 定員이나 收容兒童數의 조정이 不可避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복지시설중 育兒施設을 제외한 수용시설의 地域配置 현황을 보면, 全體 嬰兒施設 28개중에서 大都市에 12개, 中小都市가 16개 郡部에는 전혀 없다. 그 이외 職業輔導施設이 7개소가 있지만 전부 大都市에 位置하고 있으며, 교호시설은 大都市 5개소 郡部에 2개소가 배치되어 있고 中小都市에는 전혀 없었다. 自立支援施設은 총 7개시설중에서 大都市가 4개소, 中小都市가 2개소, 郡部가 1개소 등으로 配置되어 있으며, 그리고 兒童一時保護施設은 大都市가 7개소, 中小都市가 2개소 등 郡部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育兒施設을 제외한 대부분의 兒童福祉收容施設의 수용아동수가 定員에 미달되는 現狀態下에서 시설의 위치나 규모가 큰 問題일 수는 없다 할 수 있으나, 적어도 地域社會의 特性이나 收容兒童의 慾求를 고려한 시설의 適定配置가 이루어져야 하고 地域 및 시설종류간의 機能 및 役割分擔에 따라 시설간의 連繫網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施設의 住居形態

育兒施設의 住居形態는 수용아동의 주거환경과 가정분위기 조성에 影響을 주는 主要 變數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육아시설의 住居形態는 시설내에서의 독립적인 單獨家庭, 소숙사제이며 분리취사, 소숙사제이며 공동취사 및 집단기숙사 등 4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小規模이면서 分離炊事를 할 수 있는 方向으로의 住居形態가 家庭雰圍氣의 造成과 施設兒童의 社會適應能力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重要視되고 있으며 적극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施設의 小規模化

및 家庭化와 관련된 변수의 하나로 施設의 住居形態가 소숙사 또는 單獨家庭을 이루고 있는지를 把握하여 施設의 住居形態의 적절성 정도를 評價하였다.

育兒施設의 住居形態는 전체 시설의 42.9%가 集團寄宿舍 形態를 取하고 있어 아직도 대부분의 시설이 集團收容의 形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小舍制이면서 共同炊事의 形態가 48.7%로 점차 주거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한 結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住居形態의 변화는 中小都市 및 大都市에서 비율이 더 높아 小宿舍制나 單獨家庭의 形態가 각각 59.3%와 56.9%로 나타나고 있어 郡部에 소재한 施設에 비해 變化의 程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은 절대다수인 62.7%가 小宿舍制이면서 共同炊事의 形態로 나타났고, 少數에 지나지 않지만 小宿舍制이면서 分離炊事와 單獨家庭의 형태도 각각 5.9%로 나타나고 있어 大都市 및 大規模施設에서 주거형태의 變化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3 참조).

〈表 4-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住居形態

(단위 : %)

	독립적인 단독가정(그룹홈)	소숙제 및 분리취사	소사제 및 공동취사	집단기숙사형태	기타	계	(N)
전체	5.3	2.6	48.7	42.9	0.5	100.0	(191)
지역							
대도시	10.5	3.5	45.3	40.7	-	100.0	(86)
중소도시	-	3.1	53.8	43.1	-	100.0	(65)
군부	2.5	-	47.5	47.5	2.5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4.0	2.7	41.9	51.4	-	100.0	(74)
60~79명	6.0	-	45.5	47.0	1.5	100.0	(66)
80명 이상	5.9	5.9	62.7	25.5	-	100.0	(51)

2. 法人의 財政規模 및 施設의 收入 및 支出

가. 法人의 資産規模

資産이 20억미만인 法人이 전체 시설의 54.4%였고, 그중 10억 미만이 34.5%로 法人의 資産이 脆弱한 狀態였다. 특히 法人의 資産은 地域 및 施設規模에 따라 差異가 많았다. 법인의 資産規模가 10억 미만인 施設은 대도시가 19.7%, 중소도시가 38.4%, 그리고 군부가 60.0%로 나타나 大都市, 中小都市, 郡部地域으로 갈수록 法人의 자산이 더 脆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4〉 地域 및 施設規模別 法人의 總資産程度

(단위: 백만원, %)

	500 이하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6000	6001 이상	무응답	계	(N)	총자산 평균
전체	15.7	18.8	19.9	14.1	5.2	3.7	2.1	10.0	10.5	100.0	(191)	3502
지역												
대도시	8.1	11.6	24.4	11.6	9.3	5.8	2.3	12.8	14.0	100.0	(86)	3519
중소도시	16.9	21.5	16.9	18.5	1.5	3.1	3.1	10.8	7.7	100.0	(65)	4712
군부	30.0	30.0	15.0	12.5	2.5	-	-	2.5	7.5	100.0	(40)	1483
시설규모												
60명 미만	17.6	23.0	23.0	10.8	4.1	4.1	4.1	5.5	8.1	100.0	(74)	2316
60~79명	16.7	19.7	18.2	18.2	4.5	1.5	-	9.0	12.1	100.0	(66)	2142
80명 이상	11.8	11.8	17.6	13.7	7.8	5.9	2.0	17.7	11.8	100.0	(51)	6954

施設의 規模에서도 10억 미만인 시설은 수용아동 80명 이상인 施設이 23.6%인데 비해 60~79명인 施設은 36.4%, 60명 미만인 施設은 40.6% 등으로 나타나 施設規模가 작을수록 法人의 資産이 貧弱하였다. 法人의 平均 資産額에서도 중소도시 시설의 平均 資産은 47억 1천2백만원인데, 비해 郡部 施設의 平均 資産은 14억 8천3백만원에 不過하였고, 施設規模의 경우에는 수용아동 80명 이상인 施設은 69억 5천4

백만원인데, 비해 60~79명 및 60명 미만인 施設은 각각 23억 1천6백만원과 21억4천2백원으로 差異가 심해 地域 및 施設規模에 따라 法人資産의 차이가 심하였다(表 4-4 참조).

施設運營을 위한 法人의 負擔金은 시설의 총수입의 10% 이하가 79.1%로 대다수의 법인이 政府의 國庫補助金 事業遂行指針인 시설운영비의 10%도 負擔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郡部地域의 경우는 85%가, 收容兒童이 60~79명 및 60명 미만인 施設의 경우는 대략 81~83%가 運營費의 10% 이하를 負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부지역의 시설 또는 수용아동이 60~79명인 시설과 60명 미만인 施設의 法人資産이 취약한데 起因한 것으로 判斷된다(表 4-5 참조). 이처럼 전체시설중 약 80.0%정도에 해당하는 施設들이 施設運營費중 10% 自體負擔能力을 갖지 못한 狀況에서는 社會福祉事業法 시행규칙 제 12조에 있는 "시설운영비중 20% 자체부담"이라는 규정은 事實上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表 4-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收入 중 法人負擔金 比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 이상	계	(N)
전체	79.1	14.1	4.2	2.6	100.0	(191)
지역						
대도시	72.1	17.4	7.0	3.5	100.0	(86)
중소도시	84.6	9.2	3.1	3.1	100.0	(65)
군부	85.0	15.0	-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81.0	17.6	1.4	-	100.0	(74)
60~79명	83.4	12.1	4.5	-	100.0	(66)
80명 이상	70.6	11.8	7.8	9.8	100.0	(51)

나. 施設의 收入및 支出과 그 構成

施設의 收入源은 정부보조금, 민간지원금, 외원보조 및 자체수입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施設의 收入源別 構成比率은 74.4%가 政府補助金이었고, 그중 國庫가 49.1%, 地方費가 25.3%로 政府補助金의 약 1/3을 地方費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民間支援金이 10.5%, 自體收入이 13.7%로 나타나 施設의 收入은 정부의 보조금에 주로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政府의 補助金 支給基準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實情에서 법인 및 시설의 自體收入金이나 民間支援金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法人이 운영하는 收益事業의 不況으로 인하여 자체부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流動性이 많은 민간지원금으로는 施設財政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實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郡部施設은 자체수입금이나 민간지원금이 다른 地域 施設에 비해 적은 반면에 政府補助金의 비율은 81.7%로 상대적으로 높아 군부지역의 시설들은 타지역의 시설들 보다 政府補助金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시설자체의 收益用事業을 통한 施設運營費의 충당이 어렵고 定期的인 收入源이 아닌 民間支援金으로는 합리적인 施設豫算을 編成하기가 어렵다고 볼때, 政府補助金을 현실에 맞게 引上하거나 民間支援金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설운영비중 10%의 자체부담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狀態라고 생각된다. 특히 郡部 및 中小都市의 시설운영이 더욱 困難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施設規模別로 보면,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시설에서 政府補助金 比率이 77.6%로 나타나 施設規模가 큰 施設들 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依存率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이 所有하고 있는 收益用財産을 활용할 수 있도록 法·制度의 簡素化내지 緩和가 필요하고 稅制惠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民間支援金의 지역적인 차이를 解消할 수 있도록 民間支援金의 募金方法 및 그 育成과 配定方案을 地域

特性에 맞게 開發하고 管理體系를 一元化해야 할 것이다.

施設當 平均收入을 살펴보면, 全體施設의 施設當 평균수입은 2억 7천7백만원이었고, 이를 地域 및 施設規模로 나누어 살펴보면, 地域的으로는 大都市의 시설당 평균수입이 2억 9천8백만원, 中小都市의 시설당 평균수입은 2억 7천5백만원, 郡部의 시설당 평균수입은 2억 3천5백만원으로 郡部의 施設當 平均收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別 施設當 平均收入은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施設이 3억 8천1백만원, 60~79명인 시설이 2억 8천5백만원, 그리고 60명 미만인 시설이 2억1백만원으로 施設兒童數가 적은 施設일수록 施設當 平均收入이 적었다. 이는 현행 정부보조금 支援基準이 收容兒童數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당연한 結果이다. 하지만 현행 政府補助金 支援基準을 개정하지 않는 한 施設規模가 큰 시설에 계속해서 정부보조금이 많이 支援될 것이므로 大規模施設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날 소지가 있고, 可能한 한 收容兒童數를 많이 수용하려고 施設間에 수용아동을 서로 늘이려고 하는 副作用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시설수입의 97.8%는 執行되고 있었고 총지출의 34.8%가 의식주를 비롯한 보건의료, 교육훈련비 등 直接費에 지출되었고 인건비, 수용비, 시설유지비 등 間接費에 65.2%가 지출되었다. 따라서 시설지출의 1/3이 兒童을 위한 직접비였으며, 그중 의식주에 支出되는 費用이 總支出의 21.6%로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敎育 및 訓練에 투입되는 비용은 6.3%에 지나지 않아 兒童의 自立을 위한 情緖 및 能力開發을 위한 投資가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시설에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間接費중에서는 역시 人件費가 總支出의 39.0%로 간접비의 절반이상이 支出되었으며 施設維持費(2.7%)나 施設新設費(8.4%)가 그 다음을 점하고 있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아 人件費가 시설운영비에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表 4-6 참조).

〈表 4-6〉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平均 收入 및 支出

(단위: 백만원,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시설의 총수입							
정부보조	70.1	76.4	81.7	77.6	75.8	70.3	74.4
국고보조	43.3	53.1	56.6	50.2	51.6	45.4	49.1
지방비보조	26.8	23.3	25.1	27.4	24.2	24.9	25.3
민간지원금	12.1	9.5	6.4	10.0	10.9	10.0	10.5
외원보조	1.7	1.1	0.9	0.5	0.7	2.9	1.4
자체수입	16.1	13.0	11.0	11.9	12.6	16.8	1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수입	298	275	235	201	285	381	277
시설의 총지출							
직접비	34.4	36.1	33.6	32.9	33.3	37.7	34.8
주식비	5.9	6.6	6.4	6.3	6.2	6.3	6.2
부식비	9.2	11.0	9.9	9.5	9.1	11.0	9.9
간식비	2.5	2.5	2.3	2.1	2.2	3.0	2.5
피복비	3.2	3.0	2.8	2.8	2.9	3.4	3.0
보건의료비	0.2	0.3	0.2	0.3	0.2	0.2	0.2
취사연료비	0.6	0.9	0.6	0.6	0.6	0.8	0.7
교육훈련비	7.3	6.2	3.9	5.6	5.6	7.6	6.3
기타	5.5	5.6	7.5	5.7	6.5	5.4	6.0
간접비	65.6	63.9	66.4	67.1	66.7	62.3	65.2
수용비	2.1	1.5	3.2	2.1	2.6	1.5	2.1
제세 및 공과금	1.7	1.8	1.3	2.0	1.5	1.6	1.7
난방연료비	2.0	2.0	1.9	2.0	2.0	2.0	2.0
차량유지비	1.0	0.9	0.8	1.2	0.9	0.6	0.9
시설유지비	3.3	2.5	1.3	2.6	2.3	3.1	2.7
시설신설비	7.5	9.0	9.9	8.8	9.7	6.9	8.4
인건비	40.1	37.9	37.8	39.1	38.2	39.6	39.0
기타	7.9	8.3	10.2	9.3	9.5	7.0	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	291	264	240	196	280	371	271
(N)[1)]	(76)	(60)	(33)	(67)	(57)	(45)	(169)

註: 1) 무응답한 22case를 제외시켰음.

그러나 아직도 從事者의 人件費는 同一職種의 國·公立 施設從事者의 月給에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施設運營의 가장 어려운 問題點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施設全體가 1년간 支出한 兒童 1人當 평균지출액은 약 3백9십만원이었고, 이를 地域 및 施設規模別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大都市의 施設은 아동 1인당 平均支出額이 약 4백1십만원으로 약 3백7십만원인 中小都市의 施設과 약 3백8십만원인 郡部의 施設들보다 조금 더 支出하고 있었으며, 施設規模別로는 收容兒童이 60명 미만인 시설이 약 4백만원을 支出하여 약 3백9십만원을 지출한 수용아동이 60~79명인 시설과 약 3백7십만원을 支出한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시설들 보다 더 支出하고 있었다.

〈表 4-7〉 地域 및 施設規模別 兒童 1人當 總 支出額

(단위: 천원, %)

	2500 이하	2501~ 3000	3001~ 3500	3501~ 4000	4001~ 4500	4501~ 5000	5001 이상	계	(N)	평균
전체	1.5	15.7	28.3	20.4	15.2	4.7	14.2	100.0	(191)	3902
지역										
대도시	1.2	9.3	26.7	23.3	18.6	4.7	16.2	100.0	(86)	4115
중소도시	1.5	24.6	32.3	12.3	13.8	4.6	10.9	100.0	(65)	3676
군부	2.5	15.0	25.0	27.5	10.0	5.0	15.0	100.0	(40)	3811
시설규모										
60명 미만	1.4	13.5	20.3	25.7	16.2	8.1	14.8	100.0	(74)	3999
60~79명	1.5	10.6	33.3	21.2	18.2	3.0	12.2	100.0	(66)	3920
80명 이상	2.0	25.5	33.3	11.8	9.8	2.0	15.6	100.0	(51)	3738

이처럼 地域 및 施設規模別로 1년간 아동 1인당 支出한 平均支出額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施設規模가 작을수록 1년간 아동 1인당 지출한 平均支出額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施設規模가 클수록 政府補助金이 많이 支援되고 있는 것과는 相反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表 4-7 참조). 이는 施設規模가 클수록 아동 1인당 支出할 支出費用을 고려하여 政府補助金이

아동수에 比例하여 예산지원이 되듯이 政府補助金을 제외한 民間補助金이나 법인의 自體收入金 등이 兒童數에 比例하여 지원되고 있지 못하는데서 나타난 것으로 判斷된다.

3. 施設從事者의 主要特性 및 勤務環境과 滿足水準

施設의 管理者가 시설을 어떻게 管理·運營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施設의 現況, 財政 및 豫算 등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施設에서 從事하고 있는 從事者들의 特性, 勤務環境, 施設에 대한 認識 및 態度, 그리고 施設從事者에 대한 滿足度를 관찰조사 대상인 30개 育兒施設에서 從事하는 從事者 255명을 面接調査하여 그 資料를 分析하였다.

가. 施設從事者의 一般特性

施設從事者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年齡的으로 20대가 가장 많아 43.1%, 30대가 25.3%, 50대가 20.2% 등의 순이었으며, 20대의 젊은 층은 郡部에 소재한 施設의 경우가 51.8%,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의 경우가 47.2%로 地域 및 施設規模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結婚狀態는 53.1%가 미혼이었으며, 특히 地域的으로는 大都市에 소재한 시설(55.8%), 施設規模에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56.5%)의 종사자들이 未婚인 경우가 많았다. 종사자의 學歷은 60.4%가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이 26.7%였으며, 大學을 卒業한 사람은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大學 이상자중에서 社會福祉學科를 전공한 從事者는 1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專門大學 이상의 學歷은 지역적으로는 大都市施設이 31.7%로 다른 地域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施設規模에서는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의 시설이 31.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大學 이상의 從事者들의 비율이 높아 地域 및 施設規模間에 차이를 나타냈다.

〈表 4-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一般特性

(단위: %)

구분	지 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미만	60~79명	80명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5)	(95)	(65)	(72)	(74)	(109)	(255)
성별							
남	10.5	21.1	20.0	23.6	16.2	12.8	16.9
여	89.5	78.9	80.0	76.4	83.8	87.2	83.1
연령							
29세 이하	34.1	44.7	53.9	42.3	37.9	47.2	43.1
30~39세	30.8	24.5	18.4	25.4	21.6	27.7	25.3
40~49세	12.8	11.6	9.3	12.5	13.5	9.3	11.4
50세 이상	22.3	19.2	18.4	19.8	27.0	15.8	20.2
학력[1)]							
중졸이하	13.7	13.7	10.7	12.5	13.5	12.9	12.9
고등학교	54.7	65.3	61.5	58.3	55.4	65.1	60.4
전문대학	10.5	8.4	12.3	9.7	12.2	9.2	10.2
대학 이상	21.1	12.6	15.5	19.5	18.9	12.8	16.5
종교							
없음	4.2	8.4	16.9	15.3	10.8	3.7	9.0
개신교	75.8	84.2	61.6	65.3	62.2	90.8	75.3
천주교	17.9	4.2	13.8	8.3	27.0	3.7	11.8
불교	2.1	3.2	4.6	8.3	-	1.8	3.1
기타	-	-	3.1	2.8	-	-	0.8
결혼상태							
미혼	55.8	54.3	47.7	48.6	52.7	56.5	53.1
유배우	23.2	30.8	44.6	37.5	32.3	26.9	31.5
사별	10.5	6.3	7.7	6.9	9.5	8.3	8.3
이혼	7.3	4.3	-	2.8	4.1	5.5	4.3
별거	3.2	4.3	-	4.2	1.4	2.8	2.8
시설출신여부							
출신임	31.6	12.6	6.2	30.6	10.8	14.7	18.0
출신아님	68.4	87.4	93.8	69.4	89.2	85.3	82.0

註: 1) 전문대학 이상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종사자비율은 전체 11.9%,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10.3%, 중소도시 15.0%, 군부 11.1%이었고, 시설규모면에서는 60명 미만 14.3%, 60~79명 4.3%, 80명 이상 17.4%이었음.

施設從事者의 90%가 宗敎를 믿고 있었으며, 改新敎가 75.3%로 절대다수였고,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天主敎, 佛敎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따라서 天主敎를 믿는 종사자의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大都市에 소재한 시설이 17.9%, 그리고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의 시설에서는 27.0%로 각각 地域 및 施設規模에서 두드러진 差異를 나타내 法人 및 施設運營의 形態가 종사자에게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종사자들이 시설출신인지를 알아본 바, 18%가 施設出身이었으며, 이를 地域 및 施設規模로 나누어 살펴보면, 地域的으로는 大都市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가 31.6%로, 그리고 施設規模에서는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30.6%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表 4-8 참조).

이러한 結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施設從事者는 연령적으로는 20대이면서 未婚女性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高學歷者 보다는 高等學校 이하인 低學歷者가 많아 專門學科를 졸업한 전문인력이 不足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부분 宗敎와 관련을 갖고 있는 從事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施設從事者의 勤務環境

施設從事者의 시설내 거주관계는 수용아동의 生活指導 및 個人의 情緖指導에 직접적인 影響을 주고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매우 重要視 되고 있다. 施設從事의 種類別 시설내 주거형태는 保育士가 91.1%, 施設長이 80.1%, 그리고 炊事員이 85.9%로 주로 시설내 居住하고 있었으며, 總務, 看護員 및 生活指導員 등은 시설 밖에서 勤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에서 근무하는 施設長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施設內 居住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保育士의 경우는 시설내 거주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대부분이 未婚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위해 個人私生活에 상당한 制限을 받게 되어 보육사를 꺼리는 原

因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勤務條件과 더불어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하여 資格을 갖춘 專門人力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表 4-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居住形態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시설장							
시설내 거주	79.1	83.1	77.5	75.7	80.9	85.7	80.1
시설밖 거주	19.8	15.4	22.5	21.6	19.1	14.3	18.8
무응답	1.1	1.5	-	2.7	-	-	1.1
총무							
시설내 거주	50.0	49.2	37.5	44.6	50.0	46.9	47.1
시설밖 거주	47.7	49.2	57.5	50.0	50.0	51.0	50.3
총무부재	1.2	1.6	5.0	4.1	-	2.1	2.1
무응답	1.1	-	-	1.3	-	-	0.5
생활지도원							
시설내 거주	22.1	33.9	25.0	8.2	22.1	61.2	26.7
시설밖 거주	14.0	13.8	12.5	6.8	16.2	20.4	13.6
생활지도원부재	61.6	52.3	62.5	83.8	60.3	18.4	58.6
무응답	2.3	-	-	1.2	1.4	-	1.1
보육사							
시설내 거주	94.2	84.6	95.0	85.1	94.1	95.9	91.1
시설밖 거주	1.2	3.1	-	2.7	-	2.0	1.6
시설내외 거주	3.5	10.8	5.0	9.5	5.9	2.1	6.3
무응답	1.1	1.5	-	2.7	-	-	1.0
간호사							
시설내 거주	31.4	26.2	25.0	8.1	36.8	46.9	28.3
시설밖 거주	27.9	27.7	17.5	4.1	33.8	46.9	25.7
간호사부재	37.2	46.1	55.0	85.1	26.5	6.2	44.0
무응답	3.5	-	2.5	2.7	2.9	-	2.0
취사원							
시설내 거주	88.4	84.6	82.5	77.0	89.7	93.9	85.9
시설밖 거주	8.1	13.8	12.5	20.3	4.4	6.1	11.0
취사원부재	1.2	-	2.5	-	2.9	-	1.0
무응답	2.3	1.6	2.5	2.7	3.0	-	2.1

따라서 保育士는 低學歷의 소유자이지만 兒童을 위해서 시설내에서 居住할 수 있고 長期的으로 이 業務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保育士로 採用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었다. 地域的으로는 대도시 및 군부에 所在한 시설의 보육사가 거의 施設內에서 居住하고 있는데 비해 中小都市에 소재한 시설에서 從事하고 있는 保育士는 84.6%에 지나지 않아 保育士의 住居形態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施設의 規模에 있어서도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 비해 保育士의 시설내 住居率이 85.1%로 낮게 나타나 시설규모에 따른 差異를 볼 수 있었다(表 4-9 참조).

〈表 4-1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1日 平均 勤務時間

(단위: 시간)

	지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시설장	16.9	18.3	17.5	17.5	17.7	17.1	17.5
총무	14.3	15.5	13.8	15.2	14.6	13.9	14.6
생활지도원	14.9	16.2	16.5	13.1	16.1	16.2	15.8
보육사	20.4	20.7	19.5	20.2	20.4	20.4	20.3
간호사	14.9	14.9	18.0	16.7	15.4	15.2	15.4
취사원	18.1	19.1	18.4	18.2	18.7	18.5	18.5

한편 종사자의 勤務時間에서도 종사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일평균 勤務時間을 보면, 總務가 14.6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施設長이 17.5시간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保育士가 20.3시간으로 가장 근무시간이 길어 勤務의 特殊性을 나타냈다(表 4-10, 附表 4-1 참조). 그러나 施設의 從事者는 모두 14시간의 勤務를 하고 있어 다른 職場에 비해 延長勤務를 하고 있다는 事實은 적어도 이들 勤務의 特性에 적절한 賃金補償이나 근무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勤務條件에 대한 從事者의 態度를 보면, '매우 열악하다'는 경우가

26.7%이고, '다소 열악하다'는 경우가 35.6%로 종사자의 62.3%가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양호하다'와 '매우 양호하다'고 肯定的인 응답을 한 경우는 8.9%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施設從事者들은 자신들의 勤務條件이 劣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地域 및 施設規模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中小都市가 '양호하다'와 '매우 양호하다'고 肯定的인 응답을 한 비율이 13.8%로 5.8%인 大都市와 7.5%인 郡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施設規模에서는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시설이 '양호하다'와 '매우 양호하다'고 긍정적인 應答을 한 比率이 10.9%로 각각 7.4%와 8.2%인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과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表 4-11 참조).

〈表 4-1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勤務條件에 대한 態度

(단위: %)

	매우열악	다소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무응답	계	(N)
전체	26.7	35.6	27.7	8.4	0.5	1.1	100.0	(191)
지역								
대도시	25.6	43.0	25.6	5.8	-	-	100.0	(86)
중소도시	24.6	29.2	29.2	12.3	1.5	3.2	100.0	(65)
군부	32.5	30.0	30.0	7.5	-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17.6	37.8	32.4	9.5	1.4	1.3	100.0	(74)
60~79명	33.8	39.7	17.6	7.4	-	1.5	100.0	(68)
80명 이상	30.6	26.5	34.7	8.2	-	-	100.0	(49)

다. 施設從事者의 確保 및 專門性

施設의 從事者數와 專門人力의 確保는 지역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시설의 종사자수는 兒童數의 比率에 따라 法的으

로 基準이 정해져 있어 收容兒童數가 많은 시설일수록 종사자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地域 및 施設規模別 從事者 數는 전체 시설당 平均 11.2명이었으며, 大都市 施設이 평균 12.5명, 中小都市施設이 10.8명, 郡部가 9.2명이었고, 시설규모별 종사자수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시설이 16.3명, 60~79명의 시설이 11.1명, 60명 미만의 시설은 7.9명으로 종사자수가 가장 적었다. 育兒施設 從事者의 人的 構成은 시설장, 총무, 보육사 및 취사원 등이 시설의 基本的인 인력이고, 그중에서도 53.4%를 차지하고 있는 保育士가 시설인력의 根幹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4-2 참조). 保育士는 전체 시설당 평균이 6.1명이었고, 地域別로는 대도시시설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부지역시설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施設規模別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은 평균 보육사가 9.6명인데, 비해 수용 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은 4.1명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表 4-12 참조). 이러한 保育士의 配置가 어느정도 適定한 지를 評價하고자 보육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파악한 바, 전체 육아시설에서 保育士 1인당 평균 당당아동수는 14.0명으로 法的 基準인 보육사 1인당 담당아동수 10명보다 훨신 높아 시설의 中樞的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사의 수가 配置基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平均 總從事者 및 保育士數

(단위: 명)

	지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평균 총종사자수	12.5	10.8	9.2	7.9	11.1	16.3	11.2
평균 보육사수	6.9	5.9	4.8	4.1	5.9	9.6	6.1
(N)	(86)	(64)	(40)	(74)	(66)	(51)	(191)

이러한 傾向은 대도시 시설보다는 군부지역의 시설에서 保育士當 擔當兒童數가 15.0명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 基準을 훨신 超過하고 있었으며, 시설규모면에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에서도 보육사 1인당 담당아동수가 14.4명으로 보육사가 담당해야 할 基準을 超過하고 있어 보육사의 增員配置가 요구되고 있으며, 군부 및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의 경우에 있어서 보육사의 배치가 더 深刻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4-13 참조).

〈表 4-13〉 地域 및 施設規模別 保育士 1人當 擔當兒童數

(단위: %)

	5명 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계	(N)	평균
전체	1.0	28.3	61.8	8.4	0.5	100.0	(191)	14.0
지역								
대도시	1.2	32.6	58.1	8.1	-	100.0	(86)	13.7
중소도시	1.5	29.2	64.6	3.1	1.6	100.0	(65)	13.8
군부	-	17.5	65.0	17.5	-	100.0	(40)	15.0
시설규모								
60명 미만	-	37.8	48.6	12.2	1.4	100.0	(74)	13.9
60~79명	1.5	28.8	63.6	6.1	-	100.0	(66)	13.8
80명 이상	2.0	13.7	78.4	5.9	-	100.0	(51)	14.4

즉, 우리나라의 育兒施設은 保育士 1人當 담당아동수가 14.0명으로 法的 基準인 1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의 育兒施設 6명보다 배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 및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全般的으로 수용아동 10명당 보육사 1인을 두도록 하는 法的 基準을 수행하지 못하고 保育士들이 많은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政府의 補助金 支給基準이 보육사 1인당 14명으로 法的基準보다 높다는 점이고, 施設從事者들의 임금수준이 同一 職種 國·公立 從事者들의

賃金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시설에서 保育士를 채용하고자 하여도 高學歷의 資格을 갖춘 사람들이 채용신청을 忌避하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施設從事者들의 賃金水準을 현실화시켜주고 정부 보조금의 支給基準을 改正하지 않는 한 수용아동 10명당 保育士 1인을 두도록 하는 法的 基準은 시설에서 充足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적 기준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表 4-14〉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 從事者 중 資格證所持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40%	41% 이상	계	(N)	평균
전체	18.1	26.6	36.7	9.0	9.6	100.0	(188)	22.5
지역								
대도시	20.5	33.7	28.9	8.4	8.5	100.0	(83)	21.7
중소도시	15.4	20.0	40.0	13.8	10.8	100.0	(65)	23.5
군부	17.5	22.5	47.5	2.5	10.0	100.0	(40)	22.7
시설규모								
60명 미만	17.6	24.3	36.5	9.5	12.1	100.0	(74)	23.2
60~79명	17.9	22.4	43.3	9.0	7.4	100.0	(67)	22.5
80명 이상	19.1	36.2	27.7	8.5	8.5	100.0	(47)	21.5

註: 무응답한 3case는 제외시켰음.

시설종사자중 資格證 및 免許證 所持率은 전체 종사자의 36.9%였고 대도시의 종사자가 41.3%, 군부시설 종사자가 32.2%로 從事者의 資格 및 免許證 所持者가 대도시 시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시설규모면에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의 從事者중 자격 및 면허증소지율이 38.6%였고,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33.3%로 시설의 규모가 큰 시설종사자의 資格 및 免許證 소지자가 많아 대도시 및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대규모시설이 그외 다른 施設의 從事者에 비해 상대적으로 適切한 전문인력을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4 참조).

육아시설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의 사회복지사 資格證 所持率은 10% 이하인 시설이 53.2%인데 군부 시설은 62.5%,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소규모시설이 62.2% 등으로 나타나 군부에 소재한 시설이나 소규모시설에서 資格證을 所持한 보육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4-15 참조). 이처럼 地域 및 施設規模別로 종사자나 보육사의 資格證所持者 比率이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大多數의 施設에서 전문보육사가 부족한 현 실정을 勘案하여 보육사의 賃金을 大幅引上하고 勤務環境을 改善하여 施設從事者의 資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表 4-1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保育士 중 資格證所持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40%	41% 이상	계	(N)	평균
전체	53.2	21.0	8.1	10.2	7.5	100.0	(186)	14.4
지역								
대도시	55.4	20.5	6.0	9.6	8.5	100.0	(83)	14.0
중소도시	44.4	27.0	11.1	14.3	3.2	100.0	(63)	14.9
군부	62.5	12.5	7.5	5.0	12.5	100.0	(40)	14.6
시설규모								
60명 미만	62.2	10.8	10.8	12.2	4.0	100.0	(74)	11.7
60~79명	49.2	26.2	6.2	10.8	7.6	100.0	(65)	15.1
80명 이상	44.7	29.8	6.4	6.4	12.7	100.0	(47)	17.8

註: 무응답한 5 case는 제외시켰음.

작년 1년동안 保育士의 32.8%가 離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郡部 施設이 46.5%로, 그리고 施設規模면에서는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38.5%로 각각 離職率이 가장 높게 나타나, 地域的으로는 郡部地域으로 갈수록 그리고 施設規模면에서는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保育士의 離職率이 높게 나타났다(表 4-16 참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同一한 育兒施設이지만 地域 및 施設規模에

따라 法人의 資産이나 수입원이 다르고, 人力의 配置나 專門性에 差異가 커 시설아동의 서비스의 提供에 不均衡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간의 차이를 解消할 수 있는 人力의 適定配置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4-16〉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總 保育士 離職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계	(N)	평균
전체	40.0	12.6	8.4	7.4	10.0	21.6	100.0	(190)	32.8
지역									
대도시	44.2	11.6	8.1	8.1	9.3	18.7	100.0	(83)	28.8
중소도시	39.1	17.2	10.9	6.3	7.8	18.7	100.0	(63)	29.6
군부	32.5	7.5	5.0	7.5	15.0	32.5	100.0	(40)	46.5
시설규모									
60명 미만	36.5	12.2	6.8	8.1	10.8	25.6	100.0	(74)	38.5
60~79명	41.8	7.5	9.0	10.4	7.5	23.8	100.0	(67)	32.1
80명 이상	42.9	20.4	10.2	2.0	12.2	12.3	100.0	(49)	25.2

註: 무응답한 1 case는 제외시켰음.

라. 施設從事者들의 給與에 대한 滿足

給與에 대한 施設從事者들의 不滿足率은 37.5%로 나타났으며, 그 比率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그리고 군부의 시설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는 不滿의 比率이 24.7%인데 비해 郡部는 과반수가 넘는 54.6%에 달해 給與에 대한 不滿이 大都市보다는 군부지역의 施設從事者들에게서 더욱 심하였다. 施設規模면에서는 수용아동수가 적은 60명 미만의 小規模施設의 종사자들이 훨씬 給與에 대한 不滿이 많아 그 비율이 44.4%인데 비해 80명 이상의 大規模施設의 종사자들은 24.3%로 그 隔差가 20.1%포인트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表 4-17 참조). 이와 같이 施設從事者들은 급여에 대한 不滿이 크고, 地方에 있는 郡部施設일수록, 그리고 施設規模가 적은 60명 미만의 小規模施設

일수록 불만이 많아 이러한 施設間 급여대한 만족도의 差異는 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表 4-17〉 地域 및 規模別 施設從事者의 給與에 대한 滿足

(단위: %)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계	(N)
전체	27.8	34.7	37.5	100.0	251
지역					
대도시	33.4	41.9	24.7	100.0	93
중소도시	27.7	33.8	38.5	100.0	94
군부	20.4	25.0	54.6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26.4	29.2	44.4	100.0	72
60~79명	28.3	35.6	41.1	100.0	73
80명 이상	32.0	37.7	24.3	100.0	106

註: 무응답한 4 case는 제외시켰음.

마. 施設從事者의 職務에 대한 滿足

職務에 대한 從事者의 態度는 현 직무에 '만족하다'가 52.7%, '보통이다'가 27.6% 등 80.3%가 보통 또는 그 이상으로 滿足하고 있어 직무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이었다. 그러나 '불만족하다'고 한 應答者가 19.7%로 약 1/5에 該當하고 있으며, 地域間에 차이가 많아 大都市가 13.7%인데 비해 郡部는 24.3%로 군부지역에 所在한 시설의 종사자들이 職務에 대한 不滿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면에서 '불만족하다'의 비율은 뚜렷한 差異가 없으나, '만족하다'의 比率에서는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은 41.6%였고,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서는 60.1%로 시설의 규모가 大規模일수록 從事者의 職務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불만족하다'에 응답한 이유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重要한 理由는

첫째가 勤務時間이 길다는 것이었다. 즉 근무의 특성으로 보아 대부분의 從事者들이 시설에 寄居하거나 延長勤務를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한 理由이었다(불만족 종사자의 44.4%). 그 다음 理由는 給與水準이 낮고 過重한 業務로 인한 불만이었다(表 4-18 참조).

〈表 4-18〉 地域 및 規模別 施設從事者의 職務에 대한 滿足

(단위: %)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계	(N)
전체	52.7	27.6	19.7	100.0	254
지역					
대도시	53.7	32.6	13.7	100.0	95
중소도시	53.2	26.6	20.2	100.0	94
군부	50.8	21.5	27.7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41.6	29.2	16.7	100.0	72
60~79명	52.7	31.1	16.2	100.0	74
80명 이상	60.1	24.1	15.8	100.0	108

註: 1) 무응답한 1case는 제외시켰음.
2) 불만족한 주요 이유: 근무시간 44.4%, 급여수준 22.2%, 업무과중 20.4%

바. 施設從事者의 住居形態에 대한 態度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兒童福祉收容施設은 약 과반수정도가 集團寄宿舍 形態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住居形態에 대한 從事者들의 態度 및 認識의 程度를 파악한 바, 시설종사자들은 수용아동의 건전한 育成과 自立을 위해서는 小規模의 小宿舍制度로 전환해야 한다고 認識하고 있었다. 즉, 주거형태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는 시설내 小宿舍制이나 共同炊事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率이 39.8%로 가장 많았고, 시설내 單獨家庭 形態가 좋다는 의견이 26.7%로 그 다음이었으며, 小宿舍制이면서 별도 炊事方法도 25.5%였다.

이를 地域的으로 보면, 대도시는 小宿舍制이면서 別途炊事의 比率이 34.8%였고, 중소도시는 小宿舍制이며 共同炊事가 38.3%와 單獨家庭이 35.1%, 그리고 군부는 小宿舍制이며 공동취사가 50.8%로 각각 首位를 점하고 있어 地域間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도시, 특히 大都市 施設의 종사자들이 小宿舍制이면서 별도취사 형태나 單獨家庭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認識이 높았다. 또한 施設規模면에서도 소규모 시설일수록 소숙사제이면서 共同炊事의 形態를 選好하고 있으나, 대규모시설일수록 單獨家庭形態를 취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아 주거형태에 관한 종사자의 태도가 地域 및 施設規模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냈다(表 4-19 참조).

〈表 4-1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住居形態에 대한 態度

(단위: %)

	단독가정	소사제 별도취사	소사제 공동취사	집단 기숙사	계	(N)
전체	26.7	25.5	39.8	8.0	100.0	251
지역						
대도시	21.7	34.8	33.7	9.8	100.0	93
중소도시	35.1	22.3	38.3	4.3	100.0	94
군부	21.5	16.9	50.8	10.8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14.3	21.4	54.3	10.0	100.0	72
60~79명	28.4	20.3	44.5	6.8	100.0	73
80명 이상	33.6	31.8	27.1	7.5	100.0	106

註: 무응답한 4case는 제외시켰음.

4. 施設의 運營形態 및 開放程度

가. 法人 및 施設의 運營管理

시설운영의 意思決定機構인 理事陣이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人事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活潑히 추진하고 있는 지를 把握하였다. 理事陣은 시설이 位置하고 있는 管轄地域에 거주하면서 施設과 地域社會와의 관계를 維持하고 시설이 當面한 문제점을 提起하고 이를 解決하기 위한 事業을 計劃하고 시행할 수 있는 各 分野의 地域社會 代表로 構成함이 바람직하다. 먼저 理事陣의 構成을 보면, 대부분 親戚이나 親知로 構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社會福祉分野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있는 同僚人事들이 많이 包含되어 있다. 1994년 1년동안 理事會의 開催한 回數는 3~4회에 지나지 않았고, 그 案件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주였으며, 시설종사자나 수용아동의 質的서비스 向上을 위한 案件은 少數에 불과해 해마다 反復되는 年例 行政的인 節次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福祉需要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創出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의 중심으로 發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閉鎖的인 施設運營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을 開放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地域社會의 各界 人事들이 시설운영에 參與할 수 있는 방안이 模索되어야 한다.

수용아동의 年齡은 15세 이상이 약 30%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現在 學校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의 진학이 어렵다고 볼때, 이들을 위해서는 就業에 필요한 敎育 및 訓練을 施設이 支援해야 한다. 그러나 敎育 및 訓練의 支援이 없다고 한 施設이 27.2%로 少數에 지나지 않았으나, 大都市 특히 郡部의 施設은 30.0%였고, 수용아동수가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에서는 36.5%에 달하고 있어 退所後 아동의 就業에 필요한 敎育이나 訓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또한 취업에 대비한 職場斡旋을 위한 對備策이 未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退所兒童의 事後管理를 實施하고 있는 시설은 77.5%로 大部分의 施設이 退所後에도 事後管理를 실시하고 있으나 事後管理를 못하고 있는 시설도

22.5%였고, 郡部의 施設은 27.5%,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 및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23.0%~24.2%를 차지하고 있어 郡部 또는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들이 退所兒童의 事後管理가 미진하여 深刻한 육아시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施設兒童에 대한 就業斡旋은 시설자체나 관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地域社會의 公共機關이나 産業體 등과 連繫網을 構成하여 體系的인 職業斡旋이 必要한 실정이다. 그리고 매년 定期的으로 實施하게 되어 있는 健康診斷은 비교적 잘 施行되고 있었다(表 4-20 참조).

〈表 4-2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兒童指導 및 管理與否

(단위: %)

	지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미만	60-79명	80명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6)	(51)	(191)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하고 있다	70.9	76.9	70.0	63.5	77.3	80.4	72.8
하고있지 않다	29.1	23.1	30.0	36.5	22.7	19.6	27.2
퇴소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하고 있다	80.2	76.9	72.5	77.0	75.8	80.4	77.5
하고있지 않다	19.8	23.1	27.5	23.0	24.2	19.6	22.5
직업알선							
하고 있다	93.0	92.3	77.5	90.5	87.9	90.2	89.5
하고있지 않다	7.0	7.7	22.5	9.5	12.1	9.8	10.5
아동들의 연 1회 건강진단실시							
하고 있다	94.2	92.3	92.5	95.9	90.9	92.2	93.2
하고있지 않다	5.8	7.7	7.5	4.1	9.1	7.8	6.8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收容兒童의 家庭環境에 관한 記錄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75.9%였으나 전체 시설중 기록이 없다는

비율도 23.6%에 달하고 있으며, 대도시 보다는 中小都市 및 郡部의 시설에서 記錄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군부의 시설은 30.0%), 시설규모면에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 보다는 施設規模가 적을수록 記錄保有率이 낮았다(소규모시설 25.7%, 대규모시설 19.5%). 하지만 兒童에 관한 記錄이 되어 있어도 兒童管理에 필요한 父母 및 家族이나 기타 保護者 또는 兒童의 個人特性 등 家庭環境에 관한 資料가 아직도 未備된 狀態에 있어 兒童을 보호 및 양육을 위한 相談 및 指導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용아동의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하고 또한 보다 正確한 資料의 蒐集이 要求되고 있다. 그리고 收容後 兒童에 관한 記錄은모든 施設이 保有하고 있으나, 記錄狀態가 나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도 16.2%나 되었고, 특히 郡部地域의 施設은 30.0%로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나 이 지역에 보다 깊은 關心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전 아동의 家庭環境과 施設生活에 관한 記錄이 아직도 未備된 점이 많아 이에 관한 制度的 補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表 4-21 참조).

〈表 4-21〉 地域 및 施設規模別 兒童의 入所後 生活記錄保有狀態

(단위: %)

	기록없음	기록상태			무응답	계	(N)
		하	중	상			
전체	7.3	8.9	52.9	30.4	0.5	100.0	(191)
지역							
대도시	2.3	7.0	54.7	34.9	1.1	100.0	(86)
중소도시	7.8	9.2	49.2	33.8	-	100.0	(65)
군부	17.5	12.5	55.0	15.0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9.4	6.8	60.8	23.0	-	100.0	(74)
60~79명	6.1	9.1	50.0	33.3	1.5	100.0	(66)
80명 이상	5.8	11.8	45.1	37.3	-	100.0	(51)

시설의 법정 운영기준을 어느정도 遵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施設의 법정 운영기준 遵守與否를 확인한 바, 지역 및 시설규모에 關係없이 법정 운영기준 즉 '직원의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조직·인사 등에 관한 必要한 규정의 제정 및 시행', '시설운영장부 및 서류비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에서의 직원 기거' 등의 基準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22 참조).

〈表 4-2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의 法定 運營基準 遵守與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6)	(51)	(191)
직원의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							
지키고 있다	95.3	96.9	100.0	95.9	98.5	96.1	96.9
지키지 않고 있다	4.7	3.1	-	4.1	1.5	3.9	3.1
조직·인사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시행							
지키고 있다	89.5	83.1	82.5	83.8	83.3	92.2	85.9
지키지 않고 있다	8.1	16.9	15.0	13.5	15.2	7.8	12.6
무응답	2.4	-	2.5	2.7	1.5	-	1.5
시설운영장부 및 서류비치							
지키고 있다	100.0	93.8	100.0	95.9	98.5	100.0	97.9
지키지 않고 있다	-	6.2	-	4.1	1.5	-	2.1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에 직원 기거							
지키고 있다	98.8	98.5	97.5	98.6	98.5	98.0	98.4
지키지 않고 있다	1.2	1.5	2.5	1.4	1.5	2.0	1.6

兒童福祉收容施設의 인력확보는 수용아동의 질적인 서비스 提供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어 매우 重要視되고 있다. 따라서 施設從事者를 어떠한 방법으로 採用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바, 緣故者 또는 기타 親知의 紹介로 채용하는 경우가 折半이 넘는 53.9%였고, 公開採用이 1/3에 해당하는 30.3%을 차지하고 있어 施設運營者의 裁量에 의해 選拔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동복지수용시설에 대한 住民들의 認識이 不足하여 社會가 選好하는 職場이 되지 못하고 있고 勤務條件이나 賃金水準이 낮은 狀態下에서 經驗이 많고 資格을 갖추고 있는 人力의 確保가 어려운 條件에서 公開採用은 時機尙早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전체 시설의 30.3%가 公開採用을 하고 있지만 지역 및 시설규모에 따른 有意한 차이 보다는 法人의 財政規模 및 運營者의 特性에 의한 結果로 생각된다.

〈表 4-2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從事者의 採用方法

(단위: %)

	공개채용	학교/기관의 추천	연고 및 소개	기타	무응답	계	(N)
전체	30.3	9.4	53.9	5.8	0.6	100.0	(191)
지역							
대도시	26.7	10.5	60.5	2.3	-	100.0	(86)
중소도시	40.0	9.2	41.5	9.3	-	100.0	(65)
군부	22.5	7.5	60.0	7.5	2.5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35.1	8.1	52.7	4.1	-	100.0	(74)
60~79명	31.8	12.1	51.5	3.0	1.6	100.0	(66)
80명 이상	21.6	7.8	58.8	11.8	-	100.0	(51)

따라서 中小都市에 소재한 시설에서 從事者의 공개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지역에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起因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서도 연고자 또는 친지소개로 從事者를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따라 큰 차이없이 親姻戚 또는 親知의 紹介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사자의 採用方法이었다(表 4-23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이 종사자의 採用을 시설관리자의 裁量에 의해 충원한다면 收容兒童에 필요한 能力있고 자격있는 專門人力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아 점차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나. 施設運營의 開放性

1) 自願奉仕者의 活用

최근 수용아동의 복지 욕구가 多樣하고 삶의 질의 向上을 요구하고 있는 時點에서 시설인력만으로는 그들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自願奉仕者을 活用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작년 1년간 191개 시설이 활용한 平均 自願奉仕者의 數는 41.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人員數는 시설에 따라 10명 이하에서 부터 70명까지로 施設間 자원봉사자의 활용범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地域的으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시설보다 郡部에 있는 施設이 자원봉사자의 수가 훨신 적었다. 施設當 平均 自願奉仕者數는 대도시시설이 47명, 중소도시시설이 40명인데 비해 군부시설은 31명에 지나지 않았다. 自願奉仕者數가 10명 이하인 경우 大都市와 中小都市는 16.3%와 16.9%인데 비해 군부는 무려 40.0%으로 상당한 差異가 있었다(表 4-24 참조). 이 結果에 의하면 군부에 있는 施設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自願奉仕者의 支援이 아주 不足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인 隔差가 심한 것으로 보아 地域的인 特性을 고려한 解消策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自願奉仕者의 數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여 施設의 平均이 40~42명으로 나타났다.

〈表 4-2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自願奉仕者 總數

(단위: %)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51~60명	61~70명	71명 이상	무응답	계	(N)	평균
전체	21.4	16.8	15.2	7.9	8.9	1.6	5.8	17.7	4.7	100.0	(191)	41.1
지역												
대도시	16.3	14.0	18.6	4.7	11.6	1.2	4.7	24.2	4.7	100.0	(86)	46.8
중소도시	16.9	20.0	15.4	12.3	9.2	1.5	6.2	13.9	4.6	100.0	(65)	39.9
군부	40.0	17.5	7.5	7.5	2.5	2.5	7.5	10.0	5.0	100.0	(40)	30.9
시설규모												
60명 미만	21.7	14.9	13.5	9.5	12.2	-	4.1	17.3	6.8	100.0	(74)	40.3
60~79명	22.7	19.7	12.1	9.1	6.1	3.0	4.5	18.3	4.5	100.0	(66)	41.3
80명 이상	19.6	15.7	21.6	3.9	7.8	2.0	9.8	17.6	2.0	100.0	(51)	42.1

自願奉仕者의 數的인 측면과 함께 考慮해야 할 것은 자원봉사자의 인적구성이다. 자원봉사자의 人的構成은 학교학생과 가정주부가 主流를 이루고 있어 專門的인 技術支援보다 세탁, 부엌일 등 家事일과 애돌보기 등 單純業務의 支援이 많아 施設人力의 補充的인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施設을 開放하여 시설이 필요로 하는 專門人力을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方案이 매우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다. 특히 自願奉仕者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군부지역에서 보다 力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施設兒童과 家族 및 親戚과의 交流程度

수용아동의 입소전 父母 및 家族關係를 보면 절대다수의 아동이 부모나 가족이 있는 兒童들이다. 이러한 아동들이 收容後에도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維持하고 있는 지는 兒童의 保護 및 養育에 있어 중요시되는 사항이다. 전제 收容兒童중에서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49.6%가 訪問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5〉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兒童의 家族 및 親戚訪問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아동의 가족,친척 방문회수							
없음	55.6	47.8	41.0	49.9	39.9	41.0	50.4
1~2회	18.8	18.0	30.1	18.3	26.1	30.1	21.0
3~4회	9.5	5.2	6.6	10.6	5.9	6.6	7.4
5~6회	5.9	6.6	9.6	3.3	12.8	9.3	7.0
7회이상	10.4	23.4	13.0	17.9	17.0	13.0	14.2
평균(회수)	2.3	4.8	2.9	3.5	4.3	1.1	3.2
아동의 방문가족 및 친척							
없음	55.6	50.0	41.0	49.9	39.9	66.5	50.0
아버지	8.9	8.2	14.7	6.3	16.4	7.2	10.0
어머지	9.8	8.4	12.0	12.1	9.7	5.8	9.8
조부모	0.0	6.4	10.6	3.5	5.3	5.1	4.5
외조부모	5.3	2.9	5.9	6.8	4.8	0.7	4.6
부모의 형제·자매	19.5	19.5	14.9	21.3	20.4	10.7	18.6
기타 친척	0.9	4.6	0.9	0.0	3.6	3.9	2.1
시설방문 가족 및 친척 방문횟수							
없음	62.9	54.8	57.4	55.8	57.4	66.7	58.5
1~2회	18.5	25.2	21.5	26.2	19.2	16.1	21.4
3~4회	7.2	6.2	7.3	7.7	5.8	7.0	6.9
5~6회	0.7	4.4	3.9	0.4	3.5	5.3	2.6
7회 이상	10.7	9.4	9.9	9.9	14.1	4.9	10.6
평균(회수)	1.4	1.3	1.4	1.2	1.7	1.1	1.3
시설방문 가족 및 친척							
없음	62.9	54.8	57.4	56.8	57.4	66.7	58.5
아버지	3.4	12.2	9.7	7.7	9.5	5.3	7.8
어머니	11.1	6.0	12.9	8.2	12.4	9.0	10.2
조부모	0.0	2.2	1.5	1.8	0.0	1.1	1.0
외조부모	1.1	0.9	4.9	3.2	0.8	1.3	1.9
부모의 형제·자매	15.9	20.0	10.3	22.6	11.6	10.6	16.0
기타 친척	5.8	3.9	3.3	0.7	8.3	6.0	4.6

이러한 결과는 大都市, 中小都市 및 郡部에 있는 施設間에 차이가 있어 군부시설에서는 59.0%, 중소도시 52.2% 등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인데 비해 大都市는 44.4%로 시설아동의 折半에도 못미치는 매우 낮은 訪問率을 나타냈다. 시설규모별 가족 및 친척의 訪問率을 보면,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과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은 각각 50.1%와 60.1%가 訪問한 적이 있는데 비해 收容兒童이 60명 미만인 소규모시설에서는 33.5%에 지나지 않아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의 兒童들이 부모 및 家族訪問의 기회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兒童이 방문하는 가족을 보면, 부모의 형제·자매가 18.6%, 아버지 10.0%, 어머니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父母보다는 父母의 兄弟·姉妹의 比率이 높아 시설아동의 保護 및 養育을 위해서는 父母와의 關係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형제·자매 및 조부모가 兒童에 대해 중요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따라 수용아동과 家族 및 親戚과의 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적극적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家族 및 親戚과의 접촉이 없는 수용아동은 비록 시설에 收容되어 있지만 入養, 家庭委託 및 結緣事業 등을 통해 시설아동은 누구나 그들의 保護者 및 後見者와의 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방문사업이 보다 積極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家族 및 親戚이 시설아동을 찾아 오는 경우는 41.5%로 였으며, 중소도시 및 군부에 있는 施設에서 각각 45.2%, 42.6%로 대도시의 37.1%에 비해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訪問者의 약 반수정도인 21.4%가 1~2회 정도 訪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別 시설아동의 家族 및 親戚이 시설을 방문한 比率은 역시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에서 가장 낮아 33.3%였고,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은 44.2%로 10.9%포인트의 隔差가 있었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가 적어질수록 시설수용아동과 家族 및 親戚間의 접촉빈도가 낮아 家庭 및 社會復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된다. 施設에 찾아온 家族 및 친척을 보면, 역시 부모의 형제·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 施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收容兒童의 어머니가 부모의 형제·자매 다음으로 수용아동들을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樣相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表 4-25 참조).

3) 地域社會 機關·團體의 協調程度

地域社會內 유관단체의 協調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管轄地域內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학교, 기업체 및 기타 지역사회단체와의 協調關係를 파악하였다. 상기 機關이나 團體중에서 시설과의 協調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곳은 洞事務所, 관할 市·郡·區廳과 學校 등이었고, 반면 企業體, 기타 地域社會團體 및 機關은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洞事務所나 관할 市·郡·區廳은 시설의 입·퇴소 및 정부 보조금의 지급 등 施設運營과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行政的인 支援을 받고 있고, 學校는 수용아동의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學校의 授業料 및 其他 兒童과 關聯되는 문제로 자주 協議가 필요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施設과 企業體間의 협조관계는 협조적이라고 應答한 率이 중소도시가 35.4%로 27.9%와 30.0%인 大都市나 郡部보다 더 협조적이었고, 施設規模면에서 보면,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35.1%로 32.4%와 21.5%인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과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 보다 더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할지역내 民間企業體나 其他 지역사회의 團體 및 機關 등과는 아직도 協調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施設과 地域社會와의 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 協調體系

가 未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지역에 所在한 시설의 경우 企業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비율이 20.0%에 달하고 있고, 應答하지 않은 경우도 42.5%에 달하고 있어 군부지역에 位置한 施設일수록 相互紐帶를 갖게하는 協議機構의 活性化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6〉 地域 및 施設規模別 地域社會內 有關團體와의 協調程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6)	(51)	(191)
동사무소 및 구청							
관계가 전혀 없음	1.2	4.6	2.5	-	3.0	5.9	2.6
협조적임	88.4	73.8	67.5	78.4	80.3	78.5	79.1
그저 그렇다	3.5	10.8	10.0	10.8	3.0	7.8	7.3
무응답	6.9	10.8	20.0	10.8	13.7	7.8	11.0
기업체							
관계가 전혀 없음	16.3	9.2	20.0	13.5	16.7	13.7	14.7
협조적임	27.9	35.4	30.0	35.1	32.4	21.5	30.9
그저 그렇다	15.1	15.4	7.5	14.9	7.6	19.6	13.6
비협조적임	3.5	1.5	-	-	3.0	4.0	2.0
무응답	37.2	38.5	42.5	36.5	39.3	41.2	38.8
학교							
관계가 전혀 없음	4.7	4.6	7.5	2.7	7.6	5.9	5.2
협조적임	73.5	73.8	65.0	75.7	68.2	70.6	71.7
그저 그렇다	10.5	6.2	5.0	5.4	6.1	13.7	7.9
비협조적임	-	1.5	-	-	-	2.0	0.5
무응답	11.5	13.9	22.5	16.2	18.1	7.8	14.7
지역사회단체							
관계가 전혀 없음	20.9	12.3	15.0	14.9	16.7	19.6	16.8
협조적임	30.2	36.9	42.5	31.1	36.4	39.2	35.1
그저 그렇다	2.3	6.2	5.0	5.4	3.0	3.9	4.2
비협조적임	1.2	-	-	-	-	2.0	0.5
무응답	45.4	44.6	37.5	48.6	43.9	35.3	43.4

이러한 協議機構는 현재 시설운영을 위해 構成되어 있는 理事陣의 構成을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의 代表者로 代置하도록 하여 이들 지

역사회의 機關이나 團體의 代表者들이 시설운영에 積極的으로 참여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단체와의 협조관계는 시설규모보다는 地域에 따라 施設間에 차이가 있었다(表 4-26 참조).

4) 從事者 및 收容兒童의 參與

從事者의 建設的인 意見을 管理者가 어느정도 收斂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종사자의 모임을 어느정도 認定하고 있는지 施設運營의 參與에 대한 施設運營者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시설관리자의 54.5%는 시설개선을 위한 建設的인 意見이라면 종사자의 모임을 인정할 수 있어 어느정도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으나, 管理者의 44.0%는 시설운영에 대한 從事者의 參與에 대해서 否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은 지역이나 施設規模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地域的으로는 중소도시가, 시설규모면에서는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의 施設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有意한 差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表 4-27 참조).

〈表 4-27〉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改善과 利益增進을 위한 從事者 모임 結成에 대한 認定與否

(단위: %)

	인정한다	인정하지않는다	무응답	계	(N)
전체	54.5	44.0	1.5	100.0	(191)
지역					
대도시	54.7	43.0	2.3	100.0	(86)
중소도시	52.3	47.7	-	100.0	(65)
군부	57.5	40.0	2.5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56.8	40.5	2.7	100.0	(74)
60~79명	51.5	48.5	-	100.0	(66)
80명 이상	54.9	43.1	2.0	100.0	(51)

5. 施設收容兒童의 生活實態 및 滿足

兒童福祉收容施設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어떠한 아동들이며, 이들은 어떻게 入·退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설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에 얼마나 滿足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收容兒童의 特性과 入·退所에 관한 事項은 觀察 및 郵便調査를 통하여 수집된 資料를 基礎로 하여 分析하였고, 施設兒童들의 生活實態 및 서비스에 대한 滿足 등은 수용아동조사를 통해 蒐集된 299명의 조사자료를 分析한 것이다.

가.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아동복지시설의 收容基準은 아동이 18세미만이고 기아, 미아 및 고아 등 父母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兒童을 扶養할 能力이 없거나 심신장애자나 가출, 부랑아 및 비행위험 등 兒童의 缺陷으로 인해 家庭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收容保護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育兒施設에 수용된 아동의 年齡은 대개 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法的 基準에 벗어나는 시설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아동의 年齡分布를 보면, 6세~17세에 集中되어 있으며, 그 중 12~14세 28.6%, 15~17세 23.1%, 9~11세 23.0% 등으로 이 연령층에 74.7%였고, 여기에 6~8세의11.9%를 포함하면 86.6%에 달해 絶對多數가 학교에 다녀할 學齡期에 있는 아동이었다. 그리고 18세 이상인 兒童도 10.0%로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職業訓練을 받고 있는 年長兒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차이없이 收容兒童의 연령은 거의 비슷한 樣相을 나타냈다. 수용아동의 學歷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在學生이 89.1%, 未就學이 6.5%, 그리고 學校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도 0.7%로 나타나 關心의 대상이 되고 있다. 收容兒童에 대한 수업료 및 기타 학습비를 政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및 시설규모에 따른 학교의 進學與否는 차이가 없었다.

〈表 4-28〉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收容兒童의 一般特性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시설수[1]	85	64	40	72	68	49	189
(N)[2]	(7048)	(4549)	(2530)	(3516)	(4693)	(5918)	(14127)
연령							
5세 이하	3.4	3.2	3.2	2.8	3.7	3.4	3.3
6~8세	13.4	10.8	9.8	10.4	10.9	13.6	11.9
9~11세	25.1	21.7	19.8	20.1	19.3	27.8	23.0
12~14세	27.5	28.9	31.3	31.1	29.9	26.2	28.7
15~17세	21.5	24.5	25.0	25.2	25.6	19.9	23.1
18세 이상	9.1	10.9	10.9	10.4	10.6	9.1	10.0
성별							
남자	52.0	56.2	54.0	53.1	53.6	54.1	53.7
여자	48.0	43.8	46.0	46.9	45.4	45.9	46.3
학력							
미취학	6.9	6.0	6.3	6.0	6.4	6.8	6.5
학교다니지 않음	5.3	2.5	2.7	3.0	2.9	5.2	3.9
국민학교 재학	45.5	41.4	38.5	40.8	39.0	47.4	42.9
중학교 재학	24.1	28.2	30.7	29.6	28.9	23.1	26.6
고등학교 재학	17.8	21.2	21.3	20.0	22.3	17.1	19.6
대학중퇴 이상	0.4	0.7	0.5	0.6	0.5	0.4	0.5
부모유무[3]							
부모 모두 생존	29.3	21.2	20.9	22.9	18.3	30.1	24.7
부만 생존	25.3	21.5	22.8	23.2	27.2	20.7	23.4
모만생존	24.0	26.0	30.6	25.0	28.7	24.9	26.1
부모 모두 사망	21.4	31.3	25.7	28.9	25.8	24.3	25.8
(N)[4]	(3,577)	(2,908)	(1,680)	(2,018)	(2,486)	(3,661)	(8,165)

註: 1) 조사가 미완된 2개 시설은 제외시켰음.
2) N은 189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총 아동수임.
3) 미상인 5,962명의 수용아동을 제외한 8,165명에 대한 부모유무를 나타낸 것임.
4) N은 각각의 미상을 제외한 것임.

수용아동의 家族關係를 보면,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父母가 없는 아동이 25.8%였고, 상대적으로 父母 모두가 生存해 있거나 父母중 어느 한쪽이라도 生存해 있는 兒童은 74.2%로 나타났다(表 4-28 참조). 이러한 結果에 의하면 施設의 役割이 兒童의 收容保護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없는 兒童에 대한 家庭 및 社會의 早期 復歸問題와 부모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家族과의 紐帶를 갖게하는 문제가 提起되고 있다.

나. 施設兒童의 收容當時 年齡

육아시설에 收容時 아동의 年齡과 그 당시의 家族關係는 施設運營者가 施設兒童을 보호 및 양육하는데 重要한 基礎變數가 된다. 育兒施設에 收容當時 아동의 연령은 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이 91.1%에 達하고 있어 兒童福祉法 또는 兒童福祉事業指針에서 定한 연령과 거의 一致하고 있었다.

〈表 4-29〉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年齡 및 家族關係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입소당시 연령							
3세 미만	3.1	4.1	4.8	5.9	3.0	1.8	3.9
3~7세	56.8	55.4	42.2	60.1	45.9	51.0	53.0
7~12세	31.9	30.3	45.2	25.6	42.0	37.9	34.2
13~16세	4.2	6.5	3.8	3.3	6.2	5.8	4.9
17~18세	1.0	0.0	0.0	0.0	1.3	0.0	0.4
18세 이상	3.2	3.4	4.0	5.1	1.6	3.5	3.6
가족 및 친척							
없 음	0.0	0.8	0.0	0.0	0.0	1.1	0.3
부 모	53.2	55.5	60.9	49.7	63.8	54.5	55.7
편부모	2.9	1.3	0.0	3.3	0.0	1.2	1.7
조부모	3.2	13.0	11.9	5.3	11.9	8.4	8.7
외조부모	0.9	1.0	1.4	0.7	0.9	1.3	0.9
부모의 형제	10.2	3.1	0.0	5.4	5.9	5.2	5.5
기타 친척	0.0	3.2	2.1	0.0	3.9	0.8	1.5
영아시설	2.8	4.2	3.2	4.4	0.9	5.0	3.3
기 타	3.3	1.1	0.5	3.8	0.0	1.5	2.0
모르겠다	23.7	16.8	20.0	27.2	12.7	21.0	20.7

收容兒童의 年齡構成을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3세~7세 미만이 가장 많아 過半數를 넘고 있으며, 7세~12세 미만이 34.2%로서, 3세부터 12세사이에 收容되는 兒童이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表 4-29 참조). 施設收容時 수용아동의 연령으로 兒童의 保育 및 養育과 健康管理를 전담하는 保育士 또는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看護師가 필요한 時期임을 알 수 있다.

다. 施設收容兒童의 入所時 家族 및 親戚關係

收容當時 아동의 가족관계는 父母(편부모 포함)가 있었다는 比率이 과반수가 넘는 58.4%에 達하고 있었고, 여기에 親戚이 있었다는 비율 17.3%를 포함시킨다면 75.7%가 父母나 緣故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域的으로 볼때 父母가 있는 아동이 過半數 이상인 점에서는 同一하다고 하겠으나, 郡部에 위치하고 있는 施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있는 施設보다 더 높게 나타나 父母나 親戚이 있지만 扶養能力이 없어 施設에 收容하는 경우가 郡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면에서도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과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 비해 부모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아 大規模施設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父母와의 同居關係가 낮은데 반해, 父母의 兄弟와의 關聯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父母이외의 家族중에서 대도시의 시설에서는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中小都市나 郡部施設에서는 祖父母와의 關係가 더 많아 施設收容前 시설아동의 家族 및 親戚關係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시설규모면에서도 施設收容時 부모와의 관계가 있었던 아동이 대다수인 것은 共通된 결과이나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대규모시설보다 60~79명인 중간규모시설이나 60명 미만인 소규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施設兒童이 부모와의 關

係를 맺고 있다가 收容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4~29 참조). 즉 육아시설수용아동의 대부분이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관계없이 시설에 수용되기전에 부모와의 관계를 維持하고 있었다는 것은 共通的인 現象이나 大都市에는 父母의 兄弟·姉妹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收容兒童이 많고, 中小都市, 특히 郡部에는 祖父母와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었던 收容兒童이 많아 施設兒童의 家族關係가 地域間에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施設의 入所兒童은 父母나 緣故者가 없는 兒童에서 점차 父母가 있는 兒童과 父母가 없을 경우 祖父母나 親戚 등 緣故者가 있는 兒童이 收容되고 있어 그들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었다.

라. 施設收容兒童의 生活實態

1) 施設兒童의 住居狀態

育兒施設에서 한방에 함께 寄居하는 아동수는 5~6명이 37.4%로 가장 많았고, 3~4명이 34.8%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7~8명이 한방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境遇도 전체 收容兒童의 1/5에 該當하고 있어 아직도 兒童福祉收容施設에서 集團生活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따라 相異해 대도시의 育兒施設일수록 한방에 5명 이상 함께 기거하는 비율이 68.9%인데 비해 중소도시가 54.2%, 군부가 46.6%로 낮아 지고 있었다. 이는 大都市에 비해 中小都市 및 郡部에 있는 施設의 수용아동수가 減少하여 施設에 비해 收容兒童數가 적은데 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규모에 따른 한방에 寄居兒童數를 보면,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의 경우 5명 이상이 함께 寄居하는 比率이 64.8%인데 비해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 및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의 비율은 각각 52.%와 52.6%로

그 차이가 약 10%포인트를 넘고 있어 한방의 寄居兒童數가 대규모시설에서 더 많았다. 한편 한방에 기거하는 兒童의 構成은 연령 차이를 두어 한방에서 生活하도록 한 경우가 絶對多數를 점하고 있으나 郡部施設에서는 오히려 비슷한 연령끼리 구성하는 比율이 63.6%로 地域間에 아주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생이란 점을 고려할때, 個人用 冊床을 마련해 주어야하나 應答兒童의 34.7%가 아직도 個人冊床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地域間에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施設規模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 施設規模가 작은 시설에서 冊床이 없는 兒童의 比率이 49.1%로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었으며, 수용아동이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은 23.2%, 80명 이상인 대규모시설은 35.8%였다(表 4-30 참조).

〈表 4-30〉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住居狀態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한방에 기거아동수							
2명 이하	2.0	10.0	10.8	8.7	3.4	7.7	6.7
3~4명	31.1	34.0	43.4	26.5	43.8	36.5	34.8
5명 이상	68.9	54.2	46.6	64.8	52.8	52.8	58.5
기거아동의 구성형태							
비슷한 연령끼리	29.4	35.9	63.6	40.5	41.3	33.9	39.2
연령차로 섞여있음	70.6	64.1	36.4	59.5	58.7	66.1	60.8
개인의 책상 유무							
있음	65.2	65.4	65.4	64.2	76.8	50.9	65.3
없음	34.8	34.6	34.6	35.8	23.2	49.1	34.7

따라서 한방에 寄居하는 아동수가 적지만 個人用 冊床을 所有하지 못한 아동이 많은 것은 小規模施設일수록 兒童의 減少에 따른 政府의 補助金의 감소로 인해 財政的이 不足한데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學校生活實態

學校生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收容兒童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응답아동의 66.3%가 학교생활에 滿足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地域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도시 시설 아동들의 學校生活에 대한 滿足率이 72.1%, 중소도시 및 군부에 소재한 施設兒童들의 滿足率이 각각 67.0%와 58.1%로서 郡部地域의 施設兒童의 만족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別로서는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80명 이상인 大規模 및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들 보다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學校成績을 질문한 바, '잘한다'는 比率은 불과 9.4%에 지나지 않았고, 66.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工夫를 못하는 편'이라고 한 比率은 23.7%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보다 깊은 關心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學校成績이 낮은 편이라고 한 收容兒童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군부시설에 더 많이 分布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무려 37.8%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施設規模에 의한 分布에서도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보다는 60~79명인 中間規模 및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의 수용아동이 공부를 더 못하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역, 그리고 시설 규모별로는 小規模施設의 兒童이 공부를 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校成績이 나쁜 이유는 '基礎實力이 없다'고 한 율이 52.1%, '공부하기가 싫다'는 율이 32.4%로 이 두가지가 가장 큰 理由였으며, 12.9%가 성적이 나쁜 이유로 '열심히 공부해도 진학할 희망이

없어서'라고 應答하였다(表 4-31 참조). 이와 같이 '기초실력이 없다'거나 '진학할 희망이 없다'는 兒童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相談 및 指導를 보다 體系的으로 實施해야 할 것이다.

〈表 4-3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校生活에 대한 態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이 좋다	72.1	64.0	58.1	66.0	70.3	60.9	60.3
보통이다	22.8	33.8	41.1	30.0	28.6	34.6	30.6
학교다니기 싫다	5.1	2.2	0.8	4.0	1.1	4.5	3.1
학교성적의 정도							
좋은 편이다	6.0	13.5	10.1	10.4	8.5	9.2	9.4
보통이다	70.3	68.4	52.1	71.5	62.4	65.3	66.9
못하는 편이다	23.7	18.1	37.8	18.1	29.1	25.5	23.7

註: 성적이 나쁜이유: 기초실력이 없음 52.1%, 공부하기 싫어서 32.4%, 공부환경이 나빠서 1.4%, 진학희망이 없음 12.7%

3) 學習生活實態

시설내 學習環境으로서 시설안에서 工夫를 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몇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시설내 學習環境을 파악한 바, <表 4-32>와 같이 87.6%는 工夫를 하고 있었으며, 그 중 50.7%는 하루에 2시간이상 시설에서 工夫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育兒施設은 地域이나 施設規模에 관계없이 적어도 학교공부를 豫習 및 復習하는 機會를 수용아동에게 提供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평균 하루 工夫하는 時間은 '2시간 이상'인 경우가 大都市에 소재한 施設이 61.2%, 中小都市 施設이 56.1%, 그리고 郡部施設이 23.7% 등의 순으로 대도시 일수록 兒童에 대한 學習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施設規模면에서도 시설규모가 클 수록 工夫時間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의 경우 '2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應答한 비율이 67.7%, 60~79명인 중간규모시설은 47.6%,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이 26.6%로 이들간의 差異는 무려 41.1%포인트로 學習에 대한 熱意가 시설규모가 적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習生活 實態

(단위: %)

	지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시설에서 하루공부시간							
거의 없다	10.0	13.8	13.7	7.8	12.7	19.3	12.4
30분 정도	12.0	9.4	16.9	8.4	8.2	24.6	12.3
1시간 정도	16.8	20.7	45.7	16.1	31.5	29.5	24.6
2시간 이상	61.2	56.1	23.7	67.7	47.6	26.6	50.7
과외공부 및 학원수강							
받고있지 않음	50.4	74.7	84.9	65.2	66.5	67.3	66.2
받고 있음	49.6	25.3	15.1	34.8	33.5	32.7	33.8
과외,학원담당교사							
시설내 직원	4.6	3.8	-	7.0	-	4.4	4.0
자원봉사자	81.8	57.7	44.5	65.1	73.5	82.6	72.0
외부 초빙강사	1.5	-	-	-	2.9	-	1.0
사설학원	10.6	38.5	33.3	27.9	14.8	13.0	20.0
기타	1.5	-	22.2	-	8.8	-	3.0

최근 一般家庭에서는 課外工夫 및 學院에 다니는 학생이 相當數에 이르고 있다. 시설수용아동중에서 課外工夫나 學院受講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므로서 시설이 수용아동들에 대해 어느정도 兒童의 學習에 대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수용아동의 1/3에 해당하는 33.8%만이 課外工夫 및 學院受講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외공부 및 학원수강의 比率은 대도시에 있는 시설이 49.6%였고,

중소도시의 시설이 25.3% 인데 비해 군부는 不過 15.1%로 나타나 大都市施設이 中小都市, 특히 郡部의 시설보다 顯著히 높아 대도시에 있는 시설이 兒童敎育에 대한 努力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규모면에서는 收容兒童들이 과외 및 학원수강하는 比率은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서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이나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들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 및 학원수강을 擔當하고 있는 敎師가 누구인지를 알아 본 바, 72.0%가 自願奉仕者였고, 私設學院講師는 20.0%였다. 이처럼 과외공부나 학원수강은 자원봉사자에 依存하는 율이 대부분이었고, 私設講師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4) 學校特別活動 參與程度

시설아동이 學校의 特別活動에 어느정도 參與하고 있으며,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지를 把握하였다. 수용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學校特別活動에 참여하고 있으며 收容兒童의 37.6%만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理由를 보면, 36.6%가 '관심이 없어서', 21.6%가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리고 '하고 싶은 특별활동이 없어서'는 16.1%로서 이 3가지가 重要한 理由로 提示되고 있다. 그 이외의 理由중에는 '시간이 없거나 시설에서 하지못하게 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등 施設運營者의 消極的인 態度나 施設兒童의 특별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 수용아동의 學校特別活動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의 특별활동에 參與하지 않는 理由가 '특별활동에 관심이 없다'가 주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활동 불참여이유에서 시설규모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의 아동은 '관심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特別活動

이 없어서' 등 收容兒童 自身의 個人的인 내용을 주로 제시한 데 비해 60~79명인 중간규모시설과 60명 미만인 소규모시설은 '하고 싶지만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 參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理由가 상대적으로 높아 收容兒童個人 보다는 시설운영관리에 더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表 4-33 참조).

〈表 4-3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收容兒童의 學校特別活動 參與程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특별활동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음	55.7	65.9	70.3	70.3	43.2	76.1	62.5
참여하고 있지 않음	44.3	34.1	29.7	29.7	56.8	23.9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참여하지 않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	34.5	36.1	45.5	24.3	46.6	29.4	36.6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19.0	22.2	27.2	21.6	17.2	35.3	21.4
시간이 없어서	6.9	16.7	9.1	8.2	8.6	17.6	9.8
마음에 드는 특별활동이 없어서	19.0	11.1	9.1	18.9	17.2	5.9	16.1
시설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8.6	5.6	-	10.8	5.2	-	6.5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1.7	-	-	-	-	5.9	0.8
기타	10.3	8.3	9.1	16.2	5.2	5.9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8)	(34)	(20)	(37)	(58)	(17)	(112)

이러한 경향은 지역 및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大都市에 있는 施設보다는 中小都市나 郡部에 소재한 시설아동들의 特別活動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대도시의 경우는 特別活動의 參與率이 55.7%인데 비해 군부의 시설은 70.3%에 달하고 있어

大都市의 시설아동일수록 學校特別活動에 소극적이고 시설운영자의 관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施設規模에 따라 수용아동의 特別活動 參與率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나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에서는 특별활동참가율이 70.3%와 76.1%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60~79명인 中間規模의 施設은 43.2%에 지나지 않아 시설규모에 따라 학교특별활동에도 差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自由時間의 自律活動

시설아동의 自律活動을 보면, 평소 自由時間에 TV를 視聽하거나 라디오를 聽取하며 餘暇를 活用하는 아동이 가장 많고 運動 및 體育을 즐기는 아동이 그 다음으로 그 比率은 각각 전체 아동의 71.0%와 53.5%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折半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용아동들은 讀書·雜紙·娛樂, 親舊와의 잡담, 敎會活動 등 다양한 個人活動을 하고 있었다. 한편 全體施設兒童의 25.9%에 지나지 않아 소수에 不過하지만 施設밖에서 個人活動을 하고 있는 兒童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설에서 特別活動을 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해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아동의 평소 自律活動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運動 및 體育, 讀書·雜紙·娛樂, 敎會活動 등은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 그리고 TV, 라디오, 친구와의 잡담 등은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이나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施設規模에 따라 아이들의 自律活動도 다르게 나타났다(表 4-34 참조). 이러한 結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에는 수용아동을 위한 운동 및 오락시설이나 개인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中間規模施設이나 小規模施設들에서 보다 더 確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말이나 휴일의 餘暇活用에서도 역시 TV, 라디오를 視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運動 및 體育活動이 많아 평소나 비슷한 傾向을 나타냈으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宗敎活動을 하는 아동이 비교적 많아 시설을 운영하는 法人이 宗敎와 關聯된 財團이 많은데 緣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綜合하여 볼때 시설내 TV, 라디오 및 운동 등이 주요 餘暇活用의 手段이 되고 있어 施設안에서의 特別活動 프로그램으로 限定 되어 있고, 시설내 活動을 벗어나 아동들이 欲求에 맞는 特別活動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이용한 餘暇活用이 더욱 不足한 상태였다.

〈表 4-34〉 地域 및 施設規模別 평상시 收容兒童의 自律活動 參加率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시설내 특별활동	8.7	6.4	6.2	8.8	6.3	6.4	7.4
교회활동	20.3	35.0	25.9	33.2	22.0	21.2	26.5
독서·오락	41.6	46.2	50.3	50.1	42.2	40.9	45.2
운동 및 체육	48.9	63.4	48.0	57.4	55.4	44.1	53.5
TV·라디오 시청	66.6	71.8	78.4	64.8	75.3	75.6	71.0
친구와 놀며 휴식	44.1	46.5	41.2	37.0	55.6	40.5	44.3
시설밖에 놀러감	24.6	22.1	34.1	16.0	35.5	27.7	25.0

註: 활동내용 각각에 대한 백분율 임

마. 생계서비스에 대한 收容兒童의 滿足水準

시설에서 提供하는 주 · 부식 및 옷과 신발에 대해서 收容兒童들은 '보통 또는 그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부식에 비해 옷이나 신발에 대한 兒童의 滿足度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施設兒童의 주·부식에 대한 滿足率은 52.0%인데 비해 옷과 신발에 대한

滿足率은 3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보아 아직도 施設이 提供하는 옷이나 신발 등은 兒童의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이나 시설규모에 따라 收容兒童의 欲求에 대한 滿足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施設兒童들이 주·부식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大都市에 있는 시설의 아동들이 滿足度가 더 높았다. 먼저 주·부식에 대한 滿足度를 비교해 보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다'는 율이 大都市의 施設은 55.3%인데 비해 中小都市의 施設은 50.5%, 郡部의 施設은 48.0%로 중소도시와 군부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낮게 나타났으며, 신발이나 옷에 대해서는 大都市가 55.9%, 중소도시가 44.6%, 군부는 36.5% 등으로 주·부식보다 옷이나 신발에서 地域에 따른 施設間의 差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別로 분류하여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收容兒童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은 '매우 만족하다'와 '만족하다'가 60.5%였고,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은 50.1%,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은 40.1%로 滿足의 比率이 점차 낮아져 小規模施設에서는 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었고, 옷과 신발의 경우는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의 滿足率의 差異가 무려 25.9%포인트로 隔差가 심한 것으로 보아 시설규모가 클수록 수용아동의 滿足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아동의 間食에서도 연령적으로 成長期에 있어 간식이 兒童의 發育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質問하였다. 間食을 提供하지 않는 施設은 거의 없었다. 간식을 어느 정도 자주 提供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바, <表 4-35>와 같이 매일 間食을 주는 시설은 34.5%였고, 시설의 상당수가 2~3일에 한번정도 間食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地域的으로는 대도시에 所在한 施設에서 중소도시나 군부에 所在한 施設들 보다, 그리고 施設規模에서는 수용아동이 80명 이상인 大規模施設이 60~79명인 中間規模施設이

나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들 보다 間食을 상대적으로 자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衣食住에 대한 收容兒童의 滿足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80명 이상	60~79명	60명 미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식사에 대한 만족							
매우 만족한다	14.9	19.6	18.5	23.2	14.7	10.8	17.2
만족하다	40.4	30.9	29.5	37.3	35.4	29.3	34.8
보통이다	39.5	35.0	46.7	34.0	42.1	45.9	39.6
불만족하다	5.2	14.5	5.3	5.5	7.8	14.0	8.4
옷·신발에 대한 만족							
매우 만족하다	11.9	14.3	11.8	16.6	11.6	7.3	12.7
만족하다	44.0	30.3	24.7	46.6	24.8	30.0	35.1
보통이다	34.1	32.5	46.2	28.8	45.5	36.0	36.1
불만족하다	10.0	22.9	17.3	8.0	18.1	26.7	16.1
간식의 빈도							
거의 없음	1.8	6.0	2.6	1.7	4.1	5.4	3.4
1일 1회	42.2	40.8	10.0	44.4	32.9	19.6	34.5
2~3일에 한번	41.3	26.4	52.0	40.8	35.3	40.0	38.7
1주일에 한번	9.9	19.9	22.4	11.0	16.9	23.6	16.0
한달에 2~3회	4.8	6.9	13.0	2.1	10.8	11.4	7.4

바. 年長兒童의 退所後 管理 評價

分析資料는 215개 육아시설중 관찰 및 우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191개 시설에서 1994년 1년간 退所한 兒童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收容兒童들이 퇴소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問題는 정부 및 후원·결연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施設從事者들이 장기간에 걸쳐 經濟的·情緖的 支援을 한 결과로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시설수용아동들이 退所後에 정상적인 社會人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면, 長期間에 걸쳐 지원한 경제적·정서적 지원등이 아무런 效果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社會的 負擔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시설퇴소아동이 社會에 適應하지 못하고 社會의 犯罪集團이 되거나 浮浪人 등이 되는 경우, 또는 責任感없이 자식을 낳아 사회에 負擔을 지우는 경우 등 惡循環으로 인한 사회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수용아동이 收容期間중에 부모나 연고자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 父母나 其他 緣故者에게 引繼된 아동이나 그들의 수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比較分析하였다. 수용아동중 18세 이상 年長退所兒童은 41.6%였고, 收容期間중에 부모를 비롯한 연고자에게 引繼한 경우가 37.0%이었다. 따라서 약 28.4%가 施設轉換 및 無斷退所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4-36 참조). 육아시설아동에서 年長退所兒童의 收容期間은 10년 이상이 40.4%로 가장 많았고, 3년 이하가 25.9%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附表 4-79 참조). 이는 收容施設의 兒童이 아직도 일시적인 短期收容보다는 장기수용형태가 持續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保護 및 養育과 함께 이들을 건강하게 成長시켜 가정 및 사회에 適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支援의 範圍가 확대되어야 함을 지적해 주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年長退所兒童의 반수 이상이 13년 이상 시설에서 生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부의 40.1%에 비해 아동의 長期收容이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表 4-37 참조). 이러한 結果는 家族 및 親戚을 비롯한 一般家庭이나 社會의 參與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施設의 役割도 더욱 擴大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施設의 收容期間은 부모 및 보호자의 유무나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緣故者에 의해 퇴소한 아동은 대부분 5년 이내, 특히 1년 이내 退所兒童이 30.8%에 달하고 있고 군부보다는 대도시(33.8%), 수용아동이 60명 미만인 小規模施設보다는 80명 이상인 대규모시설(32.3%) 등에서 더 높게 나타나 早期退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中間退所兒童중 과반수 이상이 3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나이가 많아질수록 緣故者에 의한 施設收容期間중의 퇴소가 어려운것으로 나타났다(表 4-38 참조). 그리고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退所아동은 첫째,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아동들이 保護者의 要求에 따라 수시로 퇴소할 수 있는 아동이고, 둘째는 父母나 緣故者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법정수용기한인 만 18세 연령을 채워 퇴소하는 年長退所兒童이다. 물론 이 두가지 이외에도 無斷退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正常的인 퇴소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類型중 두번째의 경우는 長期間의 집단 수용에 따른 시설병이 일어날 可能性과 社會適應力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 類型에 속한 兒童들에 대한 施設내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緣故者에 의해 수용기간중에 퇴소한 아동의 住居關係를 보면,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율이 89.7%로 中間退所兒童의 절대다수가 父母에게 인계되고 있어 부모 이외의 親戚 및 親知나 기타결연자들에 의한 入養이나 家庭委託 등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아 지역사회의 참여가 微弱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4-39 참조). 한편 施設兒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세 이상 年長退所兒童은 시설 수용기간이 평균 10년이 넘고 있고, 그들의 平均 年齡이 19세로 부모나 其他 緣故者에게 가정위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자기스스로 單獨 또는 共同으로 自炊하는 경우와 會社의 寄宿舍에서 宿泊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表 4-40 참조). 따라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家族 및 其他 緣故者의 보호가 가장 중요시 된다고 보아 會社나 父母 및 緣故者와의 同居率로써 施設間의 事業成果를 測定하고자 하였다. 父母 및 緣故者 등 또는 會社寄宿舍 등 비교적 安定된 住居에서 生活하는 퇴소자의 비율은 43.1%~46.7%로 地域間 차이는 거의 없었다. 中小企業體인 경우 회사

기숙사도 適切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會社가 많아 회사기숙사마자 퇴소아동을 위한 安定된 기숙사라고 할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大都市는 여러 兒童이 共同으로 自炊하는 比率이 26.9%로 다른 地域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군부는 각각 22.9%와 28.5%이었다. 따라서 大都市에는 다른 아동과의 共同으로 自炊하는 아동이 많았고, 郡部地域의 施設은 혼자서 生活하는 아동이 많아 地域的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地域的인 特性을 감안하여 단독 및 다른 아이들과 共同으로 生活하는 退所兒童의 사후관리는 관련시설에서 事後管理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관할지역내 親戚, 親知 및 地域社會 指導者 등 地域社會의 參與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年長退所兒童의 상당수가 會社의 寄宿舍에서 寄居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生活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이들 會社의 寄宿舍 施設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점차 關心을 두어 퇴소후에 支援 및 管理가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表 4-36〉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단위: %)

	타시설 전원	만기 퇴소	연고자 인계	무단퇴소	입양·위탁	기타	계	(N)
전체	3.5	41.6	37.0	8.2	2.3	7.4	100.0	(1676)
지역								
대도시	2.9	42.0	38.9	7.7	1.0	7.5	100.0	(796)
중소도시	4.9	39.7	33.7	8.9	5.3	7.5	100.0	(572)
군부	2.6	44.5	38.0	8.1	-	6.8	100.0	(308)
시설규모								
60명 미만	4.7	40.9	36.2	9.3	1.5	7.4	100.0	(472)
60~79명	3.0	44.3	38.3	5.9	0.5	8.0	100.0	(574)
80명 이상	3.2	39.8	36.3	9.4	4.4	6.9	100.0	(630)

〈表 4-37〉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年長退所兒童)

(단위: %)

	0~3년	4~6년	7~9년	10~12년	13년 이상	계	(N)	평균[1)]
전체	0.9	6.4	23.4	26.4	42.9	100.0	(698)	132.0
지역								
대도시	1.8	8.1	24.0	26.7	50.4	100.0	(334)	127.8
중소도시	-	4.0	23.4	25.3	50.3	100.0	(227)	136.6
군부	0.7	5.9	21.2	32.1	40.1	100.0	(137)	134.9
시설규모								
60명 미만	0.5	7.2	27.4	24.3	39.5	100.0	(193)	127.9
60~79명	1.2	4.4	22.4	23.7	48.4	100.0	(254)	137.2
80명 이상	1.2	7.5	20.7	30.8	39.8	100.0	(251)	130.0

註: 1) 평균은 단위가 개월수임.

〈表 4-38〉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緣故者引繼兒童)

(단위: %)

	1년 이하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 이상	계	(N)	평균[1)]
전체	30.8	22.0	14.0	12.0	9.3	11.9	100.0	(620)	47.3
지역									
대도시	33.8	20.6	12.9	13.6	9.7	9.4	100.0	(310)	44.3
중소도시	28.5	22.8	15.6	9.8	9.4	13.9	100.0	(193)	49.5
군부	26.5	22.9	14.5	11.1	8.5	15.5	100.0	(117)	51.6
시설규모									
60명 미만	28.1	22.8	11.6	14.0	9.4	14.1	100.0	(472)	49.5
60~79명	31.4	21.8	13.2	13.2	7.7	12.7	100.0	(220)	48.6
80명 이상	32.3	21.4	16.6	9.1	11.0	9.6	100.0	(229)	44.4

註: 1) 평균은 단위가 개월수임.

〈表 4-39〉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住居類型(收容期間中 退所兒童)

(단위: %)

	자취 (단독)	자취 (공동)	부모집	양부모집	회사 기숙사	자립 생활관	기타	계	(N)
전체	1.5	1.0	89.7	1.8	0.6	-	4.4	100.0	(620)
지역									
대도시	1.6	1.6	88.7	2.6	0.6	-	4.8	100.0	(310)
중소도시	1.6	0.5	88.1	-	1.0	-	8.8	100.0	(193)
군부	0.9	-	94.9	2.6	-	-	1.7	100.0	(117)
시설규모									
60명 미만	1.2	-	89.3	4.7	-	-	4.7	100.0	(171)
60~79명	2.3	1.4	90.5	0.5	0.5	1.4	4.1	100.0	(220)
80명 이상	0.9	1.3	89.1	0.9	0.4	-	7.4	100.0	(229)

〈表 4-40〉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後 住居形態(年長退所兒童)

(단위: %)

	자취 (단독)	자취 (공동)	부모집	양부 모집	회사 기숙사	자립 생활관	기타	계	(N)
전체	19.2	21.2	5.2	1.1	38.0	4.4	10.9	100.0	(698)
지역									
도시	12.9	26.9	7.5	1.5	35.0	7.8	8.4	100.0	(334)
중소도시	22.9	15.4	2.6	1.3	39.2	2.2	16.3	100.0	(227)
군부	28.5	16.8	3.6	-	43.1	-	8.0	100.0	(137)
시설규모									
60명미만	23.8	17.6	5.2	1.6	38.9	3.6	9.3	100.0	(193)
60~79명	20.1	22.0	5.9	0.4	35.0	3.1	13.4	100.0	(254)
80명이상	14.7	23.1	4.4	1.6	40.2	6.4	9.6	100.0	(251)

第 3節 其他 兒童福祉施設의 實態 및 評價

1. 嬰兒施設

가. 地域別 施設分布 및 收容率

1994년 말 현재 施設의 定員 대비 現員의 平均 比率은 74.0%이다. 嬰兒施設의 수는 1989년 이후 큰 變함이 없으나, 수용아동수는 계속 減少하고 있다. 1994년 말 현재 嬰兒施設은 全國的으로 28개소로서 大都市에 12개소, 中小都市에 15개소, 郡部에 1개소가 있다. 忠南과 慶北地域에는 嬰兒施設이 없으며 그외 地域에는 1개소 내지 4개소가 配置되어 있는데, 全北地域에 4개소로 가장 많이 配置되어 있다(表 3-2 참조). 이는 嬰兒施設이 地域의 欲求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시설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설립된 이후 施設의 調整이나 統合 등 현실에 맞게 整備되지 못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이번 調査에서는 전국 28개 시설 중 大都市 10개, 中·小都市 11개 등 모두 21개 施設에서 수집한 調査結果를 기초로 嬰兒施設의 現況과 問題點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調査對象이 21개시설에 不過하여 통계적인 분석보다는 記述的 分析技法을 통해 관찰 및 우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收容兒童의 特性

兒童福祉法上 嬰兒施設의 收容對象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準하는 3세 미만의 兒童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3세 미만의 兒童의 比率은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3~5세 兒童이 34.8%, 7세 이상의 學歷兒童도 10.5%로 나타나 嬰兒施設의 法的인 제한 年齡인 3세 이상이

45.3%에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아동수가 減少하고 있고, 隣近에 兒童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시설이 없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收容兒童 父母의 생존여부를 보면, 嬰兒施設兒童의 33.4%는 父母가 모두 生存하고 있었고, 40.7%는 父 또는 母만 생존하고 있었으며, 25.9%만이 父母 모두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兒童이 父母 및 親戚 등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의 缺陷이나 貧困 등 家庭問題로 인하여 시설에 수용되는 兒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大都市 시설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생존한 家庭의 兒童들이 많았고, 中小都市 시설의 경우는 偏母에 의한 貧困으로 入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약간의 地域的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表 4-41〉 嬰兒施設 兒童의 特性

(단위: %)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계
성별			
남아	54.6	53.0	54.0
여아	45.4	47.0	46.0
계	100.0	100.0	100.0
(N)	733	475	1,208
연령			
3세 미만	57.0	51.1	54.7
3~5세	37.0	31.4	34.8
6~8세	6.0	16.6	10.2
9~10세	-	0.9	0.3
계	100.0	100.0	100.0
(N)	733	475	1,208
부모생존여부[1)]			
모두 생존	37.4	25.8	33.4
부만 생존	14.5	21.9	17.1
모만 생존	15.2	39.7	23.6
모두 사망	32.9	12.6	25.9
계	100.0	100.0	100.0
(N)	262	136	398

註: 1) 4개시설의 아동 378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또한 미상이라고 응답한 432명도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다. 入·退所 經路 및 退所理由

嬰兒施設兒童의 入所經路를 보면 시·군·구 등 行政官署를 통해서 입소된 경우가 6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警察官署 21.0%로 83.7%가 行政官署나 警察署를 입소의 일차 窓口로 利用하고 있었다. 이러한 結果는 입소를 위해서는 시·군·구 등 行政官署나 警察署의 協調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할 경우 入所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등 他 施設로부터의 전원이 9.6%, 연고자의뢰 4.5%, 그리고 病院에서의 후송 2.2%로 나타났다. 大都市의 경우 경찰서에서 후송되는 경우가 많았고, 中小都市에서는 연고자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表 4-42〉 入所 및 退所經路別 入所兒童 및 退所兒童數

(단위: %)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계
입소경로별 입소자수			
행정관서	62.1	64.4	62.7
타시설전원[1)]	8.2	13.8	9.6
경찰관서	28.0	0.4	21.0
연고자의뢰	1.1	14.4	4.5
병원후송	0.6	7.0	2.2
계	100.0	100.0	100.0
(N)	544	188	732
퇴소경로별 퇴소자수			
타시설전원	45.7	40.1	44.5
연고자인계	40.9	30.9	38.7
입양·위탁	11.5	23.4	14.1
사망	1.6	5.6	2.4
무단퇴소	0.3	-	0.3
계	100.0	100.0	100.0
(N)	584	162	746

註: 1)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임.

그러나 家庭相談所나 兒童相談所 등 專門機關을 입소 창구로 활용하기 보다는 입소가 容易한 행정관서나 경찰서 등 非專門機關을 활용하고 있어 家庭環境을 잘 알 수 없는 기아 및 미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퇴소후 措置된 상황을 보면, 21개 시설에서 1994년도 퇴소아동 총 746명중 他 施設(육아시설을 의미함)에 전원되어 간 兒童이 44.5%이고, 연고자가 引受해 간 경우가 38.7%, 入養 및 委託은 14.1%로 나타났다. 이는 嬰兒施設의 退所兒童이 타시설, 즉 육아시설로의 전원이 入養이나 委託의 경우보다 많은 것을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相當數의 兒童이 연고자에게 引繼되어 퇴소한 점으로 보아, 父母 및 親戚들의 입소당시 問題點이 경감되었거나 兒童에 대한 態度의 變化로 兒童을 가정에서 보호하려는 傾向이 있다고 볼 때, 가족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라. 退所當時 年齡 및 收容期間

1994년도 퇴소아동 480명[42]에 대한 退所當時의 年齡과 收容期間 등 兒童의 特性을 파악하였다. 퇴소연령은 46.3%가 만 2세 이하이었으나, 3세 이상의 아동이 53.7%를 차지해 법적인 年齡基準을 과반수 이상이 超過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中小都市의 시설에서 더욱 심해 6세 이상이 무려 27.4%에 達하고 있다. 退所當時까지의 兒童收容期間은 6개월 이하가 折半을 차지해 비교적 早期퇴소가 많다. 그러나 24개월 이상 수용된 후 퇴소한 아동도 26.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소도시에 있는 시설은 그 비율이 44.0%에 이르고 있다.

---

42) 21개 영아시설중 응답을 성실하게 한 15개 시설의 퇴소아동수임.

〈表 4-43〉 嬰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當時 狀態

(단위: %)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계
계	100.0	100.0	100.0
(N)	(316)	(164)	(480)
성별			
남아	55.1	44.5	51.5
여아	44.9	55.5	48.5
퇴소연령			
0~2세	47.5	43.9	46.3
3~5세	43.4	28.7	38.3
6세 이상	9.1	27.4	15.4
수용기간			
6개월 이하	58.9	32.9	50.0
7~12개월	9.2	15.2	11.3
13~24개월	14.9	7.9	12.5
25~36개월	10.4	7.9	9.6
37~48개월	5.1	7.9	6.0
49~60개월	1.5	8.6	4.0
61개월 이상	-	19.6	6.6

註: 미상건수 제외하였음.

마. 障碍兒 및 他 市·道 兒童 收容

障碍兒를 수용하고 있는 嬰兒施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施設중 15개 시설에서 적은 곳은 2명에서 많은 곳은 7명에 이르기까지 障碍兒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그 理由로는 관할구역내에 적합한 시설이 없거나 行政機關에서 의뢰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嬰兒施設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缺格事由로 아동을 扶養할 수 없는 아동이 수용되고 있는 곳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正常兒童과 다름이 없는 아동들이다. 따라서 障碍의 程度는 알 수 없지만 장애아들을 專門的으로 治療하고 保育할 만한 設備나 專門人力을 현 嬰兒施設이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特殊兒童의 혼합수용은 하나의 問題點으로 부

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嬰兒施設에서 障碍兒를 收容할 수 있도록 專門的인 機能과 役割을 할 수 있는 人力과 裝備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과 連繫하여 체계적인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連繫網이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嬰兒施設에서 他 市·道兒童을 收容한 경우는 21개 시설중 3개 시설 뿐이었다. 행정기관의 의뢰로 2명에서 7명까지 收容하고 있었다.

바. 法人의 資産 및 財政規模

法人의 資産規模는 적은 곳은 2億원에서 많은 곳은 132億원까지 매우 多樣하게 나타났다. 전체 21개施設 중 7개시설이 10億원 이하였고, 그 중 5개시설이 5億원미만이었다. 그리고 10~20億원이 7개소이었으며, 50억원 이상이 5개소나 있어 法人의 資産規模의 차이가 施設間에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 資産規模는 36億원이었고 大都市가 53億원, 中小都市가 20億원으로 나타나 資産規模에서 지역간에 격차가 많았다.

한편 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의 所有程度를 살펴보면 21개 법인중 13개(61.9%) 법인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8개 法人만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財産의 規模는 3천5백만원에서 4억5천만원에 이르기까지 施設間에 차이가 컸다. 收益用 基本財産이 있는 法人이라도 그 事業의 種類가 아파트·상가임대(5), 농지임대(2), 과수원(1), 병원(3) 및 기타(1) 등으로 收益性이 낮다고 應答하고 있고, 더욱이 事業에 전념할 人力이나 時間이 부족하여 점차 收益性이 낮아질 것으로 豫測하고 있었다. 따라서 法人의 資産構成率을 보면 目的事業用 財産이 97.5%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은 1.5%로 極少數에 지나지 않았다(表 4-45 참조).

〈表 4-44〉 嬰兒施設의 資産規模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지 역		시설현원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60명 미만	60명 이상	
500 이하	-	5	5	-	5
501~1,000	1	1	-	2	2
1,001~2,000	6	1	3	4	7
2,001~3,000	-	2	2	-	2
5,001 이상	3	2	3	2	5
계	10	11	13	8	21
평균자산	5318	2,019	3,462	3,845	3,590

〈表 4-45〉 嬰兒施設 運營法人의 用度別 資産 比率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계(시설수)	법인 평균자산
대도시	97.9	1.4	0.7	100.0(10)	5,318
중소도시	96.3	0.1	3.6	3.6(11)	2,019
전체	97.5	1.0	1.5	1.5(21)	3,590

사. 收入·支出의 規模 및 構成

嬰兒施設의 收入規模는 적은 곳은 1억1천5백만원에서 많은 곳은 8억4천4백만원에 이르기까지 隔差가 크게 나타났다. 施設當 收入規模를 地域別로 보면, 大都市 所在 施設의 경우 최대 總 收入이 약 8억4천4백만원인데 비해 中小都市 소재 시설의 경우 최대 총수입이 약 2억7천6백만원으로 大都市 施設이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規模面에서는 收容兒童이 60명 이상인 施設에서 최대 총수입이 약 8억4천4백만원으로 최대가 약 2억7천6백만원인 60명 미만의 施設보다 總 收入程度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大都市의 施設이나 시설아동수가 많은 大規模施設에서 施設當 收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46〉 嬰兒施設의 收入規模

(단위: 개소, 천원)

규 모	지 역		시설현원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60명 미만	60명 이상	
2억 미만	3	4	7	-	7
2~3억 미만	3	7	6	4	10
3~4억 미만	2	-	-	2	2
4억 이상	2	-	-	2	2
계	10	11	13	8	21
최 소	135,364	114,828	114,828	227,621	114,828
최 대	843,848	276,160	276,160	843,848	843,848

嬰兒施設의 收入의 財源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政府補助가 72.6%, 民間支援金이 9.6%, 外援이 6.9%, 自體收入이 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施設收入은 정부의 보조금이었고, 민간지원금이나 自體收入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少數에 지나지 않아 정부보조에 依存하는 傾向이 큰 것으로 나타냈다. 施設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構成比率이 87.2%에 이르는 곳이 있는 반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있어 政府補助金의 構成比率이 시설간에 격차가 컸다. 이러한 結果는 시설의 設備나 住居形態 및 人力構成의 차이를 招來하여 수용아동에 미치는 影響이 다를 수도 있음을 意味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의 比率이 낮은 施設은 대도시에 있는 시설이나 대규모시설로 收入의 財源이 외국의 자선단체에 의한 支援金이 많거나 資産規模가 큰 法人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전체수입에서 民間支援金이 차지하는 比率은 낮지만 21개 시설중 2개 시설을 除外하고는 모두 民間支援金을 받고 있으며, 施設收入의 30.2%에 달하는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勘案할때 民間支援金의 募金方法과 募金管理 및 育成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收益事業에 의한 收入의 경우 21개 시설중 62%인 13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운영비의 10%를 收益事業을 통해서 充當하기 어렵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다.

〈表 4-47〉 嬰兒施設의 平均 收入 및 財源 比率

(단위: 개소, 천원)

	지 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60명 미만	60명 이상 220명		
정부보조	72.4	72.9	73.4	75.2	63.6	72.6
국고	51.2	54.1	54.7	51.1	49.3	52.4
지방비	21.2	18.8	18.7	24.1	14.3	20.2
민간지원금	10.5	8.2	12.2	10.3	-	9.6
기관/단체	3.7	4.8	5.7	4.1	-	4.2
개인	6.8	3.4	6.5	6.2	-	5.4
외원	10.2	2.3	0.4	2.7	36.4	6.9
자체수입	4.9	14.6	12.7	8.1	-	8.9
법인보조	4.1	13.3	11.3	7.2	-	7.9
수익사업	0.8	1.3	1.4	0.9	-	1.0
기타	2.0	2.0	1.3	3.7	-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10	11	13	7	1	21
시설당총수입	318,365	205,667	187,456	309,315	843,848	259,335
아동1인당입	4,343	4,763	5,006	4,366	3,836	4,508

嬰兒施設의 支出現況을 보면, 兒童의 의식주 및 양육비 등 아동을 위해 直接 支出되는 직접비는 평균 20.3%이고, 施設運營을 위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支出된 間接費는 79.7%로 나타났다. 아동을 위한 直接費는 그나마 먹는데 대부분이 투입되는 것으로 총지출의 14.6%가 주·부식 또는 간식비이다. 施設管理運營을 위한 간접비는 人件費가 거의 대부분으로 총지출의 61.4%를 차지하고 있었고, 管理運營費 9.4%, 其他間接費 8.2%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기타 간접비는 旅費, 辦公費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하나 政府支援 예산항목에는 策定되어 있지 않은 費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혀 없는 경우에서 부터 22.8%에 이르는 경우까지 多樣하여 施設運營者의 裁量에 따라 支出되고 있었다.

總支出을 연간 收容兒童 1인당 비용으로 換算하면, 가장 적은 곳이 3백4십9만원이고 가장 많은 곳은 7백5만원으로 差異가 크게 나며, 平

均 4백4십4만원으로 나타났다. 1人當 費用은 대도시 소재 시설보다 중소도시 소재 시설에서, 그리고 兒童數가 많은 시설보다 적은 시설에서 더 많이 所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48〉 嬰兒施設의 總支出 規模 및 用途別 比率

(단위: %, 천원)

	지 역		시설규모			전 체
	대도시	중소도시	60명 미만	60명 이상 220명		
직접비	21.5	18.7	18.9	20.0	25.4	20.3
주식비	3.4	3.2	3.2	3.3	3.9	3.3
부식비	8.5	7.9	8.1	7.6	10.4	8.3
간식비	3.6	2.2	1.8	3.7	4.7	3.0
기타직접비[1]	6.1	5.4	5.8	5.4	6.4	5.7
간접비	78.5	81.3	81.1	80.0	74.6	79.7
인건비	62.0	60.7	61.8	61.3	60.7	61.4
관리운영비	9.6	9.1	9.6	10.0	7.3	9.4
시설신설비	0.8	0.6	1.2	0.3	-	0.7
기타간접비[2]	6.0	10.9	8.5	8.4	6.6	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10	11	13	7	1	21
시설당총지출	311,005	204,774	184,037	303,749	843,848	255,360
1인당총지출	4,243	4,742	4,873	4,278	3,836	4,439

註: 1) 기타 · 직접비: 피복비, 보건 · 의료비, 취사연료비, 교육훈련비, 기타 등을 포함.
2) 기타 · 간접비: 여비, 판공비 등을 포함.

아. 從事者의 人的 構成 및 資格

嬰兒施設의 從事者 現況을 보면 시설장, 총무, 간호사 및 취사부 등은 각 施設마다 모두 1명씩 確保하고 있었다. 그러나 營養士 2명, 상담원[43] 7명, 세탁부 16명, 경리 1명, 경비원 4명, 보조원 14명 등 收容兒童의 數나 施設의 형편에 따라 人員構成에서 차이가 많았다. 반면 嬰兒施設에서 가장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는 保育士는 212명으로 전체

43) 입양상담원임.

시설종사자의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施設當 平均 10名이 勤務하고 있다. 그렇지만 施設에 따라서 적은 곳은 1명에서 많은 곳은 44명에 이르기까지 保育士의 數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從事者 1인당 擔當兒童數는 2.3명에서 8.0명이었고, 평균적으로는 3.5명이었다.

〈表 4-49〉 地域別 嬰兒施設 從事者 現況

(단위: 명, %)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전체 종사자수(A)	205	138	343
계	100.0	100.0	100.0
성별			
남자	9.7	12.3	10.8
여자	90.3	87.7	89.2
학력			
대졸 이상	16.6	20.3	18.1
고등학교 졸업	68.8	59.4	65.0
중학교 졸업	5.4	6.5	5.8
국민학교 졸업	4.9	11.6	7.6
모름	4.3	2.2	3.5
사회복지사 자격			
전문직종 및 단순노무자 제외 종사자수(B)	159	103	262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수(C)	36	34	70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수(D)	12	20	32
C/A(%)	17.6	24.6	20.4
C/B(%)	22.6	33.0	26.7
D/B(%)	7.5	19.4	12.2
이직율			
1994년도 퇴직자수(D)	53	31	84
이직율(D/A)	(25.6)	(22.5)	(24.5)
1994년도 충원자수	59	29	88

保育士 1인당 아동수는 4.6명에서 7.5명에 이르기까지 施設間에 격차가 많았으며, 平均 擔當兒童數는 5.7명으로 종사자 1인당 법적 배치기준인 수용아동 5명당 종사자 1명을 두어야 하는 것보다는 많았으나,

정부보조 配置基準인 7명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이외 法人自體에서 인건비를 支給하는 인력을 活用하고 있었으며, 그 比率은 10.8%로 낮았으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4-50〉 地域別 嬰兒施設 保育士 現況

(단위: 명, %)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보육사수(A)	135	77	212
계	100.0	100.0	100.0
성별			
남자	-	1.3	0.5
여자	100.0	98.7	99.5
학력			
대졸 이상	13.3	10.4	12.2
고등학교졸업	83.7	83.1	83.5
중학교졸업	3.0	1.3	2.4
국민학교졸업	-	5.2	1.9
사회복지사자격			
사회복지사자격 소지자수(B)	19	12	31
B/A	14.1	15.6	14.6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수(C)	3	5	8
C/A	2.2	6.5	3.8
이직율			
1994년도 퇴직보육사 수(D)	48	27	75
이직율(D/A)	(35.6)	(35.1)	(35.4)
충원자 수	55	25	80

從事者의 資格 소유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343명중 7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 社會福祉士 資格所有者의 比率은 20.4%로 나타났다. 전 종사자중 간호사, 영양사 및 경리와 취사·세탁부, 경비원 및 보조원을 除外한 261명에 對比하면, 嬰兒施設의 社會福祉士 資格所有者의 比率은 26.8%로서 法的 必要人員인 1/3에는 못미치고 있다. 시설장의 96.2%, 총무의 71.4%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 施設運營管理 責任者는 대부분 자격을 소유한 專門社會福祉從事者들인 반면 保育士는 212명중에서 31명만이 社會福祉士資格을 소유하고 있어 그 比率은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전 종사자중 27명이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상담원 등의 該當職種의 資格을 소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학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63.8%가 高卒이었고, 18.2%가 大卒이었으며, 13.2%가 중졸 이하의 學歷을 가지고 있었다. 職責別로 보면, 施設長의 學歷은 57.1%가 대졸, 28.6%가 고졸이었으며, 總務의 學歷은 52.4%가 대졸, 28.6%가 고졸이었다. 保育士의 경우는 83.0%가 고졸이고 12.3%가 대졸로 나타났다.

자. 勤務條件 및 離職率

21개시설 중에서 종사자의 施設내 居住施設數는 보육사가 19개시설, 시설장이 17개소, 취사원이 9개소 등 주로 保育士와 施設長이 시설내에서 居住하고 있었고 간호사와 총무는 시설밖에서 出退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勤務時間에서도 保育士의 경우 24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施設이 가장 많아 15개소였고, 13~18시간이 3개소이었다. 그리고 施設長이나 總務 및 간호사는 9~12시간 勤務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施設從事者중에서 保育士의 業務가 가장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설종사자의 相當數가 시설내에서 居住하면서 時間外 勤務를 하고 있고, 거의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 生活하고 있어 業務의 過重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從事者數를 增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4년도에 21개 시설종사자 343명중 退職者數는 83명으로 退職率이 24.2%였다. 종사자의 職責別 離職率을 보면, 保育士는 전체 212명중 75명이 退職한 것으로 나타나 35.4%에 달하고 있었고, 看護師의 경우 4명이 퇴직하여 19.0%의 離職率을 나타냈다. 즉 시설의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保育士의 退職率이 가장 높았다. 이는 보육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表 4-51〉 嬰兒施設 從事者의 勤務條件

(단위: 명)

	시설장	총무	보육사	간호사	취사원
거주지					
시설내	17	8	19	6	9
시설밖	4	13	2	14	12
근무시간					
8시간	-	2	-	4	-
9~12시간	10	12	3	13	15
13~18시간	4	4	3	-	1
24시간	7	3	15	3	5
월간휴가일수					
없음	8	5	1	3	4
2일	1	2	5	1	4
3일	-	-	5	-	2
4일	8	10	7	12	7
5일 이상	4	4	2	4	4

〈表 4-52〉 嬰兒施設 從事者의 離職率

(단위: 명, %)

구 분	종사자수	퇴직자수	비 율
시설장 및 총무	22	1	4.8
간호사	21	4	19.0
영양사	2	-	-
보육사	212	75	35.4
취사부	21	1	4.8
세탁부	17	2	11.8
경리	1	-	-
경비원	4	-	-
보조원	14	-	-
계	343	83	24.2

차. 施設의 運營管理

시설운영을 위한 法人 理事會의 理事數는 21개 시설중 4개 시설은 7명이며, 12명인 施設도 있으나 절반 이상(12개 시설)이 法定 최소인원인 5명으로 평균 6명이었다. 監査數는 전 시설 공히 2명씩이었다. 임원진의 법인대표와의 친족관계 정도를 보면, 21개 시설중 折半 이상(12개 시설)이 法人代表와 親族인 任員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9개의 시설은 親族인 任員이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반 이상(12개 시설)의 시설은 施設長과 親族인 任員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하였고, 9개 시설에는 시설장과 친족인 임원이 1명 이상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理事會 開催 정도를 보면, 1개 시설을 除外한 모든 시설이 1994년도에 1회 이상씩 開催하여, 평균 연2.5회 개최하였고, 이중 2회는 直接 參席하고, 간혹 書面 결의식으로 處理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理事會 主要 案件은 1년 예산·결산, 종사자의 인사관계, 임원선출, 기본재산 처분 및 사업계획 등 주로 行政的인 부분에 局限되며, 아동의 保護向上 方案 등에 관한 案件은 없었다.

〈表 4-53〉 地域別 嬰兒施設 從事者의 法人代表와 施設長과의 親族數

(단위: 명)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계	10	11	21
법인대표와의 친족수			
없음	7	5	12
1명	3	5	8
3명	-	1	1
시설장과의 친족수			
없음	7	5	12
1명	2	3	5
2명	1	2	3
4명	-	1	1

카. 地域社會와의 關係

1) 自願奉仕者 活用

21개 시설중 20개 시설이 自願奉仕者를 활용하고 있었다. 1개 시설에서 活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년간 적은 곳은 10명에서 많은 곳은 383명으로, 施設當 年間 평균 자원봉사자는 101명이었다. 自願奉仕者 數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소재 시설에서, 그리고 현원 60명 이상 大規模施設보다는 60명 미만 小規模施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自願奉仕者의 職業 種類를 보면 시설별로 적은 곳은 1개 종류, 많은 곳은 8개 種類의 職業人들이 봉사하고 있어, 平均的으로 4종류의 職業人들이 參加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家庭主婦와 大學生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의 學生, 企業體 임직원, 이·미용 기술자, 의료진, 교회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에는 1명이 個別的으로 訪問하는 경우도 있고 集團으로 訪問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업별로 년간 1개 施設當 訪問者 數는 <表 4-55>와 같다.

〈表 4-54〉 嬰兒施設의 年間 自願奉仕者 數

(단위: 개소)

구 분	지 역		시설현원		계
	대도시	중소도시	60 미만	60 이상	
없음	-	1	-	1	1
30명 이하	3	2	4	1	5
31~50명	2	2	2	2	4
51~100명	1	2	2	1	3
101~200명	3	2	3	2	5
201~383명	1	2	2	1	3
계	10	11	13	8	21

自願奉仕者의 活動內容을 보면 청소·세탁등 노력봉사와 목욕·수유 등 아동 돌보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學習指導와 理·美容, 診

療 및 娛樂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 대부분(18개)의 시설에서는 큰 도움(12) 또는 조금 도움(6)이 된다고 하였으나, 2개 施設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反應을 보였다.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10개 시설에서 '인력부족 해소'를, 5개 시설에서 '아동의 사기 향상'을 들었으며, 그 밖에 각각 1개 시설에서 '경비 절약', '전문인력 활용', '지역유대 강화'를 들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 理由로는 2개 시설 모두 自願奉仕 期間이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함을 지적하였다. 시설에서 自願奉仕者를 發掘하는 方式은 '방문자를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며(14개 시설), 그 다음으로 宗敎團體나 地域團體(각각 9개 시설)이었고, 그 밖에 공공기관(6)이나 시설의 소식지(5), 학교(3) 등의 순이었다.

〈表 4-55〉 嬰兒施設의 自願奉仕者 現況

(단위: 개소, 명)

	대도시		중소도시		전 체	
	봉사자 참여시설	봉사자수 범위	봉사자 참여시설	봉사자수 범위	봉사자 참여시설	봉사자수 범위
전문의료진	4	(1~ 20)	2	(1)	6	(1~ 20)
성직자	3	(1~ 11)	3	(1~ 40)	6	(1~ 40)
지역지도자	-	-	1	(1)	1	(1)
기업체 임직원	3	(5~ 25)	3	(20~120)	6	(5~120)
가정주부	9	(2~120)	8	(2~ 30)	17	(2~120)
일반인	4	(10~ 70)	4	(15~ 98)	8	(10~ 98)
대학생	9	(2~ 60)	7	(3~101)	16	(2~101)
고등학생 이하	4	(20~100)	4	(16~174)	8	(16~174)
기술보유자	3	(3~ 4)	2	(2~ 3)	5	(2~ 4)
외국인	2	(6~ 8)	2	(3~ 4)	4	(3~ 8)
기타	-	-	1	(20)	1	(20)

2) 後援·結緣者 및 團體 活用

21개 시설 중 3개 시설을 제외한 18개 시설에서 後援·結緣者 및 團體의 支援을 받고 있었다. 個人 後援者를 가지고 있는 시설은 15개

시설로서 적은 곳은 단 2명에서 많은 곳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後援團體數를 가지고 있는 시설은 17개 施設로서, 적은 곳은 단 1개 團體에서 많은 곳은 150개 團體에 이르는 곳도 있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個人後援者 및 後援團體 중에는 특정아동과 결연하여 後援하는 경우와 施設을 全體的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8개 시설에서 적은 곳은 10명에서 많은 곳은 70명에 이르는 個人이 特定兒童과 結緣하여 후원하고 있었고, 13개 시설에서는 적은 곳은 2명에서 많은 곳은 800명에 이르는 個人들이 시설을 후원하고 있었다. 또한 後援團體 중에는, 5개 시설에서 1개 내지 6개 단체가 特定兒童들을 後援하고 있었고, 19개 시설에서는 1개 내지 98개 團體가 시설을 후원하고 있었다.

〈表 4-56〉 嬰兒施設의 後援者 및 後援團體 數 分布

(단위: 명, 개)

구분	지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60명 미만	60명 이상	
개인후원자 수					
없음	2	1	1	2	3
2명	-	1	1	-	1
12~46명	2	3	3	2	5
56~80명	1	3	4	-	4
100~140명	2	1	1	2	3
396명	-	1	1	-	1
800명	1	-	-	1	1
계	8	10	11	7	18
후원단체 수					
없음	1	-	-	1	1
1~10개	3	4	4	3	7
12~20개	3	1	2	2	4
40~60개	1	4	4	1	5
150개	-	1	1	0	1
계	8	10	11	7	18

3) 施設轉換에 대한 態度

21개 시설중 4개 施設이 현재 嬰兒施設 외에 託兒事業(2개 시설) 또는 兒童一時保護施設(2개 시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동일시보호시설을 運營하고 있는 시설중 1개 시설은 家族治療 相談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에 1개 施設은 綜合社會福祉館을 운영하고 있었다. 6개 施設은 앞으로 嬰兒施設 외에 탁아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할 意思가 있으며, 2개 시설은 각각 老人病院·療養所와 有·無料 養老院을 운영할 意思가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 경우 政府가 財政支援을 해 줄 것(6개시설)과 關聯 法規를 개정해 줄 것(1개시설)을 要求하였다.

21개 시설중 8개 시설이 타시설로의 轉換意思를 보였는데, 希望하는 施設은 탁아시설이 3개 시설, 장애인 시설이 2개 시설, 노인시설이 2개 시설이었고, 그 밖에 相談 및 訓練센타가 1개 시설이었다. 이와 같은 시설로 轉換하고자 하는 理由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5개 시설), 또는 旣存 施設을 가장 잘 利用할 수 있기 때문(3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他施設로의 轉換意思를 보임에도 상기의 1개시설을 除外하고는 현재의 嬰兒施設 운영을 中斷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설운영자들이 嬰兒施設의 需要減少를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 다른 施設로의 轉換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시설은 嬰兒施設의 需要減少에 敏感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동 시설은 '수요감소에 따른 대체사업시 政府에서 施設改善費를 지원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21개 시설중 7개 시설이 시설을 移轉할 意思를 보였는데, 이 경우 정부에서 施設 移轉 費用을 지원할 것(4개 시설)과 開發制限 地域을 완화해 줄 것(3개 시설)을 요구하였다.

2. 兒童一時保護施設

兒童一時保護施設은 家出, 浮浪兒, 其他 要保護兒童을 일시 입소시켜 將來의 保護 및 養育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利用施設이라고 할 수도 있다. 1995년도 보건복지부의 兒童福祉施設 일람표에 의하면 1994년 말 현재 全國的으로 9個所가 設置되어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그리고 이 施設은 서울특별시에 5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부산및 대구가 각각 1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大邱市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兒童收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實際 8개소에 不過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경기도의 2개소를 除外하면 대부분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어 수용아동의 地域的인 需要를 고려한 시설의 配置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수용아동수가 施設定員에도 미치지 못하고 점차 減少하고 있어 서울시의 5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정원이 511명인데 收容人員은 191명으로 시설수용아동수가 定員의 37.4%에 불과해 施設의 活用問題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수용아동의 減少는 지역별 시설에 따라 달라 京畿道와 釜山의 兒童一時保護施設은 정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地域이나 施設間에 차이를 나타냈다.

〈表 4-57〉 地域別 兒童一時保護施設의 現況(1994. 12. 現在)

	시설수	현원	정원	종사자수	현원/정원 대비(%)
서울	5	191	511	99	37.4
부산	1	71	95	16	74.7
대구	1	0	0	0	0
경기도	2	98	100	22	98.0
계	9	360	706	137	43.3

資料: 보건복지부, 1995년도 아동복지수용시설 일람표, 1994, 12.

그리고 兒童一時保護施設은 대부분 棄兒, 迷兒 및 家出兒 등 요보호아동을 부모 및 연고자에게 引繼하거나 入養 및 家庭委託의 과정에

서 一時的으로 보호 및 양육하는 곳이다. 그러나 家庭保護나 入養 및 家庭委託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6개월이내에 다른 兒童福祉收容施設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용아동은 일시보호기간에 국내·외 入養으로 措置되는 경우가 많고 障碍兒 또는 기타 情緖障碍兒인 경우 間或 施設轉換시키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가출이나 부랑아 등 問題兒童 또는 非行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兒童들은 이들의 문제를 조사, 판단 및 조치를 위하여 兒童相談所안에 일시보호시설에서 收容 및 保護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모 및 보호자에게 訓戒 및 歸家 措置를 하고 있어 하나의 利用施設로 分類되고 있기 때문에, 이 硏究對象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번 調査에서는 서울시 4개소, 부산 1개소, 경기도 1개소 6개시설과 嬰兒施設이지만 兒童一時兒保護施設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 및 광주시설을 각각 1개소를 追加하여 8개시설을 분석하였다.

가. 兒童一時兒保護施設別 收容兒童水準

兒童一時保護施設의 정원은 40명에서 106명까지 시설정원수가 차이가 심하였다. 2개시설을 除外하고는 전반적으로 施設定員에 비해 수용아동수가 적어 全體 施設定員의 63.8%가 수용되어 있어 수용아동수가 감소하는 傾向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兒童一時保護施設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서 수용율은 折半에도 못미쳐 대형시설이 더욱 수용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現在 8개시설에서 수용아동이 가장 적은 施設이 29명이었고, 가장 많은 施設이 71명으로 一般的으로 수용아동수가 減少하고 있었다.

시설정원과 수용아동의 규모를 보면, 시설정원이 40명~106명 범위로 施設間 定員의 차이가 심하였고 現收容人員에서도 29명~71명 범위로 역시 차이가 많다. 즉, 法的인 定員보다 현 수용인원은 훨씬 낮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施設定員의 意味가 시설수용자의 質的인 서비스의 提供과 效果的인 收容兒童의 管理에 있다고 볼때, 大規模施設보다는 수용자관리에 적정한 小規模施設로 시설의 형태의 변화가 要求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의 법적정원에 비해 실제 수용인원이 낮은 현실을 감안 할때, 시설정원은 수용자의 적정관리에 맞게 改正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8개시설의 平均定員은 74명인데 收容人員의 平均은 48명으로 정원에 64%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체 정원 590명에 대한 수용인원은 47.5명으로 50명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入養이나 家庭委託이 어려운 우리나라 實情을 勘案할때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무연고자의 收容施設, 특히 兒童一時保護施設은 필요하며, 오히려 相談所와 連繫하여 기능과 역할을 擴大하여 專門的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설비, 장비 및 인력을 確保해야 할 것이다.

〈表 4-58〉 地域別 調査對象 施設數 및 現況

	시설수	현원	정원	종사자수	현원/정원(%)
서울	4	198	356	85	55.6
H	1	50	50	22	100.0
B	1	51	100	22	51.0
S	1	40	100	18	40.0
D	1	57	106	23	53.8
P	1	71	96	23	74.0
G	1	49	49	17	100.0
K	1	29	40	11	72.5
K1	1	34	56	12	60.7
계	8	381	597	148	63.8

나. 施設規模와 住居環境

1) 施設設備 및 狀態

兒童一時保護施設運營을 위한 양호시설, 상담시설, 조리시설 및 목

욕시설 등 基本的인 施設은 갖추고 있으며, 시설의 상태도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收容兒童의 安全을 위한 안전 및 비상재해시설에 관한 項目은 정확하게 記載를 하지 않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자들이 安全 및 非常對策에 관한 認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安全管理나 災害豫防에 대한 問題가 되고 있다. 收容施設 兒童의 대부분이 6세 이하이며,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때 이들에 대한 안전 및 재해관리에 대한 施設管理者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의 위치는 H, S, D, G, P시설 등 대다수가 敎育, 保健醫療 및 行政 등의 公共機關에 인접되어 있고 대중교통수단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位置하고 있어 地域社會의 접근이 容易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施設의 地域的 配置의 不均衡

아동일시보호시설은 迷兒, 棄兒, 家出兒, 浮浪兒 등 요보호대상자를 家庭復歸가 어려운 경우 入養이나 家庭委託을 하거나 또는 施設收容 與否를 판정 및 조치이전에 一時保護는 곳이다. 兒童一時保護施設은 全國的으로 9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며,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兒童一時保護施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에 6개소가 集中되어 있어 대도시에도 없는 地域이 적지 않다. 중소도시나 군부에서는 일시보호시설이 전혀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동일시보호시설이 地域的인 均衡配置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적인 시설의 배치 불균형은 관할지역에서 보호자나 연고자 없는 요보호대상자가 發生한 경우 다른 地域의 시설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地域社會 자치制가 정착이 된다면, 다른 지역의 수용자에 대한 施設間 또는 地域間의 問題가 본격적으로 提起될 우려가 있다.

다. 法人 및 施設의 資産規模와 收入 · 支出

法人의 財産規模는 시설간에 차이가 심하였다. 주로 대도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法人은 2,373~15,000백만원 범위인데 비해 中小都市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422~534백만원 범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法人의 資産은 절대다수가 不動産이었고, H, D 및 P施設 등은 收益用 基本財産이 있으며, 특히 H시설은 자산의 52.1%가 수익용 재산이었다. 반면 K1, K 및 G시설 등 주로 광역 및 중소도시의 법인들은 수익용기본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中小都市의 施設이 자체수익용 기본재산으로 施設運營費를 충당하기 어려운 零細法人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總 收入을 보면,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4개시설은 國庫 및 地方費 등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었으며, K시설은 국고가 아닌 地方費를 받고 있어 시설에 따라 收入財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H, B와 D시설 등은 自體收入이 주요 收入源이 되고 있으며, S시설은 外援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K1, G 및 K시설 등 中小都市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은 정부에 依存하고 있었다.

總收入에 대한 政府補助費의 比率은 K1시설은 89.3%, G시설은 63.6%, 그리고 K시설은 38.2%로 나타나고 있어 施設에 따라 정부의 依存率에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K施設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地方政府의 支援만을 받고 있으며, 自體收入도 전체 예산의 54.4%을 차지하고 있어 大都市施設과 中小都市 施設의 중간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關心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兒童一時保護施設은 다른 시설과 달리 自體收入이나 外援의 確保가 가능해 법인이나 시설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特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 및 자체수입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보다 入養이나 家庭委託事業에서 얻어지는 收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收入이 어느정도 持續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도 外援이 지속될 수 있을지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施設運營의 財源은 정부가 전적으로 負擔하여야 하지만 법인의 수익용재산을 開發하여 收益性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摸索해야 하며, 특히 민간지원금의 모금과 육성을 위한 基金管理 및 配定을 합리적으로 실시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施設의 運營을 改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表 4-59〉 法人의 資産規模 및 施設의 收入現況

(단위: 천원)

	K	K1	G	H	B	S	D	P	계	(%)
<법인자산>										
부 동 산	450	535	423	6,557	12,600	2,374	5,806	1,027	29,770	(73.0)
동 산	0	0	0	925	400	0	704	15	2,045	(5.0)
보통재산	0	0	0	0	0	0	0	25	25	(0.1)
수익재산	0	0	0	8,152	0	0	450	331	8,932	(21.9)
계	450	535	423	15,634	13,000	2,374	6,960	1,398	40,773	(100.0)
<시설의 총수입>										
정부보조	62	174	157	0	0	0	0	236	630	(26.7)
국고	0	(117)	(105)	0	0	0	0	(189)	(411)	<17.4>
지방	(62)	(57)	(52)	0	0	0	0	(47)	(219)	<9.3>
민간지원	12	18	15	0	5	0	0	27	77	(3.3)
외원보조	0	0	14	0	0	342	0	0	356	(15.2)
자체수입	89	3	61	288	470	175	176	29	1,291	(54.8)
계	163	195	247	288	475	517	176	293	2,355	(100.0)

시설의 지출현황을 보면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직접비 즉, 수용자를 위한 주·부식비, 보건의료비, 교육훈련비 등에 지출하는 예산은 24%이하이고, 大都市의 施設일수록 전체비용에 대한 直接費의 比率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시설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間接費에 더 支出되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종사자의 인건비에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大都市의 H, B, D, P施設 등의 전체 시설운영비중 人件費의 비율은 각각 80.8%, 65.8%, 78.9%, 74.4%, 72.0% 등으로 나타

났는데 비해 中小都市의 K, K1 및 G시설 등에서는 55.0%, 58.2% 그리고 68.7% 등이 각각 人件費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는 大都市施設이 從事者의 人件費에 더 많이 支出하고 있는데 비해 中小都市의 시설일수록 인건비에 더 적게 支出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4-60〉 兒童一時保護施設別 豫算內譯別 支出現況

(단위: 천원)

	K	K1	G	H	B	S	D	P	계	(%)
직접비	30,297	47,557	50,215	29,237	75,009	38,189	13,170	56,396	340,070	(16.3)
주 식	7,385	7,601	8,537	8,165	15,666	10,693	11,238	8,741	78,026	(3.7)
부 식	9,468	15,787	15,566	9,746	17,090	0	0	21,148	88,805	(4.3)
간 식	2,840	6,432	8,537	5,531	0	0	0	11,279	34,619	(1.7)
피 복	1,514	6,432	4,770	0	4,273	509	1,932	3,384	22,814	(1.1)
보건의료	4,734	2,534	11,047	4,478	37,505	25,205	0	1,410	86,913	(4.2)
연료비	569	780	1,255	1,317	475	1,782	0	1,410	7,588	(0.4)
교육훈련비	0	6,822	0	0	0	0	0	0	6,822	(0.3)
기 타	3,787	1,169	503	0	0	0	0	9,024	14,483	(0.6)
간접비	159,060	147,347	200,860	234,160	399,733	216,407	162,429	225,583	1,745,579	(83.7)
수용비	15,149	1,559	2,009	6,322	2,374	0	0	1,410	28,823	(1.4)
제세.공과	4,924	1,949	7,030	2,634	3,798	255	10,536	2,820	33,946	(1.6)
난방연료	2,272	2,534	5,022	2,897	15,193	9,165	4,039	4,230	45,352	(2.2)
차량유지	2,082	3,118	1,004	0	3,323	3,564	0	1,692	14,783	(0.7)
시설유지	0	974	3,013	0	3,798	2,546	1,756	564	12,651	(0.6)
시설신설비	0	13,058	0	0	15,666	0	0	0	28,724	(1.4)
인건비	104,146	113,435	172,488	212,825	302,885	200,877	130,646	203,025	1,440,327	(69.1)
기 타	30,487	10,720	10,294	9,482	52,696	0	15,452	11,842	140,973	(6.7)
계	189,357	194,904	251,075	263,397	474,742	254,596	175,599	281,979	2,085,649	(100.0)

註: 전체 평균 260,706천원

라. 從事者의 一般特性

從事者의 數는 11명에서 23명까지 施設에 따라 差異가 많았다. 從事者의 種類는 시설장과 총무가 있으며, 實務者로서 보육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담요원 및 기타 취사부나 세탁부 또는 경리 등 행정보조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중에서 收容兒童의 保育을 담

당하는 保育士가 가장 많아 시설당 최저 3명에서 최고 13명으로 收容兒童의 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保育士 1명당 擔當해야 하는 平均 兒童數는 5.7명이었고, 시설에 따라서는 保育士 1인당 3.1명에서 10명이 넘는 境遇가 있었으며, B시설의 경우 保育士는 적지만 看護師로 대치하는 例도 있어 같은 兒童一時保護施設이지만 보육사의 擔當兒童數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H, D, B시설 등은 保育士와 看護師 등의 人力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P시설과 K시설은 인력확보가 低調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施設마다 1명에서 5명에 이르기까지 두고 있어 法的基準이상의 보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兒童一時保護施設의 特徵이라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施設收容兒童이 1세 이하의 영유아가 많을 경우 非專門的인 保育士 보다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看護師가 더 필요한데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1세 미만의 수용아동수가 많은 H, B 및 D施設 등의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看護師를 더 많이 採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醫師는 대부분 촉탁의사제를 活用하고 있으며, 시설에 常住하는 의사는 없었고, 필요시 또는 1주일에 수회정도 시설을 訪問하여 의료서비스를 提供하고 있었다.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分野別 資格所持者를 파악한 바, 전체종사자 148명중에서 該當分野의 資格證을 소지하고 있는 종사자가 1/3이 넘는 31.1%였다. 그러나 수용아동의 保育을 擔當하고 있는 보육사 66명중 資格證所持者는 7명에 지나지 않았으며,대부분 高等學校 이하의 學歷이었다. 따라서 자격이나 학력이 保育士의 절대적인 자격기준이라 할 수 없지만 經驗이나 적정한 素養을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專門的인 社會福祉敎育·訓練機關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적정한 敎育이나 訓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對策이 요구되고 있다.

〈表 4-61〉 兒童一時保護施設 從事者의 特性과 勤務環境

	K	K1	G	H	B	D	S	P	계	(%)
종사자종류										
보육사	3	7	9	13	3	13	7	11	66	(44.6)
간호원	1	1	1	1	5	3	2	1	15	(10.1)
영양사	0	0	0	1	0	0	0	0	1	(0.7)
상담요원	1	1	1	0	2	0	4	1	10	(6.8)
시설장총무	2	2	2	2	3	2	2	2	17	(11.5)
기타	4	1	4	5	9	5	3	8	39	(26.3)
종사자성별										
남자	1	2	3	0	3	3	1	4	17	(11.5)
여자	10	10	14	22	19	20	17	19	131	(88.5)
자격증소지										
있음	4(0)	4(2)	4(1)	5(2)	11(2)	6(0)	7	5(1)	46	(31.1)
없음	7	8	13	17	11	17	11	18	102	(68.9)
보육사학력										
중학교 이하	2	1	3	0	3	0	1	1	11	(7.4)
고등학교	6	6	11	5	9	13	7	9	66	(44.6)
전문대 이상	3	5	3	17	10	10	10	13	71	(48.0)
계	11	12	17	22	22	23	18	23	148	(100.0)

마. 施設收容兒童의 一般特性

아동일시수용시설수용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生活할 수 없는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이며, 그들을 保護할 부모의 생존을 알 수 없는 境遇가 많았고, 母만 生存하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收容兒童도 있었으나 시설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는 대부분 缺陷家庭으로 질병, 복역, 별거 및 가출 등으로 인하여 父母가 있지만 扶養할 能力이 없는 경우에 아동일시보호소에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父母의 生存與否를 알 수 없는 경우는 未婚母에 의해 出産한 아이 및 장애아 등 棄兒들의 수용으로 인해 父母의 生死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용아동의 연령구성을 보면, 전체 아동의 61.2%가 1세 이하이었다. 그러나 兒童의 年齡構成比率은 시설에 따라 달라 서울의 4개시설을 비롯한 G시설은 2

세 이하, 특히 1세 미만이 絶對多數이었다. 그러나 K1, P 및 K시설 등은 1세인 아동은 물론 5세 이상부터 10세인 兒童에 이르기까지 수용아동의 年齡層이 多樣하게 構成되어 있어 시설간에 수용아동의 연령구조가 判異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表 4-62〉 兒童一時保護施設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K	K1	G	H	B	S	D	P	계	(%)
연령										
1세 이하	1	11	40	29	40	35	57	20	233	(61.2)
2세	2	9	3	16	3	3	0	11	47	(12.3)
3세	7	1	5	2	3	0	0	5	23	(6.0)
4세	9	1	1	1	3	0	0	11	26	(6.8)
5세	5	1	0	0	2	1	0	7	16	(4.2)
6세	2	2	0	2	0	0	0	8	14	(3.7)
7세	0	0	0	0	0	0	0	3	3	(0.8)
8세	0	1	0	0	0	0	0	1	2	(0.5)
9세	0	2	0	0	0	1	0	1	4	(1.1)
10세 이상	3	6	0	0	0	0	0	4	13	(3.4)
성별										
남	15	15	23	25	27	20	0	39	194	(50.9)
여	14	19	26	25	24	20	27	32	187	(49.1)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14	2	2	0	4	39	0	26	87	(22.8)
부 생존	1	0		0	0	0	0	2	3	(0.8)
모 생존	0	0	3	0	47	0	57	1	108	(28.3)
모 름	14	32	44	50	0	1	0	42	183	(48.1)
합 계	29	34	49	50	51	40	57	71	381	(100.0)
정 원	40	56	49	50	100	100	106	95	596	

父母의 生存與否에서도 S施設을 除外한 서울의 3개시설과 G시설은 부모를 모르거나 偏父母의 아동이 많이 收容되어 있는데 비해 K시설과 P시설은 父母가 生存한 경우가 많아 수용아동의 父母關係가 施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實證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3세 이하의 아동을 주로 수용하여 연고자 인계나 入養 및 家庭委託을 위한 업무를 主要機能으로 하고 있는 시설과 3세~10세 이상까

지 多樣한 年齡層의 兒童을 수용하여 緣故者 引繼나 입양 및 가정위탁의 機能과 함께 施設轉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로 區分되어 施設間에 나름대로 가각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아동일시아동보호시설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6개월이내 입양, 가정위탁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家庭復歸 등의 措置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收容兒童의 特性에 못지 않게 退所兒童의 特性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H시설을 비롯한 몇개시설은 퇴소아동의 수가 많고 資料의 蒐集이 어려워 5개시설의 자료를 수집 및 分析하였다. 전체 아동일시보호시설의 退所兒童의 年齡은 1세 미만이 62.2%로 였으나, G시설이나 B시설은 12개월 미만이 絶對多數인데 비해 P시설은 3세 이상 17세까지 다양하게 分散되어 있어 퇴소아동의 연령에서도 施設間에 差異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B시설과 G시설은 12개월 미만의 兒童을 주로 수용하고 국내·외 입양 및 가정위탁에 力點을 두고 있었으며, 반면 多樣한 年齡層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P시설은 3세 이상의 棄兒, 迷兒 및 家出兒童 등을 수용보호하고 相談, 指導 및 措置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退所兒童의 退所理由가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도 立證할 수 있다. 퇴소의 사유를 보면 B시설은 퇴소아동 158명 중 152명의 아동이 入養으로 퇴소하였고, G시설과 P시설에서도 相當數가 入養으로 인한 퇴소아동이 많았다. 반면 P, K1 및 G시설 등은 入養이나 緣故者引繼를 들고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他施設의 전원을 이유로 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 施設間에 役割의 差異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특히 퇴소아동의 同居形態를 보아도 B시설은 退所兒童의 거의 전부가 養父母와 同居하고 있어 전적으로 入養에 主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G, P 및 K1시설 등은 父母同居, 養父母同居 및 施設 등 同居關係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입양이나 가정위탁에 集中하지 않고 緣故者 引繼 및 施設配置 등 아동의 特性에 따라 措置하고 있었다.

한편 1994년도 1년동안 施設收容兒童의 입소 및 퇴소자의 수는 시설에 따라 많은 差異를 볼 수 있다. H, B 및 기타 비교적 큰 施設에서는 1000명을 넘고 있으나, S시설은 9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收容期間은 6개월이내가 대부분이었고, 退所理由는 입양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있고, 緣故者에게 引繼 및 타시설 전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入養의 比率이 아직도 많은 것은 國內 入養보다 外國入養을 전문으로 하는 H시설이나 D시설 등 民間이 運營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缺課에 의하면 아동일수보호시설에 收容된 兒童은 아직도 외국에 입양을 하는 경우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가 찾아가는 경우와 시설로 전원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수용자의 보호 및 양육의 役割이 중요하지만 家庭保護, 入養, 家庭委託 및 施設로의 전원 등 收容兒童의 特性에 따라 選別하고, 措置하는 역할 및 기능도 함께 遂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시설로 改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다른 地域의 兒童이나 障碍兒童를 수용하고 있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8개 시설에 수용아동중 95명(장애자 73명, 타시도 22명)은 다른 시도에 아동이거나 현재 障碍兒童이었다. 이들을 收容한 理由는 연고자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으로 管轄區域內 적합한 施設이 없거나, 行政機關에서 依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收容兒童의 特性에 맞는 시비스의 提供을 위해서는 地域間에 施設의 均衡配置와 함께 障碍者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施設의 連繫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4-63〉 兒童一時保護施設 退所兒童의 主要 特性

	S	G	P	K1	B	계	(%)
<연령>							
6개월 미만	0	21	0	0	20	41	(11.0)
6~12개월	0	22	0	0	138	160	(42.9)
1세	9	12	1	9	0	31	(8.3)
2세	0	6	32	4	0	42	(11.3)
3~5세	0	6	20	14	0	40	(10.7)
6~12세	0	0	39	11	0	50	(13.4)
13~16세	0	0	4	4	0	8	(2.1)
17세 이상	0	0	1	0	0	1	(0.3)
<수용자의성별>							
남 자	6	29	52	26	81	194	(52.0)
여 자	3	38	45	16	77	179	(48.0)
<수용기간>							
6개월 이하	7	38	68	21	158	292	(78.3)
1~12개월	1	17	15	15	0	48	(12.9)
1~2년	1	12	14	6	0	33	(8.8)
3년 이상	0	0	0	0	0	0	(0.0)
<퇴소사유>							
타시설 전원	0	10	43	8	0	61	(16.3)
연고자인계	9	31	22	23	2	87	(23.4)
무단퇴소	0	0	2	0	0	2	(0.5)
입 양	0	15	30	8	152	205	(55.0)
사 망	0	11	0	3	4	18	(4.8)
<주거형태>							
시설	0	21	43	11	4	79	(21.2)
부모동거	9	31	23	23	2	88	(23.6)
양부모동거	0	15	31	8	152	206	(55.2)
합 계	9	67	97	42	158	373	(100.0)

〈表 4-64〉 收容兒童 중에서 他 市·道 및 障碍兒童 有無

	K	K1	G	H	B	S	D	P
타 시·도	0	0	0	0	5	17	0	0
장애자	0	8	32	1	10	9	6	7
계	0	8	32	1	15	26	6	7

註: 전체 - 타시도 22(23.2%), 장애자 73(76.8%), 계 95(100.0%)

바. 施設의 運營體制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法人은 대개 2개 이상의 兒童福祉施設과 其他 社會福祉施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施設은 어린이 집, 청소년 수련장, 종합복지관, 미혼모집, 정박 및 장애아, 재활원, 노인시설 등 多樣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法人의 資産은 目的事業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收益用 基本財産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수익성이 낮아 貧弱한 형편이었다. 또한 수익용 재산을 利用한 事業의 種類가 주로 부동산 임대, 여행알선, 자동음료 판매, 병원운영 등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收入이 점차 減少되고 있어 시설운영비를 充當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 施設이 갖고 있는 收益用 資産을 통해서 施設運營費를 充當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되고 入養이나 家庭委託을 통해 얻어지는 收入도 減少하고 있다. 따라서 施設의 收益用資産을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이 模索되지 않고서는 정부보조금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복지수용시설을 收容施設에 局限하지 말고 지역사회복지시설로 轉換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施設利用者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施設利用料를 부담하게 하는 施設의 運營形態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增加하고 있다. 어린이 집(탁아시설) 또는 유료 양로원 등 시설의 전환도 하나의 예로 提示할 수 있다.

施設 理事會의 任員과 시설장과의 關係를 보면 親戚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인 또는 시설장의 親知가 많았으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수 包含되어 있어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운영개선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理事會는 1년에 3회정도 開催하고 있으며, 主要 案件은 사업계획, 시설운영, 추경예산 및 근무자의 호봉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行政的인 節次로 시행하고 있을 뿐 施設收容兒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

에 관한 案件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시설운영을 위한 理事會는 지역사회의 각계 指導給人事로 構成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 결연자의 발굴, 지원금 모금, 육성방안 및 모금관리에 관한 문제 등 直接的으로 施設運營에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협조기관은 아동상담소,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사무소와 학교등 이었다. 兒童相談所는 입양 및 시설전원시 協調를 받고 있으며 읍·면·동 및 시·군·구 등 行政機關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行政的인 支援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역내 기업체와 자매결연사업도 推進하는데 협조를 받고 있었다.

사. 自願奉仕者의 活動

8개시설의 自願奉仕者數는 1308명으로 시설당 평균 164명의 자원봉사자를 活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自願奉仕者의 數가 가장 적은 施設이 10명이었고, 가장 많은 시설은 무려 762명으로 施設間에 격차가 심하였다. 自願奉仕者가 시설운영자나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본 바 大學生과 高等學生이 전체의 58.1%로 반수를 넘고 있었으며 그 다움이 家庭主婦로 22.1%를 차지하고 있어 學生과 家庭主婦가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대학교 교수나 교사, 의료인, 성직자, 지역사회 지도자 및 기타 시설에 필요로 하는 專門家들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의 참여가 期待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自願奉仕者의 活動範圍도 수유, 부엌일 및 목욕 등 어린이 돌보기, 청소, 세탁물 관리 등 가사돌보기, 그리고 專功分野의 대학생에 의한 육아 및 학습지도 등에 限定되어 있어 施設從事者를 돕는 단순한 活動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 시설의 過度한 業務를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事實

이고 經費를 절약하는 側面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시설에서는 전문의료인, 성직자, 기업체임·직원 및 기술보유자 등 多樣한 分野의 專門家를 자원봉사자로 活用하고 있었다. 兒童의 診療는 의사가, 성직자를 비롯한 가정주부, 대학생 및 기타일반인 등은 월 1~2회 정도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技術保有者는 이·미용, 전기나 시설물을 수리하는 등 施設運營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自願奉仕者의 活動時期나 時間이 일정하지 않고 不規則的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施設도 없지 않다. 그리고 施設管理者의 希望은 수용자의 건강관리, 아동학습, 예·체능계지도 및 시설·장비관리 등 專門家의 參與를 더 바라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表 4-65〉 兒童一時保護施設 自願奉仕者의 數 및 種類

	K	K1	G	H	B	S	D	P	계	(%)
<자원봉사자수>										
남 자	20	13	211	24	0	21	0	3	292	(22.3)
여 자	40	38	551	171	10	124	13	69	1,016	(77.7)
<자원봉사자종류>										
대학교수,교사	0	0	0	3	0	0	0	4	7	(0.5)
성직자	0	2	2	0	0	2	0	2	8	(0.6)
의료인	0	0	14	0	0	2	0	1	17	(1.3)
가정주부	20	3	68	80	10	70	3	35	289	(22.1)
기업체임직원	0	0	45	0	0	10	0	0	55	(4.2)
대학,고등학생	40	46	560	66	0	20	8	20	760	(58.1)
기술보유자	0	0	9	0	0	6	0	0	15	(1.1)
지역지도자	0	0	12	0	0	0	0	0	12	(0.9)
기 타	0	0	52	46	0	35	2	10	145	(11.2)
계	60	51	762	195	10	145	13	72	1,308	(100.0)

3. 敎護施設

敎護施設은 兒童福祉法 施行令 제2조 10항에 따르면 "不良行爲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憂慮가 있는 兒童으로서 保護者가 없는 兒童,

親權者나 後見人이 입소를 신청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保護委託된 兒童을 입소시켜 그들을 善導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育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이다. 이러한 敎護施設은 1994년말 현재 전국에 7개 시설이 있으며, 地域的으로는 大都市에 5개 시설이 所在하고, 郡部地域에 2개 施設이 소재하고 있다. 이들 7개 시설중 2개 시설(A와 B시설)은 觀察 및 面接調査를 통해, 그리고 3개 시설(C, D, E시설)은 郵便調査를 통하여 資料를 蒐集하였다. 여기서는 資料가 蒐集된 5개 敎護施設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여 敎護施設의 現況 및 問題點 및 運營評價를 통한 改善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敎護施設의 一般事項

조사완료된 5개 敎護施設중 A와 C시설의 경우는 宗敎團體에서 運營하는 宗敎法人이었고, 나머지 3개 施設(B, D, E시설)의 경우는 個人이 운영하는 社會福祉法人이었으며, E施設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大都市에 所在하고 있었다. 이들 施設들의 法人資産規模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施設의 경우는 宗敎法人으로 약 222억 6천만원으로 相對的으로 큰 規模의 法人이었고, D施設의 경우는 個人이 운영하는 社會福祉法人임에도 약 22억원 정도의 財政規模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施設의 경우는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宗敎法人으로서는 零細한 規模였다.

그리고 이들 施設의 임원진인 理事와 監事를 보면, 理事數는 D시설이 6명이었고, 이들 理事陣의 職業도 시설장, 신부, 종교인, 공무원, 회사중역, 자영업 등으로 나타나 5개 施設중 理事陣이 가장 많고, 多樣한 職業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C施設의 경우는 修女 4명으로 理事陣을 구성하고 있어 가장 閉鎖的인 形態를 이루고 있

다. 監事는 5개 施設 공히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宗教法人인 A와 C施設은 각각 神父와 修士, 修女들로 이루어져 있고, 個人이 運營하는 B, D, E施設들은 자영업, 교장, 개인사업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法人의 特性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表 4-66〉 教護施設의 一般事項

주요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소재지	서울	부산(김해)	대구	대전	전남
법인종류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자산규모 (백만원)	22,263	1,190	846	2,226	미상
이사수	5명	5명	4명	6명	5명
이사의 직업	신부 3명, 수사 2명	시설장, 회사대표, 회사원, 임대업, 무직	수녀 4명	시설장, 신부, 종교인, 공무원, 회사중역, 자영업	법인이사장, 군의원, 교육자, 사업가 2명
감사수	2명	2명	2명	2명	2명
감사의 직업	신부, 수사	자영업 2명	수녀 2명	교장, 개인사업	사업가, 자영업
현원/정원	78 / 80	94 / 80	33 / 70	172 / 150	43 / 100
종사자수	15명	12명	10명	23명	11명
정부보조 인원수	11명	미상	미상	15명	1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수	4명 (1급 2명, 2급과 3급 각 1명)	3급 1명	없음	4명 (1급과 2급 각 2명)	1급 2명
시설설립년도	1979년	1986년	1990년	1984년	1980년
주거형태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독립적인 단독가정형태 (그룹홈)
주요훈련내용	목공예	용접, 배관	학과공부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영농사업

施設別 定員 對 現員을 보면, A施設의 경우 80명 定員에 현원이 78명으로 약 97.5%를 收容하고 있고, B施設의 경우는 80명 定員에 94명을 收容하고 있어 약 117.5%를 수용하고 있어 定員을 超過하고 있으며, C施設은 70명 정원에 33명을 收容하고 있어 약 47.1% 밖에 收容하고 있지 않았고, D施設의 경우는 150명 定員에 172명을 수용하여 약 114.7%를 收容하고 있었으며, E施設의 경우는 100명 定員에 43명을 收容하고 있어 收容率이 43%에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定員을 超過하는 施設이 B와 D시설이 있는 반면에 定員에 훨씬 못미치는 人員을 수용하고 있는 施設도 C와 E施設이 있어 施設間 收容程度가 差異를 나타냈다.

또한 이들 施設들의 從事者數를 보면, D施設이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C施設이 10명으로 제일 적었다. 현재 이들 施設들에서 收容하고 있는 現員 對 從事者數를 보면, A施設의 경우는 從事者 1人當 약 5.2명을 擔當하고, B施設의 경우는 약 7.8명, C施設은 약 3.3명, D施設은 약 7.5명, 그리고 E施設은 약 3.9명으로 各 施設들 마다 差異를 나타냈다. B와 D施設 從事者의 경우는 C와 E施設 從事者들 보다 약 두배 수 정도의 兒童들을 擔當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들 從事者들 중에서 政府에서 補助金을 받는 從事者數는 D施設의 경우 전체 23명 중 15명이고, 나머지 8명에 대한 人件費의 負擔은 시설자체에서 負擔해야 하는 實情이었다. A施設의 경우는 15명중 11명을 補助받아 나머지 4명의 人件費를 시설자체에서 負擔해야 하나, E施設의 경우는 全體 從事者 11명 모두에 대한 補助金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敎護施設들의 從事者들중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한 人員을 보면, A施設의 경우 4명으로 1급이 2名, 2급과 3급이 각각 1명씩이었다. B施設의 경우는 3급 1명에 불과하고, C施設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施設의 경우는 1급과 2급 각각 2명으로 나타

났으며, E施設의 경우는 1급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들의 住居形態를 보면, E施設을 제외한 4개 시설들이 모두 集團寄宿舍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E施設만이 독립적인 單獨家庭形態인 그룹홈의 住居類型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施設들의 主要訓練內容을 보면, A施設은 목공예, B施設은 용접 및 배관, C施設은 학과공부, D施設은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및 건축배관, E施設은 자동차정비와 영농사업이었다. 이처럼 학과공부를 가르키는 C施設의 경우는 他施設들에 비해 특이하고, E施設이 榮農事業이라는 분야를 교육·훈련하고 있는 것은 E施設이 農村地域에 所在하고 있는 것과 有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5개 施設마다 敎育·訓練을 하고 있는 內容이 한정되어 있고, 尖端科學分野에 대한 敎育·訓練科目이 없어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의 適性이나 趣味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施設에서 一律的으로 敎育·訓練科目을 정하여 敎育·訓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 敎護施設의 收容兒童들에 대한 敎育·訓練의 成就率을 높이는 데에는 限界性을 가질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나. 收入·支出의 規模 및 構成

敎護施設인 이들 施設들의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통한 財政狀態를 살펴보면, 總 收入은 E施設이 56,8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施設이 11,589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D施設, A施設 및 B施設은 각각 45,323만원, 27,019만원 그리고 16,697만원 등 이었다. 總 收入중 政府補助金比率을 보면, 94.3%인 E施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90.1%인 B施設이 많았으며, 64.7%인 A施設이 政府補助金比率이 가장 적은 반면에 自體收入比率이 33.1%로 他施設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總收入中 民間支援金이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施設은 18.2%인 C施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施設의 경우는 農村地域에 所在하고 있어

서인지는 몰라도 民間支援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施設들의 支出內容을 살펴보면, 總 收入對比 總 支出의 比率이 5개 施設 공히 약 98%내지 99.9%정도이며, 總 支出되는 費用은 兒童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直接費보다는 施設運營에 들어가는 間接費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施設의 경우에는 施設新設費가 總支出의 70.1%나 차지하고 있어서 總 豫算은 많으나 施設新設費를 제외한 間接費 및 直接費는 他施設들보다 결코 많지 않았다.

〈表 4-67〉 敎護施設의 收入 및 支出規模

(단위: 만원, %)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평균
총 수입	27,019	16,697	11,589	45,323	56,869	31,4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보조금	64.7	90.1	81.6	79.9	94.3	82.1
국고	32.4	72.0	81.6	53.5	46.5	57.2
지방비	32.3	18.1	-	26.4	47.8	24.9
민간지원금	2.2	0.6	18.2	3.8	-	5.0
자체수입	33.1	7.2	0.2	15.3	5.1	12.2
기타수입[1]	-	2.1	-	1.0	0.6	0.7
총 지출	26,433	16,673	11,480	44,549	56,849	31,1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비	43.6	40.3	27.0	45.8	12.5	33.8
주식비	8.8	10.7	7.2	9.6	6.5	8.5
부식비	10.0	12.3	8.3	14.2	1.0	9.2
교육훈련비	16.4	12.1	5.9	7.8	3.1	9.0
기타[2]	8.4	5.2	5.6	14.2	1.9	7.1
간접비	56.4	59.7	73.0	54.2	87.5	66.2
인건비	45.8	44.7	54.9	43.6	14.8	40.8
시설유지비	1.9	0.4	0.7	3.0	0.3	1.3
시설신설비	-	-	-	-	70.1	14.0
기타[3]	8.7	14.6	17.4	7.6	2.3	10.1

註: 1) 외원보조와 기타 및 잡수입이 포함된 것임.
2) 기타에는 간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기타직접비 등이 포함된 것임.
3) 기타에는 수용비, 제세 및 공과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기타간접비 등이 포함된 것임.

그리고 E施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施設중 C施設의 경우가 總 支出중 兒童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直接費의 比率이 27.0%로 他施設들보다 相對的으로 낮았는데 반해 間接費중 人件費는 總 支出중 54.9%를 차지해 他施設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直接費중 主食費는 B施設이 10.7%로, 副食費는 D施設이 14.2%로, 敎育·訓練費는 A施設이 16.4%로 나타나 各各 他施設들 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總 支出費用을 收容兒童 1人當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A施設은 339만원, B施設은 177만원, C施設은 348만원, D施設은 259만원이었으며, E施設의 경우는 施設新設費가 너무 많아 이를 제외한 總支出을 兒童 1人當으로 환산하여 보면, 395만원으로 나타나 이들 5개 施設중 B施設이 兒童들에게 支出되는 費用이 가장 劣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從事者의 人的構成 및 資格與否

施設從事者의 人的構成을 보면, C와 E施設의 施設長은 여자였으며, 施設長이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施設은 B와 C施設이었고, 施設長의 學歷은 모두 대졸이상이었다. 總務는 A施設의 경우 대졸에 1급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하고 있어 他施設보다 나은 반면에 B와 C施設의 경우는 고졸에다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가지고 있지않아 相對的으로 水準이 떨어졌다. 그리고 醫師有無를 보면 5개 시설중 A施設에만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看護師는 C施設에만 配置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營養士는 D施設에만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保育士는 현재 收容하고 있는 兒童數가 가장 많은 D施設이 5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러나 保育士 1人當 擔當兒童數를 보면, B施設이 保育士 1人當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D施設은 약 3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C施設이 保育士 1人當 擔當兒童數가 약 16명으로 5개 시설 중 제일 적었다. 현행 兒童福祉法(保健福祉部, 1995:194)에는 兒童 30명당 1명의 保育士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B와 D施設의 경우는 이러한 法的 充分條件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表 4-68〉 敎護施設從事者의 人的構成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시설장의 성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시설장의 학력	대졸	대졸	대학원졸	대졸	대졸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	2급	없음	없음	2급	1급
총무의 성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총무의 학력	대졸	고졸	고졸	대졸	대졸
총무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	1급	없음	없음	2급	없음
의사 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간호사 유무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영양사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보육사 수	3명	2명	2명	5명	2명
남자보육사	1명	2명	없음	3명	1명
여자보육사	2명	없음	2명	2명	1명
대학졸업자수	3명	1명	2명	3명	2명
자격증소지자수	3급 1명	3급 1명	없음	1급 1명	없음
생활지도원유무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자격증소지자수	1급 1명	없음	없음	1급 1명	없음
직업훈련교사수	3명	2명	1명	7명	1명
상담요원유무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취사부수	2명	1명	1명	3명	1명
세탁부 유무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경비원수	2명	2명	1명	3명	2명

또한 不良한 兒童들을 收容·保護하는 敎護施設이라는 特殊性으로 인하여 현행 兒童福祉法에서는 臨床心理相談員을 1명씩 配置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 D, E 등 3개 施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과연 이들 시설에서 不良한 兒童들을 제대로 敎化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다시말해서 敎護施設이란 不良한 兒童들의 心理的·情緖的 問題를 相談을 통하여 해결토록 유도하여 이들이 건전한 社會人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的으로 규정되어 있는 專門的인 臨床心理相談員조차 配置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一般兒童들을 收容하는 育兒施設이 兒童 10명당 1명의 保育士를 두도록 하는 것보다 3배나 많은 保育士 1人當 30명의 이들 不良한 兒童들을 保護하도록 한다는 것은 敎護施設 本來의 目的을 成就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本 硏究陣의 觀察調査에 의하면, B施設의 경우 建物의 모든 窓門들에 쇠창살을 하고, 兒童들의 宿所인 3층 계단에 就寢時間에 감금할 수 있는 쇠창살문을 만들어 就寢時間이후에는 宿所를 전혀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不良한 兒童들의 問題를 발견·해결하는 敎化를 통한 건전한 社會人으로 育成시킨다기 보다는 犯罪者들을 矯導所에 가두어 社會와 隔離·收容하는 것처럼 일종의 監獄生活을 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役割을 習得할 기회를 박탈하여 결국 그곳 敎護施設을 나오면 社會에서 社會構成員으로서 適應할 수 없어 社會의 問題集團으로 轉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敎護施設의 本來의 目的과는 전혀 상반된 結果를 가져올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收容兒童의 特性

현재 敎護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A, B, E 등의 施設은 15세에서 18세 미만사이에 있는 兒童이 가장 많았는데 비해 C施設의 경우는 12세에서 15세 미만사이에 있는 兒童이, 그리고 D施設의 경우는 18세 이상의 兒童이 각각 가장 많았다. 특히 D施設의 경우는 現員의 약 61.6%가 18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兒童들이 있는데, 이는 敎護施設이 주로 法院에서 委託한 소년범들을

保護하고 있는 施設이고, 현재 法院에서 委託하는 소년법 위반자는 12세부터 20세까지로 되어있어 18세 이상의 소년범들을 區廳에서 延長承認後 入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은 모두 男子들이나 E施設에 유일하게 女子 1명이 있었다. 그리고 收容兒童들의 學歷은 대부분이 國民學校卒業 以下나 中學校卒業 以下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D施設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學歷別 分布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國民學校나 中學校卒業 以下라고 應答하고 있다. 즉, 敎護施設의 收容兒童 대부분이 公式的인 敎育機關인 學校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心理的 劣等意識, 좌절감, 패배감,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自身들의 存在를 알리기 위해 사회성원들에 대한 反抗心理에서 우발적으로 犯罪를 저지른 兒童들이라고 判斷된다. 敎護施設이 이러한 兒童들을 敎化하고 心理的·情緖的 問題點들을 발견하고 解決해주는 것이 目的이라고 한다면, 현재 敎護施設의 從事者들중 保育士의 數 增員과 더불어 專門的인 臨床心理相談員의 義務配置 및 社會構成員으로서의 役割을 習得할 수 있도록 一般社會人들과의 빈번한 人間關係를 維持할 수 있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현재 收容하고 있는 兒童들의 父母生存有無를 보면, A施設이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全體 收容兒童 78명중 51명(약 65.4%)으로 他施設들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C施設의 경우는 父母가 모두 生存한 경우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父母 모두 生存한 경우와 父母중 어느 한쪽이라도 生存한 경우를 합쳐서 보면, A施設의 경우는 78명중 67명으로 약 85.9%, B施設은 94명중 66명으로 약 70.2%, C施設은 33명중 14명으로 약 42.4%, D施設은 172명중 114명으로 약 66.3%, 그리고 E施設은 43명중 25명으로 약 58.1% 등으로 나타나 역시 A施設이 가장 比率이 높았고, 全體的으로는 약 68.1% 정도가 父母중 적어도 한사람은 生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父母가 모두 生存한 경우가 全體的으로

약 35.7%에 지나지 않아 거의가 缺損家庭의 兒童들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불안한 家庭環境에 따른 問題兒童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9〉 敎護施設收容兒童의 特性別 分布

(단위: 명)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전 체
현원	78	94	33	172	43	420
연령						
6세~9세 미만	-	-	5	-	-	5
9세~12세 미만	-	1	6	-	-	7
12세~15세 미만	12	24	12	3	6	64
15세~18세 미만	53	43	10	63	22	191
18세 이상	13	26	-	106	15	160
성별						
남자	78	94	33	172	42	419
여자	-	-	-	-	1	1
학력						
무학/미취학	3	13	2	-	-	18
국졸 이하	30	49	21	-	9	109
중졸 이하	42	30	10	-	33	115
고졸 이하	3	2	-	-	1	6
부모유무						
부모 모두 생존	51	26	-	61	12	150
부만 생존	8	29	3	23	6	69
모만 생존	8	11	11	30	7	67
부모 모두 사망	9	6	11	38	8	72
미상	2	22	8	20	10	62

현재 敎護施設에서 收容하고 있는 兒童들중에서 글을 전혀 읽고 쓸줄을 모르는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兒童 등의 數를 보면, D施設의 경우 全體 172명중 약 60.5%인 104명이 他市·道兒童이었고, 약 50.0%인 86명이 情緖障碍兒童이었으며, 10명정도가 文盲兒童이었다. B施設의 경우는 全體 94명중 약 21.3%인 20명이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는 文盲으로 상당히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고, C施設은 전체 33명중 39.4%인 13명이 他市·道兒童이었으며,

障碍兒童은 E施設에 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70〉 敎護施設兒童 중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兒童數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전 체
현 수용아동수	78	94	33	172	43	420
문맹아동수	3	20	2	10	-	35
정서장애아동수	5	2	2	86	-	95
장애아동수	-	-	-	-	1	1
타시·도아동수	2	-	13	104	3	122

1994년 한해동안 이들 施設에 入所된 兒童數의 入所經路別 分布를 보면, D施設이 351명으로 가장 많이 入所했는데 모두 家庭法院에서 警察官署를 통하여 入所되었고, E施設도 13명 모두 警察官署를 통해 入所되었다. A施設의 경우는 入所者가 63명으로 家庭法院에서 警察官署를 통한 入所者가 51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他施設로부터 전원되어 入所되었고, C施設의 경우는 18명 모두 他施設로부터 전원한 경우였으며, B施設의 경우는 行政官署를 통한 경우가 全體 43명중 31명으로 많았으나, 他施設과는 달리 緣故者 依賴나 病院에서 後送된 경우들이 있었다.

〈表 4-71〉 敎護施設兒童의 入所經路別 入所者數(1994)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전 체
입소자수	63	43	18	351	13	488
입소경로						
행정관서	-	31	-	-	-	31
경찰관서[1]	51	-	-	351	13	415
타시설전원[2]	12	4	18	-	-	34
병원에서 후송	-	5	-	-	-	5
연고자의뢰	-	3	-	-	-	3
기타	-	-	-	-	-	-

註: 1) 가정법원에서 입소한 경우가 포함.
2) 아동상담소를 통해 입소한 경우가 포함.

마.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및 收容期間

1994년 한해동안 敎護施設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退所狀態別 分布를 보면, D施設이 337명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55명인 A施設이었으며, D와 E施設은 退所兒童에 대한 資料가 미비되어 退所兒童에 관한 구체적 內容을 알 수 없어 資料가 있는 A, B, C 등 3개 施設에서 退所한 兒童을 통해 이들 敎護施設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退所時 狀態를 알아보았다. A와 C施設의 경우는 退所兒童들의 年齡이 각 세별로 多樣하였으나, B施設의 경우는 全體退所兒童 34명중 약 79.4%인 27명의 兒童들이 17세에 退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退所兒童들의 學歷을 보면, A施設의 경우는 中學校卒業 以下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B施設의 경우는 國民學校卒業 以下가 31명으로 全體의 약 91.2%로 가장 많아 相對的으로 學歷水準이 낮았다. 退所兒童들의 收容期間을 보면, A施設은 6개월 이하가 36명으로 全體의 약 65.5%를 차지하는데 비해 B施設은 7개월에서 1년사이가 28명으로 全體의 약 82.4%로 B施設이 A施設보다 相對的으로 오랜 기간 收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施設의 경우는 2년 이상의 長期收容된 兒童이 6명이 있었다. 이들 退所兒童들의 退所事由를 보면, A, B, C 등 3개 施設 모두 法定保護期間이 끝난후 緣故者 引繼에 의한 退所가 대부분이었으나, A施設의 경우는 無斷退所가 22명으로 全體의 약 40.0%인데 비해 B施設의 경우는 無斷退所한 경우가 2명으로 全體의 약 5.9%에 불과하여 상당한 差異를 나타냈다. 이는 本 硏究陣의 觀察調査에 의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現狀이다. 즉, 觀察調査에 의하면 宗敎法人에서 運營하고 있는 A施設은 주택가에 位置하면서 收容兒童들의 宿所에 쇠창살을 만들지않고 自願奉仕者들을 적극 活用하면서 收容兒童들을 比較的 자유스럽게 生活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週末에는 外出을 허용하고 父母가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外泊도 허용하여 收容兒童들이 社會構成員들과 接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表 4-72〉 敎護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狀態別 分布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전 체[1)]
퇴소아동수	55	34	5	337	24	94
연령						
13세 이하	2	1	1	-	-	4
14세	13	-	-	-	-	13
15세	11	-	1	-	-	12
16세	12	2	1	-	-	15
17세	9	27	1	-	-	37
18세	1	-	-	-	-	1
19세	5	4	1	-	-	10
20세 이상	2	-	-	-	-	2
학력						
무학/미취학	1	1	-	-	-	2
국졸 이하	16	31	-	-	-	47
중졸 이하	32	1	-	-	-	33
고졸 이하	6	1	-	-	-	7
수용기간						
6개월 이하	36	3	2	-	-	41
7~12개월	12	28	1	-	-	41
13~18개월	1	1	-	-	-	2
19~24개월	-	2	-	-	-	2
25개월 이상	6	-	2	-	-	8
퇴소사유						
타시설전원	1		-	-	-	1
연고자인계	32	32	5	-	-	69
무단퇴소	22	2	-	-	-	24
주거유형						
자취	4	4	-	-	-	8
부모집	50	30	5	-	-	85
기타	1	-	-	-	-	1

註: 1) D시설과 E시설은 제외한 것임.

이에 반해 農村의 山間僻地에 위치하고 있는 B施設은 宿所의 모든 窓門과 宿所로 통하는 階段에 모두 쇠창살을 만들어 一種의 矯導所를 聯想시키고 自願奉仕者의 活用도 거의 없어 收容兒童들이 施設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해 보였다. 따라서 두시설간에 無斷退所兒

童의 數가 差異를 나타낸 것은 당연한 것이다. 退所兒童들의 住居類型을 보면, 3개 施設 모두 부모집이 대부분이었고, A와 B施設 모두 自炊하는 경우가 각각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自願奉仕者의 活用

施設을 開放化하여 收容兒童들에게 보다 많은 惠澤과 서비스를 提供하려는 일환으로 各 施設들마다 自願奉仕者들을 活用하고 있다. 이들 敎護施設들의 自願奉仕者 活用實態를 보면, A施設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E施設은 自願奉仕者를 전혀 活用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이 施設이 農村地域에 있어 自願奉仕者로 活用할 地域의 人的資源이 부족한데서 나타난 結果로 판단된다. B, C, D施設 등의 경우는 20명, 7명, 22명 정도 自願奉仕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自願奉仕者들은 대개가 女子였고, 職業別 分布를 보면, A施設의 경우는 大學生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家庭主婦(20명), 專門醫療陣(12명), 敎授·敎師(9명) 및 技術保有者(8명) 등의 순으로 많아 施設에서 꼭 필요한 自願奉仕者들을 多樣하게 活用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敎護施設에 수용된 兒童들의 敎化에 필요한 聖職者나 宗敎人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이 施設自體가 宗敎法人에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從事者들이 神父 또는 修士들인지라 특별히 聖職者나 宗敎人이 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施設의 경우는 聖職者나 宗敎人이 각각 20명으로 다른 職業을 가진 自願奉仕者들보다 많았다. C施設의 경우도 宗敎法人인지라 聖職者나 宗敎人의 自願奉仕者는 없고, 다만 一般人과 技術保有者가 自願奉仕 活動을 하고 있었다.

〈表 4-73〉 敎護施設의 自願奉仕者數 및 自願奉仕者의 職業別 分布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전 체
자원봉사자수	134	20	7	22	없음	183
성별						
남자	25	5	3	8	-	41
여자	109	15	4	14	-	142
직업					-	
전문의료진	12	-	-	-	-	12
교수·교사	9	-	-	1	-	10
성직자/종교인	-	20	-	3	-	23
가정주부	20	-	-	10	-	30
일반인	-	-	5	-	-	5
대학생	85	-	-	2		87
기술보유자	8	-	2	5	-	15
기타	-	-	-	1	-	1

4. 職業輔導施設

職業輔導施設은 '兒童福祉施設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兒童과 貧困한 家庭의 兒童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知識과 機能을 습득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이다(兒童福祉法 施行令 제2조 6항). 이러한 職業輔導施設은 1994년말 현재 전국에 7개가 있으며, 7개 모두 大都市에 所在하고 있는데, 서울에 3개 施設이 있는데 이중 한 施設은 行政的으로는 서울시에 속하지만 中小都市인 충주에 所在해 있고, 나머지 4개 施設은 부산, 대구, 인천 및 대전 등에 각각 1개 施設이 所在하고 있다. 이들 7개 施設중 觀察調査를 통해 1개 施設(A시설)을 調査했고, 3개 施設(B, C, D시설)은 郵便調査를 통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4개 職業輔導施設에 대한 資料를 분석하였다.

가. 職業輔導施設의 一般事項

조사완료된 4개 職業輔導施設중 C施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施設

은 宗敎團體에서 運營하는 宗敎法人이었고, 各 施設들은 서울, 인천, 대전 및 충주에 所在하고 있었다. 이들 施設들의 法人資産規模를 보면, 서울에 所在한 A施設은 宗敎法人으로 약 222억 6천만원으로 相對的으로 큰 法人이었고, D施設은 10억 1천만원으로 4개 施設중 가장 法人이 零細하였으며, B와 C施設의 경우는 각각 35억원과 32억 1천만원 水準이었다.

〈表 4-74〉 職業輔導施設의 一般事項

주요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소재지	서울	인천	대전	충주
법인종류	천주교법인	구세군법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법인
법인자산규모 (백만원)	22,263	3,500	3,213	1,011
이사수	미상	8명	7명	7명
이사의 직업	미상	구세군 사관 4명, 미상 4명	시설장 2명, 목사 2명, 의사, 교사, 교수	시설장, 신부 2명, 의사 3명, 설계사
감사수	미상	없음	2명	2명
감사의 직업	미상	-	목사, 개인사업가	신부
현원/정원	64 / 80	39 / 130	90 / 210	92 / 90
종사자수	23명	11명	23명	11명
정부보조인원수	4명	11명	미상	9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수	2명 (1급과 2급 각 1명)	2명 (1급과 2급 각 1명)	4명 (1급 3명, 2급 1명)	2명 (1급과 3급 각 1명)
시설설립년도	1964년	1983년	1963년	1969년
주거형태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집단기숙사
주요훈련내용	선반, 밀링, 기계조립	용접,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전기, 전자, 자동차정비, 배관	미상

그리고 이들 施設의 任員陣인 理事와 監事를 보면, 理事數는 A施設은 應答을 하지 않아 알 수 없고, B施設은 구세군법인이기 때문에 8명의 理事중 4명이 구세군 사관이었고, 나머지 4명의 경우는 職業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만 제시하고 있어 어떠한 部類의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C施設와 D施設은 모두 理事數가 7명, 監事數가 2명이었는데, 理事들의 職業은 C施設의 경우 施設長 2명, 牧師 2명, 醫師, 敎授, 敎師 등이었고, D施設은 施設長, 神父 2명, 醫師 3명, 設計士 등으로 두 施設 모두 理事陣이 다양한 專門職業人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監事數는 B施設의 경우는 전혀 없었고, C施設과 D施設은 공히 2명으로 C施設은 牧師와 個人事業家, D施設은 神父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施設別 定員 對 現員을 보면, A施設의 경우 80명 定員에 현원이 64명으로 약 80.0%를 收容하고 있고, B施設의 경우는 130명 定員에 현원이 39명으로 약 30.0%를 收容하고 있어 定員보다 월등히 적은 兒童들을 收容하고 있으며, C施設은 210명 定員에 현원이 90명으로 약 42.9% 밖에 收容하고 있지 않았고, D施設의 경우는 90명 定員에 현원이 92명으로 약 102.2%를 收容하고 있어 유일하게 定員을 超過하여 收容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施設들의 從事者 人力을 보면, A施設과 C施設이 똑같이 23명이었고, B施設과 D施設이 똑같이 11명이었다. 이들 施設들에서 收容하고 있는 現員 對 從事者數를 보면, A施設의 경우는 從事者 1人當 약 2.8명, B施設의 경우는 약 3.5명, C施設은 약 3.9명, D施設은 약 8.4명으로 各 施設들 마다 差異를 나타냈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D施設의 경우가 나머지 3개 施設들보다 두배 이상의 兒童들을 더 많이 擔當해야 하는 狀態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從事者들 중에서 政府에서 補助金을 받는 從事者數는 A施設의 경우 全體 23명중 4명만 支援을 받고있어 나머지 19명에 대한 人件費의 負擔

을 施設自體에서 負擔해야 하는 實情이었고, B施設의 경우는 全體 從事者 11명에 대한 補助金을 모두 받고있어 施設自體에서 追加 人件費의 負擔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施設의 경우는 政府補助人員數를 알 수 없어 施設自體에서 負擔해야 하는 人件費를 알 수 없었고, D施設의 경우는 11명의 從事者중 9명에 대해 政府에서 補助를 받고 있어 나머지 3명에 대한 人件費를 施設自體에서 負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職業輔導施設들의 從事者들중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한 人員을 보면, A施設과 B施設의 경우는 모두 2명으로 1급과 2급이 各各 1명씩이었고, C施設의 경우는 人員이 4명으로 1급 3명과 2급 1명으로 4개 시설중 資格證 所持者數가 가장 많았으며, D施設의 경우는 1급과 3급 資格證을 소지한 從事者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施設들의 住居形態를 보면, 4개 施設들이 모두 集團寄宿舍 形態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 施設들의 主要訓練內容을 보면, A施設은 선반, 밀링 및 기계조립, B施設은 용접, 자동차정비 및 정보처리, C施設은 전기, 전자, 자동차정비 및 배관 등을 敎育·訓練하고 있었으며, D施設의 경우는 應答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이들 職業輔導施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敎護施設보다는 敎育·訓練 內容이 많고 産業社會에서 필요한 科目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 收入·支出의 規模 및 構成

이들 職業輔導施設들의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통한 財政狀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總 收入은 A施設이 98,2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施設이 27,777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D施設 및 B施設은 각각 31,326만원, 30,784만원이었다. 總 收入중 政府補助金比率을 보면, 90.5%인 C施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1.0%인 D施設

이 많았으며, 9.4%인 A施設이 政府補助金比率이 가장 적은 반면에 自體收入이 37.9%와 其他收入이 44.8%로 他施設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리고 總 收入중 民間支援金이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施設은 15.1%인 D施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施設들의 支出內容을 살펴보면, 總 收入 對比 總 支出의 比率은 A施設과 D施設의 경우 100.0%였고, B施設의 경우는 76.9%, C施設의 경우는 98.9%정도를 支出하고 있었다.

〈表 4-75〉 職業輔導施設의 收入 및 支出規模

(단위: 만원, %)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총 수입	98,288	30,784	27,777	31,326	47,0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보조금	9.4	59.3	90.5	61.0	55.0
국고	4.7	29.7	57.6	30.2	30.5
지방비	4.7	29.6	32.9	30.8	24.5
민간지원금	7.9	7.4	1.5	15.1	8.0
자체수입	37.9	1.8	8.0	20.7	17.1
기타수입[1]	44.8	31.5	-	3.2	19.9
총 지출	98,288	23,677	27,485	31,326	45,14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접비	18.0	41.4	28.7	35.8	25.8
주식비	3.6	4.8	9.0	7.5	5.3
부식비	4.9	6.0	12.6	9.9	7.1
교육훈련비	8.0	6.7	2.7	12.5	7.8
기타[2]	1.5	23.9	4.4	5.9	5.6
간접비	82.0	58.6	71.3	64.2	74.2
인건비	32.0	45.5	54.2	38.2	38.3
시설유지비	1.3	2.7	0.8	0.6	1.3
시설신설비	36.8	-	-	-	20.0
기타[3]	11.9	10.4	16.3	17.8	14.6

註: 1) 외원보조와 기타 및 잡수입이 포함된 것임.
2) 기타에는 간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기타직접비 등이 포함된 것임.
3) 기타에는 수용비, 제세 및 공과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기타간접비 등이 포함된 것임.

그리고 이들 4개 施設 모두는 兒童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直接費보다는 施設運營에 들어가는 間接費를 더 많이 支出하고 있었다. 특히 A施設의 경우에는 施設新設費가 總 支出의 36.8%나 차지하고, 人件費에 32.0%를 支出하여 間接費가 總 支出의 82.0%를 차지하고 있었다. A施設 다음으로 間接費의 負擔이 큰 施設은 C施設로 總 支出중 間接費가 71.3%였는데, 특히 人件費가 54.2%로 支出이 다른 3개 施設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4개 施設중 B施設의 경우가 總 支出중 兒童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直接費의 比率이 41.4%로 他施設들보다 相對的으로 많았고, 直接費중 主食費 및 副食費는 C施設이 9.0%와 12.6%로, 敎育·訓練費는 D施設이 12.5%로 각각 가장 많이 支出하고 있었다. 이러한 總 支出費用을 收容兒童 1人當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A施設은 1,536만원, B施設은 607만원, C施設은 305만원, D施設은 341만원으로 나타나 이들 4개 施設중 C施設이 가장 劣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從事者의 人的 構成 및 資格與否

施設의 人的 構成을 보면, 4개 施設의 施設長은 모두 男子였으며, 施設長이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施設은 A施設뿐이었고, 施設長의 學歷은 A施設과 B施設은 모두 대졸이었으며, C施設은 알 수 없고, D施設은 고졸이었다. 總務는 C施設의 경우만 女子이면서 1급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소지하고 있어 他施設보다 나은 반면에 나머지 3개 시설의 경우는 男子에다 대졸 이상이었으나,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醫師有無를 보면 4개 施設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看護師는 A施設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營養士는 C施設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保育士는 C施設이 5명으로 제일 많았으나, 保育士 1人當 擔當兒童數를 보면, D施設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A施設은 약 32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B施設이 약 13명으로 4개 施設중 제일 적었다. 현행 兒童福祉法(保健福祉部, 1995:194)에는 兒童 30명당 1명의 保育士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A와 D施設의 경우는 이러한 法的 充分條件을 充足시키지 않고 있다. 生活指導員은 C施設과 D施設의 경우는 1급 資格證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A施設은 生活指導員가 없었다.

〈表 4-76〉 職業輔導施設의 人的 構成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시설장의 성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시설장의 학력	대졸	대졸	미상	고졸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	없음	2급	2급	3급
총무의 성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총무의 학력	대졸	대졸	미상	대학원졸
총무의 사회복지사 자격	없음	없음	1급	없음
의사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간호사유무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영양사유무	없음	없음	있음	없음
보육사 수	2명	3명	5명	2명
남자보육사	2명	1명	3명	없음
여자보육사	없음	2명	2명	2명
대학졸업자수	2명	3명	미상	없음
자격증소지자수	2급 1명	1급 1명	없음	없음
생활지도원유무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자격증소지자수	없음	없음	1급 1명	1급 1명
직업훈련교사수	9명	3명	10명	2명
상담요원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취사부수	5명	1명	3명	2명
세탁부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리유무	2명	없음	없음	1명
보조원유무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경비원수	1명	없음	없음	없음

그리고 이들 施設들이 職業輔導施設인지라 職業訓練敎師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敎師數가 가장 많은 施設은 10명인 C施設이었고,

그 다음이 9명인 A施設이었으며, B施設과 D施設은 각각 3명과 2명의 職業訓練敎師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職業輔導施設에 입소하는 兒童들 모두가 一般家庭에서 정상적인 學校過程을 밟지않고, 學校生活에서 않고, 學校生活에서 벗어나 特殊施設인 이들 職業輔導施設에서 職業을 얻기위한 敎育·訓練을 받고 있다는 側面에서, 또한 感受性이 예민한 靑少年 시기에 있는 이들이 情緖的으로 不安感을 가질 수 있다는 側面에서 相談要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A施設을 제외한 3개 施設은 相談要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부는 5명인 A施設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3개 施設들도 적어도 1명의 취사부는 있었으며, 세탁부는 4개 施設 모두 없었고, 경리는 A施設(2명)과 D施設(1명)에 있었으며, 보조원과 경비원은 A施設만 있었다.

라. 收容兒童의 特性

이들 職業輔導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4개 施設 모두 15세에서 18세 미만사이에 있는 兒童이 가장 많았는데, C施設의 경우는 18세 이상에 있는 兒童이 41명으로, 그리고 D施設의 경우는 12세에서 15세 미만의 兒童이 25명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현재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은 모두 男子들이나 B施設에 유일하게 女子 1명이 있었다. 그리고 收容兒童들의 學歷은 B施設의 경우는 39명 전원이 高等學校 以下였고, C施設의 경우는 90명중 87명이 中學校 以下였으며, D施設은 92명중 90명이 國民學校卒業 以下였다. 그리고 A施設의 경우는 전체 64명중 37명이 高等學校 以下였고, 20명이 國民學校 以下였으며, 無學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개 施設에 收容된 兒童들의 學歷은 各 施設마다 差異를 나타냈다.

현재 收容하고 있는 兒童들의 父母生存有無를 보면, C施設이 父母 모두 生存한 경우가 全體 收容兒童 39명중 37명으로 약 94.9%로 他施

設들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D施設의 경우는 全體 92명중 미상이라고 應答한 52명을 제외한 40명중 父母가 모두 生存한 경우가 9명으로 약 22.5%로 4개 施設중 가장 적었다. 그리고 父母 모두 生存한 경우와 父母중 어느 한쪽이라도 生存한 경우를 합쳐서 보면, A施設의 경우는 64명중 52명으로 약 81.3%, B施設은 39명중 37명으로 약 94.9%, C施設은 90명중 69명으로 약 76.7%, D施設은 92명중 미상이라고 應答한 52명을 제외한 40명중 38명으로 약 95.0% 등으로 나타났다.

〈表 4-77〉 職業輔導施設 收容兒童의 特性別 分布

(단위: %)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원	64	39	90	92	285
연령					
6세~9세 미만	-	-	-	-	-
9세~12세 미만	-	-	-	1	1
12세~15세 미만	14	-	4	25	43
15세~18세 미만	45	25	45	61	176
18세 이상	5	14	41	5	65
성별					
남자	64	38	90	92	284
여자	-	1	-	-	1
학력					
무학/미취학	1	-	-	-	1
국졸 이하	20	-	-	90	110
중졸 이하	6	-	87	2	95
고졸 이하	37	39	3	-	79
부모유무*					
부모 모두 생존	23	37	22	9	91
부만 생존	11	-	13	23	47
모만 생존	18	-	34	6	58
부모 모두 사망	9	2	13	2	26
미상	3	-	8	-	11

註: D시설의 경우는 미상 52명을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여기서 미상이라고 應答한 경우가 많은 D시설을 제외하면, 역시 B施設이 가장 比率이 높았다. 그리고 D시설에서 미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全體的으로는 약 84.1% 정도가 父母중 적어도 한사람은 生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父母가 모두 生存한 경우가 약 39.1%에 지나지 않아 거의가 缺損家庭의 兒童들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불안한 家庭環境에 따른 問題兒童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施設에서 收容하고 있는 兒童들중에서 글을 전혀 읽고 쓸줄을 모르는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兒童 등의 數를 보면, A施設의 경우 全體 64명중 약 39.1%인 25명이 他市·道兒童이었고, 약 29.7%인 19명이 情緖障碍兒童이었으며, 1명이 障碍 兒童이었다. B施設과 C施設의 경우는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兒童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施設의 경우는 全體 92명중 약 16.3%인 15명이 글을 읽고 쓸줄을 모르는 文盲으로 상당히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고, 全體의 약 65.2%인 60명이 情緖障碍兒童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78〉 職業輔導施設兒童中 文盲兒童, 情緖障碍兒童, 障碍兒童 및 他市·道兒童數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현 수용아동수	64	39	90	92	285
문맹아동수	-	-	-	15	15
정서장애아동수	19	-	-	60	79
장애아동수	1	-	-	-	1
타시·도아동수	25	-	-	-	25

1994년 한해동안 이들 施設에 入所한 兒童들의 入所經路別 分布를 보면, C施設이 100명으로 가장 많이 入所했는데 이들중 98명이 기타인 전형선발의 경우였고, 나머지 2명만이 他施設에서 전원된 경우였

다. 그리고 D施設의 경우는 40명이 入所하였는데 모두 他施設로부터 전원된 경우였고, B施設의 경우는 入所者 18명중 15명이 行政官署를 통하여 入所하였다. A施設의 경우는 52명이 入所하였는데 이들중 34명이 緣故者依賴로 入所하였고, 8명이 警察官署를 통해 入所하였으며, 5명이 他施設로부터 전원한 경우였고, 4명은 其他의 경우였으며, 나머지 1명만이 行政官署를 통해 入所하여 緣故者依賴에 의한 入所가 가장 많았다.

〈表 4-79〉 職業輔導施設兒童의 入所經路別 入所者數(1994)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입소자수	52	18	100	40	210
입소경로					
행정관서	1	15	-	-	16
경찰관서[1]	8	3	-	-	11
타시설전원[2]	5	-	2	40	47
연고자의뢰	34	-	-	-	34
기타[3]	4	-	98	-	102

註: 1) 가정법원에서 입소한 경우가 포함.
2) 아동상담소를 통해 입소한 경우가 포함.
3) 전형선발의 경우가 포함.

마.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및 收容期間

1994년 한해동안 施設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退所狀態別 分布를 보면, A施設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8명인 D施設이었으며, B施設은 27명, C施設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職業輔導施設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退所時 狀態를 알아본 바, A와 D施設의 경우는 退所兒童들의 年齡이 各 歲別로 다양하였으나 A施設은 17세가, 그리고 D施設은 18세가 각각 가장 많았다. B施設의 경우는 全體退所兒童 27명중 약 74.1%인 20명의 兒童들이 18세에 退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退所兒童들의 學歷을 보면, A施設, B施設 및 C施設의 경우는 中學校卒業 以下가 각각 43명, 27명, 9명 등으로 거의 大多數를 차지하였고, D施設은 전체 28명중 26명이 國民學校卒業 以下인 것으로 나타나 全般的으로 學歷水準이 낮았다. 退所兒童들의 收容期間을 보면, B施設의 경우 27명 全員이 1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退所하여 他施設의 退所兒童들보다 收容期間이 길었으며, C施設의 경우는 10명 전원이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退所하였고, A施設의 경우는 46명의 退所兒童중 84.8%인 39명의 兒童들이 1년 이상부터 2년 이하의 收容期間에 退所하였고, D施設의 경우는 退所兒童들의 收容期間이 다양하였으나 25개월 이상의 長期間 收容된 兒童들이 전체 28명중 12명이나 되어 他施設의 兒童들 보다 長期間 收容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退所兒童들의 退所事由를 보면, B施設은 모두 緣故者 引繼였는데 반해 C施設의 경우는 全體 10명중 8명이 無斷退所한 경우로 나타나 收容兒童들의 管理에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施設과 D施設의 경우는 退所事由가 다양하였는데, A施設은 46명의 退所兒童중 緣故者 引繼가 22명, 無斷退所가 14명, 其他가 10명이었고, D施設은 28명의 退所兒童중 10명이 緣故者 引繼였고, 無斷退所가 11명, 其他가 7명으로 나타나 주로 緣故者 引繼나 無斷退所가 주요한 退所事由였다. 退所兒童들의 住居類型을 보면, B施設은 27명 모두 부모집이었고, A施設은 46명중 29명이 부모집이었고, 4명이 自立支援施設, 나머지 13명은 其他로 나타났다. 그리고 D施設은 其他가 18명, 나머지 10명이 부모집이었고, C施設은 10명중 5명은 부모집, 4명은 其他, 나머지 1명은 自炊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80〉 職業輔導施設 退所兒童의 退所狀態別 分布

(단위: 명)

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퇴소아동수	46	27	10	28	111
연령					
14세	2	-	-	1	3
15세	3	-	-	8	11
16세	7	-	4	2	13
17세	18	5	2	6	31
18세	15	20	4	10	49
19세	1	2	-	1	4
학력					
무학/미취학	1	-	-	-	1
국졸 이하	1	-	-	26	27
중졸 이하	43	27	9	2	81
고졸 이하	1	-	1	-	2
수용기간					
6개월 이하	-	-	-	1	1
7~12개월	7	-	10	8	25
13~18개월	21	-	-	2	23
19~24개월	18	27	-	5	50
25개월 이상	-	-	-	12	12
퇴소사유					
연고자인계	22	27	2	10	61
무단퇴소	14	-	8	11	33
기타	10	-	-	7	17
주거유형					
자취	-	-	1	-	1
부모집	29	27	5	10	71
자립지원시설	4	-	-	-	4
기타	13	-	4	18	35

바. 自願奉仕者의 活用

施設을 開放化하여 收容兒童들에게 보다 많은 惠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各 施設들마다 自願奉仕者들을 活用하고 있다. 이들 職業輔導施設들의 自願奉仕者 活用實態를 보면, A施設의 경우 自願奉仕者

數가 100명으로 他施設들에 비해 相對的으로 많은 사람들을 活用하는데 비해 B施設은 自願奉仕者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았고, C施設은 1명의 自願奉仕者밖에 활용하지 못했으며, D施設은 26명의 自願奉仕者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 自願奉仕者들의 性別을 보면, A施設의 경우 100명중 82명이, D施設의 경우 26명중 18명이 女子로서 男子들 보다 壓倒的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自願奉仕者의 職業別 分布를 보면, A施設의 경우는 절반인 50명이 家庭主婦였으며, 一般人이 23명, 大學生이 11명, 敎授·敎師가 15명, 그리고 技術保有者가 1명으로 多樣하였고, D施設의 경우는 26명중 15명이 家庭主婦, 聖職者나 宗敎人이 5명, 專門醫療陣과 技術保有者가 각각 3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專門人力을 自願奉仕者로 적절하게 活用·運營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81〉 職業輔導施設의 自願奉仕者數 및 自願奉仕者의 職業別 分布

항 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전 체
자원봉사자수	100	-	1	26	127
성별					
남자	18	-	1	8	27
여자	82	-	-	18	100
직업					
전문의료진	-	-	-	3	3
교수·교사	15	-	-	-	15
성직자/종교인	-	-	-	5	5
가정주부	50	-	-	15	65
일반인	23	-	-	-	23
대학생	11	-	-	-	11
기술보유자	1	-	-	3	4
기타	-	-	1	-	1

5. 自立支援施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自立支援施設은 "아동복지시설, 특히 育兒施設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就業 準備期間 또는 就業後

일정기간 동안 宿所 또는 飮食을 實費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시설"이다. 自立支援施設은 퇴소아동에게 가장 切實한 宿所를 제공하고 炊事, 洗濯 등을 利用兒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自立 基盤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相談機能을 강화하여 시설 退所兒童에게 일어날 수 있는 問題點을 사전에 把握하여 指導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社會人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靑少年 非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1995:106). 따라서 自立支援施設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족 및 지역사회 간에 놓여 있는 하나의 中間施設의 性格을 가진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가. 施設의 地域別 分布 및 收容率

自立支援施設은 1989년 서울과 부산을 필두로 하여 1990년에 全北 全州, 1991년에 大田과 慶南 鎭海, 1992년에 忠北 淸州 및 光州에 차례로 設立되어, 현재 全國的으로 7개소가 있다. 自立支援施設은 시설퇴소아동의 社會適應力을 향상시킬 目的으로 설립된 시설임에도 시설의 利用水準은 그렇게 높지 않는 실정이다. <表 4-8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의 年度別 정원 및 현원을 보면, 해마다 施設定員의 60%내외의 수용율을 나타내 큰 變化가 없으며, 시설당 전체 平均收容兒童數는 19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慶南에 소재한 시설은 수용아동수가 7명으로 가장 적은데 비해 서울에 있는 시설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서울, 대전, 충북지역의 경우 도심 또는 교통편이 용이한 도시외곽에 위치해 이용율이 높은 편이나, 경남 소재 自立支援施設은 농촌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편이 不便하여 利用率이 매우 저조하였다. 收容率이 낮은 原因은 이용의 편리성 만이 아니라, 18세 이상인 退所兒童의 상당수가 수용시설에서 長期間 生活한 까닭

에 獨立的인 生活을 원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자립지원시설을 또하나의 收容施設로 인식하여 入所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退所兒童이 다니는 職場이 自立支援施設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利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考慮할때 自立支援施設은 직장이나 도시중심지에 位置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專門的인 相談要員이 상주하면서 相談 및 指導를 통해 그들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表 4-82〉 自立支援施設의 年度別 利用現況

(단위: 명)

	수용인원							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현원	정원	수용율(%)
1990	33	10	-	-	-	13	-	56	90	62.2
1991	33	20	-	-	-	15	-	76	150	50.7
1992	32	25	-	17	-	15	-	94	150	62.7
1993	31	24	16	25	21	18	-	140	210	66.7
1994	27	14	20	25	23	20	7	136	210	64.8

나. 收容兒童의 特性

자립지원시설의 收容對象은 일차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여 就業한 延長兒童이며, 시설정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 生活保護對象 家庭의 兒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入所期間은 입소후 1년이며,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市·郡·區廳長의 승인으로 1년단위로 延長可能하나, 입소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條件下에서 자립지원시설 이용자의 年齡, 學歷, 父母有無 등의 特性을 보면 <表 4-83>과 같다.

〈表 4-83〉 自立支援施設 收容兒童의 特性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계	
								수	%
계	27	14	20	25	23	20	7	136	100.0
<성별>									
남자	-	-	4	16	12	13	-	45	33.3
여자	27	14	16	9	11	7	7	91	66.7
<연령>									
17~19세	7	3	4	8	2	3	-	27	19.8
20~22세	20	8	13	15	18	12	1	87	64.0
23~27세	-	3	3	2	3	5	6	22	16.2
<학력>									
중졸 이하	4	-	-	2	2	-	-	8	5.8
고교재학	-	3	-	-	2	-	-	5	3.7
고졸	23	9	18	23	18	12	7	110	80.9
대재 이상		2	2	-	1	8	-	13	9.6
<부모유무>									
모두 생존	-	1	-	-	7	-	-	8	5.9
부만 생존	6	-	-	-	-	1	1	8	5.9
모만 생존	1	-	1	1	3	3	-	9	6.6
모두 사망	3	9	13	4	11	10	-	50	36.8
모름	17	4	6	20	2	6	6	61	44.8

自立支援施設의 수용아동의 연령은 20~22세가 64.0%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19.8%로 그 다음으로, 결국 22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연소자가 17세에서 최연장자는 27세까지 있었고, 平均 연령은 21세였다. 學歷을 보면, 80.9%가 高校 卒業이었고, 大學入學 이상이 9.6%이었으며,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在學중인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립지원시설의 수용아동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職場을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自立支援施設의 收容兒童 136명중 81.6%에 해당되는 111명이 父母가 모두 死亡하여 없거나 父母의 生死를 모르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자립지원시설에 入所한 兒童들 대부분이 父母와의 관계가 거

의 없는 아동이었고, 感受性이 많은 20세전·후의 兒童임을 감안할때, 자립지원시설에는 相談 및 指導할 수 있는 專門人力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自立支援施設 退所兒童의 特性

1994년 1년동안에 退所兒童은 7개시설에 총 52명이었으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설이 각각 16명과 10명으로 折半을 차지하고 있었고, 충북에 있는 施設의 9명을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5명내외였다. 그들의 退所事由를 보면, 규정된 입소기간을 넘어서 만기 退所하는 경우가 51.9%로 過半數를 넘고 있으며, 就業, 結婚 또는 職場移動으로 퇴소한 경우가 38.4%이었다. 반면 緣故者 引繼의 경우는 적었다. 무단 퇴소자는 1.9%에 지나지 않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수용아동의 收容期間은 25개월 이상의 수용자가 36.5%로 長期收容兒童이 많았고, 1~2년만에 퇴소한 아동도 32.7%로 나타나고 있어 正常的으로 1년 이하에 퇴소하는 아동은 1/3정도로 나타났다. 退所兒童의 職業을 보면, 생산기술직이 30.8%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事務員이 23.1%,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11.6%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의 收 30.8%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事務員이 23.1%, 그리고 간호보조원이 11.6%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의 收容兒童들이 갖는 職種이 주로 下位職種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퇴소후의 住居問題라고 볼 수 있다. 退所後 예정하고 있는 住居形態를 알아 본 바, <表 4-84>과 같이 혼자서 自炊하겠다는 兒童이 5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表 4-84〉 自立支援施設 退所兒童의 特性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계	(%)
계	16	10	6	5	9	5	1	52	100.0
<퇴소사유>									
만기퇴소	13	10	-	-	-	-	-	27	51.9
연고자인계	3	-	-	-	1	-	-	4	7.7
무단퇴소	-	-	-	-	1	-	-	1	1.9
기타[1]	-	-	6	1	7	5	1	20	38.4
<수용기간>									
12개월 이하	3	-	2	1	8	2	-	16	30.8
13~24개월	10	-	4	-	1	1	1	17	32.7
25~36개월	3	10	-	4	-	1	-	18	34.6
37개월 이상	-	-	-	-	-	1	-	1	1.9
평균(개월)	(21.9)	(36)	(13.1)	(31.2)	(8.1)	(22.8)	(18)	(22.1)	
<취업직종>									
사무원	8	4	-	-	-	-	-	12	23.1
생산·기술직	1[2]	1	-	4	4	5	1	16	30.8
간호조무사	5	-	-	1	-	-	-	6	11.6
미용사	1	-	-	-	1	-	-	2	3.8
자영업	-	2	-	-	-	-	-	2	3.9
점원	-	-	-	-	1	-	-	1	1.9
단순노동	-	-	-	-	1	-	-	1	1.9
군입대	-	-	2	-	-	-	-	2	3.8
학생	1	3	-	-	1	-	-	5	9.6
비취업	-	-	-	-	1	-	-	1	1.9
모름	-	-	4	-	-	-	-	4	7.7
<주거예정지>									
부모집	3	-	-	-	2	-	-	5	9.6
자취(단독)	13	-	4	4	3	5	1	30	57.7
자취(친구)	-	2	-	-	-	-	-	2	3.8
자취(형제)	-	2	-	-	-	-	-	2	3.8
회사기숙사	-	-	-	-	2	-	-	2	3.9
영구임대	-	5	-	-	-	-	-	5	9.6
결혼	-	1	-	1	1	-	-	3	5.8
군입대	-	-	2	-	1	-	-	3	5.8

註: 1) 취업, 결혼, 군입대, 직장이동 등임.
2) 설계사

라. 資産規模 및 그 構成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法人의 資産規模는 적은 곳은 17억원에서 많은 곳은 1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平均 資産規模는 6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7개 법인중 4개 法人은 收益用 基本財産을 소유하지 않은 반면, 3개시설의 법인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1개법인(경남 19.9%)을 除外하고는 아주 적은 액수였다. 이와 같이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法人의 資産은 전체적으로 볼 때 97.0%가 目的事業用 基本財産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85 참조).

〈表 4-85〉 自立支援施設 運營法人의 資産規模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98.2	100.0	100.0	100.0	100.0	96.6	80.1	97.0
수익용 기본재산	1.8	-	-	-	-	3.4	19.9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자산	6,218	5,550	15,602	3,004	5,694	1,735	5,712	43,515

마. 收入·支出의 規模 및 構成

1994년도 자립지원시설의 收入規模는 적은 곳은 1천7백만원에서 많은 곳은 5천1백만원에 이르기까지 隔差가 매우 컸으며, 전체적으로 시설당 收入規模는 平均 3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收入의 財源構成은 정부보조가 80.1%, 민간지원금이 2.7%, 자체수입이 16.5% 및 기타 잡수입이 0.7% 등으로 政府補助가 차지하는 比率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 政府補助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88.9%인데 비해 가장 낮은 곳은 65.7%로 施設間에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자체수입의 비율이 높은 광주(34.2%)나 서울(25.0%)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當然한 결과라 생각되나, 政府의 施設運營基準이 시설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볼 때 法人의 收入金이나 民間支援金의 차이가 시설운영비에 影響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注目해야 할 점은 政府補助金 중에서 지방비의 비율이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表 4-86〉 自立支援施設의 收入規模 및 財源 比率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계
정부보조	70.5	81.9	65.7	85.9	84.5	88.9	88.6	80.1
국고	32.6	53.4	51.1	68.7	67.6	68.1	78.7	58.1
지방비	37.9	28.5	14.6	17.2	16.9	20.8	9.9	22.0
민간지원금	3.4	1.0	-	0.4	13.1	-	-	2.7
자체수입	25.0	17.1	34.2	12.8	-	11.1	11.4	16.5
기타수입[1)]	1.1	-	0.1	0.9	2.4	-	-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 수 입	47,233	40,404	41,026	51,339	39,555	39,622	17,213	39,485
1인당 총수입	1,749	2,886	2,051	2,054	1,720	1,981	2,459	2,032

註: 1) 이용자에게 추가징수하는 수입

地方費의 比率이 서울 소재 시설 37.9%, 부산 소재 시설이 28.3%인데 비해 광주나 경남에 位置한 施設은 각각 14.6%와 9.9%에 불과해 地域에 따라 시설에 지원하는 地方費의 差異가 커 하나의 問題點으로 제시되고 있다. 施設의 收入內譯중 其他收入에는 정부보조금과 그에 따른 法人負擔額을 초과하는 公共料金, 煖房費 및 電氣料 등 시설이용자에게 追加 徵收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5년도 내부자료,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를 위해 개인별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각각 월 3,000~12,000원, 3,000~7,500원, 1,000~3,300원임).

1994년도 자립지원시설의 支出規模는 적은 곳은 1천7백만원에서 많은 곳은 5천2백3십만원에 이르기까지 큰 격차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施設當 支出規模는 平均 3천7백6십만원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支出現況을 보면, 人件費가 81.4%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稅金이나 煖房費를 제외한 기타 시설관리 및 유지비가 11.1%로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총 지출은 施設管理費와 수용아동의 相談·指導를 위한 인건비가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總支出을 自立支援施設 이용자 1인당 비용으로 換算하면, 가장 적은 곳이 146만원에서 가장 많은 곳은 288만원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나며, 평균 194만원으로 나타났다.

〈表 4-87〉 自立支援施設의 支出 規模 및 用途別 比率

(단위: %, 천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남	계
인건비	62.3	75.4	92.0	81.9	91.0	87.9	91.7	81.4
식비	2.0	1.0	-	-	-	-	-	0.5
피복비	2.7	-	-	-	-	-	0.8	0.6
보건의료비	0.1	-	0.1	-	-	-	1.7	0.1
제세공과금	7.6	1.4	2.5	4.9	1.2	-	0.4	3.1
난방연료비	7.2	2.2	2.4	2.8	4.2	-	2.6	3.2
기타 간접비[1)]	18.1	18.0	3.0	10.4	3.6	12.1	2.8	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	47,233	40,394	33,612	52,328	39,610	39,209	17,004	37,627
1인당 총지출	1,749	2,885	1,681	2,093	1,461	1,960	2,429	1,937

註: 1) 기타간접비: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시설유지비, 시설신설비, 기타 여비, 판공비 등을 포함.

바. 從事者의 人的 構成 및 資格

자립지원시설의 法的 配置人力은 시설장 1인과 총무(상담요원) 1인으로 되어 있으나,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配置基準은 1개 시설당 관장(원장) 1인, 총무(사감 및 상담인) 1인, 관리인 1인이며, 收容兒童 20인 초과 시마다 管理人 1인을 增員하도록 되어 있다. 단 가능한 한 旣存의 施設長이 관장을 兼職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7개 자립지원시설중 3개소의 館長이 육아시설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다.

총무는 7개소에 모두 配置되어 있고, 管理人은 2개소에 각 1명씩, 5개소에 각 2명씩 배치되어 있다. 자립지원시설의 관장을 포함한 從事者 1인당 담당아동수는 5.2명으로 적은 편이다.

〈表 4-88〉 自立支援施設 職員配置 現況

구 분	종사자수			시설당종사자수		종사자1인당아동수	
	계	남	여	평균	(최소~최대)	평균	(최소~최대)
관 장	7	6	1	1	(1)	19	(7~27)
총 무	7	3	4	1	(1)	19	(7~27)
관리인	12	5	7	1.7	(1~2)	11	(7~14)
합 계	26	14	12	3.7	(3~4)	5.2	(2.3~7)

종사자 총 26명중 절반(13명)이 社會福祉士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法的 必要人員인 1/3을 넘고 있다. 10명이 1급, 2명이 2급, 1명이 3급 資格을 가지고 있다. 시설장중 4명이, 총무중 6명이 사회복지사 資格이 있으며, 총무 1명은 社會福祉士 자격 대신 교원자격이 있다. 그러나 管理人 12명중에 社會福祉士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으며 각각 1급과 2급이었다.

〈表 4-89〉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 所有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율)					전체
	계	(%)	1급	2급	3급	
전 체	13	(50.0)	10	2	1	26
관 장	5	(71.4)	5	-	-	7
총 무[1)]	6	(85.7)	4	1	1	7
관리인	2	(16.7)	1	1	9	12

學歷을 보면, 전체종사자의 53.9%(14명)가 大學卒業 이상이었고, 38.4%(10명)가 高卒이며, 2명이 중졸 이하의 學歷을 소유하고 있었다.

시설장 7명중 4명이, 총무 7명중 6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管理人 12명중에 대학졸업이 3명, 고졸이 7명이었다.

〈表 4-90〉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學歷

(단위: 명, %)

	계	대학원졸	대졸	고졸	중졸 이하
전 체	26	2 (7.7)	12 (46.2)	10 (38.4)	2 (7.7)
관 장	7	1	4	2	-
총 무	7	1	5	1	-
관리인	12	-	3	7	2

사. 勤務條件 및 離職率

從事者들의 시설내 居住與否를 보면, 관장의 경우 6명중 2명이, 총무의 경우는 6명중 3명이, 管理人의 경우는 10명중 7명이 施設內에 居住하고 있어 주로 管理人이 아동과 함께 生活하고 있었다. 勤務時間을 보면 시설내에 居住하는 경우는 거의 18시간 이상 勤務하고 있는 셈이다.

종사자의 離職現況을 보면, 1994년도에 7개 施設에서 종사자 26명중 반수인 13명이 退所하여 從事者의 離職率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91〉 自立支援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勤務形態

	계	관장	총무	관리인
거주지				
시설내	12	2	3	7
시설밖	10	4	3	3
근무시간				
9시간	4	1	1	2
11~12시간	3	1	2	-
18시간	3	1	-	2
24시간	9	2	3	4

註: 수집된 자료중 미상건수는 제외(관장 1, 총무 1, 관리인 2)

第 5 章 地方自治制에 따른 社會福祉施設의 運營體系

第 1 節 地方自治制가 社會福祉에 미치는 影響

地方自治란 일정한 地域의 住民들이 地方公共團體를 구성하여 中央政府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共同問題를 地域 住民들의 負擔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김형배, 1988:45).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地方自治란 일정한 地域을 기초로 그 地域住民으로 구성된 共同團體가 그 지역내 行政事務를 자신들의 責任과 權能으로 주민의 自主的 財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機關을 통해서 執行하고 實現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中央集權制下에서는 中央政府가 社會福祉政策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는 그 政策을 執行하는데 불과하였으나, 地方自治制下에서는 地方自治團體가 주체가 되어 住民의 社會的 欲求를 기초로 하여 地域特性에 맞는 社會福祉計劃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住民福祉增進에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住民의 여망과 욕구가 地方自治行政에 충분히 반영되고 地方自治로 인해 유발되는 효용과 편익이 주민 모두에게 고르게 향유되게끔 적극적인 役割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權威主義的 文化, 地方自治團體의 物的, 人的資源의 不足, 經濟·社會的 與件 등으로 中央集權化 傾向이 특징이었다.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社會福祉의 地方分權化에 대해 이념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贊成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 日本의 경우를 통해 그 理由를 알 수 있다. 日本은 1963년 4월에 실시된 地方選擧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중시하여 市民生活

우선이라는 근본적인 市政을 추진하려고 했던 시·정·촌장이 많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市民의 입장에 우선하는 市政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1967년 4월에 東京都 무사시노시(武藏野市)에서 兒童手當制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老人福祉手當制, 집세보조, 긴급 一時保護事業 등을 地方自治制인 시·정·촌에서 독자사업으로 실시하였다(鹽原桓文, 1992:19~25).

이와 같은 地方自治團體의 독자적인 福祉制度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制度를 충실하게 실현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어느 特定 市가 그 地域의 特性을 살려 새로운 制度를 실현함에 따라 다른 市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國家가 이를 制度化하는 일로 波及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市 독자적으로 실시해 왔던 제도에 都道府縣이 補助金을 지급하도록 하는 效果를 얻어내게 되고 따라서 地方自治制에서 근무하는 職員의 意慾이 고조되어 여러 가지 福祉政策의 多樣化를 가져왔다는 長點이 있다. 반면 독자적으로 政策을 실시했을 때 당초의 目的이 달성되었지만 좀처럼 中止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새로운 制度의 대상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財政上의 負擔을 갖게 되는 短點이 있다. 또한 地方自治制에 의한 不均衡으로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자가 다르게 되고, 한 地方自治制에서 실시하게 되면 다른 地域에 居住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자 轉入해 오는 경우가 있는 등의 短點도 있었다(鹽原桓文, 1992:26~30).

오늘날 日本 社會福祉의 특색은 中央集權으로부터 地方分權으로의 移讓, 시정촌의 역할중시, 在家福祉서비스 중시, 企業의 福祉서비스에의 진출용인, 주민참가형 단체활동 용인과 같이 社會福祉 供給시스템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中央集權으로부터 地方分權으로의 이양은 1986년 法律改定(地方公共團體의 執行機關이 國家機關으로서 행하는 事務整理 및 合理化에 관한 法律)으로 제도화되었는데, 生活保護法을 제외한 대부분의 社會福祉 行政事務가 종래 機關委任 事務로 되어 있

던 것을 團體委任 事務 내지는 固有事務로 변경됨으로써, 일정정도의 地方分權化가 진척되고 있다. 시정촌의 役割重視에 관해서는 1990년에 실시된 老人福祉法 등 8법의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금번의 法改定에는 상당히 많은 內容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된 곳만을 지적하자면, 노인홈 등의 社會福祉施設의 措置權이 종래 市·縣에 있었던 것이 시정촌에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費用負擔에 관해서도 시정촌의 負擔分이 增加하고 있다(宮埼昭夫, 1990:67~68).

그러나 日本은 地方自治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다. 그 이유는 地方自治 業務의 대부분은 國家의 代理·代行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國家는 地方自治制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法律, 정령, 성령, 통지, 실시요강 등에 의해 규정할 뿐아니라 이들의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엄격히 豫算上의 統制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補助金을 붙여서 그 실시에 대해 상세히 監督하는 것도 한 手段이다. 또한 日本의 地方自治團體는 國家가 지정하는 事業이외에 單獨事業을 펼칠 자유는 있지만 실제로 地方自治團體는 課稅에 관한 權限이 대폭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財源 不足으로 대개의 自治團體 單獨事業은 겉치레로 되기 십상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다(宮埼昭夫, 1990:69~70).

따라서 地方自治制가 社會福祉에 미치는 영향을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肯定的 側面을 보면, 첫째,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地域住民의 福祉欲求가 급증하고 또한 社會的 地理的 特性에 따라 福祉欲求는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對應내지 欲求充足은 政府 단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政府와 民間이 役割을 분담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共同의 責任을 지게 될 것이며, 특히 民間의 參與意識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中央集權下에서 社會福祉事業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方法에 의하여 추진되고 서비스의 내용도 대부분 物質的이고 金錢的이었다.

그러나 地方自治制下에서는 각 地域特性에 맞게 서비스를 실시하며, 서비스의 내용도 非物質的이고, 人的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一時的인 것 보다는 근원적이고 長期的인 福祉를 기대함으로써 專門的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地方自治團體가 住民福祉事業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地方社會福祉財政의 확충과 더불어 民間資源의 동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공동모금의 활성화, 企業의 社會福祉參與,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民間資源의 효율적 活用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넷째, 어느 特定의 基礎自治團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住民이 필요로 하는 社會福祉프로그램이나 制度를 개발하여 충실하게 실현해 나가면 그것이 다른 市·郡·區로 확대되고 이에 廣域地方自治團體가 補助金을 支援하게 되며, 나아가 國家가 이를 制度化하는 것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否定的 側面으로는 첫째, 社會福祉財政은 社會福祉機能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地方財政은 地方自治制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 地方化時代에는 주민의 福祉欲求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福祉事業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자연히 福祉豫算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費의 支出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中央政府가 분권화를 구실로 福祉財政의 지방전가 및 민간 전가로 공적 책임체제의 空洞化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둘째, 住民에 의해 선출된 地方自治團體長 및 의원들이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社會福祉政策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즉, 이들은 社會福祉는 中央政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期的 展望없이 短篇的 事業을 실시하거나 주로 매스컴의 注目을 받을 수 있는 事業에 관심을 갖게될 우려가 있다.

셋째, 各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政策樹立의 전문성 정도, 社會福祉 財政의 투자정도, 民間資源의 活用程度 등에 따라 各 地域에 거주하는 住民이 누리는 福祉惠澤에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한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이 공존하는 가운데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體系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포함한 地域社會住民은 사회복지적 과제를 地域社會 共通의 課題로 파악하고 협동하여 解決 및 緩和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公的福祉서비스를 담당할 행정기관의 역할, 行政機關과 民間과의 分業과 協業의 範圍 및 方法에 대한 主體的·自主的 對應의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物質的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으나 경제적 발전에 따라 貧困問題보다는 靑少年非行, 家庭不和, 兒童虐待 등 心理的 問題나 家庭的 問題 및 地域社會 環境問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地方自治制가 社會福祉에 미치는 影響은 주민 및 이용자의 主體化, 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地域社會 生活을 함께하는 가운데서 福祉서비스의 창출과 이용, 그것에 의한 自立的 生活의 確保와 維持, 나아가 삶의 質的인 向上을 기하는 地域福祉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地域福祉는 개개 주민의 生活問題를 해결·완화하고 住民의 身體的, 人格的 成長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과제의 일환으로서 위치할 것이다. 또한 地域福祉는 개개 이용자 뿐만아니라 利用者를 포함한 家族, 地域社會住民, 社會團體, 企業, 行政機關 등 이른바 지역사회구성원에 의한 협동과 地域社會 資源의 통합적인 動員·活用을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다.

第 2節 社會福祉施設의 設置運營 現況

1. 社會福祉施設의 地域別 配置

우리나라의 社會福祉施設은 99%가 民間施設로서, 1994년 말 현재 전체 759개 수용시설중 國·公立施設은 11개에 불과하다. 兒童福祉收容施設은 영아시설에 해당하는 서울시립아동병원 단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民間施設이다. 이러한 社會福祉施設은 6.25전쟁이후 戰爭孤兒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地域社會住民과는 관계없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各種 社會福祉施設은 지역사회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設置되기 보다는 설치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施設은 種類에 따라 부족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集中配置된 시설도 있어 地域間 不均衡을 보인다(제3장 제1절 참조).

전반적인 施設의 設置傾向을 보면 兒童, 老人, 婦女, 障碍人福祉施設은 서울, 경기, 부산광역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精神疾患者療養施設은 충남, 부산광역시에 많이 設置되는 등 大都市地域 또는 首都圈地域이나 지역특성 등에 따라 不均衡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市·郡·區 단위의 社會福祉施設 設置現況을 보면 <表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30개 市·郡·區 중에 시설이 없는 地域이 21.7%인 50개 市·郡·區로 나타났고, 6개 이상 설치된 地域이 20.4%인 47개 시·군·구로 나타난 것을 보면 施設 設置의 地域別 不均衡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市·郡·區 단위 兒童福祉施設現況을 살펴보면 <附表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이 없는 地域이 230개 市·郡·區 중 42.2%인 97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地域의 施設 需要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를 초과하는 施設은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부족한 施設은 확대 설치하는 것이 地方自

治制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 운영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地域社會 住民들이 社會福祉施設을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配置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2. 運營財政

社會福祉事業法 제31조 제1항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법인에 대하여 補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32조 제1항에는 福祉措置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本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는 그 費用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生活保護對象者를 수용보호할 경우는 法人이 運營經費의 20%를 負擔하고 나머지 80%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며, 生活保護對象者가 아닌 경우는 복지조치에 필요한 費用을 수납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兒童福祉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요하는 費用 또는 受託保護中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100분의 80이상을 補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기준은 兒童福祉施設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費用의 일부를 보조하며, 兒童福祉施設의 運營과 수탁보호중인 兒童의 養育 및 保護管理에 요하는 비용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그 負擔의 比率은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그 總額의 10분의 5이하를 國家가, 10분의 5이상을 서울특별시가 負擔하며, 광역시의 경우

에는 그 總額의 10분의 8이상을 국가가, 10분의 2이하를 당해 직할시가 負擔하고, 市와 郡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분의 8이상을 國家가, 10분의 1이상을 당해시와 郡을 관할하는 道가, 10분의 1이하를 당해 市와 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4].

社會福祉施設의 지역적 불균형적인 설치는 廣域自治團體인 道의 경우 市·郡단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市·郡과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市·郡과의 그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 基礎地方自治團體間에 이견을 發生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社會福祉施設運營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地方財政의 확충과 民間資源의 동원 등에 관한 연구는 地方自治制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3. 社會福祉法人 및 施設의 指導監督

社會福祉法人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主體로서 公共性과 公益性이 강하며 社會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그 運營費의 약 80%를 政府豫算에 의한 補助金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지도·관리가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이 크다. 社會福祉事業法 제37조에 의해 保健福祉部 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法人의 자산운용 및 법인 또는 施設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法人 또는 施設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도감사 결과 시정 또는 改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內容을 문서로 지도함과 동시에 그 시정 또는 改善事項을 확인하고 있다.

---

44)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운영재정 규정은 위와 같으나 실제 운영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을 참조할 것.

4. 社會福祉施設의 利用과 關係機關과의 連繫現況

가. 社會福祉收容施設의 利用對象

社會福祉收容施設의 이용대상은 사회적 의지에 의하여 所屬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家族生活이 곤란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入所依賴에 따라 소속되기 때문에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施設福祉利用對象이 된다. 生活保護法 제3조는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老衰者, 18세 미만의 兒童, 姙産婦, 廢疾 또는 心身障碍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保護機關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保護對象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피보호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保護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住居에서 행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호자를 保護施設이나 타인의 家庭에 委託하여 生計保護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2항에는 職業訓練이나 就業斡旋 등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에 委託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그 就業의 斡旋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保護施設이라 함은 각종 보호를 행하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 老人福祉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兒童福祉法 시행령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기타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허가받은 社會福祉施設中 수용보호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兒童福祉法에서는 要保護兒童이 收容對象者가 된다.

나. 社會福祉施設 入退所節次

施設에의 입소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설치·운영하는 施設의

경우는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와 市長·郡守·區廳長이 요보호자를 입소조치하고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는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와 市長·郡守·區廳長이 요보호자를 위탁하여 보호한다. 그리고 保護施設의 長은 보호기관으로부터 保護對象者의 보호를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生活保護法 제26조).

兒童福祉法令에도 요보호아동 또는 要保護姙産婦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兒童福祉施設의 長에게 市長·郡守·區廳長은 要保護者 收容依賴書를 교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要保護兒童 또는 要保護姙産婦를 발견한 때에는 우선 이들을 保護措置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여 그 兒童福祉施設의 長에게 요보호수용의뢰서를 교부하거나 다른 保護措置를 취하여야 한다(兒童福祉法 제12조, 同法 施行令 제8조, 同法 施行規則 제9조).

施設退所는 生活保護法에 의한다면 피보호자에 대한 施設保護가 필요없게 될 때에는 保護를 중지하고 退所시켜야 한다(生活保護法 제24조). 兒童福祉關係法令에 의하면 兒童福祉施設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保護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長은 入所의 措置를 취한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중인 兒童을 退所시켜야 한다. 또한 兒童福祉施設에 입소한 兒童의 보호자는 그 兒童의 입소조치를 취한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퇴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동을 施設에 入所시킨 때나 施設에서의 退所를 승인한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兒童福祉法 제13조, 同法 施行令 제9조, 同法 施行規則 제10조 및 제12조).

다. 關係機關과의 連繫

社會福祉事業法 제4조에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國家, 地方自治團體,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社會福祉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事業과 관련한 相談·治療, 職業訓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兒童福祉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兒童을 保護·養育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育成할 책임을 지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보호자와 더불어 兒童을 건전하게 育成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9조에는 保健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妊産婦의 健康相談 및 指導, 아동의 전염병예방조치, 健康相談, 영양개선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法 제21조에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아동의 권리를 保障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第 3 節 社會福祉施設 運營에 있어서 政府와 民間의 役割

1. 政府의 役割

社會福祉施設 運營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을 크게 나누어 보면, 1) 社會福祉施設 設置의 장기적 계획과 發展方案을 마련하는 것, 2) 社會福祉施設을 확대설치하여 국민들이 그 이용을 통하여 福祉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 것, 3) 民間으로 하여금 社會福祉施設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設置要件, 許可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社會福祉資源을 확

충하는 것, 4) 民間社會福祉施設들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施設의 운영지도와 財政的인 支援을 하는 것, 5) 社會福祉施設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制度의 改善과 確立을 기하는 것등이다.

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앞에서 논한 政府의 役割은 中央政府, 廣域地方自治團體, 및 基礎地方自治團體의 役割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社會福祉施設設置의 장기적 계획과 發展方案 마련과 관련하여 中央政府는 전국적인 계획과 發展方案의 수립을 담당하고, 地方自治團體는 과거 中央政府에 의하여 주도되고 地域社會의 特性을 도외시하던 것을 탈피하여 地域社會의 欲求와 特性에 맞는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施設 설치계획 수립의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社會福祉施設의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中央政府는 전국적 이용과 示範的 設置가 필요한 施設에 한하고, 地方自治團體는 주민의 福祉需要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基礎地方自治團體는 일반적인 것, 지역성이 강한 시설을 설치하고 廣域地方自治團體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施設, 광역적인 시설, 市·郡·區에서 설치하기 곤란한 施設을 선택하여 설치하는 役割을 담당한다.

셋째, 民間의 社會福祉施設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許可 등 편의를 제공하는 役割과 관련하여 中央政府는 2개이상 市·道 또는 전국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을 설치하고자 설립되는 法人許可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統一的 基準을 적용해야 할 사항을 담당하고, 당해 市·道에 한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설립되는 法人許可는 廣域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하며, 各種 社會福祉施設의 許可 등에 관한 역할은 基礎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해야 한다.

넷째, 民間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指導監督 및 財政支援의 役割은

일차적으로는 基礎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하고, 市·郡·區의 財源 등을 고려하여 社會福祉法人 등 운영체에 대한 지도와 財政支援 등은 廣域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하며, 中央政府는 財政支援의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社會福祉施設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制度 改善과 確立을 위한 役割은 주로 中央政府가 담당해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가 담당한다.

나. 中央政府 役割의 發展方案

1) 社會福祉施設 設置의 長期的 發展計劃 樹立推進

社會福祉施設 이용대상자의 需要供給과 관련한 施設 種別 擴大計劃이 미흡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社會福祉施設은 아동, 노인, 모자, 부녀,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對象別 施設이 52개 종류에 달하며, 이들 施設은 형태면에서 보면 收容施設, 통원시설, 중간시설, 利用施設 등 기능도 다양하다. 앞으로 어느 對象이 증가하고 어느 대상이 감소할 것인가의 需要를 예측하고 또한 地方自治制實施에 따른 住民의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收容保護施設 위주에서 在家福祉서비스와 병행하기 위한 社會福祉施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한 施設種別 地域別 종합적 확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社會福祉施設의 設置要件 規制緩和

社會福祉法人 및 기타 민간에 의하여 社會福祉施設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設置要件, 許可 등에 대한 規制 緩和 措置 등이 미흡하다. 특히 地方自治制下에서는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따른 施設의 서비스기능이 필요하여 旣存의 收容中心의 社會福祉施設에서 지역의 兒童, 障碍人, 老人 등을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在家福祉事業

을 병행하고자 할때 設置要件, 許可 등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설치 허가 조건 등이 미흡하여 무허가로 운영하는 兒童福祉施設이 1995년 8월 현재 전국 293개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5,704명을 收容保護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新聞, 1995. 10. 30. 제239호 7면).

따라서 社會福祉法人 및 기타 민간기관·단체가 社會福祉 利用施設 및 통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쉽게 設置할 수 있도록 許可條件을 완화하고, 특히 收容施設을 운영하는 社會福祉法人이 이용시설 또는 통원시설을 병설하여 設置·運營할 경우에는 허가 조건을 완화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設置·運營할 수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無許可 社會福祉施設에 수용보호된 자에 대한 對策이 필요하다. 이들중 生活保護對象이 되는 자는 認許可 社會福祉施設에로 전원조치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生活保護對象者가 아닌 자로서 家庭에서 保護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자를 宗敎團體, 公共團體 등이 수용보호하는 경우는 20명 이내의 收容人員에 한해 신고 또는 등록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運營할 수 있는 方案도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3) 中央政府의 民間社會福祉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의 適定化

中央政府의 民間社會福祉施設에 대한 재정지원은 施設 種類別로 기준이 다른 不均衡的 支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社會福祉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이 어려워 地域住民의 社會福祉施設利用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中央政府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정화와 더불어 施設種類別 財政支援의 평준화를 기할 것이 요구된다.

4) 社會福祉施設의 設置·運營과 관련된 制度改善

社會福祉施設의 設置·運營과 관련된 法·制度가 미비되어 있다.

또한 법인 및 시설 설립 허가조건의 규제완화, 生活保護對象者가 아닌 자의 收容保護 허용과 費用負擔 등에 관한 制度改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法·制度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社會福祉施設의 고정화된 制度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施設種別 機能의 細分化 및 地域福祉機能의 충실을 위한 施設 形態와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制度改善에 노력해야 한다.

가) 關係法令의 整備를 통한 施設의 體系化

첫째, 현행 兒童福祉法施行令 제2조의 兒童福祉施設 종류에 허약아시설, 자폐증아시설을 규정하여 兒童福祉施設의 機能別 體系化를 기하고, 현재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情緖障碍兒施設과 새로 制度化되는 허약아시설, 자폐증아시설을 政府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그 擴大實施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兒童一時保護施設의 기능을 강화하여 地域社會 兒童福祉施設의 機能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행 兒童福祉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兒童一時保護施設은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要保護兒童 등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兒童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調査·鑑別하여 그 兒童에 대한 장래의 養護對策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父母의 疾病, 父子家庭, 父母의 出他, 冠婚喪祭 參與 등으로 야간일시보호, 긴급일시보호, 1개월미만의 一時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兒童一時保護施設의 機能을 확대하고, 영육아시설은 市·郡·區廳長에게 신고 또는 등록에 의하여 一時保護施設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社會福祉法人의 경영기반 강화와 效率的 서비스 提供을 위해 하나의 社會福祉法人이 복수의 福祉施設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즉, 영아시설, 육아시설을 운영하는 法人은 兒童相談所, 一時保護施設 등 在家福祉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 老人福祉施設로서 特別養老老人홈을 신설할 때에는 단기보호전용동, 주간서비스센타 및 在家保護支援센타의 병설은 물론 케어하우스의 병설까지 권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施設인 保育施設 및 身體障碍人施設, 福祉센타 등과의 複合運營도 도모하고 있다. 물론 施設의 立地條件 및 運營與件에 따라서 그 내용 및 규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地域福祉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利用者에게도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宇留野功一, 1995:180)

나) 兒童福祉施設 退所兒童의 自活·自立指導를 위한 附設生活館 設置의 制度化

退所兒童을 위한 주거시설로서 自立生活館은 집단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否定的인 意見이 있다. 또한 就業兒童의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相談·助言은 시설에서 함께 기거하며 생활을 지도해온 施設職員이 실시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意見도 있다. 따라서 各 育兒施設에서 인근 大都市 또는 中·小都市에 전세 또는 자택으로 施設 附設 生活館을 설치하여 退所兒童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일정기간을 거주케 하면서 生活指導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중간의 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附設 生活館 設置를 제도화하고 설치에 따른 豫算支援을 하도록 한다.

다) 社會福祉施設 入所對象의 擴大

오늘날 영·육아시설에 入所하는 兒童은 고아라기 보다는 家庭에 問題가 있어서 入所되는 兒童이 많다는 점에서 生活保護對象者가 아닌자도 施設에 입소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고 扶養義務者로부터 費用

도 負擔할 수 있게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라) 社會福祉施設의 許可, 入所措置, 費用徵收 등에 관한 事務의 團體委任 事務化

日本은 1986년과 1990년 대폭적인 법개정에 의하여 社會福祉供給體系가 대폭적으로 改革되었다. 과거 國家 및 都道府縣에 의해 집권적이고 시설중심적이던 社會福祉는 서서히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施設運營과 거택생활을 중시하는 지역복지형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社會福祉事務의 대부분이 機關委任事務로서 都道府縣知事 및 시장에 위임되었던 社會福祉供給體系가 현재는 단체위임사무로 개정되고, 社會福祉에 있어서 시·정·촌의 役割이 현저히 확대되었다(古川孝順, 1993:41~42).

우리나라는 社會福祉事業法 제28조 제1항 단서에 市·郡·區가 社會福祉施設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관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削除하고, 제2항의 法人 및 其他 非營利法人에 대한 시설허가권을 市長·郡守·區廳長의 기관위임사무로 하고 있는 것을 團體委任事務로 하며 동법 제32조 및 兒童福祉法 제28조에는 福祉措置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本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 市長·道知事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市·郡·區 사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兒童福祉法 제12조 및 제13조에 兒童福祉施設 保護措置 및 退所措置는 機關委任事務로 되어 있으나 團體委任事務로 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자율성을 높혀 지역복지형 社會福祉 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 社會福祉施設 利用者 費用負擔의 體系化

社會福祉施設 이용자에 대한 費用負擔의 體系化를 기하기 위한 방

안으로 收容單價 또는 利用單價를 산출하여 정하고 收容 또는 利用者의 所得水準에 따라 몇개의 등급으로 구분, 等級別 利用者 負擔額을 정하여 施設運營 財政을 충당하는 制度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日本의 保育所 措置費 징수금액표의 내용을 보면 階層을 26개로 구분하고 보호자의 負擔能力에 따라 對象別(3세 미만, 3세, 4세 이상아로 구분) 경비실태에 합당한 保育料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1995년도 保育料를 보면 A階層 (생보세대)은 무료, B階層 (전연도 시민세 비과세 세대) 무료, 3세미만의 경우 C1階層(소득세 비과세 세대) 7,200엔-C3계층 11,300엔, D階層(소득세 부과세대) 13,300엔에서 D21階層 58,000엔 까지 구성되고 兒童數가 2명 이상의 경우는 그 수에 따라 保育料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日本大阪市 民生局, 1995. 4.).

바) 社會福祉施設職員의 擴大配置

社會福祉施設職員의 勤務條件을 이들이 1일 8시간근무(3부제운영)를 할 수 있게 직원의 증원과 분야별 專門職員의 配置 등 시설직원의 配置基準을 改善해야 할 것이다.

다. 地方自治團體의 役割의 發展方向

1)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施設 發展計劃 樹立 · 推進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社會福祉施設運營과 관련한 地方自治團體 役割에 있어서 廣域 및 基礎 地方自治團體의 특성을 고려한 社會福祉시설 설치 및 발전계획이 미흡하다. 특히 施設種類別 擴大計劃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의 특성에 맞는 社會福祉施設 設置發展計劃을 수립 ·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地方自治團體別 不足施設 및 示範的 施設 設置·運營

社會福祉施設의 설치와 관련하여 廣域地方自治團體는 광역적인 시설, 전문적 시설을 설치하고 基礎地方自治團體는 지역성이 강한 일반적 시설을 設置·運營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수가 미진하고 社會福祉法人 및 其他 民間團體의 설치운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지역내의 부족한 시설이나 示範的 施設을 設置·運營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民間社會福祉施設의 設置勸奬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민간단체의 社會福祉施設 설치·운영을 촉진하여 地域別, 施設別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地方自治團體別 시설종별 불균형적인 설치가 현저하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지역내의 民間團體나 기관 및 주민들이 地域社會에서 社會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支援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社會福祉施設의 專門的 指導

현재 廣域地方自治團體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財政支援을 담당하고, 基礎地方自治團體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공무원의 잦은 교체 非專門職 公務員에 의한 指導·監督, 지시형의 지도, 施設運營에 대한 지나친 간여 등으로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되어 專門的 運營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社會福祉專門職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의 지도 및 민주적인 시설지도로 施設運營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費支援의 擴大

市·道別 지방비 지원이 地域別, 施設種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老人福祉施設從事者에 대한 特別手當支給額이 1인당 월 17,000원에서 200,000원까지 격차가 심하며, 地方費 補助內譯도 특별수당, 효도휴가비, 야간수당, 자격증수당, 가계보조수당, 체력단련비, 노인부식비, 노인간식비, 의약품비 등 다양하다(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未發刊資料). 따라서 地方費 支援에 있어서 市·道別, 시설종별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福祉財政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社會福祉關聯 條例·規則 制定

廣域 및 基礎地方自治團體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地域特性에 맞는 시설을 육성시키기 위한 社會福祉施設 設置運營과 관련된 制度改善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社會福祉施設 모형개발이나 이의 示範的 設置運營, 지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제정 등 制度確立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民間의 役割과 發展方案

가. 民間의 役割

오늘날 국민의 욕구에 기초한 社會福祉行政需要는 나날이 多樣化, 擴大化, 高度化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내지 공급은 政府部門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政府部門과 民間部門이 役割을 분담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共同의 責任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民間機關은 정부에 비하여 經營合理化와 科學的 管理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가져오며, 民間機關에 근무하는 職員은 해당업무에 관하여 보다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친절하고 겸손하며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같은 人力과 費用으로 높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行政에 民間이 참여하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非民主的인 風土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行政事務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 시설과 장비, 財政的 負擔能力, 책임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와 같은 요건들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에게 委託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의 專門的 處理를 확보할 수 있다(이정호 외, 1990:22). 이러한 점에서 社會福祉施設運營과 관련한 民間의 役割은 대단히 중요하다.

民間의 役割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社會福祉施設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運營主體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을 설립하는 것이다. 즉 運營主體로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투입하여 社會福祉財政의 확충을 기하는 役割을 한다. 둘째, 社會福祉施設을 위탁운영하여 運營의 合理化와 專門化를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役割을 한다. 셋째, 民間企業 또는 個人이 이용시설, 통원시설, 有料老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福祉增進에 기여하고, 특히 市場原理가 가미된 運營管理方式을 도입하므로서 社會福祉施設運營에 경쟁력을 높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役割을 한다. 또한 모든 社會問題를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와 企業 및 市民이 함께 참여하는 參與的 社會管理의 役割을 한다. 넷째, 民間으로서 住民은 社會福祉施設 運營에 있어서 3요소의 하나인 대상인 동시에 地域社會의 주인으로서 施設運營에 後援金, 寄附金 등 物質的 支援과 自願奉仕活動을 통해 시설운영에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감시의 役割을 한다.

나. 民間役割의 發展方案

1) 法人의 基本財産의 건실한 確保

社會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

들은 기본재산 또는 그 수익이 미흡하여 委託運營主體로서의 운영조직기반이 낮아 運營에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社會福祉法人의 自體負擔率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존의 社會福祉法人에게는 기본재산을 수익성있는 財産으로 대체도록 유도하며 신설하는 社會福祉法人에게는 基本財産의 건실한 確保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施設運營의 合理化와 專門化

社會福祉施設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政府의 委託施設에 대한 지나친 간여, 미흡한 政府支援, 自體負擔金의 부족, 보호수준의 저급성, 入退所節次의 未備 등으로 시설운영이 자율성, 전문성,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체에 대한 自律性 부여, 政府補助 擴大와 보호수준 향상, 自體負擔金의 現實化, 입퇴소 절차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3) 施設서비스의 競爭力 强化

민간기업 또는 개인의 利用施設, 통원시설, 有料福祉施設設置·運營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시설 설비의 부실, 專門人力의 不足, 프로그램의 미흡, 利用料의 非現實性 등으로 경쟁력이 낮고 서비스의 수준도 낮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基本運營費인 人件費의 일부지원, 施設設備基準의 緩和, 이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운영의 건실화와 병행하여 競爭力을 誘導해야 할 것이다.

4) 施設運營의 開放化

社會福祉施設運營에 있어서 住民參與가 미흡하다. 이는 국민들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인식부족, 운영의 폐쇄성, 地域社會 關係機關과

연계운영의 미흡, 住民의 欲求와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의 미흡 등이 원인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社會福祉施設의 運營을 開放해야 한다. 地方自治制 時代에 있어서 社會福祉施設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施設을 開放해야 한다. 施設의 開放이란 것은 施設收容者의 私生活의 開放이 아니라 운영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사진,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人間的 側面에서의 開放이 自律的으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施設 및 프로그램의 開放이 진행되어야 한다. 社會福祉施設內에 확정된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在家福祉事業 프로그램을 첨가하는 方案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것은 施設長 및 從事者의 認識轉換의 問題이다. 종전에는 施設이 政府와의 관계하에 地域住民과 타단체와는 긴밀한 접촉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政府와 自治團體의 감독하에 地域住民 및 團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認識해야 한다.

5) 새로운 施設프로그램의 開發

民間社會福祉施設은 시설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地域社會住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육아시설은 兒童의 自活·自立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自活意識高揚과 자립생활훈련, 자립생활기반조성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정호 외, 1992:119~121).

第 6 章 主要結果 要約 및 改善方案

이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이루어진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現況 分析 및 評價 結果를 바탕으로 兒童福祉收容施設의 問題點을 要約한 후, 先進諸國의 社會福祉收容施設의 經驗과 地方自治時代에 부합하는 社會福祉施設 運營에 대한 硏究 結果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兒童福祉收容施設 運營의 政策課題와 이에 따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1 節 兒童福祉收容施設의 問題點

1. 環境變化에 대응한 施設需給이 이루어지지 못함

가. 要保護兒童의 特性變化에 따른 施設需給이 이루어지지 못함

1) 지난 30여년간 이룩한 經濟發展과 家族計劃事業의 결과 兒童의 절대수 감소와 더불어 父母를 잃은 아동 즉, 棄兒·孤兒, 전통적 의미의 要保護兒童은 꾸준히 減少해 온 반면, 父母의 離婚, 別居 및 家出 등 家庭問題로 인한 要保護兒童이 增加하고 있다. 하지만 政府의 在家福祉政策으로 인해 少年·少女家長世帶가 증가함에 따라 旣存의 嬰兒·育兒施設의 需要는 감소하여 왔으며, 실제로 施設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1990년이후 영·육아시설 兒童數가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동 施設數는 거의 변화가 없다. 1994년 말 현재 育兒施設의 定員 대 現員의 比率은 약 71.0%에 불과하고, 郡部에 所在한 시설과 60명이하 小規模施設의 收容率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2) 반면 非行 · 家出 · 藥物濫用, 情緖障碍 · 自閉 · 學習障碍 등 兒童 自體의 缺陷으로 인해 治療 · 敎育 등 特殊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은 增加하고 있음에도 이들 特殊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專門的 施設은 거의 不在한 실정이다. 또한 嬰兒施設의 경우 인근에 障碍兒施設이 부족하여 障碍兒를 混合收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施設需要에 따른 施設의 調整 및 擴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나. 施設의 地域別 不均衡 分布

1) 育兒施設의 경우 15개 市 · 道에 고루 分布되어 있다. 嬰兒施設의 경우 15개 市 · 道중 忠南 · 慶北地域을 제외한 지역에는 1개소 이상씩 配置되어 있다. 그러나 基礎自治團體別로 보면 전체 230개 단체 중 44.3%에 이르는 市 · 郡 · 區에 嬰 · 育兒施設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1개 區에 育兒施設만도 5개소나 설치되어 있는 區도 있어 施設이 不均衡 配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特殊目的 施設인 兒童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 兒童一時保護施設, 自立支援施設, 浮浪兒施設 등은 전국적으로 7개소 내지 9개소 정도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서울에 集中 配置되어 있어 廣域自治團體別로 전혀 配置가 되어 있지 않은 地域이 많다.

3) 이러한 施設의 地域別 不均衡 配置 現狀은 자치단체간 問題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즉, 施設이 다수 분포된 地域은 과중한 地方費 負擔을 초래하고, 他地域 住民의 施設入所를 忌避하는 現狀을 초래하며, 施設이 不在한 地域住民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2. 施設保護의 專門性 不在

가. 專門的 서비스 프로그램의 未備

1) 施設兒童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마음의 傷處를 치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심성을 開發시킬 수 있는 專門的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施設別로 캠프, 수련회, 놀이공원 방문 등의 一時的 오락프로그램은 多樣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人性敎育 프로그램 등을 定期的으로 실시하고 있는 施設은 드물다.

2) 일반적으로 시설아동의 학습능력이 낮은 편이나 이를 개발시키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부 시설에서 自願奉仕者를 활용하여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즉 育兒施設兒童의 33.8%가 個別指導나 私設學院을 통해 과외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大都市 施設의 경우는 그 비율이 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中小都市 施設의 경우는 25.3%이며, 郡部 施設의 경우는 15.3% 정도이다. 과외공부의 擔當敎師는 72.0%가 自願奉仕者였으며 私設學院은 20.0%이었다.

3) 育兒施設 아동의 경우, 實業界 고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취약점으로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내의 훈련 종목 및 수준을 보완해 주기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72.8%의 육아시설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994년 1년간 자격증 취득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27.2%의 시설에서는 敎育 및 訓練을 위한 支援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郡部施設은 30.0%, 소규모시설은 36.5%로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일부 兒童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의 경우 施設의 敎育·訓練科目의 內容이 시대의 要求나 入所者의 適性에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의 退所後 社會適應이나 就業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 從事者의 專門性 不足 및 높은 離職率

1) 施設從事者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社會福祉士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아동에게 전문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결과 育兒施設 從事者의 경우 73.3%가 高等學校 졸업 以下의 학력이었으며, 大學 以上의 학력은 25.7%이었으나 大學 졸업자중 社會福祉 專攻者는 11.4%에 불과하였다. 전체 保育士중에서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者는 14.4%에 불과하였다.

2) 이러한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은 종사자 배치기준의 비합리성, 종사자의 급여수준과 근로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한 것이다. 현행의 근로조건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유치·확보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종사자의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아동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조사결과 育兒施設 全體從事者 1人當 兒童數는 6.6명으로 나타났다. 保育士 1인당 아동수는 14.0명으로서 정부보조기준과 일치하고 있으나 보육사 명의로 운전기사나 경리 등 타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제외한다면 실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사는 더 많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施設從事者들의 給與는 같은 분야의 國公立施設 종사자 급여의 7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보육사의 91.1%가 시설내에 거주하며 교대제 없이 근무하면서도(保育士의 勤務時間은 일일 평균 20.3시간) 延長勤勞手當, 休日勤務手當 등의 法定手當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여수준에 대해

종사자의 27.8%는 만족하며, 34.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7.5%의 종사자들은 不滿足을 나타내었다. 불만족의 비율은 郡部施設과 小規模施設에서 각각 54.6%와 44.4%로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비례하여 종사자의 離職率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3. 施設 運營을 위한 政府補助金 支給體系의 非合理性

가. 政府補助金 算定基準의 非合理性

1) 最低生計費 水準 以下의 生活費 및 運營費

育兒施設 兒童의 주·부식비에 대한 滿足度는 調査結果 52.0%가 만족, 39.6%는 보통, 8.4%는 不滿足으로 나타났고, 옷·신발에 대한 滿足度 는 47.8%가 滿足, 36.1%가 보통, 16.1%가 不滿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施設兒童의 滿足度는 생각보다 比較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5년도 生活保護事業指針에 의한 施設保護費(72,000원)중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는 生計費 支援額은 施設保護對象者의 最低生活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비교적 滿足度가 높게 나타난 것은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政府補助金 外에 地方別 追加支援金과 民間支援金으로 生計費가 보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地方別 追加支援金과 民間支援金은 地方別, 施設別 형편에 따라 상이하며, 財政이 건실하지 못한 地方과 施設運營者의 力量이 부실한 施設은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基本生計費는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政府補助金으로 확실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施設의 管理運營費의 算定基準은 非現實的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이 시설아동에게 '안락한 家庭'의 대체서비스를 提供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 政府補助金 支給項目이 制限되어 있음

政府補助金의 支給項目은 수용아동의 最低生計, 기본적 교육 및 기본적인 施設運營에 필요한 項目에 국한되어 있으며, 兒童의 自活이나 社會適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所要되는 敎育·訓練費가 거의 配定되어 있지 못하다. 職業輔導施設 및 示範營農育兒園에 책정되어 있는 職業訓練費와 營農訓練費의 수준도 실질적인 職業輔導나 營農 訓練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나. 政府補助金의 入所者比例 支給方式의 非效率性

入所者數에 比例한 政府補助金 支援方式下에서는 수용자가 많을수록 運營費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施設兒童數가 적을수록 兒童當 支出單價는 높아 小規模施設의 運營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도 全體 育兒施設當 平均 支出額은 年間 2억7천백만원이며, 施設兒童當 평균 지출액은 年間 3백9십만2천원이었으나 60명미만 소규모시설의 지출액은 3백9십9만원이었다. 최근 施設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數는 감소하여 現員은 定員의 약 71.0%를 밑돌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入所兒童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要保護兒童을 무분별하게 입소시키기도 하고 施設保護兒童의 長期收容을 유도하기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地方自治團體別 地方費 追加支援金의 非衡平性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政府補助金 이외에 各 地方自治團體別 地方費 補助金은 각 자치단체의 財政形便과 의지에 따라 큰 差異를 보인다. 이에 따라 施設兒童과 從事者의 處遇 및 施設運營에 있어서 地域間 衡平性의 問題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4. 施設 住居環境의 集團性 및 閉鎖性

가. 大規模 集團收容 形態

現施設의 住居環境은 家庭的 環境과는 거리가 멀어 兒童의 正常化에 지장을 초래한다. 최근 施設의 住居形態가 집단기숙사로부터 小宿舍이면서 共同炊事形態(48.7%)로 變化되고 있으나, 여전히 集團寄宿舍形態는 42.9%에 달하고 있다. 小宿舍로의 住居形態 轉換은 大都市 및 大規模施設보다 郡部 및 小規模施設에서 더 미흡한 狀態에 있다. 또한 58.5%의 施設에서 한방에 5명이상의 兒童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고, 한방에 7~8명이상의 兒童들이 함께 기거하는 경우도 21.1%나 된다. 이러한 集團收容形態의 住居環境에서는 兒童의 個人的 私生活이 보장될 수 없으며 從事者의 개별적 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集團生活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施設의 住居環境은 성장기에 있는 施設兒童의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 소위 '施設病'의 가장 큰 原因이 되기도 한다.

나. 地域社會와 遊離된 環境 및 閉鎖的 運營

中小都市 및 郡地域 소재의 많은 施設이 地域社會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施設兒童 뿐만 아니라 從事者의 正常化 및 社會化에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일부 敎護施設의 경우 窓門에는 쇠창살, 出入口에는 시건장치가 設置되어 있고, 현관 등 主 出入口에 警備員이 배치되어 收容者의 임의 출입을 완전히 統制하고 있다.

5. 管理運營의 閉鎖性 및 非合理性

가. 私的 運營體系

1) 아직도 많은 施設運營者들은 施設이 이미 社會福祉法人化되었고 그 운영이 政府豫算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설을 個人의 私的 財産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당수 시설의 경우 施設運營者는 施設長과 法人 理事를 겸하고 있으며, 法人理事會는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親族 爲主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公益性보다 私的 利益을 추구할 可能性이 있다.

2) 施設運營者의 私的運營體制로 인하여 施設의 運營은 시설운영자의 能力과 價値觀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 현재 兒童福祉收容施設의 경우 70세·80세를 넘긴 設立者가 아직도 施設運營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施設設立當時의 救貧次元의 施設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收容保護 위주의 運營方式을 고수할 뿐 급변하는 社會에 능동적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있다.

나. 施設의 地域社會 開放努力 不足

작년 1년동안 自願奉仕者數는 育兒施設의 경우 施設當 평균 41.1명이었으나, 적은 施設은 10명에서부터 많은 施設은 70명까지 施設間 差異가 크다. 郡部 施設의 40.0%는 10명이하의 自願奉仕者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都市地域 施設에 비해 매우 低調하다.

施設이 位置하고 있는 管轄 行政機關이나 團體와의 協調정도를 보면, 수용아동의 入·退所에 직접관계가 되는 관할 동사무소 및 구청과 수용아동의 취학관계로 인한 管轄學校와는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企業體나 其他 社會團體의 協調는 낮았다. 施設은 아

직까지 地域社會와 交流가 부족하여 地域住民을 위한 社會福祉機關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家族連繫 프로그램의 不在

施設兒童과 그의 家族 및 親戚과의 紐帶는 兒童의 早期 家庭復歸에 중요한 요인이다. 育兒施設의 경우 收容兒童의 75.7%는 父母 또는 緣故者가 있으며, 49.6%의 아동은 시설 밖 가족 및 친척을 訪問한 경험이 있고, 41.5%의 아동은 그들의 가족 및 친척이 시설로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이 경우 방문을 주고 받는 친척은 주로 父母의 兄弟姉妹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家族 및 親戚과의 交流는 都市보다는 郡部의 시설아동이, 小規模施設보다는 大規模施設의 아동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交流는 施設運營者나 關聯機關에 의해 公式的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陰性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施設兒童의 早期 家庭復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家族連繫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行政上의 問題點

가. 서비스 傳達體系의 非體系性

社會福祉施設과 관련된 行政體系는 福祉對象別, 福祉業務別, 福祉財源別, 행정단위 조직체계별로 多元化되어 있어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社會福祉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施設은 行政處理上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年齡層의 要保護兒童임에도 障碍兒福祉施設, 浮浪兒善導施設, 母子保護施設, 兒童福祉施設, 保育施設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部署가 中央部處,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別로 상이하다. 따라서 施設의 目的事業 變更 또는 사업확대

시 認·許可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不協和音이 노출되기도 한다.

나. 指導·監督의 形式性

法的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施設運營에 대한 行政官署의 指導·監督은 行政擔當者들의 전문성 부족 또는 施設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形式的 水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 法·制度上의 問題點

가. 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規程의 死文化

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上의 '사회복지법인은 法人 및 施設의 연간 運營經費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을 소유'토록 하는 규정은, 대다수 社會福祉法人의 현실적 財政能力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이미 1994년도 이후 法人의 運營費 自體負擔比率이 부랑인선도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일체 폐지되었고, 兒童福祉施設 및 老人福祉施設의 경우도 10%로 下向調整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死文化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이 條項의 폐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施設設置 基準의 非合理性

社會福祉事業法의 施設設置 基準은 시설의 最小規模를 30인 이상으로 規定하고 있어 施設의 小規模化, 家庭化를 가로막고 있다.

다. 從事者 配置基準의 非合理性

國庫補助金事業 수행지침에 의한 從事者 配置基準은 施設兒童에게

個別的 關心과 專門的 保護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에서 保育士 1人當 兒童 40人을 담당하도록 하는 配置基準으로는 敎護·善導 및 自活訓練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國庫補助金事業 수행지침에 의한 從事者 配置基準은 法的 配置基準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充足시킬 수 있도록 하는 措置가 필요하다.

라. 施設保護對象兒童의 施設入所 資格의 非現實性

영·육아시설의 入所對象은 兒童福祉法上으로는 '保護者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兒童'이지만, 生活保護法上으로는 施設保護對象者로서 '無依無托한 兒童'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施設兒童의 75.7%가 父母 또는 緣故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이러한 生活保護法的 入所資格은 무의미하며 부모 또는 연고자가 兒童과 陰性的인 關係를 가지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改善이 요구된다.

마. 退所兒童의 退所後管理 不在 및 住居保障의 未備

1) 育兒施設 兒童은 18세가 되면 退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施設生活에서 自立·自活 能力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이 退所할 경우 한 사람의 社會人으로서 사회에 適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施設退所 兒童中에는 保護者가 없거나 있어도 保護者의 役割을 하지 못하는 父母인 경우가 많으므로 退所後에도 이들에 대한 專門的인 指導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退所後管理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특히 施設兒童이 退所後 가장 먼저 당면하는 問題는 住居問題이다. 政府에서 退所後의 住居保障 方案의 하나로 地方別로 65~200만원

의 自立支援金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金額이 地方別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金額이라 해도 두서너명이 함께 모아도 방 한 칸 전세 얻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退所兒童을 위한 自立支援施設이 있으나 交通이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施設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入所率이 매우 낮은 狀況이다. 그러므로 施設兒童의 住居保障은 시급히 解決되어야 할 課題이다.

바. 兒童關聯 法 및 行政體系의 未備 및 多元化

동일한 연령층의 要保護兒童임에도 불구하고 兒童이 어느 施設에 配置되느냐에 따라 각각 상이한 法體系 및 行政體系에 따라 처리됨으로서 要保護兒童에 대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 一貫性이 없다. 障碍兒 및 浮浪兒의 경우 아직도 發達의 여지가 많음에도 成人들과 함께 各各 障碍人福祉法, 浮浪人善導施設運營規定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兒童으로서의 특수한 慾求가 인정되지 않고, 發達에 필요한 專門的인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兒童을 正常兒童과 障碍兒童으로 구분하여 障碍兒童은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障碍別로 障碍人福祉施設에 배치하고 있으나, 正常兒童과 障碍兒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虛弱兒童, 自閉症兒童, 情緖障碍兒童은 현 施設體系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外國의 경우 이들 特殊兒童 뿐만 아니라 障碍兒童까지도 하나의 兒童福祉體系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虛弱兒施設은 한 때 兒童福祉法施行令 제2조에 규정되었다가 削除되었고, 현재 情緖障碍兒施設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개 施設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實情이다. 따라서 障碍人福祉體系에 포함되지 않은 身體虛弱兒童, 自閉症兒童, 情緖障碍兒童은 물론 浮浪兒童, 障碍兒童을 아동시설보호체계에 포함시켜 機能別로 施設을 設置·運營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 2節 改善方案

兒童福祉施設과 관련한 問題點에 대응하기 위한 改善方案은 크게 巨視的 側面과 微視的 側面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前者는 要保護兒童의 절대수 감소, 特殊保護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增加, 要保護兒童의 특성 변화, 地方自治制의 본격 실시, 政府의 地域福祉 및 在家福祉의 비중 확대 등 施設의 外的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施設이 어떻게 變化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方案이고, 後者는 施設 入所 兒童의 바람직한 養育을 위해 施設의 運營이 어떻게 變化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方案이다.

巨視的 側面에서의 政策의 基本方向은 첫째 環境變化에 대응하기 위한 施設의 機能 調整·轉換, 둘째 施設의 家庭保護 機能 强化이다. 微視的 側面에서의 政策의 基本方向은 시설의 관리운영이 서비스 제공자 위주가 아니라 兒童 爲主로 시행되어야 하며, 短期的인 低費用보다는 長期的인 費用效果 中心의 生産的 福祉가 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兒童爲主의 生産的 福祉가 되기 위해서 政策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施設保護 水準의 向上, 둘째 自活·自立支援體制 確立, 셋째 合理的 人力 配置 및 人力의 專門性 確保, 넷째 施設의 小規模化·家庭化, 다섯째 施設運營의 合理化·開放化이다.

이와같은 基本 政策方向에 따라 政策課題와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環境變化에 對應한 施設의 整備 및 擴充

일반적인 保護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영·육아시설의 需要 減少와 心理·情緖的·身體的 治療 및 敎育, 敎化 및 善導 등 특수보호 목적

의 專門的 施設의 수요 증가에 對應하여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施設은 정비하고 부족한 施設은 확충하되 旣存施設의 機能 調整·統合·轉換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地方自治制 실시로 인해 施設은 地域別 福祉慾求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므로 施設의 整備 및 擴充은 地域別 福祉慾求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政府는 地域保護 및 在家保護 政策을 강조하고 있는데 地域保護 및 在家保護는 그 地域의 利用施設의 擴充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旣存의 社會福祉收容施設은 시설이 가진 專門機能을 활용하여 地域社會의 利用施設의 役割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政策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 旣存의 兒童福祉收容施設의 機能 調整·擴大

1) 현행 兒童福祉法 施行令 제2조에 의하면 兒童一時保護施設은 家出兒童·浮浪兒童 其他 要保護兒童을 일시 入所시켜 보호하고 兒童의 來歷,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兒童에 대한 將來의 養護對策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父母의 疾病, 父子家庭, 父母의 出他, 冠婚喪祭 參與 등으로 夜間一時保護, 緊急一時保護, 1개월미만의 一時保護가 필요한 兒童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兒童一時保護施設의 機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調査結果에 의하면 하나의 社會福祉法人이 복수의 福祉施設을 運營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嬰兒施設의 경우 21개 施設中 8개소), 또한 현재는 運營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運營할 意思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嬰兒施設의 경우 21개 시설중 4개소). 이는 社會福祉法人의 經營基盤 强化와 效率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람직한 現狀으로서 장

려해야 할 것이다. 가령 嬰兒施設, 育兒施設을 운영하는 法人은 兒童相談所, 一時保護施設, 保育施設 등 兒童福祉施設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施設인 障碍人福祉施設, 社會福祉館 등의 複合運營도 장려한다. 그러나 물론 施設의 立地條件 및 運營與件에 따라서 그 內容 및 規模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3) 敎護施設은 兒童의 대부분이 家庭法院,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 少年部 支院에서 보호위탁된 兒童들로서, 그동안 社會에서 閉鎖·隔離된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一般社會의 偏見을 조장하는 면이 있었다. 앞으로 敎護施設은 施設의 敎護活動 및 內容을 地域社會에 啓蒙하고, 開放的으로 운영함으로써 地域社會의 問題兒童의 保護·善導의 機能을 하도록 한다.

나. 兒童의 特性 및 慾求에 따른 專門施設의 擴充

旣存施設에 混合收容되어 있는 障碍兒, 低能兒, 情緖障碍兒, 浮浪兒 및 非行兒童 등은 專門的 治療·再活을 위해 分離 收容해야 하므로 兒童特性에 따라 專門施設을 확충하되, 旣存의 施設로 하여금 專門施設로 轉換할 것을 유도한다. 또한 현행 兒童福祉法과 障碍人福祉法 體系內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虛弱兒施設, 自閉症兒施設 등을 兒童福祉法에 규정하고 同 施設을 政府가 시범적으로 設置·運營하고 그 확대실시를 꾀한다.

다. 施設의 機能轉換에 따른 認·許可 條件 緩和

兒童福祉施設의 效率的 活用을 위해 旣存의 施設이 障碍人福祉施設, 老人福祉施設 등으로 目的事業을 변경하거나, 地域의 兒童, 障碍人, 老人 등을 위해 在家福祉事業을 병행하고자 할 때, 政府에서는 이

에 따른 施設의 設置·運營의 認·許可 條件을 완화하거나 申告에 의하여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 各 行政單位別 擔當部署間 협조가 필수적이다.

2. 家庭保護機能의 强化

兒童福祉收容施設의 役割은 가족이 없는 兒童, 또는 家族이 있어도 兒童 또는 그 家族에게 問題가 발생하여 家庭에서 保護할 수 없는 兒童에게 가정을 代理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施設保護는 家庭保護의 次善策이라는 입장에서 家族이 있는 兒童들의 施設入所는 가능한 豫防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一時的으로 施設保護가 제공되고 이들의 狀況이 개선되면 가능한 早期에 家庭에 復歸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施設入所 豫防과 早期 家庭復歸를 위해서는 兒童의 入·退所 管理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兒童에 대한 措置와 함께 家庭에 대한 支援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단 施設에 입소한 兒童에 대해서는 家族과의 關係를 持續·强化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 入·退所 管理制度 强化

지금까지 兒童相談所와 市·郡·區 兒童福祉 擔當者에 의해 行政的으로 이루어지던 入·退所 決定은 아동 및 가족의 상태에 근거한 專門的 審査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施設入所를 가능한 豫防하고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棄兒나 迷兒가 아니라도 家庭에 문제가 있어서 父母나 緣故者가 兒童을 施設에 보호할 것을 희망하면 兒童相談所의 專門職員이나 市·郡·區 兒童福祉指導員이 아동의 家庭環境과 保育與件 등을 조사·파악하여 市·郡·區 兒

童福祉委員會에 入所與否 審議를 요청, 同委員會에서 입소가 결정되면 市·郡·區廳長이 시설 수용의뢰를 하도록 한다. 退所 또한 專門職員의 조사와 兒童福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市·郡·區 單位에 兒童福祉委員會가 구성되어야 하며, 兒童福祉委員會의 위원들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市·郡·區 兒童福祉委員會의 위원은 洞·邑·面에 委囑되어 있는 兒童委員 6명정도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은 반드시 專門社會事業家가 위촉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나. 家族連繫프로그램 및 家族支援 프로그램의 制度化

施設兒童의 早期 家庭復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家族과 兒童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維持·强化시켜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토·일요일이나 방학기간중 또는 수시로 外出·外泊을 실시하며, 父母 또는 家族의 施設訪問을 장려한다. 또한 定期的인 家族캠프를 實施하기도 한다. 父母 및 緣故者의 相談指導를 통해 施設入所後 친자관계 인연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며, 만약 父母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兒童福祉指導員 및 施設의 生活指導員이 연락하여 問題解決을 도와주도록 한다.

다. 施設保護對象者의 施設入所 資格의 擴大

施設兒童의 75.7%가 父母 또는 緣故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에서 生活保護法上의 '無依無托한 兒童'이란 施設 入所資格은 無意味하며, 父母 또는 緣故者가 兒童과 陰性的인 關係를 가지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兒童福祉施設의 入所資格은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兒童福祉法에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3. 施設保護 水準의 向上

施設兒童의 保護水準은 衣食住의 충분한 保障은 물론 이들 兒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自活·自立能力을 배양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補助金 支援體系가 改善되어야 하며, 새로운 財政 確保方案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 國庫補助金事業 遂行指針에 의한 政府補助金의 上向 調整

施設兒童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副食費, 被服費, 燃料費 등의 生計保護費, 授業料 이외의 敎育費 등 一般保護費 뿐만 아니라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의 施設管理運營費에 대한 政府補助金을 現實化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方案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政府補助金 支給水準은 적어도 소년원 등 國·公立施設의 支給水準이 참고될 수 있다.

나. 家庭單位別 標準生計費 算出方式에 의한 支援

政府補助金의 項目別 入所者數比例에 의한 政府補助金 支給方式의 非效率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政府補助金은 일정규모(가령 50명)까지는 一定數(가령 7~8명)만큼을 家庭單位化하여 單位別 標準生活費 및 運營費를 算出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규모를 넘는 收容兒童에 대해서는 減率을 적용하여 兒童의 無分別한 入所와 長期收容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政府補助金 支援比率의 上向 調整

兒童福祉收容施設의 運營은 政府의 委託業務라는 입장에서 施設運營費 및 人件費에 대한 政府補助金을 他分野의 施設과 마찬가지로 100%로 上向 調整하여야 한다.

라. 民間支援金 動員의 體系化

현재 各 法人別, 施設別, 目的事業別로 전개되고 있는 民間支援金 募金方案을 各 廣域自治團體別 '共同募金'의 형태로 體系化하여 민간 자원 동원을 활성화하며, 施設別, 地域別 民間支援金의 격차를 축소하도록 한다. 民間支援金은 入所者를 위한 프로그램을 開發·施行하는데 주로 使用하도록 하며, 그 使用內譯을 공개하도록 한다.

4. 自活·自立 支援體制 確立

施設兒童들이 퇴소후 독립적이고 경쟁력있는 한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아동의 단순한 衣食住 해결을 넘어서 自立·自活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施設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선 自立心, 積極性, 責任感, 自律性 등 人性을 개발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知識과 學識을 갖추도록 支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經濟的으로 自立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또한 施設兒童이 건전하고 責任感있는 市民으로 社會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施設 退所後에도 지속적인 關心과 配慮가 있어야 한다.

가. 專門的 個別 및 集團 社會事業 프로그램의 施行

兒童의 心理的·情緖的·精神的 再活을 위한 專門的 相談, 治療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兒童의 人性을 개발하는 專門的 個別 및 集團 社會事業 프로그램을 定期的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내에 專門人力을 확보하거나 앞으로 설립될 保健福祉事務所에 配置될 專門社會事業家를 活用하도록 誘導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專門社會事業家의 自願奉仕活動을 활용하도록 적극 誘導해야 한다.

나. 學習能力 및 特技 開發 프로그램의 施行

施設兒童의 學習能力의 향상을 위해 育兒施設의 경우 施設從事者가 학교교사와 정례 모임을 갖도록 한다. 부족한 學科의 補充을 위해서는 大學生 또는 一般人 自願奉仕者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學院受講을 받을 수 있도록 政府에서는 財政支援을 하도록 해야 한다.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의 경우에도 學齡期에 있는 兒童들을 위해서는 學習指導 프로그램의 시행을 義務化하도록 해야 한다.

다. 就業支援 프로그램의 活性化

育兒施設兒童의 경우 실업계고교의 敎科內容의 脆弱性을 보완해 주기 위해 資格證 取得을 위한 별도의 學院受講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職業輔導施設과 敎護施設의 경우 職業訓練 種目을 시대변화에 부합되고 就業이 용이한 種目으로 選擇 施行하도록 해야 한다.

라. 社會適應 프로그램의 開發·施行

施設兒童의 퇴소후 社會適應 能力을 높이기 위해 施設 退所前 일정기간 地域社會에서 생활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自炊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서 施設에서는 부설 그룹홈을 운영하며, 政府는 이에 대해 豫算 支援을 하도록 한다.

마. 退所兒童의 事後管理制度 確立 및 住居保障

退所兒童들에 대해서는 退所後 一定期間(적어도 2년) 該當施設에서 주소를 파악하고 退所後 事後管理를 하도록 制度化해야 한다. 특히 施設兒童들이 退所後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인 住居問題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退所兒童들의 住居保障 方案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開發

施行해야 한다. ① 自立支援施設을 各 廣域自治團體別로 확충하되, 交通의 要地에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旣存의 育兒施設內·外에 별도의 附設生活館을 설치하여 退所兒童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居住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도록 한다. 단 이때 生活費는 自立支援施設과 마찬가지로 本人이 負擔하게 한다. ③ 현재 各 地方自治團體別로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는 退所兒童 自立支援金을 실질상의 전세자금이 될 수 있도록 現實化하여 國庫補助金事業의 一環으로 住宅賃貸料를 지원하거나 永久 賃貸아파트를 임대해 준다.

5. 合理的 人力配置 및 人力의 專門性 確保

施設兒童의 個別的인 慾求에 대응한 專門的 保護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人力이 合理的으로 配置되어야 하며, 專門性있는 人力이 確保되어야 한다. 한편 專門性있는 從事者 確保를 위해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 從事者의 勤勞條件의 改善이다. 從事者의 專門性 確保와 근로조건의 改善은 앞으로 收容施設이 在家福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先決되어야 할 課題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從事者 配置基準의 改善

從事者들이 收容兒童에게 專門的이고 個別的인 保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從事者에 대한 收容兒童의 比率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1997년부터) 法定 基準에 맞게 措置하고 단기간 내에 그 比率을 더욱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영아원의 경우 兒童 1.7명당 1인의 看護師를 配置하고, 육아원의 경우 兒童 6명당 1인의 保姆를 配置하고 있는 日本의 從事者 配置基準을 參考하도록 한다. 더

구나 敎護施設과 職業輔導施設의 保育士 配置基準은 擔當兒童數를 育兒施設의 基準보다 더 줄여 實質的인 個別保護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從事者 配置基準은 밑에 언급될 交代勤務制(또는 1일 8시간 勤務制)와 맞물려 있는 바, 법상의 從事者 配置基準은 交代勤務制(또는 1일 8시간 勤務制)를 前提로 해야 한다.

나. 從事者 賃金水準의 上向調整

專門性있는 從事者를 確保하고 이들이 施設活動을 생애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施設從事者들의 賃金水準을 上向 調整하여야 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國公立施設 水準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 專門從事者의 賃金은 社會福祉專門要員의 水準으로 향상시킨다.

다. 法定 勤勞時間 原則의 適用 및 法定手當 支給

施設從事者들도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이들의 勤務時間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이 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施設從事者들은 施設兒童의 代理父母의 役割을 하여야 하는 業務의 특성상 이들의 交代勤務制는 논난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의 勤務時間을 원칙으로 하되, 超過勤務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法定手當을 지급하도록 하고 追加人件費를 政府가 부담토록 한다. 交代勤務制로 인해 兒童에게 미칠 否定的 影響과 24시간 全日勤務制로 인해 종사자에게 미칠 否定的 影響을 보완하기 위하여 2인의 保育士가 法定 配置基準에 의한 兒童數를 담당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라. 專門 社會福祉士 確保 및 保育士의 專門性 確保

施設의 專門性 確保를 위해서 施設長과 總務中 1인은 반드시 社會

福祉士 1급으로 配置토록 한다. 또한 育兒施設, 一時保護施設, 職業輔導施設, 敎護施設에는 兒童數에 관계없이 生活指導員 또는 相談要員을 1명 이상 配置하고 반드시 社會福祉士 1급으로 배치한다. 其他 施設의 法的 社會福祉士 配置基準을 반드시 준수토록 한다.

保育士의 專門性 確保를 위하여 保育士의 資格을 점차 上向 調整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는 保育專門大 制度와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제도를 施行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를 참고하도록 한다.

마. 從事者의 定期的 補修敎育 施行

旣存 從事者들의 專門性 提高를 위하여 從事者들은 최소한 연 2회 각 1주의 補修敎育을 定期的으로 받도록 하며, 이외에 시설관련 연찬회에 참석할 機會를 가능한 많이 가진다. 그럼으로써 專門知識의 재충전 및 가치관의 재정립을 도모하도록 한다.

바. 優秀從事者 褒賞制度 實施

매년 施設評價를 통해 優秀從事者를 선정하여 褒賞하고 國內·外 關聯機關 및 施設의 硏修 및 視察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인다.

6. 施設의 小規模化 및 家庭環境 造成

施設兒童의 個性과 私生活을 保障해주고 이들에 대한 從事者의 個別的인 關心과 保護를 保障해 주기 위해 施設은 集團收容形態에서 小規模의 家庭 形態로 그 住居形態를 變化시켜 家庭環境이 造成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敎護施設이나 職業輔導施設도 例外가 아니다. 특히 一部 敎護施設의 閉鎖的 住居形態는 반드시 改善되어야 한다. 施設의

小規模化 및 家庭化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政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旣存施設의 住居形態를 小宿舍制 또는 그룹홈으로 改編

旣存施設은 몇개의 小規模 生活單位로 再改編하여 각각 적절한 수의 保育士와 兒童으로 獨立世帶를 구성하여 生活하도록 한다. 施設의 增·改築時에는 소숙사 및 그룹홈의 形態로 유도한다. 현재 가톨릭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未認可 그룹홈이나 SOS마을의 住居形態가 참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인가시설인 E집은 1994년 5월 현재 36명의 식구가 3개 洞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된 3개의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1개 그룹홈에서는 2명의 姨母가 약 10명의 女兒들과 생활한다. 「SOS마을」은 全世界的인 組織網을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로서 우리나라에 3개 마을(시설)이 있다. 하나의 마을에는 여러개의 獨立世帶가 있고 각각의 독립세대는 1명의 어머니와 10명 내외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施設設置 基準의 全面 改定

大規模施設을 전제로 하고 있는 兒童福祉施設 設置基準은 그룹홈, 小宿舍制度를 施行할 수 있도록 全面 再調整하여야 한다.

7. 施設運營의 合理化 및 開放化

施設이 內·外的인 환경변화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地域社會福祉센타의 役割을 하기 위하여는 合理的이고 開放的인 運營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施設의 私的 運營體系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合理的이고 專門的인 運營을 도모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案이 필요하다.

가. 施設의 運營・프로그램・設備 開放

施設運營의 開放을 위하여 法人理事會 構成에 地域社會 住民代表를 참여시키며, 法人 및 施設의 豫算·決算 內容을 매년 1회씩 地域新聞에 공고한다. 施設에서는 晝間保護施設, 短期保護施設 등의 利用施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地域社會 家庭福祉센타의 役割을 하도록 한다. 또한 施設이 가지고 있는 강당, 운동장, 독서실, 놀이터 등의 設備와 裝備를 地域社會에 實費 또는 無償으로 대여한다. 이를 위하여는 施設從事者의 專門性이 確保되어야 하며, 施設의 設備 및 裝備의 現代化가 필수적이다.

施設에 대한 國民의 否定的 認識을 불식시키고 國民의 肯定的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大衆媒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施設의 機能·役割 및 運營狀況 등을 홍보한다. 또한 施設은 地域行事에 적극 참여하고 施設行事에 地域 住民을 초청하도록 해야 한다.

나. 自願奉仕者 活用의 體系化

施設兒童의 正常化, 社會化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施設內 人力不足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에서는 地域內 自願奉仕者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앞으로 社會的으로 自願奉仕者 활동이 活性化될 것이므로 自願奉仕者를 施設의 인력체계내에 制度的으로 포함시켜 人力活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誘導한다. 이를 위하여 自願奉仕者의 管理는 시설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대신 基礎自治團體別로 (保健福祉事務所에) 一元化하여 自願奉仕者의 募集, 訓練, 配置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 施設長의 停年制 導入 및 老後保障

合理的이고 能動的인 經營體制를 保障하기 위하여 施設長의 任期

를 65세로 制限한다. 또한 總務 以下 從事者의 停年은 60세 이하로 한다. 단 이들의 老後保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方案의 하나로 退職金을 國家 또는 地方政府 財政으로 支給하도록 한다.

라. 施設 運營 및 評價指針 開發

效率的이고 合理的인 施設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全施設들이 共通的으로 運營의 準據로 삼을 수 있는 施設運營 및 評價指針을 개발토록 한다. 運營指針의 內容은 ① 施設運營의 方向 設定(機能·役割規定) ② 經營計劃 및 會計 ③ 理事會 運營 ④ 地域社會關係 ⑤ 施設收容人에 대한 서비스 ⑥ 職員 關聯 ⑦ 入·退所 關聯 ⑧ 安全·衛生關聯 事項 등으로 各 事項別 상세한 要求 項目으로 구성토록 한다.

8. 法·制度·行政 支援體系의 整備

兒童福祉施設의 合理的 運營에 걸림돌이 되는 制度的 및 行政的 不合理性을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法 規定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各 項別 改善方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두가지 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兒童關聯 法體系의 再調整

18세 미만 兒童에 대한 福祉서비스는 모두 兒童福祉法 體系에서 統合하여 다루어질 수 있도록 法體系를 調整토록 해야 한다. 현재 兒童福祉法이나 障碍人福祉法 體系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虛弱兒童, 自閉症兒童, 情緖障碍兒童 뿐만아니라 障碍人福祉法 體系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障碍兒童까지도 소위 '正常化 理念'과 더불어 '發達保障의 理念'에 근거하여 모두 兒童福祉法 體系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

록 法體系를 統合·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浮浪兒善導施設 運營規定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兒童, 母子福祉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兒童들도 모두 兒童福祉法 體系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크든 작든 이들이 가진 潛在力을 開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規定의 補完

社會福祉事業法 施行規則上의 '社會福祉法人은 法人 및 施設의 年間 運營經費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을 所有'토록 하는 規定은 이미 運營經費 自體負擔分의 全面 閉止 또는 下向調整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規定은 빠른 시일 내에 閉止하도록 해야 한다.

參考文獻

권오구,「韓國 兒童福祉 政策에 관한 硏究 - 要保護兒童을 중심으로 -」,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9.

김국도,『社會福祉施設 政府支援金에 관한 硏究』,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0.

김성이,「地方自治制와 施設兒童福祉」,『韓國兒童福祉便覽』, 上卷,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1992, pp.380～388.

김오현,「福祉施設의 現況과 改善方案」,『韓國兒童福祉 便覽』, 上卷,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1992, pp.58～71.

김용택,「社會福祉施設 서비스의 改革의 課題와 展望」,『韓國兒童福祉便覽』上卷,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1992, pp.103～116.

김현용,「要保護兒童을 위한 施設保護의 改善方向」,『兒童福祉學』, 第2號, 韓國兒童福祉學會, 1994.

김형배,『地方自治論』, 계명사, 1988.

남정자 외,『精神保健의 現況과 政策課題』,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4.

大韓民國「社會福祉事業法」,「生活保護法」,「兒童福祉法」,「老人福祉法」,「母子福祉法」,「障碍人福祉法」,「淪落行爲等防止法」,「영유아보육법」,「社會福祉事業法運營指針」,「地方自治法」

박광준,「日本 社會福祉改革의 動向과 展望」,『動向과 展望』, 第22號, 1994.

_____,「日本 社會福祉財政 改革과 第2次 臨時行政調査會」,『社會政策論叢』, 第4號, 1992.

박순일 외,『最低生計費 計測調査硏究』, 韓國保健社會硏究院, 1994.

박인화,『女性福祉施設의 實態와 家出靑少年 問題 -京畿女子技術學院 방화참사를 중심으로-』, 國會 立法調査分析室, 1995. 9.

박태영,「育兒施設의 社會化에 관한 硏究」,『韓國靑少年硏究』, 第2卷 第4號, 韓國靑少年硏究院, 1991, pp.70～85.

_____,「社會福祉施設 自願奉仕活動의 問題點과 改善策,『社會福祉』, 通卷 110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91, pp.85～112.

保健社會部,『社會福祉施設 實態調査』, 1991.

保健福祉部,『保健社會統計年譜』, 1968～1995 各年度.

_____,『主要 業務資料』, 1990～1995 各年度.

_____,『保健福祉部 所管 自治團體에 대한 國庫補助金 豫算』, 1990～1995 各年度.

_____,『1995年度 兒童福祉施設一覽表』, 1995.

_____,『婦女福祉施設現況』, 1994.

_____,『障碍人福祉施設一覽表』, 1994.

_____,『老人福祉施設現況』, 1995.

_____,『浮浪人善導施設一覽表』, 1995.

_____,『1995年度 婦女福祉事業指針』, 1995.

_____,『1995年度 生活保護事業指針』, 1995.

_____,『1995年度 障碍人福祉事業指針』, 1995.

,_____,『兒童福祉事業指針』, 1993～1995 各年度.

서상목·최일섭·김상균, 『社會福祉 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 活用方案』, 韓國開發硏究院, 1988.

성규탁,『社會福祉行政論』, 1987.

손의목,「施設退所 延長兒童의 自立支援方案」,『韓國兒童福祉學』, 創刊號, 韓國兒童福祉學會, 1993, pp.138～155.

施設問題硏究會,「施設內 性暴力에 대하여 -障碍人施設과 育兒施設을 중심으로-」,『障碍人 權益問題硏究所 政策討論會 資料』, 1995.

_____,『우리소리』, 1995年 5月號.

施設職員의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日本 영아원에 대하여」,『施設職員福祉新聞』第9號, 1992.

_____,「日本 保育院에 대하여」,『施設職員福祉新聞』第10號, 1992.

신섭중 외,『世界의 社會保障』, 유풍출판사, 1995.

안창수 외,『社會福祉施設의 效率的인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韓國人口保健硏究院, 1987.

_____,『最低生計費 計測調査 硏究』, 韓國人口保健硏究院, 1989.

오정수,「英國에서의 커뮤니티케어의 發展과 評價」,『韓國社會福祉學』, 通卷 24號, 韓國社會福祉學會, 1994.

_____,「社會福祉施設 退所, 延長兒童의 自立支援 프로그램 硏究」,『社會福祉』, 通卷 第110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91, pp.126～144.

이명숙,「育兒施設 退所靑少年 支援方案 硏究 - 當事者의 意識과 慾求를 중심으로」,『韓國靑少年硏究』, 第2卷 第4號, 韓國靑少年硏究院, 1991, pp.175～201.

이배근,「兒童福祉施設의 現況과 問題點」,『兒童福祉學』, 創刊號, 韓國兒童福祉學會, 1993.

이영희,『社會福祉施設行政』, 大邱大學校 출판부, 1994.

이정호 외,『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政府와 民間團體의 社會福祉機能分擔에 관한 硏究』,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90.

_____, 兒童福祉施設 皮收容者 福祉서비스를 위한 運營改善方案 硏究』,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92.

이혜경,「經濟成長과 兒童福祉政策의 변용 - 韓國의 經驗 -」,『韓國兒童福祉學』, 創刊號, 兒童福祉學會, 1993, pp.199～223.

위제하,「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勤勞條件」,『韓國兒童福祉 便覽』, 上卷,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1992, pp.432～441.

장인협,「兒童福祉와 兒童福祉施設의 發展方向」,『韓國兒童福祉 便覽』, 上卷, 韓國兒童福祉施設協會, 1992, pp.277～285.

_____,「韓國 兒童福祉의 未來」,『韓國兒童福祉學』, 創刊號, 兒童福祉學會, 1993, pp.240～251.

_____, 오정수, 『兒童・靑少年福祉論』, 서울대출판부, 1993

_____, 이정호,『社會福祉行政』,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92.

全國經濟人聯合會 經濟社會開發院,『社會福祉施設 現況 및 隘路要因調査』, 1991. 1.

최영욱 외,『社會福祉施設論』, 1990.

최현 외,『要保護兒童의 支援方案』, 韓國靑少年硏究院, 1990.

통계청,『1960～2000 市·道別 推計人口』, 1994.

표갑수,「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發展方案」,『忠北社會福祉硏究』, 第2號, 淸州 忠北社會福祉硏究所, 1993, pp.43～64.

韓國社會福祉協議會,『社會福祉施設 運營費 實態調査 結果報告』, 1993.

_____, 社會福祉豫算對策委員會,「1996年 社會福祉施設 法人自負擔 問題 豫算要求 建議書」, 內部資料.

_____, 社會福祉新聞, 第239號, 1995. 10. 30(일자), 7면.

韓國精神療養協會,『精神疾患者療養施設一覽表』, 1995.

古川孝順·庄司洋子·三本松政之 編,『社會福祉施設』, 誠信書房, 1993.

_____,『兒童福祉改革』, 誠信書房, 1991.

_____,「地域福祉の供給システム」, 日本醫療企劃 編,『保健·醫療·福祉の總合年鑑 WIBA '93』, 1993.

宮埼昭夫,「日本における地域福祉政策の動向と展望」,『韓日兩國の社會福祉の動向と課題』, 韓南大學校 日本學 硏究所, 1990, pp.67～68.

吉田久一,『日本社會事業の歷史』, 勁草書房, 1985.

吉澤英子 外,『兒童福祉』, 誠信書房, 1975.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施設運營のハンドブック』, 1994.

鹽原桓文,「日本の地方自治制福祉政策の發展過程」,『地域福祉政策』, 第6輯, 韓國地域福祉政策學會, 1992, pp.19～25.

飯田 進,「兒童福祉施設: 變革への課題と展望」,『社會福祉研究』, 第36號, 1985.

白石大介 外,『兒童福祉論』, 相川書房, 1992.

保田井進 외,『兒童福祉』 2, 1994.

福田垂穗 編,『これからの福祉施設體系』, 中央法規出版, 1987.

星野信也,「福祉施設體系の再編成と課題」,『社會福祉研究』, 第30號, 1982.

成懶龍夫 外,『福祉改革と福祉補助金』, ミネルウァ書房, 1989.

小室豊允,『社會保障と福祉施設の展望』,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7.

小笠原 祐次,「社會福祉施設變革への課題と展望」,『社會福祉研究』, 第36號, 1985.

日本國「憲法」,「社會福祉8法」,「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

日本大阪市 民生局,『1995년도 보육조치비 징수 금액표』, 1995. 4.

日本醫療企劃 編,『保健·醫療·福祉の 總合年鑑 WIBA '93』, 日本醫療企劃, 1993.

字留野功一, 社會福祉施設と地域福祉サヒス: 轉換期の福祉政策, ミネルウア書房, 1995.

厚生統計協會,『國民の福祉の動向』, 1994.

Bell, Winifred, *Contemporary Social Welfare*, New York: Macmillan, 1983.

Bryce, James, *The American Commonwealth*, New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88.

Compton, Beulah 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Social Work: Structure, Function & Process*, Illinois: The Dorsey Press, 1980.

Colton M. J. and W. Hellinckx, *Child Care in the EC: Country-Specific Guide to Foster and Residential Care*, Hants: Ashgate Publishing Limited, 1993.

Department of Health,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Purchasing, Providing and quality*, London: HMSO, 1991.

Department of Health,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ol.4, Residential Care, London: HMSO, 1991.

Everett, Joyce, "Child Foster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NASW Press, 1995.

Frost, Nick and Mike Stein, *The Politics of Child Welfare: Inequality, Power and Change*, London: Harvester & Wheatsheaf, 1989.

Harding, Lorraine. F., *Perspectives in Child Care Policy*, London: Longman, 1991.

Gibelman, Margaret, "Purchasing Social Service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NASW Press, 1995.

Ginsberg, Leon, *Social Work Almanac,* 2nd ed., NASW Press, 1995.

Griffiths Report, *Community Care: Agenda for Action*, London: HMSO, 1988.

Laird, Joan and Ann Hartma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Free Press, 1985.

Lindsey, Duncan, *The Welfare of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Moore, Stephen, *Social Welfare Alive*, Cheltenham: Stanley Thornes Press, 1993.

Schaefer, Charles and Arthur, Swanson,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8.

Segal, Steven, "Deinstituitionalizatio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NASW Press, 1995.

Utting, William, *Children in the Public Care: A Review of Residential Care*, London: HMSO, 1991.

Wagner Report, *Residential Care: A Positive Choice*, HMSO, 1988.

Whittaker, James K., "Children: Group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ition, NASW Press, 1995.

附　錄

Ⅰ. 統計表/ *367*

1. 社會福祉施設 關聯 一般 統計表
   (附表 3-1 ~ 附表 3-13)
2. 施設現況 및 管理運營 調査 統計表
   (附表 4-1 ~ 附表 4-18)
3. 施設從事者 調査 統計表
   (附表 4-19 ~ 附表 4-62)
4. 施設兒童 調査 統計表
   (附表 4-63 ~ 附表 4-73)
5. 施設 退所兒童 統計表
   (附表 4-74 ~ 附表 4-82)

Ⅱ. 調査票/ *423*

1. 施設現況 調査票
2. 施設管理·運營 調査票
3. 從事者 調査票
4. 兒童 調査票

Ⅲ. 調査對象施設/ *475*

附錄 Ⅰ. 統計表

〈附表 3-1〉 社會福祉施設 種類

근거법	영유아[1] 보육법 제6조	아동복지법[2] 시행령 제2조	노인복지법[3] 제18조, 19조의2, 20조	모자복지법[4] 제19조	윤락행위[5] 등방지법 제11조	장애인[6] 복지법 제37조	생활[7] 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8] 제2조,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유형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노인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일시보호소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재활, 요양, 이용, 근로시설	왼쪽에 적은 7개 법률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민간보육 시설	영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자립 시설	[선도보호 시설]	지체장애		
	직장보육 시설	육아시설	노인요양 시설	미혼모 시설	[자립자활 시설]	시각장애		
	가정보육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실비양로 시설	일시보호 시설		청각장애	노인복지 시설중 무료시설	
		아동직업 보도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부녀 복지관		언어장애		
		조산시설	노인복지 회관	부녀 상담소		정신지체	아동복지 시설중 수용시설	
		아동전용 시설	[실비노인 복지주택]			장애인 요양시설		
		교호시설	유료노인 복지시설			장애인유료 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 시설중 수용보호 시설	왼쪽에 적은 7개 법에 명시된 시설 외에
		아동입양 위탁시설	양로시설			재활시설		부랑인선도시설
		[정서장애아 시설]	노인요양 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자립지원 시설	[노인복지 주택]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상담시설
			노인여가 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근로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경로당			점자도서관		기타시설
			노인교실			점서·녹음 서출판시설		
			노인 휴양소					

註: ☐는 이용시설, [ ]는 1995. 10 현재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설

1) 1994.12.23 법 개정. 2) 1994.12.23 시행령 개정. 3) 1993.12.27 법 개정. 4) 1989.12.30 법 전문 개정. 5) 1989.4.1 법 제정. 6) 1995.1.5 법 전문 개정. 7) 1982.12.31 법 전문 개정, 1990.12.1 시행령 개정. 8) 1992.12.8 법 전문 개정, 1993.6.9 시행규칙 개정

〈附表 3-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地域別 分布('94. 12. 31. 現在)

〈附表 3-2〉 社會福祉收容施設의 地域別 分布('94. 12. 31. 現在)

(단위: 개소, 명, %)

구분	1994 인구수 (천명)	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아) 시설		부녀시설		부랑인(아) 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나불구시설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총계	44,453	759	76,723	275	19,214	140	7.962	160	13,936	62	3,410	42	13,370	75	17,944	2	74	3	813
서울	10,727 (24.1)	103 (13.6)	12,249 (16.0)	47 (17.1)	4,320 (22.5)	12 (8.6)	998 (12.5)	26 (16.3)	2,457 (17.6)	12 (19.4)	450 (13.2)	5 (11.9)	3,433 (25.7)	1	591	-	-	-	-
부산	3,796 (8.5)	77 (10.1)	9,355 (12.2)	26 (9.5)	1,792 (9.3)	10 (7.1)	736 (9.2)	17 (10.6)	1,431 (10.3)	11 (17.7)	560 (16.4)	3	1,862 (13.9)	10 (13.3)	2,974 (16.6)	-	-	-	-
대구	2,247 (5.1)	50	5,630 (7.3)	21 (7.6)	1,249	8	404	10	1,274 (9.1)	6 (9.7)	467 (13.7)	1	1,471 (11.0)	3	725	1	40	-	-
인천	2,117 (4.8)	24	2,343	9	693	4	500	7	551	2	137	1	387	1	75	-	-	-	-
광주	1,214 (2.7)	32	3,081	10	700	7	521	7	558	4	167	1	506	3	629	-	-	-	-
대전	1,153 (2.6)	32	3,493	14	992	4	194	6	658	2	90	2	353	4	1,206	-	-	-	-
경기	7,280 (16.4)	89 (11.7)	7,324 (9.5)	29 (10.5)	1,664 (8.7)	25 (17.9)	1,095 (13.8)	22 (13.7)	1,899 (13.6)	2	144	3	1,126 (8.4)	8 (10.7)	1,396	-	-	-	-
강원	1,449 (3.3)	28	1,784	10	536	5	388	5	229	3	145	4 (9.5)	314	1	172	-	-	-	-
충북	1,373 (3.1)	41	5,202	8	473	8	584 (7.3)	12 (7.5)	1,282 (9.2)	2	83	4 (9.5)	1,093 (8.2)	7 (9.3)	1,687 (9.4)	-	-	-	-
충남	1,877 (4.2)	45	4,699	15	912	8	334	7	640	2	87	1	407	12 (16.0)	2,319 (12.9)	-	-	-	-
전북	1,917 (4.3)	54 (7.1)	4,678	19	1,441 (7.5)	13 (9.3)	606 (7.6)	8	629	5 (8.1)	340 (10.0)	4 (9.5)	483	5	1,179	-	-	-	-
전남	2,246 (5.1)	54 (7.1)	5,560 (7.2)	21 (7.6)	1,766 (9.2)	11 (7.8)	477	9	586	3	170	5 (11.9)	908	4	1,483 (8.3)	-	-	1	170
경북	2,750 (6.2)	53	5,419	15	1,086	11 (7.8)	523	10	864	5 (8.1)	330 (9.7)	3	504	7 (9.3)	1,435	1	34	2	643
경남	3,790 (8.5)	61 (8.0)	5,003	26 (9.5)	1,284	8	397	12 (7.5)	815	2	139	4	454	8 (10.7)	1,914 (10.7)	-	-	-	-
제주	517 (1.2)	16	903	5	306	6	205	2	63	1	101	1	69	1	159	-	-	-	-

註: □는 시설수 및 수용인원이 상위 5위 이내 지역임.

資料: 보건복지부, 각『시설 일람표』, 1995 및 내부 자료; 통계청,『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1994. 6.

〈附表 3-3〉 市·道別 市·郡·區 兒童福祉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구분	시설수 / 시·군·구수	없음	1	2	3	4	5	6~10	영·육아시설 없는 구
서울	25구	6	8	8	2	1	-	-	9
부산	15구 1군	3	7	4	-	1	1	-	3
대구	7구 1군	2	2	-	1	-	3	-	3
인천	8구 2군	6	1	1	2	-	-	-	6
광주	5구	1	2	1	-	-	-	1	1
대전	5구	1	1	-	-	2	1	-	1
경기	18시13군	16	8	3	3	1	-	-	16
강원	7시11군	13	2	2	-	1	-	-	13
충북	3시 8군	6	4	-	-	1	-	-	6
충남	5시10군	6	6	1	1	1	-	-	6
전북	6시 8군	8	2	-	2	-	1	1	8
전남	6시18군	11	9	2	1	-	1	-	12
경북	10시13군	12	8	2	1	-	-	-	12
경남	10시11군	5	11	2	1	2	-	-	5
제주	2시 2군	1	2	-	1	-	-	-	1
계	230시·군	97	73	26	15	10	7	2	102
(%)	(100.0)	(42.2)	(31.7)	(11.3)	(6.5)	(4.3)	(3.0)	(0.9)	(44.3)

資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1994.12.31현재).

〈附表 3-4〉 兒童人口 推計

(단위: 천명)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총인구	42,869	43,633	44,453	45,248	46,033	46,789
20세 미만 아동인구	15,541	14,999	14,517	14,227	14,041	13,718
비율(%)	36.3	34.4	32.7	31.4	30.5	29.3

資料: 1) 통계청, 『1985 센서스』.
2) 통계청,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1994.6

〈附表 3-5〉 要保護兒童 發生 推移 및 保護 現況

(단위: 명)

	발생유형별					보호내용별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가출아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기타
1990	5,721	1,844	2,369	360	1,148	3,734	1,134	853	-
1991	5,095	1,610	2,020	188	277	3,414	999	682	-
1992	5,020	1,481	1,813	241	1,485	3,122	1,212	686	-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
1994	5,023	1,386	1,781	192	1,664	2,953	927	760	383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연도.

〈附表 3-6〉 少年·少女 家長世帶의 現況

(단위: 명)

연도	세대수	세 대 원					
		계	미취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985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89	6,029	13,233	450	3,749	3,814	1,632	3,588
1990	4,901	11,125	410	3,356	3,133	1,135	3,091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7,089	14,081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7,322	14,293	119	3,331	4,710	3,622	2,511
1994	7,590	14,372	124	3,026	4,940	3,892	2,390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연도

〈附表 3-7〉 入養 推移

(단위: 명)

연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	3,438	2,241	2,197	36.1
1992	3,235	1,190	2,045	36.8
1993	3,444	1,154	2,290	33.5
1994	3,469	1,207	2,262	34.8
계	183,142	50,973	132,169	27.8

資料: 정기원·오미영,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연도

〈附表 3-8〉 社會福祉收容施設 管理運營費 支援水準

지 원 항 목	지원내용(원)	비 고
건물유지비(m^2당, 년간)		전 시설 공통
- 5년이하	503	
- 10년이하	940	
- 15년이하	1,235	
- 20년이하	1,464	
- 25년이하	1,672	
- 25년 초과	1,847	
공공요금(인/년)	16,210	모자시설(18,710원)을 제외한 전 시설 공통
수용경비(인/년)	24,850	전 시설 공통
난방연료비(인/년)		4인당 1일 1,744원 기준으로 난방일수에 따라 차이
- 영아시설,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180일/년)	78,480	
- 아동·부랑아시설, 결핵요양·나불구시설(150일/년)	65,400	
- 부녀복지·부랑인시설(110일/년)	47,960	
의약품비(인/년)		
- 결핵요양시설	219,870	
- 정신요양시설	81,000	
- 나불구시설	79,569	
- 장애인요양·노인요양시설	27,820	
- 영아시설	24,190	
- 부녀직업보도	24,470	
- 아동·부랑인(아)·노인양로·장애인·부녀시설	1,920	
차량유지비(시설/년)	1,672,000	전 시설 공통, 시설당 1대 지원대상 차종: 중·소형버스, 화물차, 지프형 승용차, 웨곤등 화물적재가능차량
도서구입비(시설/년)	220,000	영아시설을 제외한 전 시설공통
위생재료비		
- 영아시설(인/월)	2,057	영아 전원
- 노인요양시설(인/일)	150	노인 전원
- 노인양로시설(인/일)	50	〃
- 장애인시설(인/일)	450	일부만(70%?)
- 나불구시설(인/일)	450	〃 (30%?)

資料: 보건복지부, 『1995년도 사회복지수용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附表 3-9〉 1995年 社會福祉施設 職員 俸給表

(단위: 천원)

호봉	시설장	총무[1]	생활 지도원[2]	보조원[3]	취사부·세탁부[4]	체육교사	관리인	근로기사	의사[5]
1	471	416	373	325	261	599	345	587	1,160
2	485	429	385	335	272	609	355	597	-
3	499	442	397	345	283	619	365	607	-
4	513	455	409	355	294	629	375	617	-
5	527	468	421	365	305	639	385	627	-
6	542	482	434	376	317	650	396	638	-
7	557	496	447	387	329	661	407	649	-
8	572	510	460	398	341	672	418	660	-
9	587	524	473	409	353	683	429	671	-
10	602	538	486	420	365	694	440	682	-
11	618	553	500	432	378	706	452	694	-
12	634	568	514	444	391	718	464	706	-
13	650	583	528	456	404	730	476	718	-
14	666	598	542	468	417	742	488	730	-
15	682	613	556	480	430	754	500	742	-
16	698	628	570	492	443	766	512	754	-
17	714	643	584	504	456	778	524	766	-
18	730	658	598	516	469	790	536	778	-
19	746	673	612	528	482	802	548	790	-
20	762	688	626	450	495	814	560	802	-
21	777	702	639	551	507	825	571	813	-
22	792	716	652	562	519	836	582	824	-
23	807	730	665	573	531	847	593	835	-
24	822	744	678	584	543	858	604	846	-
25	837	758	691	595	555	869	615	857	-
26	851	771	703	605	566	879	625	867	-
27	865	784	715	615	577	889	635	877	-
28	879	797	727	625	588	899	645	887	-
29	893	810	739	635	599	909	655	897	-
30	907	823	751	645	610	919	665	907	-

註: 1) 부랑인 시설 상담요원 포함.
2) 간호사, 영양사, 각종교사, 물리치료사, 청능치료사, 보행훈련사 포함.
3) 보육사 포함.
4) 경비원 포함.
5) 의사는 단일호봉임.

資料: 보건복지부, 『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1995』.

〈附表 3-10〉 社會福祉施設 職員 對象別 手當支給 基準

수당의 종류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복지수당	사회복지시설 근무 전직원	기본급의 20%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시설 근무 전직원	5~ 9호봉 40,000원 10~14호봉 50,000원 15~19호봉 60,000원 20호봉 이상 80,000원
가계보조수당	사회복지시설 근무 전직원 (단, 시설장, 총무, 의사 제외)	20,000원
특수직근무 수당	◦노인복지시설 보조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직원 ◦아동복지시설 중 육아시설 영농지도교사 ◦영·유아보육시설 보육교사	3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가족수당	◦사회복지시설 직원(이하 “직원”이라한다)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1인당(4인이내) 1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10,000원/부양가족 1인당
직원급식비	보육사, 세탁부, 취사부, 경비원 등	인/일 2,500원, 240일 지급

資料: 보건복지부, 『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1995.

〈附表 3-11〉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直接費 追加支援

(단위: 원)

항 목		기준	지급지역 및 내용
퇴소아동 정착금		1인	강원 65만 광주 70만 제주 80만 전북·전남·경북·경남 100만 인천 110만 대전 130만 서울·대구·경기·충북 150만 부산 170만 충남 200만
인문계 학비지원		인/년	경기 560,000 충남 598,000 광주 800,000 제주 1,000,000
용 돈	초	인/월	서울·전남 5,000 전북 8,000
	중		인천 3,000 서울·광주 7,000 전북·전남 8,000
	고		인천 3,000 전북 8,000 서울·광주·전남 10,000
도시락 반찬비			충남 50,000(인/년) 전북 500(인/100일) 대구 500(인/170일) 서울 1,000(인/180일) 경기 1,000(인/240일) 제주 1,000(인/일)
참고서구입비	초	인/년	서울 7,000 전북 16,000 충북 48,000 충남 60,000
	중		서울·광주 10,000 제주 15,000 인천 40,000 경북 50,000 충남 60,000 충북 72,000
	고		광주 10,000 서울 15,000 제주 20,000 인천 40,000 경북 50,000 충남 60,000 충북 72,000
수학여행비		인/년	광주 10,000 인천 20,000 서울 20,000(초) 50,000(중·고) 충남 30,000 충북 31,000
하계수련회비		인/년	전남 10,000 대구 12,000 대전 15,000 경기 30,000 서울·부산·인천·경북·제주 20,000 광주 35,000 강원 40,000
대학 입학금		1인	서울·전남·경북·경남 100만원 충남 80%보조
성장아동 결혼 축하금		1인	대구 10만
성장아동 기능 위탁교육비		인/년	경북 30만
아동 간식비		인/일	전남 320(6-14세) 부산 300(15세이상) 전남 320(15세이상)
특별 부식비		인/일	전남 150 대구·경남 200 경기 300 인천 1,000
명절특별 부식비		인/연2회	경남 35,000
특별 피복비		인/년	대구 25,000 경남 58,000
학습 재료비		인/일	경기 500
전통예절 교육비		1인	전남 10만
기술 교육비		인/년	충남 15만
교복비		인/년	경기·경북 10만
신발 구입비		인/년	전남 40,000
중고생 장학금		1인	충남 15,000 수업료의 50%
입학축하 기념품		인/년	대구 25,000
학생회비		인/년	전북 108,000(중) 158,000(고)
시설아동 취업지도		지회에 지원	인천·경북 500만 대구 800만 경기 3,459만

資料: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시·도별 아동복지시설 지방비 보조내역』, 1995.

〈附表 3-12〉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運營費 追加支援

(단위: 원)

항 목	기 준	지급지역 및 액수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인/년	대구 초중고 각각 36,000, 54,000, 90,000 경북 초중고 각각 36,000, 48,000, 60,000
공공요금	인/년	대구 12,500
월동대책비	인/년	경남 4,700
연료비	4인/180일	대구 750 경남 1,570
후원자 만남의 광장	1인	강원 10,000
시설장비 보강비	시설당	경기 500만
시설 보수비	시설당	대구 500만 (5개 시설)
의료비품 구입비	시설당	제주 100만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당	경남 800만
예능발표회비	시설당	경기 100만

資料: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시·도별 아동복지시설 지방비 보조내역』, 1995

〈附表 3-13〉 1995年 市·道別 兒童福祉施設 職員 人件費 追加支援

(단위: 원)

항 목	기 준	지급지역 및 액수
종사자 특별수당	인/월	광주 21,000 전남 30,000 부산 40,000 경기·강원·충남 50,000 대구 60,000 대전 70,000 인천 150,000
취사부 인건비 보조	인/월	부산 70,000 대구 276,000 전북 369,000
세탁부 인건비 보조	인/월	대구 276,000 부산 340,000 전북 477,000
영육아시설보육사 야근수당	인/월	전북 50,000
종사자 수당	호봉기준	서울 5년이상은 13만원, 5년 미만 10만원
종사자 체력단련비	인/년	제주 급여액의 150%
종사자 자격수당	인/월	경북 20,000 경남 30,000
종사자 장려수당	인/월	경북 30,000
종사자 복지수당	인/월	강원 21,000
종사자 가계보조	인/월	경남 40,000
시설장 견학비	시설당	대전 100만원
종사자 교육	시설지회	경기 960만원 부산 1,300만원 대구 2,230만원 경북 5,200만원

資料: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시·도별 아동복지시설 지방비 보조내역』, 1995.

〈附表 4-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들의 能力開發을 위한 特別 프로그램數

(단위: %)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상	무응답	계	(N)	평균
전체	9.9	38.2	20.4	16.8	5.2	2.6	1.0	3.3	2.6	100.0	(191)	2.0
지역												
대도시	15.1	33.7	16.3	15.1	7.0	3.5	2.3	3.5	3.5	100.0	(86)	2.1
중소도시	4.7	47.7	18.5	21.5	1.5	3.1	-	3.0	-	100.0	(65)	2.1
군부	7.5	32.5	32.5	12.5	7.5	-	-	2.5	5.0	100.0	(40)	1.9
시설규모												
60명 미만	13.5	44.6	20.3	14.9	2.7	1.4	-	-	2.6	100.0	(74)	1.5
60~79명	10.6	36.4	18.2	13.6	9.1	3.0	3.0	3.1	3.0	100.0	(66)	2.1
80명 이상	3.9	31.4	23.5	23.5	3.9	3.9	-	7.9	2.0	100.0	(51)	2.7

〈附表 4-2〉 地域 및 施設規模別 1990年 以後 增·改築한 建物棟數 (育兒施設)

(단위: %)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계	(N)	평균
전체	31.9	36.6	17.3	6.8	3.7	1.6	2.1	100.0	(191)	1.2
지역										
대도시	38.4	40.7	10.5	3.5	3.5	1.2	2.2	100.0	(86)	0.9
중소도시	26.2	30.8	21.5	12.3	4.6	1.5	3.1	100.0	(65)	1.5
군부	27.5	37.5	25.0	5.0	2.5	2.5	-	100.0	(40)	1.3
시설규모										
60명 미만	37.8	36.5	14.9	5.4	2.7	-	2.7	100.0	(74)	1.0
60~79명	31.8	39.4	18.2	6.1	4.5	-	-	100.0	(66)	1.1
80명 이상	23.5	33.3	19.6	9.8	3.9	5.9	4.0	100.0	(51)	1.5

〈附表 4-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入所前 記錄保有狀態

(단위: %)

	기록상태				무응답	계	(N)
	없음	하	중	상			
전체	23.6	9.4	49.2	17.3	0.5	100.0	(191)
지역							
대도시	17.4	10.5	54.7	17.4	-	100.0	(86)
중소도시	27.7	9.2	40.0	21.5	1.6	100.0	(65)
군부	30.0	7.5	52.5	10.0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25.7	5.4	54.1	13.5	1.3	100.0	(74)
60~79명	24.2	12.1	45.5	18.2	-	100.0	(66)
80명 이상	19.5	11.8	47.1	21.6	-	100.0	(51)

〈附表 4-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施設長과 法人代表와의 關係

(단위: %)

	본인	친족	친구/친지	관계없음	계	(N)
전체	14.1	33.0	4.2	48.7	100.0	(191)
지역						
대도시	15.1	27.9	3.5	53.5	100.0	(86)
중소도시	15.4	32.3	6.2	46.1	100.0	(65)
군부	10.0	45.0	2.5	42.5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17.6	36.5	6.8	39.1	100.0	(74)
60~79명	9.1	36.4	4.5	50.0	100.0	(66)
80명 이상	15.7	23.5	-	60.8	100.0	(51)

〈附表 4-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自願奉仕者 職業種類數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86)	(65)	(40)	(74)	(66)	(51)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음	5.9	4.6	12.5	5.5	6.0	9.8	6.8
1개	11.6	15.4	30.0	17.6	21.2	9.8	16.8
2개	19.8	16.9	12.5	20.3	15.2	15.7	17.3
3개	23.3	18.5	10.0	17.6	18.2	21.6	18.8
4개	12.8	16.9	15.0	12.2	21.2	9.8	14.7
5개	14.0	12.3	7.5	16.2	6.1	13.7	12.0
6개	4.7	4.6	7.5	4.1	7.6	3.9	5.2
7개	6.7	10.8	5.0	5.1	4.5	15.7	7.9
무응답	1.2	-	-	1.4	-	-	0.5

〈附表 4-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地域的 特性

(단위: %)

	주택가	시장지역	공단지역	외딴지역	기타	계	(N)
전체	60.2	2.1	2.1	27.2	8.4	100.0	(191)
지역							
대도시	69.8	2.3	1.2	23.3	3.4	100.0	(86)
중소도시	50.8	3.1	1.5	30.8	13.8	100.0	(65)
군부	55.0	-	5.0	30.0	10.0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56.8	4.1	-	35.1	4.0	100.0	(74)
60~79명	56.1	-	4.5	25.8	13.6	100.0	(66)
80명 이상	70.6	2.0	2.0	17.6	7.8	100.0	(51)

〈附表 4-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들의 間食支給頻度

(단위: %)

	매일한번 이상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번	계	(N)
전체	67.6	27.7	3.7	1.0	100.0	(191)
지역						
대도시	74.4	20.9	3.5	1.2	100.0	(86)
중소도시	70.8	26.2	1.5	1.5	100.0	(65)
군부	47.5	45.0	7.5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64.9	31.1	2.7	1.3	100.0	(74)
60~79명	68.2	28.8	1.5	1.5	100.0	(66)
80명 이상	70.6	21.6	7.8	-	100.0	(51)

〈附表 4-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收入中 民間支援金 比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 이상	계	(N)
전체	64.4	24.1	9.4	2.1	100.0	(191)
지역						
대도시	58.1	27.9	9.3	4.7	100.0	(86)
중소도시	66.2	21.5	12.3	-	100.0	(65)
군부	75.0	20.0	5.0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62.1	23.0	13.5	1.4	100.0	(74)
60~79명	62.1	30.3	7.6	-	100.0	(66)
80명 이상	70.5	17.6	5.9	6.0	100.0	(51)

〈附表 4-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收入中 自體負擔金 比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40%	41% 이상	계	(N)
전체	64.8	21.5	8.4	3.7	1.6	100.0	(191)
지역							
대도시	55.8	25.6	10.5	5.8	2.3	100.0	(86)
중소도시	70.8	18.5	6.2	3.1	1.4	100.0	(65)
군부	75.0	17.5	7.5	-	-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63.5	24.3	6.8	5.4	-	100.0	(74)
60~79명	72.7	16.7	10.6	-	-	100.0	(66)
80명 이상	56.9	23.5	7.8	5.9	5.9	100.0	(51)

〈附表 4-1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支出中 直接費 比率

(단위: %)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계	(N)
전체	1.6	4.7	20.0	42.6	24.7	6.4	100.0	(191)
지역								
대도시	2.3	3.5	19.8	41.9	27.9	4.6	100.0	(86)
중소도시	1.6	4.7	20.3	43.8	20.3	9.3	100.0	(65)
군부	-	7.5	20.0	42.5	25.0	5.0	100.0	(40)
시설규모								
60명 미만	1.4	4.1	23.3	54.8	12.3	4.1	100.0	(74)
60~79명	3.0	7.6	18.2	33.3	34.8	3.1	100.0	(66)
80명 이상	-	2.0	17.6	37.3	29.4	13.7	100.0	(51)

〈附表 4-1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 1人當 直接費 總額

(단위: 천원,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86)	(65)	(40)	(74)	(66)	(51)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414	1293	1296	1309	1341	1413	1348
500 이하	1.1	-	-	-	1.5	-	0.5
501~1000	10.5	23.4	17.5	15.0	19.8	13.8	16.3
1001~1500	47.7	51.6	57.5	56.2	43.9	52.9	51.1
1501~2000	34.9	20.3	22.5	24.7	33.3	23.5	27.4
2001~2500	4.7	4.7	2.5	4.1	1.5	7.8	4.2
2501 이상	1.1	-	-	-	-	2.0	0.5

〈附表 4-1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總 從事者中 保育士 比率

(단위: %)

	40% 이하	41~50%	51~60%	61% 이상	계	(N)	평균
전체	7.9	32.1	41.1	18.9	100.0	(190)	53.4
지역							
대도시	8.2	34.9	38.4	18.5	100.0	(86)	53.0
중소도시	6.3	25.0	48.4	20.3	100.0	(64)	54.2
군부	10.0	37.5	35.0	17.5	100.0	(40)	52.8
시설규모							
60명 미만	13.6	39.2	29.7	17.5	100.0	(74)	52.3
60~79명	6.0	35.8	44.8	13.4	100.0	(67)	52.8
80명 이상	2.0	16.3	53.1	28.6	100.0	(49)	55.8

〈附表 4-1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施設長의 勤勞條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79.1	83.1	77.5	75.7	80.9	85.7	80.1
시설밖 거주	19.8	15.4	22.5	21.6	19.1	14.3	18.8
무응답	1.1	1.5	-	2.7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4.7	7.8	12.5	8.4	4.4	10.1	7.4
9~16시간	48.3	31.5	30.0	37.5	39.8	38.7	38.5
17시간 이상	46.0	59.3	55.0	54.1	53.0	49.0	52.4
무응답	1.0	1.4	2.5	-	2.8	2.2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5)	(64)	(40)	(72)	(68)	(49)	(189)
평균(시간)	16.9	18.3	17.5	17.5	17.7	17.1	17.5
월간 휴가일수							
없음	43.5	51.6	42.5	50.0	48.5	36.7	46.0
1~2일	9.4	9.4	7.5	5.6	8.9	14.3	9.0
3~4일	29.4	14.1	22.5	22.2	20.6	26.5	22.7
5~6일	3.6	6.3	10.0	8.3	4.4	4.1	5.9
7일 이상	3.5	3.1	2.5	1.4	2.9	6.1	3.2
무응답	10.6	15.5	15.0	12.5	14.7	12.3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5)	(64)	(40)	(72)	(68)	(49)	(189)
평균(일)	1.9	1.4	1.9	1.6	1.6	2.1	1.7

〈附表 4-1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總務의 勤勞條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50.0	49.2	37.5	44.6	50.0	46.9	47.1
시설밖 거주	47.7	49.2	57.5	50.0	50.0	51.0	50.3
총무부재	1.2	1.6	5.0	4.1	-	2.1	2.1
무응답	1.1	-	-	1.3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7.2	4.7	5.3	5.7	4.4	8.4	5.9
9~16시간	65.6	58.0	73.7	58.5	66.2	70.9	64.5
17시간 이상	23.8	36.0	21.0	34.2	26.5	18.7	27.4
무응답	3.4	1.3	-	1.6	2.9	2.0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4)	(64)	(38)	(70)	(68)	(48)	(186)
평균(시간)	14.3	15.5	13.8	15.2	14.6	13.9	14.6
월간 휴가일수							
없음	25.0	37.5	18.4	30.0	32.4	18.8	28.0
1~2일	15.5	14.1	13.2	10.0	16.1	18.7	14.5
3~4일	45.2	20.3	47.4	40.0	30.9	41.7	37.1
5~6일	4.8	9.4	7.9	10.0	4.4	6.3	7.0
7일 이상	2.4	4.7	2.6	1.4	2.9	6.3	3.2
무응답	7.1	14.0	10.5	8.6	13.3	8.2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4)	(64)	(38)	(70)	(68)	(48)	(186)
평균(일)	2.5	2.1	2.9	2.5	2.2	2.8	2.5

〈附表 4-1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生活指導員의 勤勞條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22.1	33.9	25.0	8.2	22.1	61.2	26.7
시설밖 거주	14.0	13.8	12.5	6.8	16.2	20.4	13.6
생활지도원부재	61.6	52.3	62.5	83.8	60.3	18.4	58.6
무응답	2.3	-	-	1.2	1.4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9.7	3.2	-	9.1	3.8	5.0	5.2
9~16시간	58.1	61.3	60.0	72.8	57.6	57.5	59.8
17시간 이상	29.1	29.0	40.0	9.1	34.6	35.0	31.2
무응답	3.1	6.5	-	9.0	4.0	2.5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1)	(31)	(15)	(11)	(26)	(40)	(77)
평균(시간)	14.9	16.2	16.5	13.1	16.1	16.2	15.8
월간 휴가일수							
없음	13.4	16.1	20.0	9.1	23.1	12.8	15.8
1~2일	36.6	25.8	20.0	27.3	23.0	33.3	28.9
3~4일	36.6	16.2	40.0	18.2	30.7	30.7	29.0
5~6일	6.6	16.1	6.7	27.3	3.8	10.2	10.5
7일 이상	3.4	9.7	6.7	18.1	3.8	5.1	6.6
무응답	3.4	16.1	6.6	-	15.6	7.9	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1)	(31)	(15)	(11)	(26)	(40)	(77)
평균(일)	2.7	3.0	2.9	3.8	2.5	2.8	2.9

〈附表 4-1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保育士의 勤勞條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 명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94.2	84.6	95.0	85.1	94.1	95.9	91.1
시설밖 거주	1.2	3.1	-	2.7	-	2.0	1.6
시설내외 거주	3.5	10.8	5.0	9.5	5.9	2.1	6.3
무응답	1.1	1.5	-	2.7	-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	-	-	-	-	-	-
9~16시간	29.5	22.0	32.5	29.2	25.0	28.5	27.5
17시간 이상	68.2	75.0	65.0	69.5	70.6	69.3	69.8
무응답	2.3	3.0	2.5	1.3	4.4	2.2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5)	(64)	(40)	(72)	(68)	(49)	(189)
평균(시간)	20.4	20.7	19.5	20.2	20.4	20.4	20.3
월간 휴가일수							
없음	17.6	15.6	5.0	16.7	14.7	10.2	14.3
1~2일	31.8	37.5	27.5	30.6	36.7	30.6	32.8
3~4일	36.4	25.0	50.0	38.9	32.4	34.7	35.5
5~6일	7.1	7.9	2.5	5.6	3.0	12.3	6.3
7일 이상	2.4	6.3	5.0	4.1	4.4	4.1	4.2
무응답	4.7	7.7	10.0	4.1	8.8	8.1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5)	(64)	(40)	(72)	(68)	(49)	(189)
평균(일)	2.5	2.5	3.1	2.6	2.5	2.9	2.6

〈附表 4-1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看護師의 勤勞條件

(단위 :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31.4	26.2	25.0	8.1	36.8	46.9	28.3
시설밖 거주	27.9	27.7	17.5	4.1	33.8	46.9	25.7
간호사부재	37.2	46.1	55.0	85.1	26.5	6.2	44.0
무응답	3.5	-	2.5	2.7	2.9	-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2.0	8.6	5.9	-	4.1	6.5	4.8
9~16시간	64.8	51.5	41.2	55.5	56.5	56.6	56.4
17시간 이상	27.5	37.2	47.1	44.5	33.3	32.7	34.0
무응답	5.7	2.7	5.8	-	6.1	4.2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1)	(35)	(17)	(9)	(48)	(46)	(103)
평균(시간)	14.9	14.9	18.0	16.7	15.4	15.2	15.4
월간 휴가일수							
없음	13.7	11.4	5.9	11.1	16.7	6.5	11.7
1~2일	33.3	25.7	23.5	44.4	27.1	28.2	29.2
3~4일	35.3	31.4	41.1	44.5	31.2	36.9	35.0
5~6일	9.8	14.3	11.8	-	10.4	15.2	11.6
7일 이상	3.9	5.7	5.9	-	6.3	4.3	4.9
무응답	4.0	11.5	11.8	-	8.3	8.9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1)	(35)	(17)	(9)	(48)	(46)	(103)
평균(일)	2.8	3.0	3.4	2.6	2.9	3.1	3.0

〈附表 4-1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炊事員의 勤勞條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거주지							
시설내 거주	88.4	84.6	82.5	77.0	89.7	93.9	85.9
시설밖 거주	8.1	13.8	12.5	20.3	4.4	6.1	11.0
취사원부재	1.2	-	2.5	-	2.9	-	1.0
무응답	2.3	1.6	2.5	2.7	3.0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65)	(40)	(74)	(68)	(49)	(191)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	6.0	-	2.7	4.2	1.6	4.1	3.2
9~16시간	43.2	42.2	41.9	43.0	43.8	40.7	42.7
17시간 이상	48.2	51.6	52.6	48.6	50.0	53.1	50.3
무응답	2.6	6.2	2.8	4.2	4.6	2.1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	(64)	(38)	(72)	(64)	(49)	(185)
평균(시간)	18.1	19.1	18.4	18.2	18.7	18.5	18.5
월간 휴가일수							
없음	25.3	28.1	10.5	26.4	25.0	16.3	23.2
1~2일	32.6	29.7	23.7	26.4	32.9	30.6	29.7
3~4일	27.7	18.8	50.0	30.6	28.1	28.6	29.2
5~6일	6.0	7.9	2.6	5.6	1.6	12.3	6.0
7일 이상	2.4	6.3	5.3	4.2	4.7	4.1	4.3
무응답	6.0	9.2	7.9	6.8	7.7	8.1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	(64)	(38)	(72)	(64)	(49)	(185)
평균(일)	2.1	2.2	3.0	2.3	2.2	2.6	2.3

〈附表 4-1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中 專門大學 以上 卒業者의 社會福祉專攻 與否

(단위: %)

	전공	비전공	계	(N)
전체	11.9	88.1	100.0	(67)
지역				
대도시	10.3	89.7	100.0	(29)
중소도시	15.0	85.0	100.0	(20)
군부	11.1	88.9	100.0	(18)
시설규모				
60명 미만	14.3	85.7	100.0	(21)
60~79명	4.3	95.7	100.0	(23)
80명 이상	17.4	82.6	100.0	(23)

〈附表 4-2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子女 有無

(단위: %)

	없 음	있 음	계	(N)
전체	54.9	45.1	100.0	(255)
지역				
대도시	58.9	41.1	100.0	(95)
중소도시	53.7	46.3	100.0	(95)
군부	50.8	49.2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48.6	51.4	100.0	(72)
60~79명	52.7	47.3	100.0	(74)
80명 이상	60.6	39.4	100.0	(109)

〈附表 4-2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職責別 分布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95)	(95)	(65)	(72)	(74)	(109)	(2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무	10.5	8.4	10.8	12.5	10.8	7.3	9.8
보육사	62.0	65.2	64.6	63.9	66.0	62.4	63.9
간호사	4.2	5.3	6.2	1.4	4.1	8.3	5.0
영양사	3.2	-	-	-	1.4	1.8	1.2
생활지도원	2.1	3.2	1.5	4.2	-	2.8	2.4
직업훈련교사	-	5.3	7.7	2.8	2.7	5.5	3.9
취사부	11.6	8.4	9.2	13.8	9.5	7.3	9.8
경리	3.2	3.2	-	1.4	1.4	3.7	2.1
기타	3.2	1.0	-	-	4.1	0.9	1.6

〈附表 4-2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長과의 親姻戚 關係

(단위: %)

	자녀	형제 · 자매	기타 친인척	관계없음	계	(N)
전체	3.5	1.2	3.5	91.8	100.0	(254)
지역						
대도시	2.1	-	2.1	95.8	100.0	(94)
중소도시	2.1	1.1	3.2	93.6	100.0	(95)
군부	7.6	3.1	6.2	83.1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8.5	-	4.2	87.3	100.0	(71)
60~79명	1.4	2.7	4.0	91.9	100.0	(74)
80명 이상	1.8	0.9	2.8	94.5	100.0	(109)

〈附表 4-2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法人代表와의 親姻戚 關係

(단위: %)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관계없음	계	(N)
전체	1.6	0.4	4.7	93.3	100.0	(254)
지역						
대도시	2.1	-	2.1	95.8	100.0	(94)
중소도시	-	1.1	4.2	94.7	100.0	(95)
군부	3.1	-	9.2	87.7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1.4	-	11.3	87.3	100.0	(71)
60~79명	1.4	-	4.1	94.5	100.0	(74)
80명 이상	1.8	0.9	0.9	96.4	100.0	(109)

〈附表 4-2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出身 與否

(단위: %)

	출신임	출신아님	계	(N)
전체	18.0	82.0	100.0	(255)
지역				
대도시	31.6	68.4	100.0	(95)
중소도시	12.6	87.4	100.0	(95)
군부	6.2	93.8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30.6	69.4	100.0	(72)
60~79명	10.8	89.2	100.0	(74)
80명 이상	14.7	85.3	100.0	(109)

〈附表 4-2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 從事期間

(단위: 년, %)

	1~3년	4~6년	7~9년	10~12년	13~15년	16~18년	19~21년	계	(N)
전체	44.7	18.2	11.9	7.0	4.7	4.0	9.5	100.0	(253)
지역									
대도시	41.9	11.8	15.1	11.8	6.5	4.3	8.6	100.0	(93)
중소도시	40.0	22.1	10.5	5.3	6.3	5.3	10.5	100.0	(95)
군부	55.5	21.5	9.2	3.1	-	1.5	9.2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45.8	20.8	4.2	2.8	2.8	9.7	13.9	100.0	(72)
60~79명	43.8	16.4	15.1	6.9	5.5	-	12.3	100.0	(73)
80명 이상	44.4	17.6	14.8	10.2	5.6	2.8	4.6	100.0	(108)

〈附表 4-2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他 社會福祉施設 從事期間

(단위: %)

	0년	1~2년	3~4년	5~6년	7~8년	9년 이상	계	(N)
전체	83.0	9.1	3.5	2.8	0.4	1.2	100.0	(254)
지역								
대도시	86.1	8.5	1.1	3.2	-	1.1	100.0	(94)
중소도시	75.8	9.5	8.4	4.2	-	2.1	100.0	(95)
군부	89.3	9.2	-	-	1.5	-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88.8	4.2	4.2	1.4	-	1.4	100.0	(72)
60~79명	82.3	12.2	1.4	2.7	-	1.4	100.0	(74)
80명 이상	79.7	10.2	4.6	3.7	0.9	0.9	100.0	(108)

〈附表 4-2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居住地

(단위: %)

	시설내	시설외	계	(N)
전체	82.7	17.3	100.0	(255)
지역				
대도시	82.1	17.9	100.0	(95)
중소도시	86.3	13.7	100.0	(95)
군부	78.5	21.5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83.3	16.7	100.0	(72)
60~79명	83.8	16.2	100.0	(74)
80명 이상	81.7	18.3	100.0	(109)

〈附表 4-2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施設內 居住 從事者의 居住形態

(단위: %)

	시설내 사택	아이들과 동일건물	타종사자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기타	계	(N)
전체	18.2	50.3	3.4	27.1	1.0	100.0	(203)
지역							
대도시	16.2	50.0	6.8	24.3	2.7	100.0	(74)
중소도시	21.5	54.5	2.5	21.5	-	100.0	(79)
군부	16.0	44.0	-	40.0	-	100.0	(50)
시설규모							
60명 미만	3.4	49.1	6.8	40.7	-	100.0	(59)
60~79명	18.6	57.7	3.4	20.3	-	100.0	(59)
80명 이상	28.2	45.8	1.2	22.4	2.4	100.0	(85)

〈附表 4-2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 子女의 居住形態

(단위: %)

	시설내 종사자와 함께	시설 아이들과 함께	시설내 기타	시설밖 거주	계	(N)
전체	35.6	14.8	0.9	48.7	100.0	(115)
지역						
대도시	28.9	15.8	-	55.3	100.0	(38)
중소도시	36.4	11.4	-	52.2	100.0	(44)
군부	42.4	18.2	3.0	36.4	100.0	(33)
시설규모						
60명 미만	35.1	8.1	2.7	54.1	100.0	(37)
60~79명	28.6	20.0	-	51.4	100.0	(35)
80명 이상	41.9	16.2	-	41.9	100.0	(43)

〈附表 4-3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하루 平均 勤務時間

(단위: %)

	8시간	12시간	15시간	19시간	계	(N)
전체	3.5	19.3	6.7	70.5	100.0	(254)
지역						
대도시	3.2	23.2	8.4	65.2	100.0	(95)
중소도시	5.3	14.7	6.3	73.7	100.0	(95)
군부	1.6	20.3	4.7	73.4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1.4	18.1	9.7	70.8	100.0	(72)
60~79명	2.7	19.2	6.8	71.3	100.0	(73)
80명 이상	5.5	20.2	4.6	69.7	100.0	(109)

〈附表 4-3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勤務時間에 대한 態度

(단위: %)

	너무길다	긴편이다	적당하다	계	(N)
전체	36.0	28.8	35.2	100.0	(255)
지역					
대도시	31.6	32.6	35.8	100.0	(95)
중소도시	33.0	27.5	39.5	100.0	(95)
군부	46.9	25.0	28.1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36.1	29.2	34.7	100.0	(72)
60~79명	49.3	20.6	30.1	100.0	(74)
80명 이상	26.7	34.3	39.0	100.0	(109)

〈附表 4-3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한달 平均 休日數

(단위: %)

	0일	1~3일	4~6 일	7~9일	계	(N)
전체	18.8	36.1	41.2	3.9	100.0	(255)
지역						
대도시	18.9	24.2	51.6	5.3	100.0	(95)
중소도시	24.2	48.4	25.3	2.1	100.0	(95)
군부	10.8	35.4	49.2	4.6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19.4	33.3	41.7	5.6	100.0	(72)
60~79명	18.9	40.6	37.8	2.7	100.0	(74)
80명 이상	18.3	34.9	43.1	3.7	100.0	(109)

〈附表 4-3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必要時 外出可能 程度

(단위: %)

	매우쉽다	쉽 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계	(N)
전체	6.3	24.4	42.9	18.5	7.9	100.0	(254)
지역							
대도시	4.2	26.3	45.3	18.9	5.3	100.0	(95)
중소도시	8.5	20.2	42.6	19.1	9.6	100.0	(94)
군부	6.2	27.7	40.0	16.9	9.2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4.2	29.6	36.6	16.9	12.7	100.0	(71)
60~79명	2.7	24.3	39.2	23.0	10.8	100.0	(74)
80명 이상	10.1	21.1	49.5	16.5	2.8	100.0	(109)

〈附表 4-3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教育訓練履修 經驗回數

(단위: %)

	없 음	1 회	2 회	3회 이상	계	(N)
전체	68.6	22.8	5.5	3.1	100.0	(254)
지역						
대도시	81.8	12.8	4.3	1.1	100.0	(94)
중소도시	63.1	29.5	1.1	6.3	100.0	(95)
군부	57.0	27.7	13.8	1.5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76.4	19.4	4.2	-	100.0	(72)
60~79명	71.6	18.9	6.8	2.7	100.0	(74)
80명 이상	61.0	27.8	5.6	5.6	100.0	(108)

〈附表 4-3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 經驗 없는 理由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71)	(54)	(36)	(53)	(48)	(60)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과중한 업무	15.5	7.4	16.7	11.3	16.7	11.7	13.0
예산의 어려움	1.4	-	13.9	7.5	2.1	1.7	3.7
정보의 부재	8.5	7.4	2.8	1.9	6.3	11.7	6.8
가격 미비	2.8	9.3	-	3.8	8.3	1.7	4.3
차례가오지않아서	54.9	61.1	44.4	69.8	47.8	46.5	54.8
기타	16.9	14.8	22.2	5.7	18.8	26.7	17.4

〈附表 4-3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 課程名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7)	(31)	(25)	(15)	(20)	(38)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육사 교육	23.5	32.1	52.0	60.0	40.0	26.3	37.0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5.9	6.5	32.0	-	-	28.9	15.1
청소년 지도자	11.8	6.5	-	-	10.0	5.3	5.5
시설 종사자	29.4	19.4	8.0	13.3	25.0	15.8	17.8
사회사업 지도자	-	6.5	-	-	-	5.3	2.7
기타	29.4	29.0	8.0	26.7	25.0	18.4	21.9

〈附表 4-3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敎育訓練期間

(단위: %)

	3주 미만	3주 이상	계	(N)
전체	89.4	10.6	100.0	(66)
지역				
대도시	92.3	7.7	100.0	(13)
중소도시	80.0	20.0	100.0	(30)
군부	100.0	-	100.0	(23)
시설규모				
60명 미만	100.0	-	100.0	(14)
60~79명	87.5	12.5	100.0	(16)
80명 이상	86.1	13.9	100.0	(36)

〈附表 4-3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業務修行上 도움程度

(단위: %)

	많은 도움	도움이 되는편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않음	계	(N)
전체	20.5	56.2	19.2	4.1	100.0	(73)
지역						
대도시	23.5	47.1	29.4	-	100.0	(17)
중소도시	22.6	51.6	22.6	3.2	100.0	(31)
군부	16.0	68.0	8.0	8.0	100.0	(25)
시설규모						
60명 미만	11.8	35.3	35.3	17.6	100.0	(17)
60~79명	26.3	57.9	15.8	-	100.0	(19)
80명 이상	21.6	64.9	13.5	-	100.0	(37)

〈附表 4-3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 敎育의 必要性 程度

(단위: %)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계	(N)
전체	90.7	9.3	100.0	(248)
지역				
대도시	84.4	15.6	100.0	(90)
중소도시	94.7	5.3	100.0	(94)
군부	93.7	6.3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88.7	11.3	100.0	(71)
60~79명	94.3	5.7	100.0	(70)
80명 이상	89.7	10.3	100.0	(107)

〈附表 4-4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月 平均 給與

(단위: 만원 %)

	40~50	60~70	80~90	100~110	120 이상	계	(N)
전체	24.0	38.0	16.2	14.4	7.4	100.0	(229)
지역							
대도시	7.2	37.4	19.3	27.7	8.4	100.0	(83)
중소도시	29.1	41.8	12.8	9.3	7.0	100.0	(86)
군부	40.0	33.3	16.7	3.3	6.7	100.0	(60)
시설규모							
60명 미만	25.4	40.6	11.9	11.9	10.2	100.0	(59)
60~79명	20.3	50.8	13.0	10.1	5.8	100.0	(69)
80명 이상	25.7	27.8	20.8	18.8	6.9	100.0	(101)

〈附表 4-4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月 給與에 대한 滿足度

(단위: %)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불만족함	매우불 만족함	계	(N)
전체	1.6	26.3	34.7	27.1	10.3	100.0	(251)
지역							
대도시	3.2	30.2	41.9	21.5	3.2	100.0	(93)
중소도시	-	27.7	33.8	30.0	8.5	100.0	(94)
군부	1.6	18.8	25.0	31.2	23.4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2.8	23.6	29.2	31.9	12.5	100.0	(72)
60~79명	-	23.3	35.6	27.4	13.7	100.0	(73)
80명 이상	1.9	30.2	37.7	23.6	6.6	100.0	(106)

〈附表 4-4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希望하는 制度 및 手當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88)	(83)	(62)	(69)	(68)	(96)	(2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음	40.9	27.7	33.9	29.1	33.9	38.5	34.3
시간외 수당	20.5	30.3	25.8	26.1	27.9	22.9	25.3
직책수당	4.5	4.8	3.2	2.9	7.4	3.1	4.3
휴가 월차수당	14.8	8.4	9.7	11.6	10.3	11.5	11.2
체력단련비	6.8	12.0	8.1	13.0	4.4	9.4	9.0
사회복지사·보육사 자격수당	2.3	6.0	1.6	1.4	4.4	4.2	3.4
자녀 교육비	1.1	3.6	8.1	7.2	4.4	1.0	3.9
생리·육아휴가	2.3	1.2	4.8	-	2.9	4.2	2.6
기타	6.8	6.0	4.8	8.7	4.4	5.2	6.0

〈附表 4-4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從事 主要 動機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95)	(95)	(65)	(72)	(74)	(109)	(2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목적	13.7	16.8	20.0	12.5	17.6	18.3	16.5
전문지식 활용	4.2	4.2	1.5	1.4	5.4	3.7	3.5
사회사업에 뜻이 있어	42.1	37.9	49.3	50.0	39.1	39.5	42.4
종교적 봉사	26.3	27.4	13.8	18.0	25.7	25.7	23.5
부모·친지의 권유	8.4	7.4	10.8	9.7	9.5	7.3	8.6
부모·친지로부터 물려받음	1.1	1.1	4.6	4.2	-	1.8	2.0
기타	4.2	5.2	-	4.2	2.7	3.7	3.5

〈附表 4-4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現 職務에 대한 滿足度

(단위: %)

	매우 만족	만족하는편	그저 그렇다	불만족함	매우 불만족함	계	(N)
전체	4.7	48.0	27.6	17.7	2.0	100.0	(254)
지역							
대도시	8.4	45.3	32.6	12.6	1.1	100.0	(95)
중소도시	2.1	51.1	26.6	20.2	-	100.0	(94)
군부	3.1	47.7	21.5	21.5	6.2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2.8	38.8	29.2	25.0	4.2	100.0	(72)
60~79명	8.1	44.6	31.1	16.2	-	100.0	(74)
80명 이상	3.7	56.4	24.1	13.9	1.9	100.0	(108)

〈附表 4-4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現 職務에 不滿足한 理由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4)	(21)	(19)	(21)	(15)	(18)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급여수준 낮음	-	33.3	26.3	14.3	20.0	33.3	22.2
과중한 업무량	50.0	9.5	10.5	23.8	33.3	5.5	20.4
근무시간 과다	35.8	52.4	42.1	47.6	26.7	55.7	44.4
직원간의 갈등	7.1	4.8	-	-	13.3	-	3.7
운연진과의 갈등	7.1	-	21.1	14.3	6.7	5.5	9.3

〈附表 4-4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繼續 勤務 與否

(단위: %)

	계속 근무	적당한 시기에 그만둠	잘모르겠다	계	(N)
전체	57.8	29.6	12.6	100.0	(253)
지역					
대도시	57.9	29.5	12.6	100.0	(95)
중소도시	56.4	31.9	11.7	100.0	(94)
군부	59.3	26.6	14.1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59.7	27.8	12.5	100.0	(72)
60~79명	63.0	24.7	12.3	100.0	(73)
80명 이상	52.7	34.3	13.0	100.0	(108)

〈附表 4-4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從事를 그만두려는 理由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24)	(26)	(13)	(19)	(12)	(32)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	41.6	23.2	15.4	21.1	16.7	37.4	28.6
과중한 업무량	-	26.9	30.8	15.8	41.6	9.4	17.5
적성에 맞지않음	4.2	11.5	-	10.5	-	6.3	6.3
보람을 느끼지못함	4.2	3.8	-	5.3	-	3.1	3.2
개인사업	4.2	-	-	5.3	-	-	1.6
연령·건강	37.5	26.9	38.4	36.7	25.0	34.4	33.3
기타	8.3	7.7	15.4	5.3	16.7	9.4	9.5

〈附表 4-4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他施設에 다시 勤務할 생각 與否

(단위: %)

	근무하겠다	하지않겠다	잘모르겠다	계	(N)
전체	45.6	27.9	26.5	100.0	(68)
지역					
대도시	24.0	32.0	44.0	100.0	(25)
중소도시	53.4	33.3	13.3	100.0	(30)
군부	69.2	7.7	23.1	100.0	(13)
시설규모					
60명 미만	47.1	29.4	23.5	100.0	(17)
60~79명	46.7	20.0	33.3	100.0	(15)
80명 이상	44.4	30.6	25.0	100.0	(36)

〈附表 4-4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結婚後 繼續 勤務 與否

(단위: 독신자, %)

	계속함	그만둠	계	(N)
전체	52.0	48.0	100.0	(123)
지역				
대도시	50.0	50.0	100.0	(46)
중소도시	57.7	42.3	100.0	(52)
군부	44.0	56.0	100.0	(25)
시설규모				
60명 미만	54.5	45.5	100.0	(33)
60~79명	68.7	31.3	100.0	(32)
80명 이상	41.4	58.6	100.0	(58)

〈附表 4-5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시급히 解決해야할 問題

(단위: %)

	직원 충원	급여 수준	근무 시간	시설운영 장려확대	기타	계	(N)
전체	22.6	45.7	21.4	7.0	3.3	100.0	(243)
지역							
대도시	22.8	40.2	29.4	3.3	4.3	100.0	(92)
중소도시	21.3	51.7	19.1	4.5	3.4	100.0	(89)
군부	24.2	45.2	12.9	16.1	1.6	100.0	(62)
시설규모							
60명 미만	10.0	52.8	22.9	10.0	4.3	100.0	(70)
60~79명	33.3	36.1	22.2	5.6	2.8	100.0	(72)
80명 이상	23.8	47.5	19.8	5.9	3.0	100.0	(101)

〈附表 4-5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專門性을 갖춘 從事者 確保를 沮害하는 가장 큰 問題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90)	(95)	(64)	(71)	(72)	(106)	(2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낮은 급여	44.4	52.6	48.4	46.5	51.4	48.1	48.6
나쁜 환경	10.0	10.5	29.7	16.8	20.9	10.4	15.3
과중한 업무	16.7	11.6	1.6	14.1	9.7	9.4	10.8
장래성 없음	13.3	6.3	4.7	8.5	8.3	8.5	8.4
그릇된 사회인식	15.6	13.7	15.6	14.1	8.3	19.8	14.9
특별한 일이 없음	-	2.1	-	-	-	1.9	0.8
기타	-	3.2	-	-	1.4	1.9	1.2

〈附表 4-5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의 職員會議 定期運營 與否

(단위: %)

	운영한다	하지않는다	계	(N)
전체	98.0	2.0	100.0	(254)
지역				
대도시	98.9	1.1	100.0	(94)
중소도시	96.8	3.2	100.0	(95)
군부	98.5	1.5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97.2	2.8	100.0	(72)
60~79명	97.3	2.7	100.0	(74)
80명 이상	99.1	0.9	100.0	(108)

〈附表 4-5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職員會議 開催 頻度

(단위: %)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한번	2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특별한일이있을때	기타	계	(N)
전체	20.8	50.4	7.6	10.8	9.2	1.2	100.0	(250)
지역								
대도시	31.2	45.2	16.1	3.2	3.2	1.1	100.0	(93)
중소도시	3.2	54.8	4.3	20.4	15.1	2.2	100.0	(93)
군부	31.3	51.5	-	7.8	9.4	-	100.0	(64)
시설규모								
60명 미만	11.4	44.3	2.9	20.0	21.4	-	100.0	(70)
60~79명	34.6	55.6	-	4.2	4.2	1.4	100.0	(72)
80명 이상	17.6	50.9	15.7	9.3	4.6	1.9	100.0	(108)

〈附表 4-5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에서 解決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問題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93)	(94)	(65)	(71)	(74)	(107)	(2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계비 인상	24.7	14.8	29.2	25.4	16.2	24.3	22.2
전문 상담요원 확보	11.8	25.6	12.3	15.5	20.3	15.9	17.1
시설 증·개축	2.2	20.2	12.3	16.9	5.4	21.1	11.5
시설규모 축소	4.3	-	-	-	5.4	-	1.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9.4	22.3	26.2	19.7	31.1	17.8	22.2
퇴소아 대책	34.4	16.0	16.9	18.3	18.9	29.0	23.0
기타	3.2	1.1	3.1	4.2	2.7	0.9	2.4

〈附表 4-5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病'에 대한 態度

(단위: %)

	그런면이 많다	어느정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N)
전체	43.2	42.7	14.1	100.0	(255)
지역					
대도시	36.8	44.3	18.9	100.0	(95)
중소도시	50.5	40.0	9.5	100.0	(95)
군부	41.5	44.7	13.8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31.9	52.8	15.3	100.0	(72)
60~79명	62.2	31.0	6.8	100.0	(74)
80명 이상	37.7	44.0	18.3	100.0	(109)

〈附表 4-5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가 생각하는 施設兒童의 '施設病' 理由

(단위: %)

	가정 환경	시설 환경	사회전체적 환경	기타	계	(N)
전체	20.4	24.8	49.8	5.0	100.0	(221)
지역						
대도시	19.2	20.5	55.2	5.1	100.0	(78)
중소도시	23.0	21.8	51.8	3.4	100.0	(87)
군부	17.9	35.7	39.3	7.1	100.0	(56)
시설규모						
60명 미만	23.0	18.0	52.4	6.6	100.0	(61)
60~79명	21.7	23.2	47.9	7.2	100.0	(69)
80명 이상	17.6	30.8	49.4	2.2	100.0	(91)

〈附表 4-5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保育士 交代勤務制에 대한 態度

(단위: %)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N)
전체	53.3	46.7	100.0	(240)
지역				
대도시	58.4	41.6	100.0	(89)
중소도시	51.7	48.3	100.0	(89)
군부	48.4	51.6	100.0	(62)
시설규모				
60명 미만	65.2	34.8	100.0	(69)
60~79명	59.7	40.3	100.0	(72)
80명 이상	40.4	59.6	100.0	(99)

〈附表 4-5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交代勤務制 贊成理由

(단위: %)

	업무과중 해소	일의 능률 향상	여가활동 가능	기타	계	(N)
전체	37.9	27.4	31.5	3.2	100.0	(124)
지역						
대도시	46.0	18.0	32.0	4.0	100.0	(50)
중소도시	34.1	34.1	27.3	4.5	100.0	(44)
군부	30.0	33.3	36.7	-	100.0	(30)
시설규모						
60명 미만	30.2	37.2	32.6	-	100.0	(43)
60~79명	51.2	22.0	24.4	2.4	100.0	(41)
80명 이상	32.5	22.5	37.5	7.5	100.0	(40)

〈附表 4-5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交代勤務制 反對 理由

(단위: %)

	아동의 정서불안유발	종사자의 책임감약화	종사자의 경제적어려움	기타	계	(N)
전체	73.8	21.4	2.9	1.9	100.0	(103)
지역						
대도시	78.8	21.2	-	-	100.0	(33)
중소도시	68.3	24.4	2.4	4.9	100.0	(41)
군부	75.9	17.2	6.9	-	100.0	(29)
시설규모						
60명 미만	75.0	20.8	4.2	-	100.0	(24)
60~79명	84.7	11.5	3.8	-	100.0	(26)
80명 이상	67.9	26.4	1.9	3.8	100.0	(53)

〈附表 4-6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施設兒童을 위한 住居形態에 대한 態度

(단위: %)

	그룹홈	소사제	소사제 (공동취사)	집단 기숙사	기타	계	(N)
전체	26.7	25.5	39.8	7.2	0.8	100.0	(251)
지역							
대도시	21.7	34.8	33.7	8.7	1.1	100.0	(92)
중소도시	35.1	22.3	38.3	3.2	1.1	100.0	(94)
군부	21.5	16.9	50.8	10.8	-	100.0	(65)
시설규모							
60명 미만	14.3	21.4	54.3	10.0	-	100.0	(70)
60~79명	28.4	20.3	44.5	6.8	-	100.0	(74)
80명 이상	33.6	31.8	27.1	5.6	1.9	100.0	(107)

〈附表 4-6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向後 그룹홈 設立意思 有無

(단위: %)

	있 다	없다	계	(N)
전체	44.0	56.0	100.0	(241)
지역				
대도시	35.6	64.4	100.0	(87)
중소도시	44.0	56.0	100.0	(91)
군부	55.6	44.4	100.0	(63)
시설규모				
60명 미만	40.8	59.2	100.0	(71)
60~79명	57.0	43.0	100.0	(72)
80명 이상	36.7	63.3	100.0	(98)

〈附表 4-62〉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從事者의 向後 그룹홈 設立에 따른 要求事項

(단위: %)

	재정 지원	사회의 재인식	시설 투자	직원 충원	지원과 관심	기타	계	(N)
전체	52.6	12.8	3.8	11.5	10.3	9.0	100.0	(78)
지역								
대도시	64.0	12.0	8.0	12.0	-	4.0	100.0	(25)
중소도시	57.2	14.3	-	10.7	10.7	7.1	100.0	(28)
군부	36.0	12.0	4.0	12.0	20.0	16.0	100.0	(25)
시설규모								
60명 미만	52.4	9.5	4.8	9.5	14.3	9.5	100.0	(21)
60~79명	62.2	10.3	6.9	10.3	3.4	6.9	100.0	(29)
80명 이상	42.8	17.9	-	14.3	14.3	10.7	100.0	(28)

〈附表 4-63〉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社會經濟的 特性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 별>							
남자	37.8	52.2	54.2	44.8	51.4	41.4	46.3
여자	62.2	47.8	45.8	55.2	48.6	58.6	53.7
<연령>							
10세 이하	1.9	1.7	3.6	0.7	4.2	2.0	2.2
11세	7.6	5.9	4.0	7.4	6.9	3.5	6.2
12세	7.5	9.8	5.3	11.2	4.8	6.1	7.8
13세	10.8	17.7	13.9	14.4	13.4	13.3	13.8
14세	18.8	13.4	22.1	14.3	18.7	22.3	17.8
15세	10.6	14.2	7.0	9.0	13.3	11.0	11.0
16세	20.0	16.1	11.9	20.2	13.0	16.6	16.8
17세	14.7	7.3	15.9	9.8	13.0	16.6	12.5
18세 이상	8.1	13.9	16.3	13.0	12.7	8.6	11.9
<학력>							
국민학교 이하	22.2	17.3	17.8	23.0	17.9	17.2	19.7
중학교	36.3	43.3	39.0	35.5	41.5	42.2	39.1
고등학교	41.5	38.5	43.2	41.5	40.6	40.6	40.9
전문학교 이상	-	0.9	-	-	-	-	0.3
<종교>							
없음	1.2	0.8	8.1	-	0.8	9.8	2.6
기독교	79.2	97.0	77.4	97.1	69.0	85.7	84.7
천주교	18.6	2.2	11.1	1.7	30.2	1.3	11.4
불교	-	-	0.8	-	-	0.8	0.2
기타	1.0	-	2.6	1.2	-	2.4	1.1

〈附表 4-6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施設入所時 年齡 및 家族關係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입소시 연령>							
3세 미만	3.1	4.4	4.8	5.9	3.0	1.8	3.9
3~7세	56.8	55.4	42.2	60.1	45.9	51.0	53.0
8~12세	31.9	30.3	45.2	25.6	42.0	37.9	34.2
13~16세	4.1	6.5	3.8	3.3	6.2	5.8	4.9
17~18세 미만	1.0	-	-	-	1.3	-	0.4
18세이상	3.1	3.4	4.0	5.1	1.6	3.5	3.6
<가족 및 친척 관계>							
없음	-	0.8	-	-	-	1.1	0.3
부모	53.2	55.5	60.9	49.7	63.8	54.5	55.7
편부모	2.9	1.3	-	3.3	-	1.2	1.7
조부모	3.2	13.0	11.9	5.3	11.9	8.4	8.4
외조부모	0.9	1.0	1.4	0.7	0.9	1.3	0.9
부모의형제·자매	10.2	3.1	-	5.4	5.9	5.2	5.5
기타친척	-	3.2	2.1	-	3.9	0.8	1.5
영아시설	2.8	4.2	3.2	4.4	0.9	5.0	3.3
기타	3.2	1.1	0.5	3.9	-	1.5	2.0
모르겠다	23.6	16.8	20.0	27.3	12.7	21.0	20.7

〈附表 4-6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家族 및 親姻戚과의 關係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의 가족 및 친척 방문회수>							
없음	55.6	47.8	41.0	49.9	39.9	66.5	50.4
1~2회	18.6	18.0	30.1	18.3	25.1	19.6	21.0
3~4회	9.5	5.2	6.6	10.6	5.2	5.1	7.4
5~6회	5.8	6.6	9.3	3.3	12.8	4.9	7.0
7회 이상	10.3	22.4	13.0	17.9	17.0	3.9	14.2
<시설에 찾아온 가족 및 친척>							
없음	55.6	50.0	41.0	49.9	39.9	66.5	50.4
아버지	8.9	8.2	14.7	6.3	16.4	7.2	10.0
어머니	9.8	8.4	12.0	12.1	9.7	5.8	9.8
조부모	-	6.4	10.6	3.5	5.3	5.1	4.5
외조부모	5.3	2.9	5.9	6.8	4.8	0.7	4.6
부모의 형제자매	19.5	19.5	14.9	21.4	20.4	10.7	18.6
기타친척	0.9	4.6	0.9	-	3.5	4.0	2.1
<가족 및 친척의 아동 방문회수>							
없음	62.9	54.8	57.4	55.8	57.4	66.7	58.5
1~2회	18.5	25.2	21.5	26.2	19.2	16.1	21.4
3~4회	7.2	6.2	7.3	7.7	5.8	7.0	6.9
5~6회	0.7	4.4	3.9	0.4	3.5	5.3	2.6
7회 이상	10.7	9.4	9.9	9.9	14.1	4.9	10.6
<시설에 찾아온 가족 및 친척>							
없음	62.9	54.8	57.4	55.8	57.4	66.7	58.5
아버지	3.4	12.2	9.7	7.7	9.5	5.3	7.8
어머니	11.1	6.0	12.9	8.2	12.4	9.0	10.2
조부모	-	2.2	1.5	1.8	-	1.1	1.0
외조부모	1.1	0.9	4.9	3.2	0.8	1.3	1.9
부모의 형제자매	15.8	20.0	10.3	22.6	11.6	10.6	16.0
기타친척	5.7	3.9	3.3	0.7	8.3	6.0	4.6

〈附表 4-6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生活實態 및 滿足度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14.9	19.6	18.5	23.2	14.7	10.8	17.2
만족	40.4	30.9	29.5	37.3	35.4	29.3	34.8
보통	39.5	35.0	46.7	34.0	42.1	45.3	39.6
불만족	5.2	7.1	5.3	3.8	6.0	9.3	5.9
아주 불만족	-	7.4	-	1.7	1.8	4.7	2.5
<옷과 신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11.9	14.3	11.8	16.6	11.6	7.3	12.7
만족	44.0	30.3	24.7	46.6	24.8	30.0	35.1
보통	34.1	32.5	46.2	28.8	45.5	36.0	36.1
불만족	7.6	15.5	14.8	4.8	14.9	19.7	11.7
아주 불만족	2.4	7.4	2.5	3.2	3.2	7.0	4.4
<간식의 빈도>							
거의 없음	1.8	6.0	2.6	1.7	4.1	5.4	3.4
1일 1회	42.2	40.8	10.0	44.4	32.9	19.6	34.5
2~3일에 한번	41.3	26.4	52.0	40.8	35.3	40.0	38.7
1주일에 한번	9.9	19.9	22.4	11.0	16.9	23.6	16.0
한달에 2~3회	4.8	6.9	13.0	2.1	10.8	11.4	7.4

〈附表 4-6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住居環境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방 기거 아동수>							
2명 이하	2.0	10.0	10.8	8.7	3.4	7.7	6.7
3~4명	31.1	34.0	42.4	26.5	43.8	36.5	34.8
5~6명	48.1	22.5	35.8	38.4	36.3	37.6	37.4
7~8명	18.8	31.7	9.8	26.4	15.7	16.0	20.3
9명 이상	-	1.8	1.2	-	0.8	2.2	0.8
<한방 기거 아동 구성형태>							
비슷한 연령끼리	29.4	35.9	63.6	40.5	41.3	33.9	39.2
연령차로 섞여 있음	70.6	64.1	36.4	59.5	58.7	66.1	60.8
<개인책상 유무>							
있음	65.2	65.4	65.4	64.2	76.8	50.9	65.3
없음	34.8	34.6	34.6	35.8	23.2	49.1	34.7

〈附表 4-6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月平均 용돈 額數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음	11.0	6.0	12.5	1.7	10.5	22.6	9.7
10천원 이하	61.1	71.0	57.0	55.5	70.8	66.8	63.5
10~30천원	26.8	19.6	24.0	38.2	15.9	10.0	23.7
31~50천원	1.1	3.4	6.5	4.6	2.8	0.6	3.1

〈附表 4-6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學校 特別活動 參與程度 및 擔任先生님과의 關係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교 특별활동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지 않음	44.3	34.1	29.7	29.7	56.8	23.9	37.5
보이·걸스카웃	-	-	1.3	-	-	1.3	0.3
누리단·한별단	-	-	2.4	0.6	-	1.3	0.5
봉사단	2.2	7.3	2.8	3.2	2.0	8.3	4.0
합창단	0.7	0.9	4.1	1.5	-	3.8	1.7
운동부	13.4	9.7	26.2	17.5	9.6	19.1	15.0
기타	39.4	48.0	33.5	47.5	31.6	42.3	41.0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	34.5	36.1	45.5	24.3	46.6	29.4	36.6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19.0	22.2	27.2	21.6	17.2	35.3	21.4
시간이 없어서	6.9	16.7	9.1	8.2	8.6	17.6	9.8
마음에 드는 특별활동이 없어서	19.0	11.1	9.1	18.9	17.2	5.9	16.1
시설에서 하지못하게 해서	8.6	5.6	-	10.8	5.2	-	6.5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1.7	-	-	-	-	5.9	0.8
기타	10.3	8.3	9.1	16.2	5.2	5.9	8.8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좋다	52.2	44.9	40.6	40.9	54.0	46.6	46.9
보통이다	42.8	53.2	53.0	51.4	40.1	47.1	48.6
나쁘다	5.0	1.9	6.4	2.7	5.9	6.3	4.5

〈附表 4-7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兒童의 施設內 學習生活 實態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에서 하루 평균 공부시간>							
거의 없다	10.0	13.8	13.7	7.8	12.7	19.3	12.4
30분정도	12.0	9.4	16.9	8.4	8.2	24.6	12.3
1시간정도	16.8	20.7	45.7	16.1	31.5	29.5	24.6
2시간정도	39.1	31.9	15.3	37.4	34.4	16.5	31.3
3시간정도	22.1	24.2	8.4	30.3	13.2	10.1	19.4
<과외공부 및 학원수강 여부>							
하고 있지 않음	50.4	74.7	84.9	65.2	66.5	67.3	66.2
하고있음	49.6	25.3	15.3	34.8	33.5	32.7	33.8
<과외공부 및 학원 수강시담임교사>							
시설내 직원	4.6	3.8	-	7.0	-	4.4	4.0
자원봉사자	81.8	57.7	44.5	65.1	73.5	82.6	72.0
외부초빙강사	1.5	-	-	-	2.9	-	1.0
사설학원	10.6	38.5	33.3	27.9	14.8	13.0	20.0
기타	1.5	-	22.2	-	8.8	-	3.0

〈附表 4-71〉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兒童의 平常時 餘暇活動 內容別 參加率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시설의 특별활동 참여	8.7	6.4	6.2	8.8	6.3	6.4	7.4
교회의 특별활동 참여	20.3	35.0	25.9	33.2	22.0	21.2	26.5
독서·오락	41.6	46.2	50.3	50.1	42.2	40.9	45.2
체육·운동	48.9	63.4	48.0	57.4	55.4	44.1	53.5
TV·라디오 시청	66.6	71.8	78.4	64.8	75.3	75.6	71.0
친구와 잡담·놀며 휴식	44.1	46.5	41.2	37.0	55.6	40.5	44.3
시설밖에 놀러감	24.6	22.1	34.1	16.0	35.5	27.7	25.9

〈附表 4-72〉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兒童의 週末 및 休日 餘暇活動 內容別 參與率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시설의 특별활동 참여	4.8	9.4	2.8	2.9	7.0	9.4	5.9
교회의 특별활동 참여	37.5	40.2	37.0	47.9	30.8	32.3	38.3
독서·오락	28.0	27.0	23.3	25.5	30.0	23.4	26.5
체육·운동	59.8	43.2	34.6	43.8	61.4	36.7	48.1
TV·라디오 시청	61.8	59.1	65.4	59.9	63.1	63.2	61.7
친구와 잡담·놀며 휴식	23.2	32.5	25.8	23.3	35.2	22.3	27.0
시설밖에 놀러감	18.2	31.6	17.3	26.5	14.8	26.4	22.6

〈附表 4-73〉 地域 및 施設規模別 施設兒童의 放學中 餘暇活動 內容別 參與率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132)	(100)	(67)	(125)	(103)	(71)	(299)
시설의 특별활동 참여	18.7	14.2	14.0	19.1	14.6	12.2	16.0
교회의 특별활동 참여	27.6	16.5	17.2	22.1	23.7	16.0	21.3
독서·오락	53.0	48.1	55.0	49.4	57.4	48.3	51.8
체육·운동	57.3	48.8	45.0	56.4	52.4	40.2	51.4
TV·라디오 시청	53.5	53.6	53.6	53.3	54.2	53.1	53.5
친구와 잡담·놀며 휴식	17.1	34.2	28.2	25.9	29.2	20.0	25.7
시설밖에 놀러감	27.8	34.3	23.3	24.7	30.3	35.4	28.9

〈附表 4-74〉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性別 分布

(단위: %)

	남	여	계	(N)
전체	56.7	43.3	100.0	(1676)
지역				
대도시	56.7	43.3	100.0	(796)
중소도시	58.2	41.8	100.0	(572)
군부	54.2	45.8	100.0	(308)
시설규모				
60명 미만	54.2	45.8	100.0	(472)
60~79명	56.6	43.4	100.0	(574)
80명 이상	58.7	41.3	100.0	(630)

〈附表 4-75〉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年齡

(단위: %)

	0세	1~5세	6~10세	11~15세	16세+	계	(N)	평균
전체	0.3	6.6	12.1	21.7	59.3	100.0	(1676)	15.2
지역								
대도시	0.8	5.7	11.4	22.0	60.1	100.0	(796)	15.3
중소도시		9.6	12.8	17.7	59.9	100.0	(572)	14.9
군부		3.6	12.3	23.1	61.0	100.0	(308)	15.6
시설규모								
60명 미만		6.8	12.3	19.7	61.2	100.0	(472)	15.2
60~79명		4.5	11.3	21.6	62.6	100.0	(574)	15.8
80명 이상	1.0	8.4	12.5	20.6	57.5	100.0	(630)	14.7

〈附表 4-76〉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단위: %)

	미취학·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기타	계	(N)
전체	10.0	18.9	18.0	49.5	3.2	0.4	100.0	(1676)
지역								
대도시	9.4	18.1	17.2	51.5	3.5	0.3	100.0	(796)
중소도시	12.1	19.4	17.1	48.6	2.1	0.7	100.0	(572)
군부	7.5	20.1	21.8	46.1	4.5	-	100.0	(308)
시설규모								
60명 미만	10.3	18.9	20.1	49.2	1.3	0.2	100.0	(472)
60~79명	7.7	17.8	17.0	52.8	4.2	0.5	100.0	(574)
80명 이상	11.7	20.0	17.3	46.8	3.9	0.3	100.0	(630)

〈附表 4-77〉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年長退所者)

(단위: %)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기타	계	(N)
전체	0.1	1.1	4.3	87.4	6.3	0.8	100.0	(698)
지역								
대도시	0.3	0.6	1.5	90.7	6.6	0.3	100.0	(334)
중소도시	-	1.8	4.4	88.1	4.0	1.7	100.0	(227)
군부	-	1.5	10.9	78.1	9.5	-	100.0	(137)
시설규모								
60명 미만	10.3	18.9	20.1	49.2	1.3	0.2	100.0	(472)
60~79명	7.7	17.8	17.0	52.8	4.2	0.5	100.0	(574)
80명 이상	11.7	20.0	17.3	46.8	3.9	0.3	100.0	(630)

〈附表 4-78〉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學歷 (收容期間中 退所者)

(단위: %)

	미취학·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계	(N)
전체	18.8	41.8	23.9	15.0	0.5	100.0	(620)
지역							
대도시	20.3	40.6	23.9	15.2	-	100.0	(310)
중소도시	18.0	41.5	24.4	14.5	1.6	100.0	(193)
군부	16.2	45.3	23.1	15.4	-	100.0	(117)
시설규모							
60명 미만	21.0	39.2	21.1	18.7	-	100.0	(171)
60~79명	19.1	39.5	25.0	15.0	1.4	100.0	(220)
80명 이상	17.0	45.9	24.9	12.2	-	100.0	(229)

〈附表 4-79〉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단위: %)

	0~3년	4~6년	7~9년	10~12년	13년 이상	계	(N)	평균 (개월)
전체	25.9	12.9	20.8	18.6	21.8	100.0	(1676)	89.3
지역								
대도시	26.0	13.5	21.5	18.1	20.9	100.0	(796)	87.8
중소도시	26.9	11.5	20.3	17.5	23.8	100.0	(572)	89.4
군부	24.1	13.3	20.2	22.0	20.4	100.0	(308)	92.9
시설규모								
60명 미만	25.1	11.9	21.6	21.0	20.4	100.0	(472)	89.2
60~79명	24.2	12.4	20.8	15.2	27.4	100.0	(574)	94.9
80명 이상	28.1	14.0	20.3	20.0	17.6	100.0	(630)	84.4

〈附表 4-80〉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 退所時 就業與否

(단위: %)

	취업	비취업	학생	계	(N)
전체	46.3	20.8	32.9	100.0	(1676)
지역					
대도시	48.4	17.3	34.3	100.0	(796)
중소도시	45.5	25.3	29.2	100.0	(572)
군부	42.5	21.5	36.0	100.0	(308)
시설규모					
60명 미만	44.5	25.8	29.7	100.0	(472)
60~79명	47.4	18.8	33.8	100.0	(574)
80명 이상	39.0	26.7	34.3	100.0	(630)

〈附表 4-81〉 地域 및 施設規模別 育兒施設 退所兒童의 退所時 就業職種

(단위: %)

	지 역			시설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60명 미만	60~79명	80명 이상	
(N)	(796)	(572)	(308)	(472)	(574)	(630)	(16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직	19.7	27.8	26.6	25.8	18.8	26.7	23.7
생산직	15.8	19.8	14.6	15.7	18.5	16.5	16.9
서비스직	7.4	3.3	5.2	4.9	8.4	3.7	5.6
사무직	7.4	11.0	5.8	10.4	8.9	6.3	8.4
기능·기술직	8.8	5.9	6.2	7.2	6.5	8.1	7.3
판매직	5.2	2.3	3.6	3.8	4.2	3.7	3.9
학생	34.3	29.2	36.0	29.7	33.8	34.3	32.9
간호조무사	1.1	0.5	1.3	1.7	0.9	0.5	1.0
공무원	0.3	0.2	0.7	0.8	-	0.2	0.3

〈附表 4-82〉 地域 및 施設規模別 退所兒童의 退所時 住居豫定地

(단위: %)

	자취 (단독)	자취 (공동)	부모집	양부모집	회사 기숙사	자립 생활관	기타	계	(N)
전체	10.5	10.9	35.5	3.4	20.4	2.1	17.2	100.0	(1676)
지역									
대도시	7.9	13.8	37.9	2.7	19.7	3.6	14.4	100.0	(796)
중소도시	11.7	8.6	30.8	5.8	21.5	1.0	20.6	100.0	(572)
군부	14.9	8.1	38.0	1.0	20.1	-	17.9	100.0	(308)
시설규모									
60명 미만	12.3	8.7	34.7	3.8	20.6	1.9	18.0	100.0	(472)
60~79명	11.5	12.2	37.5	0.9	20.3	1.7	15.9	100.0	(574)
80명 이상	8.3	11.4	34.3	5.4	20.3	2.5	17.8	100.0	(630)

附錄 II. 調査票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현황표

조 사 표 번 호				
지역		일련번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2. 육아시설	□ 6. 일시보호시설
	□ 3. 영육아 종합시설	□ 7. 교호시설
	□ 4. 직업보도시설	□ 8. 기타
기관명 :	_____	
소 재 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방문일자:	1995년 _____월 _____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반드시 인사말씀을 읽어 주십시요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요보호아동의 효과적인 양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첫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주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사의 응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쁘신 업무에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성실하고 정확 한 답변은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봉한 반송봉투와 우표를 이용하시어 **7월 30일**까지 응답내용이 당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응석 연구위원
전화: 355-8003~7 FAX: 356-2840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우편번호: 122-040)

199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연 하 청

Ⅰ. 법인실태

1. 법인의 자산 규모 (*1994. 12. 31* 현재)　　* 기존 명세서 첨부 운망.

구 분			규 모 및 현 시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부동산	대 지	m^2 천원
		전 답	m^2 천원
		임 야	m^2 천원
		건 물	m^2 천원
		기 타	천원
		소 계	천원
	동 산		천원
보 통 재 산			천원
수익용 기본재산			천원
합 계			천원

2. 법인의 부채 규모 (*1994. 12. 31* 현재): _____천원

3. 법인의 임원진 구성형태 (*1995. 6. 30* 현재)　* 기존 명단 첨부 운망
   *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법인대표 및 시설장과의 친족여부, 시설소재지와의 동일 시·도 거주여부는 해당난에 체크(V) 표 하여 주십시오.

임 원 (수)	일련번호	직업 (구체적으로기술) 예: 목사, 의사, 사회복지시설장, 교수, 변호사	법인대표와의 친족여부		시설장과의 친족여부		시설소재지와 동일 시·도 거주여부	
			친 족	비친족	친 족	비친족	동일시·도	타시·도
이 사 (총__명)	1							
	2							
	3							
	4							
	5							
	6							
	7							
	8							
감 사 (총__명)	1							
	2							
	3							

Ⅱ. 시설설비

1. 전체 규모 (대지) _____m^2 또는 _____평
(건평) _____m^2 또는 _____평

2. 각 시설·설비의 규모 및 상태

구 분	시설없음	시설있음							
		규 모[1]		설비상태 정도[2]			증·개축 필요성		비 고
				상	중	하	필요	필요없음	
1. 거실		개	m^2						
2. 방		개	m^2						
3. 사무실			m^2						
4. 양호실			m^2						
5. 상담실			m^2						
6. 조리실		개	m^2						
7. 목욕실		개	m^2						
8.화장실(대변기)			구						
- 수세식			구						
- 재래식			구						
9. 급수시설			개						
- 상수도			개						
- 간이상수도			개						
- 펌프/우물			개						
10. 배수시설									
11.비상재해대비시설									
12. 관찰실			m^2						
13. 포복실			m^2						
14. 일광욕실			m^2						
15. 오락실			m^2						
16. 놀이터			m^2						
17. 강당			m^2						
18. 도서실			m^2						
19. 운동장			m^2						

1) 규모: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합산함.
2) 시설·설비상태: 시설설비기준 및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함.

3. 주요 장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 * 아래의 것 이외에 30만원 이상인 것이 있으면 기재요망

구 분	장비·기자재 없음	장비·기자재 있음						
		수 량	장비·기자재 상태정도			신규 확보 및 보수의 필요성		비 고
			상	중	하	필요있음	필요없음	
1. 차량		대						
2. 냉장고		대						
3. 세탁기		대						
4. 텔레비전		대						
5. 컴퓨터		대						
6. 운동기구		대						
- 농구대		대						
- 탁구대		대						
- 축구골대		대						
7. 비디오		대						
8. 영사기		대						

Ⅲ. 시설 재정 실태

*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 요망

1. 수입 (1994년도 결산기준, 물자는 시가로 환산)

구 분		금 액
정부 보조금	국고보조	천원
	지방비보조	천원
	소 계	천원
민간 지원금	기관·단체보조[1]	천원
	개인후원금	천원
	소 계	천원
외 원 보 조[2]		천원
자체 수입	법인보조	천원
	수익사업	
	기 타	
	소 계	
기타 및 잡수입 (무엇:)		천원
합 계		천원

1), 2) 지원기관 및 단체명
* 지원기관 및 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별부 첨부 요망

1)_____
_____

2)_____
_____

_____

2. 지출

항 목		정 부 보 조		자체수입	민간 보조	외원보조	합 계
		국고	지방비				
직접비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교육훈련비						
	기타직접비						
	직접비소계						
간접비	수용비						
	제세·공과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유지비						
	시설신설비						
	인건비						
	기타간접비						
	간접비소계						
총 계							

Ⅳ. 수용아동 현황

* *1994. 12. 31* 현재상태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정원: _____명
2. 현원: _____명

가. 연령별, 남녀별, 학교별, 부모유무별 현원

(단위: 명)

만연령	인원수			재학중인 학교 또는 최종학교											부모 유무				
	계	남	여	미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생존	부만생존	모만생존	모두사망	모름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	졸업	중퇴	재학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입·퇴소 현황 (*1994. 1. 1 ~ 12. 31*)

가. 입소자수 (*1994. 1. 1 ~ 12. 31*) 총_____명

나. 시설입소경로별* 입소자수

입소경로*	계	남	여
1. 행정관서			
2. 경찰관서			
3. 타시설 전원			
4. 입소심사위원회			
5. 병원에서의 후송			
6. 연고자 의뢰			
7. 기타(무엇:)			
합 계			

* 아동상담소를 거친 아동은 아동상담소에 입소한 경로

다. 퇴소자수 (1994. 1. 1 ~ 12. 31) 총_____명

라. 1994년도 퇴소아동들의 퇴소당시의 상태

* 편의시 다른 지면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아동일련번호	성별 1.남자 2.여자	만 연령 (세)	학력[1]	수용기간 (몇년 몇개월)	퇴소[2] 사유	취업 여부 1.취업 2.비취업	직종[3]	주거[4] 유형	퇴소시 문제점 및 특기사항
1									
2									
3									
4									
5									
6									
7									
8									
9									
10									

1) 학력 : ① 미취학 ② 국교중퇴 ③ 국교재학 ④ 국졸 ⑤ 중학중퇴 ⑥ 중학재학 ⑦ 중학졸업 ⑧ 고교중퇴 ⑨ 고교재학 ⑩고졸 ⑪ 전문대입학 ⑫ 4년제대입학 ⑬ 기타

2) 퇴소사유: ① 타시설 전원 ② 연장아 퇴소 ③ 연고자 인계 ④ 무단퇴소 ⑤ 입양·위탁 ⑥ 사망 ⑦ 기타

3) 직종 :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요.

4) 주거유형: ① 자취(단독) ② 자취(공동) ③ 부모집 ④ 양부모집 ⑤ 회사기숙사 ⑥ 자립생활관 ⑦ 기타(무엇:)

Ⅴ. 직원 및 복지제도 현황

1. 종사인력 현황 (*1994. 12. 31.* 현재)

(단위: 명)

구 분	종사자수			정부[1] 보조 인원수	학력[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수			해당직종 자격증 소지자수	1994년도 퇴직·충원 자수	
	계	남	여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1. 시설장											
2. 총무											
3. 의사											
4. 간호사 (간호조무사)											
5. 영양사											
6. 보육사											
7. 생활지도원											
8.직업훈련교사											
9. 상담요원											
10.취사부											
11.세탁부											
12.경리											
13.경비원											
14.보조원											
합계											

[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종사자수
[2] 학력 : ① 무학 ② 국교중퇴 ③ 국교졸업 ④ 중학중퇴 ⑤ 중학졸업 ⑥ 고교중퇴 ⑦ 고교졸업 ⑧ 전문(대학)중퇴 ⑨ 대학졸업 ⑩ 대학원졸업 ⑪ 기타

2. 복지 및 수당제도 현황

* 아래 제도가 있으면 해당난에 체크(V)하여 주십시요. 기타 귀시설에만 특별한 제도가 있다면 빈번호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복지제도	있음	수당제도	있음
1. 승급제도		1. 시간외근무수당	
2. 승진제도		2. 일직수당	
3. 주택부조제도		3. 숙직수당	
4. 자녀학비보조제도		4. 통근수당	
5. 학비대여제도		5. 자격수당	
6. 주택보조제도		6. 주택수당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관리·운영조사표

조 사 표 번 호				
지역		일련번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2. 육아시설	□ 6. 일시보호시설
	□ 3. 영육아 종합시설	□ 7. 교호시설
	□ 4. 직업보도시설	□ 8. 기타
기관명 :	_____	
소 재 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방문일자:	1995년 _____월 _____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반드시 인사말씀을 읽어 주십시요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요보호아동의 효과적인 양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첫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주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사의 응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쁘신 업무에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성실하고 정확 한 답변은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봉한 반송봉투와 우표를 이용하시어 **7월 30일**까지 응답내용이 당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응석 연구위원
전화: 355-8003~7 FAX: 356-2840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우편번호: 122-040)

199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연 하 청

Ⅰ. 법 인

* 법인에 대해 정확히 모르실 경우, 법인대표와 상의하시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종류는?
   □ 1. 사회복지법인 □ 3. 학교법인
   □ 2. 재단법인 □ 4. 기타(무엇:)

2.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1995. 6. 30. 현재)
   □ 1. 아동복지수용시설 _____개소
   □ 2. 기 타 _____개소 (어떤어떤 시설:)

3. 그 법인에서는 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용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 3-1. 하고 있다면, 사업의 내용은? _____
   □ 2. 하고 있지 않다 → 3-2.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4.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유 규정 (1995년도 부터 시설 운영경비의 1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 소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1. 운영경비의 적어도 10/100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다
   □ 2. 비율을 더 낮추었으면 한다
   □ 3. 운영경비 부담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유규정은 전면 폐지하였으면 한다
   □ 4. 기타(무엇: _____)

5. 귀 법인에서는 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1994. 1-12)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1. 개최한 적이 있다 □ 2. 개최한 적이 없다 → (질문 5-2로)
   ↓
   5-1. (있다면) 몇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그 때의 회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수	회의 방법		주요 안건
	1.직접 참석	2.서면 결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5-2. (없다면)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6. 법인대표는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 1. 본인 □ 3. 친구/친지
   □ 2. 친족 □ 4. 관계 없음

Ⅱ. 시설·설비

7. 귀 시설의 설립연도는?_____년도

8. 귀 시설의 지역적 특성은?
   □ 1. 주택가 □ 4. 외딴지역
   □ 2. 시장지역 □ 5. 기타 (무엇:)
   □ 3. 공단지역

9. 상기 귀 시설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유리한 점: _____
   불리한 점: _____

10. 귀 시설은 다음의 기관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기 관	소요 시간 (도보 또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리 (Km^2)
1. 가장 가까운 학교		
2.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3. 읍·면·동사무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11.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_____동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_____동
   * 1990년 이후 증·개축한 건물 동수: _____동

12. 귀 시설의 난방은 어떤 방식입니까?
   □ 1. 기름보일러 중앙난방 □ 3. 방별 독립 연탄난로
   □ 2. 연탄보일러 중앙난방 □ 4. 기타(무엇:)

13. 입소아동의 복지와 시설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1개 아동복지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개 시설당 적정 아동규모: _____명
    * 이유: _____.

14. 귀 시설의 주거형태는?
    □ 1. 독립적인 단독 가정형태 (그룹홈)
    □ 2.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며 취사도 분리 (소사제)
    □ 3.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나 공동취사
    □ 4. 집단 기숙사 형태
    □ 5. 기타 (무엇:)

15. 귀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형태가 어떤 형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독립적인 단독 가정형태 (그룹홈)
    □ 2.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며 취사도 분리 (소사제)
    □ 3.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나 공동취사
    □ 4. 집단 기숙사 형태
    □ 5. 기타 (무엇:)

16. 귀 시설의 실제 주거형태가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거형태와 다를 경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전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16-1. 있다면, 언제 전환하실 계획입니까?
    언제: _____.
    16-2.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_____.
    16-3. 이에 따른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 _____.

    □ 2. 없다 →
    16-4.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Ⅲ. 재정

17.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단가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낮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이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단가와 그 근거 또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17-1. 직접비

구 분		단위	정부지급 기준단가	기준 단가의 적절성	필요한 단가	근거 이유
				낮은편		
주식비 - 백미 - 정맥		인/일 인/일	456g 114g			
부식비		인/일	1,020원			
연료비(취사)		인/일	55원			
피복비		인/년	49,790원			
영양급식비 (14세이하)		인/년	182,500원			
교복비 - 중학생 - 고교생		인/년	90,000원 110,000원			
학용품비 - 국교생 - 중학생 - 고교생		인/년	15,972원 26,917원 28,138원			
중·고생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인/년	60,000원			
중·고생 교통비		인/년	146,000원			
위생대(영아시설)		인/일	2,057원			
직업·영농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실습재료비 -실습운영비	인/월	30,798원 6,000원			
	영농훈련비	인/월	11,000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증학생 - 고교생			전액 330~370천원 180~550천원			
의료보험비		인/월	12,058원			
장제비		구	300,000원			

17-2 간접비

구 분		단위	정부지급 기준단가 (1995년)	기준 단가의 적절성 / 낮은편	필요한 단가	근거 이유
연료비(난방) - 영아시설 - 육아시설		인/년	78,480원 65,400원			
시설유지비 - 5년 이하 - 10년이하 - 15년이하 - 20년이하 - 25년이하 - 25년이상		m^2당/년	 503원 940원 1,235원 1,464원 1,672원 1,847원			
사무비/수용비		인/년	24,850원			
도서구입비		시설/년	220천원			
제세·공과금		인/년	16,210원			
차량유지비		대/년	1,672천원			
인건비<기본급>	시설장	인/월	572,000원			
	총무	"	510,000원			
	보육사	"	355,000원			
	취사/세탁부	"	294,000원			
	간호사	"	409,000원			
	생활지도원	"	409,000원			
	영농지도교사	"	409,000원			
	보조원(영농)	"	355,000원			
	직업훈련교사	"	409,000원			
	경비원	"	294,000원			
인건비<수당>	보육사수당 (영아시설)	"	30,000원			
	가계보조비		20,000원			
	종사자급식비 (연간 240일)	인/일	2,500원			
	복지수당	인/월	급여의 20%			
	장기근속수당 - 5~10년 미만 - 10~15년미만 - 15~20년미만 - 20년 이상	인/월	 40,000원 50,000원 60,000원 80,000원			
	가족수당	인/월	10,000원			

18. 현재의 국고보조금의 지급항목 이외에 더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요구단가(인/일, 인/월, 또는 인/년)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 그 근거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 항목	요구 단가	근거/이유

19. 국고보조금의 지원 중 가장 시급히 증액·신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1. 주·부식비
☐ 2. 피복비
☐ 3. 연료비
☐ 4. 의료비
☐ 5. 인문계 수업료
☐ 6. 자립지원금
☐ 7. 문화·교육비
☐ 8. 종사자 인건비
☐ 9. 시설운영비
☐ 10. 시설 증·개축비
☐ 11. 기타

Ⅳ. 인 력

20. 귀 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① 다음의 종사자들은 시설내에 거주합니까? 시설밖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합니까? ② 그 분들은 하루 몇시간 근무합니까? 또 이들의 적정한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그 분들은 (여름휴가 등 특별한 휴가를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달에 며칠이나 휴일을 가집니까? 또 이들의 적정한 휴가일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거 주 지		② 근 무 시 간		③ 휴 가 일	
	시설내	시설밖	실제 (몇시~몇시)	적정	실 제	적 정
시설장			시간(~)	시간		
총무			시간(~)			
생활지도원			시간(~)			
보육사			시간(~)			
간호사			시간(~)			
취사원			시간(~)			

21. 귀하는 귀 시설의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열악하다 ┐→
□ 2. 다소 열악하다 ┘
□ 3. 보통이다
□ 4. 양호하다
□ 5. 매우 양호하다

21-1.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그 개선방안은?
_____
_____

22. 귀하는 보육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자라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
□ 2. 고등학교 졸업자이면 충분하다
□ 3. 적어도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보육사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사회복지학과는 아니라도 (전문)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 5. 대학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어야 한다
□ 6. 기타 (무엇:)

23. 귀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 1. 공개채용 □ 3. 연고 및 소개
□ 2. 학교 또는 기관의 추천 □ 4. 기타(어떻게:)

24. 귀 시설에서는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한다 →

24-1. 운영한다면, 회의는 어느 정도 개최합니까?
□ 1. 하루에 한번 □ 4. 한달에 한번
□ 2. 일주일에 한번 □ 5.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 3. 이주일에 한번 □ 6. 기타(어느정도:)

□ 2. 운영하지 않는다→

24-2.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5. 귀하는 종사자들이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 및 자신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모임을 결성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 1. 인정한다 →

25-1. 인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2. 인정하지 않는다 →

25-2.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Ⅴ. 관리운영

26. 귀 시설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입소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입소 후 아동에 대한 생활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 기록을 보여 주십시오

구 분	기록관리상태			기록없음
	상	중	하	
입소전 기록 보유 여부				
입소후 생활기록부 작성 여부				

27.. 귀 시설에서는 식단을 작성합니까?

□ 1. 하고 있다 →

27-1. 그러면 식단을 누가 작성합니까?
- □ 1. 영양사
- □ 2. 보건소에 의뢰
- □ 3. 시설장
- □ 4. 총무
- □ 5. 보모
- □ 6. 취사부
- □ 7. 기타(누구:)

27-2. 식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합니까?
- □ 1. 수렴한다
- □ 2. 수렴하지 않는다

27-3. 식사는 식단대로 하고 있습니까?
- □ 1. 하고 있다
- □ 2. 하고 있지 않다 ↓

27-4. 식단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_____

□ 2. 하고 있지 않다 →

27-5.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8.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간식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 □ 1. 매일 한번 이상
- □ 2. 2~3일에 한번 정도
- □ 3. 일주일에 한번 정도
- □ 4. 한달에 두번 정도
- □ 5. 한달에 한번 정도
- □ 6. 명절이나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에만
- □ 7. 간식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다
- □ 8. 기타(어느 정도:)

29. 간식으로는 주로 무엇을 줍니까?
* 무엇:_____.

30. 간식은 주로 어떻게 충원합니까?
    * 어떻게:_____.

31. 귀 시설 아동들의 전반적 발육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양호하다 □ 4. 부진하다
    □ 2. 양호하다 □ 5. 매우 부진하다
    □ 3. 보통이다

32. 귀 시설 아동에게서 흔히 보이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 무엇: _____.

33.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병이 났을 때 지정해 놓고 방문하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34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의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34-1.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는 곳은 어디 입니까?
□ 1. 보건소 □ 4. 종합병원
□ 2. 지정 병·의원 □ 5. 기타(어디:)
□ 3. 일반 병·의원

□ 2 하지 않고 있다 → 34-2.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5. 귀 시설에서는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법정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계십니까?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거서류 확인 운영

운 영 기 준	지키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
1. 직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2. 조직, 인사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시행			
3. 시설운영장부 및 서류 비치			
4.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에서의 직원 기거			

36. 귀 시설은 지난 해 1년간 (1994.1~12) 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해 시(군·구)청 담당자의 방문을 몇차례 받으셨습니까? _____ 차례

Ⅵ. 프로그램 운영

37. 시설아동들은 대체로 게으름, 거짓말하기, 의존성, 창의성 없음, 무책임성, 낭비, 발표력 없음 등 흔히 시설병이라는 특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그런 면이 많다　　☐ 3. 그렇지 않다
☐ 2. 어느 정도 그렇다

38. 귀하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원래 가정환경 때문이다　　☐ 3. 사회 전체적인 환경 때문이다
☐ 2. 시설환경 때문이다　　☐ 4. 기타 (무엇:　　)

39. 귀 시설에는 학교재학중인데도 아직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 1. 있다 →
(몇명:_____)
☐ 2. 없다

39-1. 이들을 위해서 귀 시설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 1. 대책있음(무엇:　　)
☐ 2. 대책없음

40. 귀 시설에는 정서장애아(소위 도벽등이 있는 문제아)가 있습니까?

☐ 1. 있다 →
(몇명:_____)
☐ 2. 없다

40-1. 이들을 위해서 귀 시설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 1. 대책있음(무엇:　　)
☐ 2. 대책없음

41.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 2. 하고 있지 않다

↓

41-1.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시설장　　☐ 4. 보육사
☐ 2. 총무　　☐ 5. 자원봉사자(누구:　　)
☐ 3. 생활지도원　　☐ 6. 기타(누구:　　)

41-2.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1. 매일(_____시간)　☐ 4. 아동이 원할 때만
☐ 2. 주 2~3회(_____시간)　☐ 5. 기타(　　)
☐ 3. 주 1회 정도(_____시간)

41-3. 학습지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교과내용 복습·예습　　☐ 4. 소양지도
☐ 2. 진학위주 지도　　☐ 5. 기타(무엇:　　)
☐ 3. 취업시험 지도

42.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생활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 2. 하고 있지 않다

↓

42-1.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시설장 □ 4. 보육사
□ 2. 총무 □ 5. 자원봉사자
□ 3. 생활지도원 □ 6. 기타(누구:)

42-2.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1. 매일 □ 4. 기타(어느 정도:)
□ 2. 일주일에 한두번(정기적으로)
□ 3.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42-3. 생활지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시설생활적응지도 □ 5. 보건위생지도
□ 2. 예절지도 □ 6. 자립의지개발
□ 3. 교우관계지도 □ 7. 진로지도
□ 4. 식습관지도 □ 8. 기타(무엇:)

43.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

43-1.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또한 지난 1년간(1994. 1~12) 몇회 몇명을 지원하셨습니까?

□ 1. 시설내에서 직업훈련을 시킨다 (년___회 ___명)
□ 2.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다 (년___회 ___명)
□ 3. 사설학원에서 수강토록 한다 (년___회 ___명)
□ 4. 기타(어떻게: (년___회 ___명)

43-2. 교육훈련종목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 1.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선정
□ 2.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 3. 아동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시설에서 선정
□ 4. 기타(무엇:)

43-3. 교육훈련종목은 무엇무엇입니까?

무엇 _____

43-4. 귀 시설에서는 지난 한해(1994. 1~12)동안 자격증을 획득한 아동수는 몇명입니까? 자격증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_____

□ 2. 하고 있지 않다 →

43-5.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44. 귀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직업알선을 하고 계십니까?

□ 1. 하고 있다→ 44-1.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까?
□ 1. 정부직업안정기관 □ 5. 퇴소선배들과 연계
□ 2. 사설직업소개소 □ 6. 후원자를 통해
□ 3. 지역사회 기업체에 의뢰 □ 7. 기타(무엇:)
□ 4.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 2. 하고 있지 않다 → 44-2.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45. 귀 시설에서는 지난해(1994. 1~12)에 도서를 몇권 구입하셨습니까?
_____권

46. 귀 시설에서는 구입도서 목록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1. 시설장이 일률적으로 선정 □ 3.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수렴
□ 2. 종사자들이 의논해서 선정 □ 4. 기타

47. 귀 시설에서 아동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예: 조국기행, 캠프, 퇴소전 자취 프로그램 …… 등)
_____
_____

Ⅶ. 수용 및 입·퇴소

48. 현재 귀 시설에는 장애아나 다른 시·도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몇 명이며,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있다→
□ 2. 없다

구 분	장애아	타시·도아동
가. 수용인원	명	명
나. 수용이유:		
① 관할구역내에 다른 적합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	□
② 행정기관에서 의뢰하였기 때문에	□	□
③ 무의무탁한 아동이기 때문에	□	□
④ 기타 (무엇:)	□	□

49. 귀 시설에는 만18세가 경과한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명입니까?
□ 1. 있다 (명) □ 2. 없다

↓

법정 연장 허용자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 자	명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명
	심신장애아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20세미만의 자	명
	기타(무엇:)	명
	소 계	명
기타 연장자(어떤 아동:)		명
합 계		명

50. (상기 질문에서 법정연장허용자 이외의 연장아동이 있을 경우) 이들은 어떤 어떤 아동들입니까?

_____

51. (상기 질문에서 법정연장허용자 이외의 연장아동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_____

52. 귀 시설아동의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구 분	액 수
국고 보조	원
지방비 보조	원
시설 자체보조	원
기타(무엇:)	원
합 계	원

53. 이러한 자립지원금은 퇴소아동이 자립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하다 □ 2. 불충분하다 □ 3. 모르겠다

↓

·53-1.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퇴소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최소한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_____원
이유: _____.

54. 자립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며, 그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_____

55. 아동의 퇴소시 자립지원금 이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6. 귀 시설에서는 퇴소아동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읍니까?

□ 1. 하고 있다 → 56-1.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_____

□ 2. 하고 있지 않다 → 56-2.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_____

Ⅷ. 지역사회와의 관계

57. 귀 시설에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분들입니까?

□ 1. 있음 □ 2. 없음

↓

구 분	자원봉사자수(명)			활동내용	1인당 월평균 활동시간
	남	여	계		
1. 전문의료진					
2. 전문법률가					
3. 교수, 교사					
4. 성직자					
5. 지역지도자					
6. 기업체 임직원					
7. 가정주부					
8. 일반인					
9. 대학생					
10. 고등학생이하					
11. 기술보유자					
12. 외국인					
13. 기타					

58. 자원봉사자 활동의 도움정도는?

□ 1. 큰 도움이 됨
□ 2. 조금 도움 됨 → 58-1 도움이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 □ 1. 경비가 절약된다
- □ 2.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 2.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 □ 4.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 □ 5. 수용아동의 사기가 향상된다
- □ 6. 기타(무엇:)

□ 3. 별로 도움 되지 않음
□ 4.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58-2.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 □ 1.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움
- □ 2. 자원봉사 기간이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이다
- □ 3. 자원봉사자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 □ 4. 사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 □ 5. 기타(무엇:)

59. 귀 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 발굴·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을 이용하십니까?

□ 1. 공공기관을 이용
□ 2. 학교를 통함
□ 3. 지역사회단체를 통함
□ 4. 종교단체를 통함
□ 5. 시설자체 소식지를 통해
□ 6. 지역신문을 통함
□ 7. 방문자를 통해
□ 8. 기타(무엇:)

60. 귀 시설의 아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원봉사자는 누구입니까?

□ 1. 학습을 지도할 사람
□ 2. 상담자
□ 3. 이·미용을 해 줄 사람
□ 4. 취업지도를 해 줄 사람
□ 5. 예·체능을 지도해 줄 사람
□ 6. 건강관리를 해 줄 사람
□ 7. 기타(누구:)

61 귀 시설에는 후원/결연자 및 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특정아동을 후원하는지 시설을 전체적으로 후원하는지, 또한 한국어린이재단이 연결해 준 것인지 자체개발한 것인지 각각 그 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요.(*1994. 1~12*)

□ 1. 있다
□ 2. 없다

↓

* 후원명부 천부 운영

구 분	개인 후원자수	후원 단체수
특정아동후원		
시설 후원		
합 계		

구 분	개인 후원자수	후원 단체수
한국복지재단 연결		
자체개발		
합계		

62. 귀 시설에서는 시설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발행하고 있다면 몇 부를 발행하십니까?

□ 1. 발행하고 있다 (　　부)
□ 2. 발행하고 있지 않다

63. 귀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 1. 매우 좋다 ┐→ 63-1.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은 이유는?
□ 2. 대체로 좋다 ┘　　_____
□ 3. 그저그렇다

□ 4. 별로 좋지 않다 ┐→ 63-2.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지않은 이유는?
□ 5. 매우 좋지 않다 ┘　　_____

64. 귀 시설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 1. 매우 좋다 ┐→ 64-1.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은 이유는?
□ 2. 대체로 좋다 ┘　　_____
□ 3. 그저그렇다

□ 4. 별로 좋지 않다 ┐→ 64-2.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지않은 이유는?
□ 5. 매우 좋지 않다 ┘　　_____

65. 귀 시설은 지역사회내 타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와 어느 정도로 협조 및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조사항은 어떠한 것입니까?

협조기관 이름	협조* 정도	구체적인 협조사항
1. 직업보도시설		
2. 자립생활관		
3. 동사무소 및 구청 (사회복지전문요원)		
4. 아동상담소		
5. 기업체		
6. 학교		
7. 지역사회단체 (무엇:　　)		
8. 기타 (무엇:　　)		

* 협조정도 : 1) 매우 협조적 2) 협조적 3) 그저그렇다 4) 비협조적 5) 매우 비협조적

66. 귀 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은 아동의 장기보호와 함께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주간 탁아 또는 일시보호사업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하고 있다 →

66-1. 운영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_____

□ 2. 운영하고 있지 않다→

66-2.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0. 없다
↓

66-3.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_____

67. 귀 시설에서는 목적사업외에 지역사회내 주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하고 있다 →

67-1.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_____

□ 2. 운영하고 있지않다→

67-2.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질문 67-5로)
↓

67-3.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_____

67-4. 이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_____

67-5.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68. 귀 시설에서는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68-1. 전환의향이 있다면 선호하는 시설종류는?

☐ 1. 영아시설
☐ 2. 육아시설
☐ 3. 아동직업보도시설
☐ 4. 아동일시보호시설
☐ 5. 교호시설
☐ 6. 자립지원관
☐ 7. 아동전용시설(어린이 공원, 놀이터 등)
☐ 8. 탁아(보육)시설
☐ 9. 장애인(아)복지시설
☐ 10. 노인복지시설
☐ 11. 부녀복지시설
☐ 12. 부랑인(아)선도시설
☐ 13. 기타 (무엇:)

68-2. 위의 다른 특정 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싶은 이유는? (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지역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 2. 기존시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으므로
☐ 3. 행정기관에서 권유하므로
☐ 4. 기타 (무엇: _____)

Ⅸ. 기 타

69. 귀 시설에서는 시설을 이전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69-1. 이전하실 의사가 있다면, 이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 1. 세제상의 혜택
☐ 2. 이전비용 지원
☐ 3. 개발제한지역의 완화
☐ 3. 지역주민의 시설입주 허용
☐ 4. 기타(무엇:)

70. 귀 시설에서는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운영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70-1. 시설운영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무엇: _____

71. 귀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꼭 개정 또는 제정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계법령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적어 주십시요.

1._____.
2._____.
3._____.

72.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 및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_____
_____
_____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종사자조사표

조 사 표 번 호				
지역		일련번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2. 육아시설	□ 6. 일시보호시설
	□ 3. 영육아 종합시설	□ 7. 교호시설
	□ 4. 직업보도시설	□ 8. 기타
기관명 :	_____	
소 재 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방문일자:	1995년 _____월 _____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반드시 인사말씀을 읽어 주십시요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특히 아동복지사업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요보호아동의 효과적인 양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설의 관리·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그리고 시설아동의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사의 응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쁘신 업무에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연 하 청

I. 일반사항

1. 성별: □ 1. 남자 □ 2. 여자

2. 연령: 만_____세 (생년:19____년)

3. 최종학력:
□ 0. 무학
□ 1. 국민학교(___중퇴___졸업)
□ 2. 중 학 교(___중퇴___졸업)
□ 3. 고등학교(___중퇴___졸업)
□ 4. 고등학교(___중퇴___졸업)
□ 5. 전문대학(___중퇴___졸업)
□ 6. 대학교(___중퇴___졸업)
(전공:_____학과)
□ 7. 대학원(___중퇴___졸업)
(전공:_____학과)

4. 결혼상태:
□ 1. 미혼 □ 2. 기혼(____유배우____사별_____이혼_____별거)

5. 자녀: □ 0. 없음 □ 1. 있음

6. 종교:
□ 0. 없음
□ 1. 개신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기타(무엇:)

7. 현 직명 및 직위:
□ 1. 총무
□ 2. 보육사
□ 3. 의사
□ 4. 간호사
□ 5. 영양사
□ 6. 임상심리상담원
□ 7. 임상심리상담원
□ 8. 생활지도원
□ 9. 직업훈련교사
□ 10. 취사부
□ 12. 경리
□ 13. 기타

8.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여부:
□ 0. 없음
□ 1. 사회복지사 (_____급)
□ 2. 보육사 (_____급)
□ 3. 교 사
□ 4. 영양사
□ 5. 간호사
□ 6. 간호조무사
□ 7. 의 사
□ 8. 기타(무엇:)

9. 시설장과의 친인척 관계 여부:
☐ 1. 시설장의 자녀 ☐ 3. 기타 친인척
☐ 2. 시설장의 형제·자매 ☐ 4. 친인척 관계 없음

10. 법인대표와의 친인척 관계 여부:
☐ 1. 법인대표의 자녀 ☐ 3. 기타 친인척
☐ 2. 법인대표의 형제·자매 ☐ 4. 친인척 관계 없음

11. 시설출신 여부
☐ 1. 시설출신이다 ☐ 2. 시설출신 아니다

Ⅱ. 업무 및 근무환경

12. 귀하는 현 시설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 1. 공개채용 ☐ 3. 연고 및 소개
☐ 2. 학교 또는 기관의 추천 ☐ 4. 기타(어떻게:)

13. 현 시설에서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19_____년 _____월

14. 현재의 시설에 종사하기 전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디어디에서 얼마동안 종사하셨습니까?
☐ 0. 없다 ☐ 1. 있다(____년____개월)
↓

14-1. 어디: _____
언제: _____

15. 현재 귀하는 시설안에서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시설밖에서 거주하십니까?
☐ 1. 시설내 → 15-1.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 1. 시설내 별도의 사택에서
☐ 2. 아이들과 동일건물내 독방에서
☐ 3. 아이들과 동일건물내에서 다른 종사자와 함께
☐ 4. 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 5. 기타(어디:)
☐ 2. 시설밖

16. (자녀가 있을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는 시설안에서 거주합니까? 아니면 시설밖에서 거주합니까?

☐ 1. 시설내 →
☐ 2. 시설밖

16-1.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 1. 본인과 함께 ☐ 3. 기타(어디:)
☐ 2. 시설아이들과 함께

17.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수는 몇명입니까? _____명

18. 일상적으로 현재 귀하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휴가 또는 특별연충의 경우는 제외) _____시간

19.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1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너무 길다 ┐
☐ 2. 긴 편이다 ┘→
☐ 3. 적당하다
☐ 4. 짧은 편이다
☐ 5. 매우 짧다

19-1. (근무시간이 길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주십시오 (예: 인원충원, 근무교대제 실시등).
_____
_____

20. 귀하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달에 휴일을 며칠이나 가집니까? (여름휴가 등 특별한 휴가는 제외) _____일

21. 귀하는 필요시 외출을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 1. 매우 쉽다 ☐ 4. 어렵다
☐ 2. 쉽다 ☐ 5. 매우 어렵다
☐ 3. 보통이다

22. 귀하의 고유 업무는 무엇입니까?
_____

23. 현재 귀하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 취사, 상담, 학습지도, 빨래 등)
_____

III. 교육, 훈련 관련사항

24. 귀하는 지난 1년동안 (1994. 7 ~ 1995. 6) 교육·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0. 없음 → 24-1.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과중한 업무때문에
- □ 2. 시설재정상 어려움으로
- □ 3. 정보부재로
- □ 4. 자격미비로
- □ 5. 차례가 오지 않아서
- □ 6. 기타(무엇:)

□ 1. 있음 (_____회) → 질문 24-2로

24-2.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과정명, 실시기간, 실시기관명, 내용 및 업무수행상 도움정도 등을 다음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	현업무수행상 도움정도*
1					
2					
3					
4					
5					

* ① 많은 도움 ② 도움이 되는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도움이 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안됨 ⑥ 모르겠다

25. 귀하께서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필요하다 → 25-1. (필요하다는 경우) 그렇다면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교육·훈련내용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용:
방법:

□ 2. 필요하지 않다 → 25-2.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 직무만족도

26. 귀하의 월평균 급여(제 수당등 포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봉급명세표 참조
    _____원

27. 현재 귀하께서 받고 있는 월급여액에 대하여는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하는 편
    □ 2. 만족하는 편
    □ 3. 그저그렇다
    □ 4. 불만인 편
    □ 5. 매우 불만인 편

28. 현재 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수당 외에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 또는 수당 등이 있습니까?
    □ 1. 있다(무엇:)
    □ 2. 없다

29. 현재의 시설에 종사하게 된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취업을 목적으로
    □ 2.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전공에 맞는 곳이라서
    □ 3.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 4. 종교적 봉사
    □ 5. 부모, 친지의 권유로
    □ 6. 부모, 친지로 부터 물려받게 되어
    □ 7. 기타(무엇:)

30. 귀하께서는 현 직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만족
    □ 3. 그저그렇다
    □ 4. 불만 ──→
    □ 5. 매우 불만 ┘

    30-1. (불만인 경우) 현 직무에 불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것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요)
    □ 1. 급여수준이 낮아서
    □ 2.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 3. 근로시간이 과다
    □ 4. 직원간의 갈등
    □ 5. 운영진과의 갈등
    □ 6. 기타(무엇:)

31. 현재 소속중인 시설에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실 계획이십니까?

☐ 1. 계속 근무하겠다.
☐ 2.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겠다
☐ 3. 빠른 시일내에 그만 두겠다
☐ 4. 잘 모르겠다

→

31-1. 그만 두려는 이유는?

_____

31-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근무할 생각이 있습니까?
☐ 1. 근무하겠다 ☐ 3. 잘 모르겠다
☐ 2. 근무하지 않겠다

32 (독신자만 응답하십시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 결혼한 후에도 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V. 기타 사항

33. 귀 시설에서 종사자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1. 직원 증원, 충원문제
☐ 2. 직원 급여수준 개선
☐ 3. 근무시간 단축
☐ 4. 직원의 시설운영 참여기회 확대
☐ 5. 기타(무엇:)

34. 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낮은 급여수준
☐ 2. 나쁜 근무환경
☐ 3. 과중한 업무
☐ 4. 장래성 없음
☐ 5. 그릇된 사회인식
☐ 6. 기타(무엇:)

35. 귀 시설에서는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한다 →
35-1. 운영한다면, 회의는 어느 정도 개최합니까?
☐ 1. 하루에 한번 ☐ 4. 한달에 한번
☐ 2. 일주일에 한번 ☐ 5..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 3. 이주일에 한번 ☐ 6. 기타(어느정도:)

☐ 2. 운영하지 않는다→ 35-2.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6. 귀 시설의 수용아동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1. 생계비 인상
☐ 2. 전문 상담요원 확보
☐ 3. 시설 증·개축
☐ 4. 시설규모 축소
☐ 5.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6. 퇴소아 대책
☐ 7. 기타(무엇:)

37. 시설아동들은 대체로 게으름, 거짓말하기, 의존성, 창의성 없음, 무책임성, 낭비, 발표력 없음 등 흔히 시설병이라는 특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그런 면이 많다
☐ 2. 어느 정도 그렇다
☐ 3. 그렇지 않다

38. 귀하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원래 가정환경 때문이다
☐ 2. 시설환경 때문이다
☐ 3. 사회 전체적인 환경 때문이다
☐ 4. 기타 (무엇:)

39. 귀하는 보육사의 교대제 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39-1. 그 이유는? _____

☐ 2. 반대한다 → 39-2. 그 이유는? _____

40. 귀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형태가 어떤 형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독립적인 단독 가정형태 (그룹홈)
☐ 2.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며 취사도 분리 (소사제)
☐ 3.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나 공동취사
☐ 4. 집단 기숙사 형태
☐ 5. 기타 (무엇:)

41. 여건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그룹홈을 설립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41-1. 이에 따른 요구사항은? _____
☐ 2. 없다

42.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관련 사항이나 전반적인 운영개선방안에 관하여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탄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아동조사표

조 사 표 번 호				
지역		일련번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2. 육아시설	□ 6. 일시보호시설
	□ 3. 영육아 종합시설	□ 7. 교호시설
	□ 4. 직업보도시설	□ 8. 기타
기관명 :	_____	
소 재 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방문일자:	1995년 _____월 _____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반드시 인사말씀을 읽어 주십시요

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시설아동들이 보다 즐겁게 시설생활을 하고, 시설을 떠난 후에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여러분의 생활실태와 여러분의 장래문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니,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연 하 청

Ⅰ. 일반사항

1.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2.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만으로 몇 살입니까?
   * 태어난 년도: 19_____년 * 현재 나이: 만_____세

3.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0. 학교에 다니지 않았음 □ 3. 고등학교(재학중, 중퇴, 졸업)
   □ 1. 국민학교(재학, 중퇴, 졸업) □ 4. 기타(무엇:)
   □ 2. 중학교(재학중, 중퇴, 졸업)

4.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 0. 없다 □ 2. 천주교 □ 4. 기타(무엇:)
   □ 1. 기독교 □ 3. 불교

5. 처음 시설에 들어온 년도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 입소년도 : 19_____년 * 그 당시 연령 : 만_____세

Ⅱ. 가족사항

6.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척은 모두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함께 살았던 사람은 모두 √해주십시오.)
   □ 1. 아버지 □ 6. 외할머니 □ 11. 계부(양아버지)
   □ 2. 어머니 □ 7. 삼촌 □ 12. 계모(양어머니)
   □ 3. 친할아버지 □ 8. 고모 □ 13. 영아원에서 생활
   □ 4. 친할머니 □ 9. 이모 □ 14. 모르겠다
   □ 5. 외할아버지 □ 10. 외삼촌 □ 15. 기타(누구:_____)

7.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7-1. 지난 1년간(1994. 1-12) 몇번정도 방문했습니까?
   * 방문횟수 :_____회
   7-2.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하였습니까?
   * 누구 :_____

8. 시설에 가끔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8-1. 지난 1년간(1994. 1-12) 몇번정도 찾아 왔습니까?
* 찾아온 횟수 :_____회
8-2. 주로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척은 누구입니까?
* 누구 :_____

9.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몇:_____명)

Ⅲ. 의식주 문제

10. 시설에서 먹는 식사(밥, 국, 반찬 등)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5. 매우 불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4. 불만족한다

11. 시설에서 간식은 어느정도 자주 먹습니까?
☐ 0. 거의 없다 ☐ 2. 2-3일에 1회 ☐ 4. 한달에 2-3회
☐ 1. 1일 1회 이상 ☐ 3. 1주일에 1회

12. 시설에서 제공하는 옷과 신발에 대해 만족합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 5. 매우 불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4. 불만족한다

13. 현재 같은 방에서 몇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 몇명 :_____명

14. 함께 쓰고 있는 방의 식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1. 비슷한 연령끼리 모여 있다
☐ 2. 연령 차이가 큰 아동들이 섞여 있다

15. 방이나 공부방(도서실)에 개인 책상을 갖고 있습니까?
☐ 1. 갖고 있다 ☐ 2. 갖고 있지 않다

16. 시설내에 개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을 갖고 있습니까?
☐ 1. 갖고 있다 ☐ 2. 갖고 있지 않다

17. 한달에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 얼마: 한달에 _____원

18. 이중 시설로부터 받는 용돈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 0. 용돈 없음 ☐ 1. 용돈받는다(한달:_____원)

19. 시설외 다른 곳으로 부터 받는 용돈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누구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 0. 용돈 없음 ☐ 1. 용돈받는다(한달:_____원, 누구:)

20.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무엇입니까?
☐ 0. 하지 않는다 ☐ 1. 한다(무엇:)

Ⅳ. 학교생활

*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만 응답하시오.

21. 지금의 학교생활은 어떻습니까?
☐ 1. 학교생활이 즐겁다
☐ 2. 그냥 다닌다
☐ 3. 학교 다니기가 싫다 →

21-1. 학교다니기가 싫다면, 그 이유는?
_____

22.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 1. 잘하는 편이다 ☐ 2. 중간정도 한다 ☐ 3. 못하는 편이다

↓

22-1. 학업성적이 나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초실력이 없어서 ☐ 5. 학교선생님과의 문제때문에
☐ 2. 공부하기가 싫어서 ☐ 6. 시설직원과의 갈등때문에
☐ 3. 학교 친구때문에 ☐ 7. 공부환경이 나빠서
☐ 4. 이성문제때문에 ☐ 8. 열심히 공부해도 진학할 희망이 없어서

23. 학교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 0. 참여하지 않는다→
☐ 1. 보이·걸스카우트
☐ 2. 누리단·한별단
☐ 3. 봉사단
☐ 4. 합창단
☐ 5. 운동부
☐ 6. 기타
(무엇 :)

23-1.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관심이 없어서
☐ 2.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 3. 시간이 없어서
☐ 4. 마음에 드는 특별활동이 없어서
☐ 5.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싫어서
☐ 6. 시설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 7. 돈은 시설에서 대주지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 8. 돈도 없지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싫어서

24. 학교친구들에게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지냅니까?
☐ 1. 누구에게나 말한다 ☐ 3. 가능한 한 밝히지 않는다
☐ 2.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말한다 ☐ 4. 절대 할하지 않는다

25.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1. 좋다 ☐ 2. 그저그렇다 ☐ 3. 나쁘다

Ⅴ. 시설내 생활

26. 평소 시설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합니까?
☐ 0. 거의 하지 않는다 ☐ 2. 1시간 정도 ☐ 4. 3시간 이상
☐ 1. 30분 정도 ☐ 3. 2시간 정도

27. 현재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과외공부를 하거나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 0. 하지 않는다
☐ 1. 하고 있다 →

27-1.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합니까?
☐ 1. 시설내 직원 ☐ 4. 사설학원
☐ 2. 자원봉사자 ☐ 5. 기타 (누구:)
☐ 3. 외부초빙강사

28. 평일날, 공부를 하지 않는 자유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해주십시오.
☐ 1. 시설의 특별활동에 참여 ☐ 7. 친구들과 잡담
☐ 2. 교회(성당·절)의 특별활동 참여 ☐ 8. 빈둥빈둥 놀며 휴식한다
☐ 3. 독서 ☐ 9. 시설바깥에 놀러 간다
☐ 4. 운동 ☐ 10. 기타 (무엇 :_____)
☐ 5. TV를 보든가 라디오나 카세트테이프를 듣는다
☐ 6. 오락을 하거나 잡지나 만화책을 본다

29. 주말 또는 휴일 자유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문제 28번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써 주십시요.

_____

30. 방학때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역시 문제 28번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써 주십시요.

_____

31. 지난 겨울방학때 특별히 재미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적어 주십시요.
☐ 0. 재미있는 활동 없었다
☐ 1. 재미있는 활동 있었다 (무엇: _____)

32.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성교육, 컴퓨터교육, 영어 회화, 요리교육, 등)
무엇: _____

33. 시설에는 여가활동으로서 집단 특별활동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33-1. 있다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_____

33-2. 그 집단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 1. 시설내 종사자 ☐ 3. 선배, 본인, 시설 친구
☐ 2. 자원봉사자 ☐ 4. 기타(누구:)

34. 시설에는 학생회/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34-1. 학생회/자치회의 회장단은 몇명으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_____

34-2. 회장단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 1. 사무실(원장, 총무)에서 임명
☐ 2.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추천후 선거
☐ 3.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자격제시후 선거
☐ 4. 원생들이 자유로이 선거

34-3. 학생회/자치회가 있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1. 큰 도움을 준다 ┐→
☐ 2. 약간 도움을 준다 ┘
☐ 3. 그저그렇다
☐ 4. 별로 도움을 못준다
☐ 5. 전혀 도움을 못준다

34-4. 도움을 주고 있다면, 어떤 도움입니까?
_____

35. 시설직원중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35-1. 있다면, 누구입니까?
☐ 1. 원장 ☐ 4. 생활지도교사
☐ 2. 총무 ☐ 5. 시설내 목사님
☐ 3. 보모님 ☐ 6. 기타 (누구:_____)

36. 현재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36-1. 있다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한가지만 √ 해주십시오!)

☐ 1. 공부문제
☐ 2. 진로문제(진학, 취업)
☐ 3. 장래문제
☐ 4. 자신의 성격문제
☐ 5. 건강문제
☐ 6. 학교친구와의 관계
☐ 7. 시설친구와의 관계
☐ 8. 이성문제
☐ 9. 가족문제
☐ 10. 시설선배와의 관계
☐ 11. 시설직원과의 관계
☐ 12.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 13. 기타 (무엇 :_____)

36-2. 고민해결을 위해 주로 누구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 1.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한다
☐ 2. 원장님 또는 총무님
☐ 3. 생활지도교사
☐ 4. 시설내 목사님
☐ 5. 보모님
☐ 6. 학교선생님
☐ 7. 시설의 친구나 선배
☐ 8. 학교친구
☐ 9. 형제/자매
☐ 10. 부모나 친척
☐ 11. 자원봉사자
☐ 12. 후원자
☐ 13. 기타 (누구:)

37. 현재의 시설생활은 어떻습니까?

☐ 1. 매우 즐겁다 ☐ 3. 그저그렇다 ☐ 5. 전혀 즐겁지 않다
☐ 2. 약간 즐겁다 ☐ 4. 별로 즐겁지 않다

38. 시설생활중 불만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해주십시오!)

☐ 0. 불만사항이 없다 ☐ 7. 간식 ☐ 14. 예배강요
☐ 1. 잠자는 방 ☐ 8. 옷, 신발 ☐ 15. 자유시간
☐ 2. 목욕시설 ☐ 9. 책, 학용품 ☐ 16. 외출
☐ 3. 난방시설 ☐ 10. 용돈 ☐ 17. 귀가시간
☐ 4. 화장실 ☐ 11. 상담지도 ☐ 18. 시설직원들의 태도
☐ 5. 오락시설 ☐ 12. 학습지도 ☐ 19 시설선배들의 태도
☐ 6. 급식 ☐ 13. 집단규율생활 ☐ 20. 기타(무엇:)

Ⅵ. 장래문제

39.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요?

□ 1. 중학교

□ 2. 고등학교 →

39-1. 고등학교 까지만 다니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공부가 하기 싫어서
- □ 2. 공부할 환경이 안되어서
- □ 3. 직장에 다니고 싶어서
- □ 4. 시설에서 떠나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 □ 5. 기타 (무엇 :_____)

□ 3. 전문대 이상 →

39-2. 전문대학 이상을 다니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공부가 하고 싶어서
- □ 2.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 □ 3.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 □ 4. 기타 (무엇 :_____)

40. 퇴소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됩니까?
- □ 0. 걱정되는 것이 없음
- □ 1.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 □ 2. 취직기회가 없을까봐
- □ 3. 살 거처가 없는 점
- □ 4.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 □ 5. 기타 (무엇 :_____)

41.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원합니까?
* 어떤 직업 :_____

42. 취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 □ 1. 봉급을 많이 주는지
- □ 2.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 □ 3.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지
- □ 4. 그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 □ 5.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 □ 6. 기타 (무엇 :_____)

43. 직업훈련원에 입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 □ 1. 취업이 되면 안 갈 것이다
- □ 2.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입소하고 싶다
- □ 3. 취업이 안되어도 입소하지 않을 것이다
- □ 4. 모르겠다

44. 퇴소후 같이 거주할 가족 또는 친척집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0. 없다 ——————→
☐ 1. 부모집
☐ 2. 친할아버지,할머니집
☐ 3. 외할아버지,할머니집
☐ 4. 고모집 ☐ 7. 외삼촌집
☐ 5. 삼촌집 ☐ 8. 친형,친언니집
☐ 6. 이모집 ☐ 9. 기타 (어디 :)

44-1.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1.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겠다
☐ 2. 시설의 선배나 동기들과 함께 살겠다
☐ 3. 혼자서 살겠다
☐ 4. 그때 가봐야 알겠다
☐ 5. 기타 (무엇 :_____)

45. 퇴소후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모르고 있다 ☐ 3. 잘 알고 있다
☐ 2. 조금은 알고 있다

46. 자립생활관은 퇴소후에 거처할 곳이 없는 아동에게 퇴소후 2년까지 아주 싼값으로 거처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입니다. 퇴소후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1. 이용할 생각이 있다
☐ 2. 이용할 생각이 없다 →
☐ 3. 모르겠다

46-1.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47.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모르고 있다 ☐ 3. 잘 알고 있다
☐ 2. 조금은 알고 있다

48. 자립지원금은 퇴소할 때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그 자립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_____

49. (* 남학생만 응답하십시오!) 병역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군대에 가는 것이 좋다 →

49-1. 가는 것이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서
- ☐ 2. 군대생활을 통해 자신이 강인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 ☐ 3. 남들과 평등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 ☐ 4. 퇴소후에 할 일이 없어서
- ☐ 5. 기타 (무엇 :_____)

☐ 2. 면제받을 수 있다면 안가는 것이 좋다→

49-2. 안가는 것이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고생이 될 것 같아서
- ☐ 2.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 3. 하루빨리 자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 ☐ 4. 기타 (무엇 :_____)

☐ 3. 모르겠다

附錄 III: 調査對象施設

1. 육아시설 - 명진보육원, 상록보육원, 선덕원, 성모자애보육원, 연세사회복지관, 송죽원, 경생원, 새들원, 동산원, 우리집원, 애아원, 효행원, 애향보육원, 명륜보육원, 애신보육원, 보화보육원, 여광원, 한국보육원, 신생보육원, 공생원, 순천SOS어린이마을, 성덕원, 소전원, 시온원, 등대원, 울산양육원, 진해희망원, 마산인애원, 성민보육원, 진양보육원, 동광육아원
2. 영아시설 - 성노은아기집, 화성영아원, 시립아동병원, 마리아영아원, 성애원, 경동원, 동민영아원, 이화영아원, 애리아동상담소, 영신보육원
3. 직업보도 - 돈보스꼬 청소년센타,
4. 자립지원 - 청운자립생활관, 장선자립청소년의 집, 진우청소년자립생활관
5. 일시보호 -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아동일시보호소
6. 교호시설 -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소년기술훈련원